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301-10



특허고객 상담사례집



특허고객상담사례집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총목차

PART 1 제도개선 다시보기

2020년 주요 개정사항

- 국내우선권주장의 주체적 요건 완화 8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수수료 감면 9
- 명세서 제출형식 요건 완화 11
- 익명으로 정보제출 가능 12
- 전자서명된 위임장 및 전자(원격)공증서 허용 12
- 3D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 14
-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품목 확대 15
- 접근코드 발급절차 개선 15
-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가능국 확대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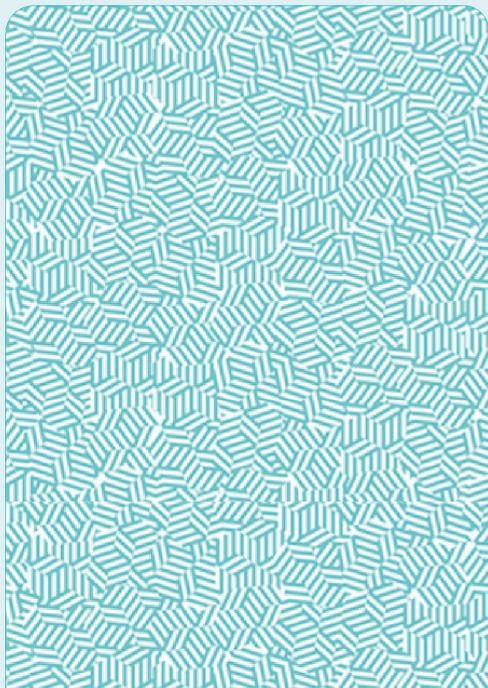
상담사례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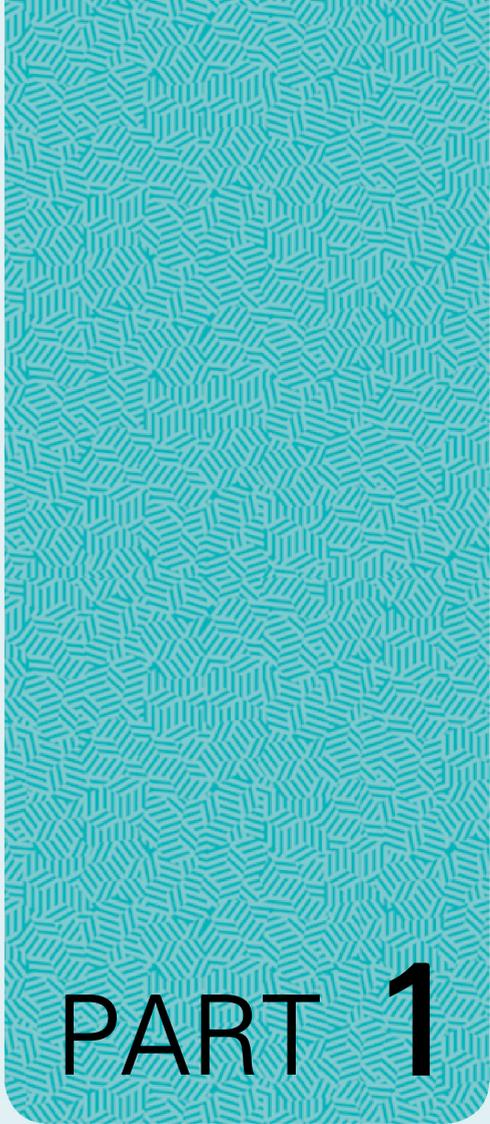
- 제1편 산업재산권 제도 19
- 제2편 출원절차 83
- 제3편 중간절차 117
- 제4편 심사절차 163
- 제5편 등록절차 203
- 제6편 심판절차 257
- 제7편 수수료 317
- 제8편 국제출원 343
- 제9편 전자출원 407

‘본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상담사례집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ART 1

제도개선
다시보기

2020년 주요 개정사항

국내우선권주장의 주체적 요건 완화

□ 도입 배경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시 후출원일 이전에 선출원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신고로 출원인을 일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심사기준 변경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6두58543 판결

□ 개정 내용

후출원의 출원인이 후출원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았다면 승계받은 증명서류 첨부해서 국내 우선권 주장 가능

※ 특허법 38조4에 따른 선출원의 출원인변경신고는 불필요

변경 전	변경 후
<p>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선출원의 출원인(특허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승계인을 포함한다)이다. 선출원인인 후출원인의 출원시점에 동일하여야 한다.[특법55(1)]</p>	<p>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선출원의 출원인(선출원의 출원인의 정당한 승계인을 포함한다)이다.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은 후출원의 출원시점에 동일하여야 한다.</p>

□ 적용 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원하는 건부터 적용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수수료 감면

▣ 도입 배경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에 소재한 출원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여 수수료를 감면

▣ 개정 내용

특별재난지역 선포시('20.3.15.)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봉화군, 청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출원인(권리자)인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수수료, PCT국제조사료 납부 시 납부할 수수료의 30%(PCT 국제조사료 75%)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부여하여 납부

① 대상자

'20.3.15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봉화군, 청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단, 공동출원인(권리자) 모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함(PCT인 경우 중소기업만 해당)

② 부여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PCT 국제조사료(국문)

〈수수료별 지식재산포인트 적용 기준〉

수수료	적용 기준
출원료 및 설정등록료	'20.3.15~'21.3.14 기간 내에 출원료 및 등록료를 납부하는 건
심사청구료	'20.3.15~'21.3.14 기간 내에 출원 및 심사청구를 한 건
연차등록료	납부기간 개시일이 '20.3.15~'21.3.14 기간 내에 해당하는 건 * 수년차 분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연차만 적용
PCT국제조사료 (국문)	'20.3.15~'21.3.14 기간 내에 수수료납부서 제출 건 * '20.3.14. 납부서 제출 시 익일에 납부된 건 포함

③ 신청 방법

- 서류제출 : 당해 서류를 제출할 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감면사유에 '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으로 기재

※ 국제조사료(국문) 감면 시에는 수수료 납부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할 수 없으나 관련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류) 첨부 필요

- 사후신청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별지2 '제8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 온라인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지식재산포인트 → 지식재산포인트 신청
 → '제8조(특별재난구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신청' 체크

④ 증명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생략가능)
- 개인 : 주소변경내역이 전부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 국제조사료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중소기업확인서류 첨부(생략 불가)
 대리인 진행 시 포괄위임은 불가 개별위임장으로 진행

명세서 제출형식 요건 완화

□ 도입 배경

신속한 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한 문서(논문·연구노트 등)를 명세서로 제출하여 빠른 출원일 선점이 가능하도록 취급규정 마련

□ 개정 내용

정해진 서식 또는 기재요건을 따르지 않는 ‘임시 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며,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기재요령에 맞는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출원일을 최선일로 선점가능

임시 명세서로 출원하는 경우 특히 출원서 서지사항 기타사항에 ‘임시명세서(청구 범위제출유예)’에 체크 후 제출하고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임시명세서등 보정서로 기재형식에 맞게 명세서 전문 제출

임시명세서등 보정으로 명세서 전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반려대상

<온라인 출원 시 첨부 가능한 확장자>

기존	변경
h1z	pdf, ppt, pptx, doc, docx, hwp, elz, jpg, tif, h1z

□ 적용 시기

2020년 3월 30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익명으로 정보제출 가능

▣ 도입 배경

제3자 심사참여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제도(특허법 제63조의2)를 운영하고 있으나, 익명 정보제공 허용을 통해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 및 동종업계 종사자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유도

* 익명 정보제공 시에는 정보제공 전 특허고객번호 발급 절차가 불필요

▣ 개정 내용

정보제출서 서식 중 제출인 정보 부분은 활용결과 통지를 원할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활용결과를 정보제출인에게 통지하지 않음

▣ 적용 시기

2020년 3월 30일 이후 제출하는 건부터 적용

전자서명된 위임장 및 전자(원격)공증서 허용

▣ 도입 배경

기존에는 증명서류 중 재외자의 서명이 필요한 위임장 및 공증서의 경우 서면으로 원본만 제출 가능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업무가 제약됨에 따라 전자적으로 서명한 (개별·포괄)위임장 및 전자(원격)공증서의 파일 또는 출력물 제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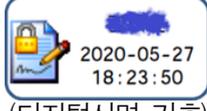
▣ 개정 내용

대리인을 선임할 때 제출하는 (개별·포괄)위임장과 특허권 양도 등의 경우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공증서에 대하여 재외자가 전자 서명하여 작성한 위임장과 비대면 방식의 전자(원격)공증서의 파일 또는 출력물 제출이 가능

〈전자서명된 위임장 및 전자(원격)공증서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p>①일반적인 서명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p>	<p>서명자(위임인·촉탁인·공증인)의 서명으로서 위임인 등이 전자적으로 서명한 위임장(공증서) 파일(또는 그 출력물)임을 소명하는 대리인(특허관리인 포함)의 확인(진술) 내용이 위임장(공증서)의 번역문에 기재된 경우에 증명 서류로 인정</p>
<p>②일반적인 서명 형태가 아닌 문자·기호(디지털 기호) 등으로 구성된 경우</p>	<p>문자(text, digital sign 등)로 구성된 전자서명은 공통(①)의 소명 내용과 함께 전자문서 파일내 유효서명임을 나타내는 속성정보(서명자인증) 등을 복사(캡처)하여 번역문에 추가한 경우에 증명 서류로 인정</p>

〈전자서명 형태(예시)〉

전자서명 형태(예시)			처리 기준
 <p>(서명패드 이용 서명)</p>	 <p>(서명+기호)</p>		<p>①</p>
 <p>(마우스 이용 서명)</p>	 <p>(서명(이미지))</p>	 <p>(서명+디지털서명 속성)</p>	
 <p>(문자+디지털서명 속성)</p>	 <p>(기호+디지털서명 속성)</p>	 <p>(디지털서명 기호)</p>	<p>①+② 적용</p>

■ 적용 시기

2020년 6월 17일 이후 제출하는 건부터 적용

3D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

□ 도입 배경

최초 3D 출원한 도면은 3D 도면으로만 보정이 가능하고, 2D(선도)출원도면도 3D보정이 불가능한 점 등 보정의 제약이 있어 도면 작성방법을 완화

□ 개정 내용

3D도면으로 출원 시 2D·동영상 참고도면을 허용하고, 2D도면으로 출원 시 3D·동영상 참고도면을 허용하며, 3D로 출원한 도면의 2D 보정을 허용하고, 2D로 출원한 도면의 3D 보정을 허용

※ 화상디자인 도면도 동일하게 적용

〈3D 도면 파일형식별 보정·참고도면 허용 범위〉

최초출원	보정	최초출원	참고도면
3D출원 	⇒ 3D로만 보정가능 2D보정불가 	3D출원 	⇒ 3D로만 가능 

□ 적용 시기

2020년 9월 1일 이후 디자인 출원하는 건부터 적용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품목 확대

□ 도입 배경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물품에 대하여 일부심사 대상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일부심사등록 대상을 확대

□ 개정 내용

상품분류 1, 3, 9, 11류 품목도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일부심사 대상품목 : 1, 2, 3, 5, 9, 11, 19류

□ 적용 시기

2020년 12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접근코드 발급절차 개선

□ 도입 배경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따라 출원 시 출원번호와 함께 DAS 접근코드를 자동으로 발급하여 절차 간편화

□ 개정 내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시 특허청에서 접근코드를 자동 발급하여 출원번호 통지서 기재하여 통지

□ 적용 시기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가능국 확대

□ 도입 배경

디자인 WIPO 접근코드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가능한 나라 확대

□ 개정 내용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에 의해 생략 가능한 국가가 기존 중국과 미국에서 14개국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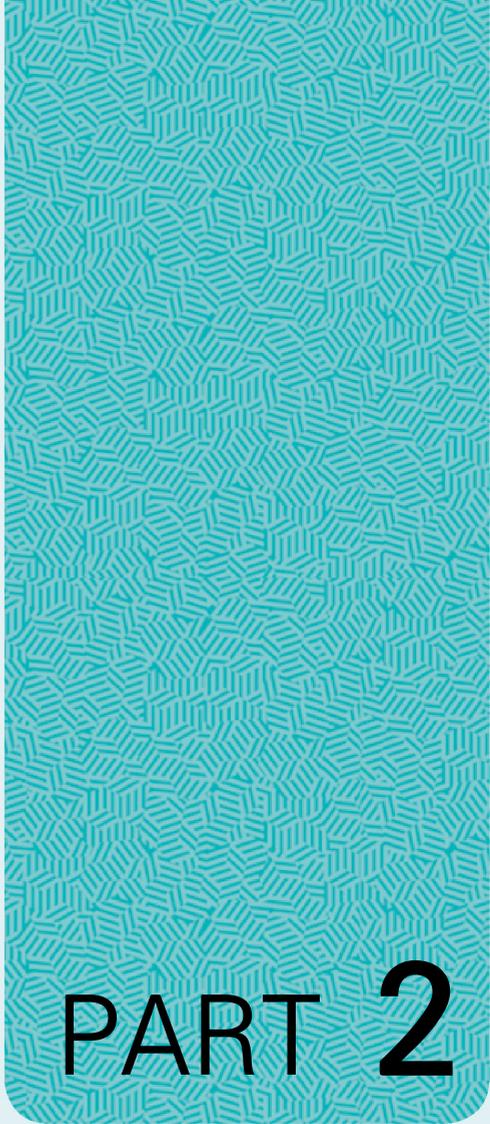
시행일	국가명
2020. 1. 1	일본
2020. 4. 1	호주, 캐나다, 칠레, 조지아, 인도, 노르웨이, 스페인 국제사무국(IB)
2020. 9. 1	이스라엘,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
2020. 10. 1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이탈리아,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

□ 적용 시기

시행일 이후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간이면 가능

※ 시행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시행일 이전 출원의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간에 시행일이 해당하는 경우 가능



PART 2

상담사례

CHAPTER

I

산업재산권 제도

제1장 특허·실용신안	26
제2장 디자인	54
제3장 상표	70

www.kipo.go.kr

목차

제1장 특허·실용신안

1.1. 특허의 요건	26
1.1.1.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어떤 것인가요?	26
1.1.2.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27
1.1.3. 실용신안이란 무엇입니까?	28
1.1.4.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8
1.1.5.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29
1.1.6.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발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9
1.1.7. 인간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도 청구범위에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요?	30
1.1.8. 본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진보성 판단 시 그 비교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됩니까?	30
1.1.9.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고,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구 또는 장치도 함께 개발한 경우 양자를 반드시 각각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31
1.1.10. 자연 상태의 사물에서 특정한 성분을 추출, 분리, 정제하여 순수한 형태의 천연물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천연물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
1.1.11. 미생물 특허에 관하여 어떤 자료와 서류가 필요합니까?	32
1.1.12. 방법특허와 용도특허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32
1.1.13. 음식(식품)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가요?	33
1.1.14.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33
1.1.15. 영업방법(BM)특허란 무엇입니까?	34
1.1.16. 영업방법(BM)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5
1.1.17. 회사에서 최근 온라인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이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5
1.1.18. 웹사이트 콘텐츠만으로도 특허 받을 수 있습니까?	35
1.1.19. 회사에서 특정사업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표준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매뉴얼과 차별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여 제작하는 만큼 특허를 받고 싶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36
1.1.20.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국내에 출원하고 외국에도 출원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로 출원할 수 있습니까?	36

1.1.21.	특허출원 된 발명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37
1.1.22.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37
1.1.23.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구조 및 원리가 같은 기계 장비에 대한 특허등록이 가능한가요?	37
1.1.24.	어떤 제품을 개발한 후 특허출원을 위하여 선행기술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제품에 관한 내용이 이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반포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요?	38
1.1.25.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38
1.1.26.	자동차 부품회사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생산중인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는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특허출원 할 경우에 누구 명의로 하여야 하며 권리의 귀속 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38
1.1.27.	어떤 새로운 3인이 공동 참여하여 그 중 1인이 공동참여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무단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39
1.1.28.	공유특허권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화를 하는 것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 없이 실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9
1.1.29.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40
1.1.30.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무엇입니까?	40
1.2.	변경·분할출원	41
1.2.1.	분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41
1.2.2.	분할출원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으면 불인정되나요?	41
1.2.3.	특허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41
1.2.4.	변경출원이란 무엇입니까?	42
1.2.5.	변경출원이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42
1.2.6.	원출원에 공지에외적용 및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변경출원 시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나요?	43
1.2.7.	변경출원의 심사청구기간 및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3
1.2.8.	변경출원이 되면 원출원은 어떻게 되나요?	44
1.3.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	44
1.3.1.	특허청구범위 유예란 무엇입니까?	44
1.4.	공지에외적용	44
1.4.1.	공지에외적용이란 무엇인가요?	44
1.4.2.	공지에외주장보완제도란 무엇인가요?	45
1.4.3.	논문발표 후 특허출원하면서 실수로 공지에외적용을 기재하지 않고 출원하고 나서 현재 논문발표 후 2개월이 조금 더 지났고, 출원한지도 20일 이내입니다. 이럴 때 특허출원서의 서지사항보정을 하여 공지에외주장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45
1.4.4.	논문으로 이미 발표된 발명도 출원이 가능한가요?	46
1.4.5.	특허출원 전에 발명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경우, 공지에외적용을 받기 위한 공개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46

1.4.6.	공지에외적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공개자, 출원인 모두 동일해야 합니까? 만약 발명자와 공개자,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46
1.4.7.	특허출원 전에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공개행위가 다수 발생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공지에외적용을 주장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각각에 대하여 공지에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47
1.4.8.	특허출원 전에 간행물에 의해 공개되고 그 후 12개월 이내에 공지에외적용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공개일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타인이 동일내용으로 출원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47
1.5.	선출원주의	48
1.5.1.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같이 출원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48
1.5.2.	우리 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하여 최초로 출원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최초 출원자보다 먼저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48
1.5.3.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0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후출원이 먼저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48
1.5.4.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발명이 제3자에 의하여 실용신안으로 같은 날에 출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49
1.5.5.	확대된 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49
1.6.	우선권주장	50
1.6.1.	우선권제도란 무엇인가요?	50
1.6.2.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51
1.6.3.	선출원이 등록되거나 공고된 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여 외국에 출원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51
1.6.4.	제1국 출원과 우선권주장출원이 서로 다른 권리인 경우에도 우선권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51
1.6.5.	조약우선권에 대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 시 출원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51
1.6.6.	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있어서 제1국에 정규출원을 하고 그 후 우선권주장 출원 전에 제1국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52
1.6.7.	대만에서 출원한 특허를 우선권 주장하여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출원이 가능하나요?	52
1.6.8.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제1국 출원과 우선권주장 출원의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데 동일성에 대한 양자의 비교대상은 무엇입니까?	52
1.6.9.	특허출원(1)과 특허출원(2)를 별도로 출원하여 특허출원(1)과 특허출원(2)을 동시에 국내우선권 주장하여 특허출원(3)으로 출원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 이 경우 출원(3)의 출원일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항의 내용에 따라 특허출원(1), (2), (3)의 출원일로 되는 건가요?	52
1.6.10.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하 간주되는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대해 1년 3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53
1.6.11.	A를 실용신안으로 이미 출원했는데, 이후 A+B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3
1.6.12.	특허청구범위유예출원건도 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있나요?	53
1.7.	임시명세서	53
1.7.1.	논문이나 기술노트 그대로 출원할 수 있나요?	53

제2장 디자인

2.1. 디자인의 정의 및 의의	54
2.1.1.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54
2.1.2. 디자인과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54
2.1.3. 관련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55
2.1.4.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55
2.1.5.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란 무엇입니까?	56
2.1.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란 무엇입니까?	56
2.1.7. 부분디자인이란 무엇입니까?	57
2.1.8.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7
2.1.9.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먼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58
2.1.10. 글자체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58
2.2. 디자인등록의 요건	59
2.2.1.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59
2.2.2. 화상디자인을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60
2.2.3.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61
2.2.4.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61
2.2.5.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	63
2.2.6. 한글 글자체 디자인 및 영문자 글자체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64
2.2.7.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어 있는 물품의 형태와 동일한 것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64
2.3.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64
2.3.1.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64
2.3.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물품과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대상물품을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65
2.3.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일로부터 심사를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65
2.4. 분할출원	66
2.4.1.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66
2.4.2. 분할출원에 대하여는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는지요?	66
2.5. 선출원주의	66
2.5.1.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66
2.5.2. 출원하였다가 거절·포기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지위에서 배제 되나요?	67
2.5.3. 확대된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67

2.6	우선권주장	68
2.6.1.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란 무엇입니까?	68
2.6.2.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68
2.6.3.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69
2.7.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69
2.7.1.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무엇입니까?	69

제3장 상표

3.1.	상표의 개념	70
3.1.1.	상표란 무엇이며,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70
3.1.2.	업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70
3.1.3.	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71
3.1.4.	증명표장이란 무엇입니까?	71
3.1.5.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71
3.1.6.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이란 무엇입니까?	72
3.1.7.	단체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단체표장, 업무표장).	72
3.1.8.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나요?	72
3.1.9.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73
3.1.10.	도메인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73
3.1.11.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73
3.2.	상표의 등록요건	74
3.2.1.	상표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74
3.2.2.	1자의 한글 또는 한자,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로 구성된 표장, 예를 들어 구찌의 'G'자 같이 외자로 된 이니셜(마크)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까?	75
3.2.3.	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76
3.2.4.	지역 명으로 상표출원이 가능한가요?	76
3.2.5.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도 등록할 수 있나요?	76
3.3.	변경·분할출원	77
3.3.1.	변경출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77
3.3.2.	업무표장에서 단체표장으로 변경출원이 가능한가요?	77
3.3.3.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77

3.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78
3.4.1. 상표권 갱신등록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8
3.5.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79
3.5.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79
3.5.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79
3.6. 선출원주의	79
3.6.1.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79
3.7. 우선권주장	80
3.7.1. 상표등록출원 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80
3.7.2. 우선권주장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80
3.8. 병행수입	81
3.8.1.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81

제1장 특허·실용신안

1.1 특허의 요건

1.1.1.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어떤 것인가요?

-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자연법칙이라 함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등은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數理)상의 법칙이나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용한 심리법칙, 경기방법, 문자배열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기술적 사상이라 함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 이상, 관념(Idea)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착상된 일련의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의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치고 그 구체적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주 막연한 것이거나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 해결 수단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등은 기술적 사상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발명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 창작이라 함은 발명자의 독창적인 사고(思考)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견이나 모방과는 다릅니다. 즉, 스스로 만들어 낸 것으로서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자명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 발명의 고도함이라 함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발명의 고도함을 요구하지 아니함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발명의 성립을 위한 3가지 요건은 i)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ii)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며, iii) 창작의 정도가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1.1.2.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최면술, 과세방법, 영구기관 무한동력에 관한 발명 등).
- 산업상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 「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업 및 농업 및 임업 및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함
 - 「보험업 및 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됨
 - 산업성이 없는 발명 :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당해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등록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 :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 「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음
 - 공지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음

1.1.3.

실용신안이란 무엇입니까?

- 실용신안이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말하며, 실용신안법 규정에 의한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방법에 관한 고안이나 물품이 아닌 물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의 대상물품은 특허에 비하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1.1.4.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특허법 제2조),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로 되어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2조).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실용신안법 제3조, 제11조, 제15조, 제20조, 제28조, 제30조, 제 30조의 3, 제33조, 제 41조, 제44조 특허법의 준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입법취지가 같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다시 말해서 발명(Invention)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의 그것은 고안(Utility Model),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는 발명과 같지만 고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발명과 다릅니다. 특허는 물건(물품, 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이것은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이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타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모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제품의 수명 및 시장여건 등 제반 경제적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으로 할 것인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출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며,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에 따라 2017년 3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출원일로부터 3년(2017. 2. 28. 이전 출원 건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3년이라는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 실용신안법 제12조).

1.1.5.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목적, 구성, 효과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구체화 하는 수단 내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참고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우측 상단 「고객지원」 → 참고자료 → 작성사례” 메뉴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시거나,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무료변리지원 : 대한변리사회(02-3486-3486),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 참고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출원한 이후라도 출원된 발명 아이디어를 출원공개 되기 전에 타인이 알게 되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 및 실시하는 경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불측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출원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출원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6.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발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거나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등 미완성 발명이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방법·진단방법·치료방법 또는 개인적, 실험적,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업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발명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특허출원 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강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특허법 제41조). 이 경우에는 정부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연법칙 자체(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으로 열역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 추상적인 아이디어(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수단이 결여된 발명)
 - 문학, 연극, 음악, 예술적 창작 등(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방법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Data Base
 -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 등 영업방법
 -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거나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미완성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지폐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

1.1.7.

인간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도 청구범위에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시키는 방법 등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치료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항에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 250판결 참조).

1.1.8.

본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진보성 판단 시 그 비교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됩니까?

- 특허요건 중 진보성 판단은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대상으로 대비 판단하며, 양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수단이 상이하거나, 그로 인하여 선행기술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본원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9.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고,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구 또는 장치도 함께 개발한 경우 양자를 반드시 각각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물건을 개발한 경우, 물건 자체에 대한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도 별개의 독립적인 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특허출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5조).
- 1군의 발명으로 하여 1특허출원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된 발명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거나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합니다. 1특허출원으로 가능한 경우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다음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 그 물건의 특성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6조).
- 또한 기타의 방식요건으로는 특허출원 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명세서(특허청구범위 포함), 도면 등이 법령에서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1.1.10.

자연 상태의 사물에서 특정한 성분을 추출, 분리, 정제하여 순수한 형태의 천연물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천연물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업의 보호차원에서 물질특허를 불허하였으나, 1987년 7월 법 개정을 통하여 화학물질자체, 의약 등 새로운 물질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는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년 9월부터 물질특허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될 수 있는 아스피린, 요소, 파라치온, 색소 등의 화학물질과 자연물에서 추출, 분리, 정제하여 얻을 수 있는 정제소금, 생약, 추출성분 등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천연물은 물질특허로서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인 의약도 물질특허로서 특허의 대상이 되며, 의약은 하나의 성질로 된 단일의약과 2이상의 물질 또는 의약을 혼합하여 만든 조성물로서의 혼합의약을 포함합니다.

1.1.11.

미생물 특허에 관하여 어떤 자료와 서류가 필요합니까?

- 특허에서 미생물이라 함은 유전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효모, 조류, 동물세포, 식물세포, 수정란, 종자 등 일체의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을 의미합니다(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참고).
-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에만 출원하려면 국내기탁기관에만 기탁하면 충분하나, 추후 PCT 국제출원이나 외국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WIPO가 승인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합니다.
- 다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세서를 기재함에 있어 미생물을 기탁한 때에는 그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명칭, 수탁번호 및 수탁 연월일을,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 미생물 기탁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제도 → 미생물 기탁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2.

방법특허와 용도특허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 방법특허 :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나눌 수 있는바, 방법의 발명은 다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생산 방법의 발명(예 : 통신방법, 측정방법, 수리방법, 제어방법의 발명 등)”으로 구분됩니다. 방법특허란 이와 같은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받은 특허를 말합니다.
- 용도특허 : 용도특허는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용도발명이란 특정의 물건에 존재하는 특정성질만을 이용하여 성립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용도발명도 물건의 방법이나 생산방법의 발명과 같이 발명의 일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염료로 쓰이던 DDT에 대해 살충제의 용도가 인정되어 특허가 부여된 경우). 용도발명은 사실상 “발견”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물질의 속성을 단순한 오감에 의한 발견이 아니라 그 물질의 속성의 발견과 용도의 이용에 일정한 창작적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발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1.1.13.

음식(식품)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가요?

-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년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년 7월부터 특허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예컨대 기존의 음식과는 달리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라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처음 개발한 새로운 음식물, 제조방법(예 : 감자탕의 제조방법, 아이스크림, 스파게티 소스의 제조방법, 과일로 과자를 만든 것 등) 등이 특허등록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1.14.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불과한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이 될 수 없어 특허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2014년 7월1일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보호대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발명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도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하며, 컴퓨터프로그램과 실질적 동일하나 표현만 달리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운영체제(OS)등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도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합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었으나 성격이 유사한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9년 4월 22일에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특허청 컴퓨터관련 발명심사기준은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에서 당해 발명의 기술적 사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그 수단 또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플로우차트 등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 등이 특허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SW발명의 청구항 기재형식 사례(2014. 7. 1. 이후)

청구항 기재형식	개정전	개정후
컴퓨터에 △단계, □단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	○
스마트폰에 △기능, □기능을 실행시키는 어플리케이션	×	○
컴퓨터에서 △단계, □단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	○
△기능,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장치	○	○

●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방법 발명	컴퓨터를 사용한 발명이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로 특정된 방법	
물건 발명	물건	- 컴퓨터를 사용한 발명이 복수의 기능요소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요소로 특정된 물건
	매체	-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부터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 -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 컴퓨터관련 발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제도 → 컴퓨터 관련 발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5.

영업방법(BM)특허란 무엇입니까?

●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 등록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 사항을 가진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발명(BM특허)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 기술)을 결합한 형태로서,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모델과 데이터모델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 : 역경매 시스템, 대출 경매방법).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비즈니스 모델 : 피라미드 영업방식, 보험 모집인 관리방법, 사주풀이 방법 등)과 영업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프로세스모델 : 업무처리 흐름), 그리고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데이터모델)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BM특허로 출원된 사례를 보면 중개비즈니스,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상의 교육, 통계조사, 게임 방법 및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 BM특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제도 → 영업방법(BM) 특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6

영업방법(BM)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BM(Business Method)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명세서 작성 시 유의점 : BM특허는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성을 한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기 위한 요건 :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는데, BM발명은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발명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성을 한정하고 있으면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 신규성을 만족하기 위한 요건 : BM발명의 영업방법과 구현기술이 공지된 기술이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BM발명이 진보성을 만족하기 위한 요건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BM발명도 종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하거나 새로운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하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1.1.17.

회사에서 최근 온라인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이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게임이 특허로 출원된다면 이는 BM(Business Method)발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BM 발명의 특허요건은 일반적인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출원서가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발명이 새롭고(신규성) 발전된(진보성) 기술이어야 합니다.
- 특허출원은 특허출원서에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출원하려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가 직접 하거나 대리인(변리사)에게 위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18.

웹사이트 콘텐츠만으로도 특허 받을 수 있습니까?

-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을 말하는데,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므로 그 콘텐츠 자체만으로는 특허대상이 아닙니다.
- 콘텐츠에 대한 특허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내용물에 연관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호구성 관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즉, 콘텐츠 제공을 현실화 시켜 주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수단(DB구축 및 검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19.

회사에서 특정사업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표준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매뉴얼과 차별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여 제작하는 만큼 특허를 받고 싶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일반적으로 BM(Business Method)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므로 업무표준 매뉴얼이 특허로 출원된다면 BM발명에 해당합니다.
- BM발명이 BM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세서 기재요건, 발명의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업무표준 매뉴얼'은 모든 기업들이 갖추고 있는 것이나,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는 일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를 통해 보호받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0.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국내에 출원하고 외국에도 출원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로 출원할 수 있습니까?

-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 출원
 - 국내에 출원된 특허를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PCT 국제출원을 하시면 국내의 출원일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제도는 국제단계와 각 국별 국내단계로 나뉘는데, 일단 국제출원을 한 후 외국 중 출원하고 싶은 나라를 지정하여 국내단계를 진입하면 해당국가 법령에 의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모든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과정을 통하여 관련 선행기술의 조사를 받게 되고, 출원인은 그 국제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다음의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된 후에는 국제공개가 하게 되고 출원인이 원하면 지정국을 선택하여 각 지정국별 등록요건에 따른 국제 예비심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단계가 끝나면 국제출원 시에 지정한 각 지정국별 국내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국내서면 제출기간은 국가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입니다(특허법 제201조).
- 파리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파리조약에 의거하여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타국에 직접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국의 심사단계에서는 우리나라에 출원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1.1.21.

특허출원 된 발명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특허출원 된 발명이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이거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1.1.22.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권이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1.1.23.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구조 및 원리가 같은 기계장비에 대한 특허등록이 가능한가요?

-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비와 기본구조 및 원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지된 발명(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연 실시 발명’은 발명이 비밀이 해제된 상태에서 실시됨으로써 발명이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그 실시를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으며, 단 1회의 실시라도 공연실시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이해됨을 요하는데,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사상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거나 추고(推考)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실체심사나 심판에 의해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1.1.24.

어떤 제품을 개발한 후 특허출원을 위하여 선행기술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제품에 관한 내용이 이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반포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요?

- 특허출원 된 발명이 등록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간행물 기재 발명'의 판단과 관련하여 간행물은 인쇄, 사진, 복사 등 기술적 인쇄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문서 및 도면은 물론 사람이 손으로 쓴 것도 그것이 반포를 목적으로 하는 한 간행물에 해당되며, 기재는 발명의 목적 및 효과는 기재되지 않아도 되나 기술의 구성요소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 또한 그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거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된 발명이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1.1.25.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 특허법 제33조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발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협력의 내용이 '단순한 협력'인가 '실질적인 협력'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출원·심판·소송 등의 과정에서 판단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착상의 제공자·단순보조자·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스로 발명을 완성하기 쉽지 않아 제3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소유관계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1.26.

자동차 부품회사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생산중인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는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특허출원 할 경우에 누구 명의로 하여야 하며 권리의 귀속 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발명진흥법 제10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개념 및 성립요건, 권리의 귀속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제19조), 직무발명의 출원 유보시의 보상(제16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서는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기업체의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1.1.27.

어떤 새로운 3인이 공동 참여하여 그 중 1인이 공동참여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무단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특허법 제33조 제2항)로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특허법 제44조)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44조 위반은 특허거절이유(특허법 제62조 제1호), 특허무효이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1.1.28.

공유특허권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화를 하는 것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 없이 실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특허법은 특허권의 공유자 자신의 실시에 대하여, 각 공유자로 하여금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의 지분과 관계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 제3항).
-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 법인은 자연인인 공유자와는 서로 다른 주체이고 그러한 법인의 실시행위에는 다른 공유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제3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러한 법인의 실시는 공유자 중 1인의 실시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그 공유자와 법인의 관계, 특허발명의 실시해당 공유자가 관여하는 정도와 그에 따른 이익의 귀속, 해당 제품의 실시해당 관련업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안별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1.29.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 받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경우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등록거절의 이유가 되며 특허등록 된 경우에도 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출원이 있는 때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등록공고 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거절 결정 이전에 출원하는 경우 포함)을 하여야 하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하여야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4조, 제35조). 다만,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무권리 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특허요건 등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한 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실제 출원일을 기준하여 특허요건, 선후원 관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또한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경우라면 정당한 권리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심결을 받은 후 출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법 이외에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무권리자가 가진 특허권에 대한 이전을 청구하여 권리이전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의2).

1.1.30.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무엇입니까?

- 실용신안 등록요건은 특허법에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특허의 대상인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가 같습니다. 실용신안의 등록요건도 특허와 동일하게 산업상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실용신안법상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 시를 기준으로 기술진보 속도의 범위에 들어 있으면 족합니다.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발명, 물질발명”은 실용신안 고안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1.2 변경·분할출원

1.2.1.

분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이 출원하는 것입니다(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분할출원이 행해지더라도 원출원은 계속 존속합니다. 또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되고 있는 2이상의 발명 중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은 당연히 독립적인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을 분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1.2.2.

분할출원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으면 불인정되나요?

- 2006년 10월 1일 이전에는 분할출원, 이중출원이 부적법한 경우 불인정 예고절차를 통해 분할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불인정 처리한 후 추후 보정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되는 경우 다시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1일 이후에는 이중출원 제도를 폐지하고 변경출원 제도를 도입 하였고 변경출원 및 분할출원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은 별도의 불인정, 인정 절차가 없습니다.

1.2.3.

특허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특허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인 특허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 2009년 7월 1일 전에 제출된 출원의 경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이 가능하고, 2009년 7월 1일 이후의 출원부터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부터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 분할출원 가능합니다. 특허결정이란 등록결정을 말하는 것이며,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의한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함, 재심심결 포함)의 경우 그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단, 설정등록 전까지)를 말합니다(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 준용).
- 분할출원 시 원출원에서 분할할 내용을 삭제하는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을 하지 않으면 1발명 2출원으로 되어 협의요구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1.2.4.

변경출원이란 무엇입니까?

- 변경출원이란 출원인이 선출원주의에 의해 출원을 서두르거나 특허, 실용신안 제도에 대한 오해, 보호 대상물에 따른 권리 판단의 곤란 등으로 출원해야 할 권리(특허, 실용신안)를 잘못 선택한 경우 출원 이후에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출원권리를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원출원이 1999. 6. 30. 이전 출원, 2006. 10. 1. 이후 출원에 적용).

1.2.5.

변경출원이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 변경출원이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 형식적 요건
 -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것 : 변경출원이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의 변경 시에 변경 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원출원”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 변경출원 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변경출원서를 제출할 것 :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실용신안등록 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으로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후 30일 이내(특허법 제15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132조의17 또는 실용신안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입니다.
 - 원출원의 출원인과 변경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할 것 : 특허법 제53조 제1항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중략)…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원출원의 출원인과 변경출원의 출원인이 변경출원 시에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원출원을 표시할 것 : 특허법 제5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출원서에 원출원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그 변경출원은 적법한

변경출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변경출원 후 변경출원서의 원출원의 표시를 보정하여 원출원을 변경하는 보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원출원의 표시가 오기인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 보정은 인정됩니다.

● 실체적 요건

- 특허법 제53조 제1항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변경출원이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한 변경출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경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경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라도 원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변경출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1.2.6.

원출원에 공지의외적용 및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변경출원 시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나요?

- 원출원에 공지의외적용 신청 및 우선권주장이 수반된 경우 변경출원 시에도 동일하게 공지의외적용 신청과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합니다(원출원시 공지의외적용이나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출원 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출원은 인정되지 않음).
-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주장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운 출원일(변경출원일)부터 규정된 날까지(공지의외적용출원의 경우는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특허법 제30조 제2항) 이내, 우선권 주장출원의 경우는 변경출원일로부터 3월(특허법 제53조 제6항)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들 증명서의 내용이 원출원에 대하여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1.2.7.

변경출원의 심사청구기간 및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다만, 특허의 원출원일이 2017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 5년)입니다. 변경출원이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변경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되므로 특허에서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 했다면 실용신안의 심사청구 기간은 원출원일(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실용신안 출원 후 특허로 변경출원한 경우라면 원출원일(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다만, 특허의 원출원일이 2017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원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변경출원한 경우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

- 특허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변경출원이 인정되면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되므로 특허에서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된 경우에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원출원일(특허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만일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출원 된 경우라면 특허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원출원일(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1.2.8.

변경출원이 되면 원출원은 어떻게 되나요?

- 특허에서 실용신안 출원으로, 실용신안에서 특허 출원으로 변경출원 된 경우 원출원인 특허,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변경출원 된 시점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

1.3.1.

특허청구범위 유예란 무엇입니까?

-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란 특허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2007년 7월 1일 출원 건부터는 청구범위 제출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의2). 출원 시 청구범위가 없는 경우에도 출원이 가능하며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심사청구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됩니다. 청구범위 제출기간 내 심사청구 할 경우 심사청구 시 청구범위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범위 미제출 상태에서 심사청구 시 심사청구서는 반려됩니다.

1.4. 공지에외적용

1.4.1.

공지에외적용이란 무엇인가요?

- 발명에 대한 신규성 판단은 당해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행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 그러나 출원 전 공지행위를 한 자와 출원인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그 출원전의 공지행위가 특허 제도의 다른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지 이후에 출원된 일정범위의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신규성 상실에 대한 사후적 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면, 신규성 상실에 해당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고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 제2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출원 시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공지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 공지에 대하여 공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4.2.

공지예외주장보완제도란 무엇인가요?

- 이미 공지된 발명은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대상임을 주장하면서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해야 하고, 출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한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출원한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부터 출원 이후에도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공지예외주장보완 기간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완]’를 통해 공지예외 주장 보완을 하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제출구분 : 공지예외적용 보완 증명서류]’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특허법 제30조 제3항)

※ PCT 국내단계진입(203조서면)건은 국제출원일이 2015년 7월 29일 이후인 건부터 적용

※ 파리조약 우선권주장 출원건은 후출원일이 2015년 7월 29일 이후인 건부터 적용

1.4.3.

논문발표 후 특허출원하면서 실수로 공지예외적용을 기재하지 않고 출원하고 나서 현재 논문발표 후 2개월이 조금 더 지났고, 출원한지도 20일 이내입니다. 이럴 때 특허출원서의 서지사항보정을 하여 공지예외주장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하면 특허 등록 받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15년 7월 29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실용신안도 동일) 출원 이후에도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완]’를 통해 공지예외 주장 보완을 하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제출구분 : 공지의외적용 보완 증명서류]'에 증명서류를 제출하 시면 됩니다.

1.4.4.

논문으로 이미 발표된 발명도 출원이 가능한가요?

- 공지의외적용 대상 발명임을 주장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의외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 시 공지의외주장을 누락한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출원한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부터 출원 이후에도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는 이를 보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지의외주장 보완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공지의외주장보완 기간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완]'를 통해 공지의외 주장 보완을 하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제출구분 : 공지의외적용 보완 증명서류]'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4.5.

특허출원 전에 발명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경우, 공지의외적용을 받기 위한 공개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 특허출원 전에 발명내용을 학위논문으로 발표한 경우에 그 논문심사 전후로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최종 논문심사를 거쳐서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에 입고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시점을 공지의외적용을 받기 위한 공지일로 보고 있습니다(1996. 6. 14. 95후19 참조).

1.4.6.

공지의외적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공개자, 출원인 모두 동일해야 합니까? 만약 발명자와 공개자,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공지의외주장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공개행위는 그 발명의 공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공개행위 뿐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를 의뢰하여 제3자가 공개하는 행위나 제3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아 인용하는 공개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한편 발명자, 공개자 또는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공개자 중 1인이더라도 발명자 또는 출원인과 동일 하면 이들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공지의외적용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일인이 없는 경우에는 i) 공개자가 발명의 공개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를 의뢰하여 공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i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을 인용하는 공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4.7.

특허출원 전에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공개행위가 다수 발생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공지에외적용을 주장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각각에 대하여 공지에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 공개행위가 출원 전 다수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당해 발명을 시차를 두고 수차례 간행물에 발표할 때에는 각각에 대하여 공지에외적용을 주장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각각에 대하여 공지에외적용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간행물에 의해 최초로 공개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다수에 걸친 공개일 경우에는 2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개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의 예로는 2일이상 소요되는 시험, 시험과 시험 당일 배포된 설명서, 간행물의 초판과 중판, 원고집과 그 원고의 학회(구두)발표, 학회발표와 그 강연집, 학회의 순회강연, 박람회 출품과 그 출품물에 대한 카탈로그 등이 있습니다.

1.4.8.

특허출원 전에 간행물에 의해 공개되고 그 후 12개월 이내에 공지에외적용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공개일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타인이 동일내용으로 출원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 공지에외적용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지행위를 한 경우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하여 그 신규성이 상실된 것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주는 것일 뿐이지, 그 출원일을 신규성이 상실된 시점으로 소급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인의 특허출원은 출원 전 공지로, 본인의 특허출원은 선출원(타특허출원)에 의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5. 선출원주의

1.5.1.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같이 출원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나 고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6조 제1항). 이것이 '선출원주의'입니다.
- 같은 날에 2이상의 동일한 발명이 출원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6조 제2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34조).

1.5.2.

우리 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하여 최초로 출원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최초 출원자보다 먼저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로는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이 동일한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락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비하여,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선후에 관계없이 진정한 최선의 발명자에게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3.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후출원이 먼저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6조 제2항).
- 심사절차상으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

1.5.4.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발명이 제3자에 의하여 실용신안으로 같은 날에 출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니까?

- 특허요건 중 선출원의 문제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특허출원에 있어 선·후원이 문제되는 것은 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의 처리문제로서 발명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경합관계에 있는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끼리 대비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질문의 경우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청구범위를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상호간 또는 특허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5.5.

확대된 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란 당해 특허출원(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가 선출원인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출원 공개되거나, 등록공고 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일부 동일한 경우 후출원을 거절시킬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말합니다(특허법 제29조 제3항).
-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출원공개제도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채택된 제도인데 특허법은 이를 특허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요건
 -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일이 타출원의 후출원일 것
 - 당해 특허출원 후 타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될 것
 - 당해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타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을 것
 - 타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주어지는 시기는 국내에서의 출원공개 또는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를 한 때이며, 그 범위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 등의 원문과 그 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에 한하여 인정됨
 - 타출원이 분할출원·변경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분할출원일, 변경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1.6. 우선권주장

1.6.1.

우선권제도란 무엇인가요?

-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특허법 제54조)
 -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조약인 파리협약에서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는 파리조약 동맹국 중 어느 1국 또는 여러 국가에 출원한 내용에 대하여 그것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나라에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나라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상표, 디자인은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 취지 및 출원국가명 등을 기재하면 그 최초의 출원국에 출원한 날로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내우선권제도(특허법 제55조)
 -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선출원) 등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선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개량 발명 등을 하여 그 개량발명 등과 선출원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켜 특허출원(후출원)을 하여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되고 있는 발명 중 ‘선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의 판단 등 일정 법규 적용에 있어서 선출원시까지 출원일의 소급적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출원(후출원)이 등록된 경우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후출원의 출원일부터입니다.
 - ※ 디자인, 상표의 경우 국내우선권 제도가 없음
- 우선권 주장 출원 방법
 -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 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이 기재된 출원서를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상표, 디자인은 6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권주장의 취지기재는 출원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 우선권 주장 요건
 - 선출원의 출원인(승계인포함)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해야 함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동일성이 있어야 함
 - 후출원시에 선출원이 계속되어야 함(국내우선권주장 시)
 -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1.6.2.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
 - 선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 선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 선출원이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1.6.3.

선출원이 등록되거나 공고된 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여 외국에 출원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사실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출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 또한 외국 출원일 전에 우리나라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여도 해당국에서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출원일이 해당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받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선출원이 공고되었다고 하여 거절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1.6.4.

제1국 출원과 우선권주장출원이 서로 다른 권리인 경우에도 우선권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 제1국 출원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우선권주장출원이 서로 다른 권리인 경우에도 우선권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파리협약 제4조 E1,2). 즉,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고, 그 반대의 출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사이에 있어도 동일합니다.

1.6.5.

조약우선권에 대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 시 출원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 조약우선권주장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출원인의 동일성, 출원의 정규성, 출원 내용의 동일성, 우선권주장기간의 준수, 우선권주장 취지의 기재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4조).

1.6.6.

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있어서 제1국에 정규출원을 하고 그 후 우선권주장 출원 전에 제1국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에서의 출원은 그 나라에서 정규의 출원으로써 인정되어야 하며, 정규의 출원으로 인정된 후에는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파리조약 제4조A(3) 참조).

1.6.7.

대만에서 출원한 특허를 우선권 주장하여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출원이 가능 하나요?

-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파리협약 가입국 또는 WTO/TRIPs의 가입국 국민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도 조약가입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만의 WTO 공식가입일인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대만에서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6.8.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제1국 출원과 우선권주장 출원의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데 동일성에 대한 양자의 비교대상은 무엇입니까?

-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1국 출원의 발명과 우선권주장출원의 발명이 동일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발명의 동일성'이라 함은 양자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제2국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부터 파악되는 발명이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1.6.9.

특허출원(1)과 특허출원(2)를 별도로 출원하여 특허출원(1)과 특허출원(2)을 동시에 국내우선권 주장하여 특허출원(3)으로 출원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 이 경우 출원(3)의 출원일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항의 내용에 따라 특허출원(1), (2), (3)의 출원일로 되는 건가요?

- 특허출원(1)과 특허출원(2)을 별도로 특허출원하고 특허출원(1), (2)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하여 우선권주장출원(3)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복합우선권 주장이라고 합니다.
- 이 경우 우선권주장출원(3)의 특허요건 판단 시에 청구항의 내용에 따라 특허출원(1), 특허출원(2)와 동일한 내용은 특허출원(1), 특허출원(2)의 출원일로 각각 소급하여 판단하고, 특허출원(1), (2)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출원 내용은 특허출원(3)의 출원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복합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특허출원(3)은 최선일인 특허출원(1)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만 합니다.

1.6.10.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하 간주되는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대해 1년 3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서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을 경과할 때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하된 출원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하된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인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6.11.

A를 실용신안으로 이미 출원했는데, 이후 A+B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를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출원 계속 중인 경우, A+B를 출원할 때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하시면 됩니다.
- A의 권리범위가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새로운 권리범위 B를 추가로 권리확보하고 싶은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으로 신규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범위는 B부분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1.6.12.

특허청구범위유예출원건도 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있나요?

- 청구범위유예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한 건도 정규출원건으로 인정이 되므로 그것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이 가능합니다.

1.7. 임시명세서

1.7.1.

논문이나 기술노트 그대로 출원할 수 있나요?

- 정해진 서식 또는 기재요건을 따르지 않는 임시명세서 제출이 허용되어 논문이나 기술서 원본 그대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2020.3.30. 개정)

임시명세는 기재요령이 없고 논문이나, 기술서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되, 특허출원서의 기타항목의 임시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에 체크하여 제출한 후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내 '임시명세서등 보정'으로 명세서 항목에 맞춰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출원서는 취하간주 됩니다.

제2장 디자인

2.1. 디자인의 정의 및 의의

2.1.1.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 디자인은 보통 ‘계획하다, 그리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designare’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바늘부터 우주선까지 인간이 만들어 내는 모든 인공물을 개념화하여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Design의 분야는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 등을 설계하는 환경디자인, 생활용품 등 제품디자인, 그 밖에 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 공예디자인 등을 포괄하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제품디자인 등의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또는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과 같은 물품의 외관을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디자인은 회사의 생산품과 이미지를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디자인은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자산입니다.
 -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동종 경쟁업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및 제113조).

2.1.2.

디자인과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 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에 대한 권리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소리, 냄새'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제품 자체의 형태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권리입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 제1호).

2.1.3.

관련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된 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유사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관련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기본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에 변경을 가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물론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도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 출원인은 출원 시에 단독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구분을 명시해야 하며, 출원 이후에는 자진 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라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또는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2.1.4.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 디자인은 모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도용에 의해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설정등록이 된 이후에 공중에 공개됩니다.
- 다만, 출원을 한 날부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원인이 정하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3항).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 비밀디자인과 관련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제도 → 비밀디자인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5.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란 무엇입니까?

- 디자인보호법은 출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특정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
- 그러나 거래사회의 관습상 한 벌로 판매·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한 벌 물품 디자인”이라고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2조).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대상품목이 한정열거에서 예시열거로 완화(2015년 1월 1일 이후) 되면서 물품에 관계없이 창작 의도에 따라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1.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란 무엇입니까?

- 디자인보호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 의한 물품류가 동일한 것에 한합니다. 즉, 물품의 분류가 동일한 여러 개의 물품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분류는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7.

부분디자인이란 무엇입니까?

-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부분디자인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전체디자인으로서는 신규성 또는 창작성 결여로 인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대하여 독창적인 일부 부분만이라도 디자인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기재된 모든 물품입니다. 즉,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체물로서, 그 물품 자체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안경테의 귀걸이 부분 등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예입니다.

2.1.8.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종전에는 물품 전체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200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구성하여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 부분디자인 출원방법
 - 출원서 :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다음 줄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부분디자인출원이라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예 :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
 - 도면 :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선으로 도시하고, 그 외 부분은 파선으로 도시합니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물품의 부분에 해당하는 명칭이 아니라 물품의 전체형태에 해당하는 명칭을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 : "커피 잔의 손잡이"(X), "커피 잔"(O)
 - 디자인의 설명 :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2.1.9.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먼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 2014년 7월 1일 이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출원인이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 모두를 출원하려고 할 때 출원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전체디자인이 등록된 이후 또는 공개된 이후에 부분디자인을 출원하게 되면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절되므로 전체 디자인 출원 후 그 전체디자인의 공개 전까지 부분디자인이 출원되어야 합니다.
- 디자인의 일부 모방을 방지하고 권리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동일물품에 대한 전체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을 모두 등록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1.10.

글자체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별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을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란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합니다.
- 다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글자체 그 자체를 물품으로 의제(擬制)하는 방식으로 글자체 디자인도 일반 물품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 2019년 1월 1일부터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출원인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글자체 도면(특수기호)의 지정글자를 119자에서 16자 축소하였고,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지정글자 추가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2020년 9월 1일부터는 글자체디자인의 출원 도면(지정글자, 보기문자, 대표글자 도면)과 참고도면을 글자체 개발 시 필수 제작하는 글꼴(폰트)파일(.ttf) 그 자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2. 디자인등록의 요건

2.2.1.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① 신규성 ② 창작성 ③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④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6조).
-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 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① 신규성 ② 확대된 선출원주의 ③ 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① 성립요건 ② 공업상 이용가능성 ③ 용이 창작성 여부에 관한 일부사항 ④ 부등록사유 해당 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2조).
-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국제관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①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 ② 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2.2.2.

화상디자인을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을 것
 - 디자인심사기준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의해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화상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디자인심사기준 제7부 제1장 1. 1).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정보화기기와 같은 완성품이나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은 부품은 화상디자인이 표현된 상태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과 분리된 상태의 화상디자인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형태적 또는 기능적 일체성과의 관계
 - 화상디자인도 1디자인 1등록출원이 원칙이며 1디자인이란 1물품에 1형태를 말합니다.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며, 1형태란 화상의 움직임에 있어 형태적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을 가지고 형태가 변화하는 동적화상디자인을 포함합니다.
 - 1개의 표시부 내에 도시된 것이라면 각각의 구성요소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는지 또는 기능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봅니다.
- 동적 화상디자인이란 화상 내에 도형 등이 이동, 축소, 회전 또는 색채변화 등 조작에 의해 단순한 변화 전·후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나타내는 경우 또는 형태적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을 가지고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 동적 화상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디자인이 변화하는 상태를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일련의 도면을 도시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변화하는 디자인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2.3.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출원 가능한 물품에는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자동차용 자동항법장치(Navigato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복사기, 정수기, MP3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MD 플레이어, 워크맨,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TV, 자동예금인출예입장치(ATM), POS(Point of Sale) 단말기 등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 기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물품과 분리된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디자인보호법규 상 인정되는 물품의 명칭 예시(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 참고)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전자기기용 디스플레이” 등

※ 화상디자인이 표시되는 부품의 명칭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음
- 디자인보호법규 상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명칭 예시
 - “아이콘”, “컴퓨터 아이콘”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등
- 다만, 화상디자인이 동일할지라도 다른 물품에 등록받고자 할 경우 해당 물품별로 출원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디스플레이 패널’ 등과 같이 포괄적인 범위의 부품에 적용된 화상디자인에 대해서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 카메라 등 완성품과 별도로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영상표시기’와 같이 부품으로도 화상디자인출원이 가능합니다.

2.2.4.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본 출원방식은 정보통신기기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를 가지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부분디자인 출원방식을 중심으로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도형 등의 취급을 설명합니다. 출원서 및 도면 작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실선으로 도시한 부분)안에 화상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부분디자인의 출원과 동일합니다.
- 도면의 작성 요령 : 화상디자인이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당해 도형 등이 통전(通電) 등에 의하여 표현되어 있는 상태를 물품의 정면도에 충분히 표현해야 합니다.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은 파선(- - -)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즉 화상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컴퓨터 화면의 일부가 실선으로 도시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기의 전체적인 형상을 파선으로 도시하여 화상디자인의 배경을 나타내고, 그 파선 안에 실선으로 화상디자인을 도시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경계를 1점 쇄선(-·-·-)으로 구분하여 도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할 도면 :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 형태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선순위로 하여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순으로 적습니다. 그 외에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을 [참고도면 1.1], [참고도면 1.2], [참고도면 1.3]… 순으로 식별 항목을 만들어 적되, 그 도면의 명칭은 예를 들어 ‘참고도면 1.1’란의 다음 줄에 사용상태도와 같이 적습니다.
- [디자인의 설명]란 및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 : 화상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에서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특징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심사·심판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 공보에 게재되어 제3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관한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의 설명]란 및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3. 1점 쇄선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 부분과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선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인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실행 아이콘으로서, ○○○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인 도안을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액정 등 표시부 안에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 그 도형 등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도형 등의 위치, 크기, 범위의 확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선(破線) 등으로 1개 이상의 도면에 도시하고, 물품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만 제출하실 경우에는 해당 도면에 이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 :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로서 1개 이상의 도면 혹은 물품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만으로는 표시된 도형 등이 화상디자인인지 또는 인쇄된 도형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비통전(非通電)시의 상태도」나 「인쇄된 도형 등만을 도시한 참고도」 등에 의하여 당해 도형 등이 인쇄된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2.5.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

-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상·모양·색채성, 시각성, 심미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그러나 글자체는 그 자체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의 유체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또 형상·모양·색채 중 모양에는 해당되고 형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에는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즉, 글자체 디자인권이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출판·인쇄 등 분야에서의 통상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 이밖에도 글자체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2호).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 한 별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일 것

2.2.6.

한글 글자체 디자인 및 영문자 글자체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 또한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개의 디자인을 첨부하는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한편, 물품류 구분상 글자체는 모두 제18류에 속하므로 한글 글자체 디자인과 영문자 글자체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2.2.7.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어 있는 물품의 형태와 동일한 것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디자인보호법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출원이 설정등록이 되면 이를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에 도시되어 있는 해당 실용신안을 구성하는 물품의 형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설령 타인이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려면 해당 실용신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5조). 또한, 등록요건을 결여한 디자인으로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에 의한 등록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2.3.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2.3.1.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 디자인출원이 등록을 받으려면 방식적 등록요건과 아울러 실체적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이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실체적 등록요건 가운데 일부 즉, 타인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등을 심사하지 않는 것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2항).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방식 요건과 디자인의 성립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용이창작성 여부에 관한 일부사항, 부등록사유 해당 여부 등)만 심사하여 신속하게 등록시키는 제도로 출원일로부터 1차 심사결과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 평균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이 되면 보통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등록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건 심사만을 거쳐 등록되기 때문에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제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자인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실권리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에 앞서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절차에 의해 그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심사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
- 즉,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된 날로부터 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결정으로 그 등록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73조).

2.3.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물품과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대상물품을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을 대상으로 거래사회의 실정 및 수요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물품은 제2류, 제5류, 제19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물품이면 됩니다.

2.3.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일로부터 심사를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출원에 대하여는 일부 기본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1차 심사결과 등록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는 평균 한달 정도가 소요(2020.1.1. 개정)됩니다. 반면에 심사출원에 대하여는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2.4. 분할출원

2.4.1.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 분할출원이란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함으로써 1디자인 1출원 원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디자인을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새로이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1항).
- 이러한 분할출원제도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을 위반한 출원의 거절이유를 해소하거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때 대응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분할한 출원에 대하여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 50조 제2항). 따라서 신규성, 창작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부등록사유, 선출원주의 등의 등록 요건 판단 시에 원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출원은 별개의 독립된 출원이기 때문에 원출원에 대한 심사 등 절차상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으며, 전혀 별개의 출원으로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2.4.2.

분할출원에 대하여는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는지요?

- 분할출원 시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별개의 독립된 출원이기 때문에 원출원에 대하여 진행된 심사 등 절차상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으나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2항).
- 따라서 신규성, 창작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부등록 사유, 선출원주의 등의 등록요건 판단 시 원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5. 선출원주의

2.5.1.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창작의 선·후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

-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심사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55조 및 제62조 제2항).
-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

2.5.2.

출원하였다가 거절·포기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지위에서 배제 되나요?

-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되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하여 처음부터 그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3항).
- 다만,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일지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동일자 출원으로서 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거절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
- 다만,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일지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동일자 출원으로서 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거절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디자인 출원은 출원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개가 됩니다.(디자인 보호법 제56조)

2.5.3.

확대된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 확대된 선출원주의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2.6. 우선권주장

2.6.1.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란 무엇입니까?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란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 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때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1항).
- 우선권주장 :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 시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이 기재된 출원서를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특허, 실용신안은 12월 이내)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과 우선권주장은 보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출원 시 주장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후 보정에 의한 추가적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우선권주장증명서류 제출 : 디자인등록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우선권주장증명서류)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4항). 다만, 일부 나라의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고 DAS코드를 기재하여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기준 가능국가

중국, 미국, 일본, 국제사무국(IB), 호주, 캐나다, 칠레, 조지아, 인도, 노르웨이, 스페인, 이스라엘, 유럽연합지식재산청 (EUIPO),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이탈리아

2.6.2.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 우선권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2항).
- 이때 파리협약의 어느 동맹국의 디자인이 실용신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에 기인하여 출원된 경우에 그 우선기간은 디자인에 대하여 정하여진 것과 같은 기간으로 합니다[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4조(A-I. 특허·실용신안·산업디자인·상표 발명자증 : 우선권, G. 특허·적용범위) E. 1.]

2.6.3.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4항).

2.7.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2.7.1.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무엇입니까?

-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용이창작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 한편 공지된 디자인을 신규성상실의 예외(신규성 의제)로 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신규성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지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 시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거나 출원 후 일정시기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성을 상실한 날짜, 장소 또는 간행물명,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제3자의 객관성 있는 확인서류 등의 증명서류를 일정시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 이때 입증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입증서류에는 공지된 디자인과 출원된 디자인의 주체가 동일인일 것,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 공지된 일자의 정확성, 공지매체의 객관성 등은 최소한 나타나야 합니다.
-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보정서, 의견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상표

3.1. 상표의 개념

3.1.1.

상표란 무엇이며,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상표(Trade Mark)라 함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닌 것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 이거나 자타상품 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 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3.1.2.

업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예 :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로타리클럽
- 업무표장을 등록받으려면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예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업무표장견본 부착)'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상표법 시행규칙의 별지3호 서식 '상표등록출원서 [권리구분 : 업무표장]'입니다.

3.1.3.

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3.1.4.

증명표장이란 무엇입니까?

-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 상표 vs 증명표장 비교 〉

구 분	상 표	증 명 표 장
기 능	상품·서비스 출처 표시	품질 및 특징을 증명·보증
사용주체	소유자 본인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타인
관 리	관리·통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본인에게 1차적 불이익)	관리·통제 필요성이 높음 (일반 공중의 이익 보호)
사용허락	상표권자의 권리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기준을 사용자가 충족하는 경우 차별 없이 사용을 허락하여야 함

3.1.5.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3.1.6.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이란 무엇입니까?

-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8호).

3.1.7.

단체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단체표장, 업무표장).

- 단체이름을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단체표장과 업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를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단체원들은 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 ※ 예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등
 - 「업무표장(Business Mark)」이란,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으로 비영리업무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소속 단체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간의 업무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 영리와 관계없는 업무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
 - ※ 예 : 대한적십자사, 대한상표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상표출원서를 이용하며 [권리구분]란에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단체표장은 상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1]의 “상품류 구분”상의 류를 지정하면 되고, 업무표장은 상표와는 달리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지정류 없음) 사용하고자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3.1.8.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나요?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기는 하지만,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가공자만으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3.1.9.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 반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3.1.10.

도메인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 도메인 네임도 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상표법상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 없이 그냥 도메인을 상표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 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동 규정들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www.○○.com의 형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 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 심사 시 고려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도메인의 상표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제도 → 상표와 도메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1.11.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 상표등록은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고자 하면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한 별도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3.2. 상표의 등록요건

3.2.1.

상표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가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홀로그램·색채·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할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상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자동차”에 상표 “CAR”, 지정상품 “피복”에 상표 “청바지” 등
 -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예) 지정상품 “청주”에 상표 “정종”, 지정상품 “과자”에 상표 “깡” 등
 -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인삼”에 상표 “금산”, 전상품에 상표 “품질보증”, 지정상품 “두부”에 상표 “콩” 등
 -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시·군·구의 명칭, 뉴욕,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등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윤씨농방,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등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 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보지만 그것이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때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ㄱ, 삼태극 등의 표장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
 - 이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예) http://, www, @, 통신업에 “CYBER”, 자료제공업에 “NEWS” 등

3.2.2.

1자의 한글 또는 한자,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로 구성된 표장, 예를 들어 꾸찌의 'G'자 같이 외자로 된 이니셜(마크)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까?

- 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상표법 제33조에 의하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상표심사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심사기준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제6장(간단하고 흔한 표장)
 -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이하 “본호”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표장에는 간단하면서도 흔한 표장만을 말한다.
 - 문자 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이들 문자를 다른 외국어로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본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것이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숫자상표인 경우에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것(그것을 한글, 한자 또는 외국어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은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도형상표인 경우에는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ㄱ, 삼태극 등의 표장은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입체상표의 경우에는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은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장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한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이외의 부분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이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장이 특별히 도안화 되었거나, 색채와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표장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 동작 전체 또는 홀로그램 전체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3.2.3.

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 상표등록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동일인이 1개의 동일한 상표를 2이상 중복출원하거나 2개의 다른(유사포함) 상표를 1개로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려면 각각 따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38조).
-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3.2.4.

지역 명으로 상표출원이 가능한가요?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군, 구의 지명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리적 명칭 외의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면 그 식별력 있는 부분에 의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3항).

3.2.5.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도 등록할 수 있나요?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다만, 이미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인이 동일인이라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될 수 있습니다.

3.3. 변경·분할출원

3.3.1.

변경출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출원이란,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에 따라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되며, 그 원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44조 제4항).
- 변경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 : 상표등록 변경출원]'으로 표시하여 작성해야 하며,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상단 → 책자/통계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3.2.

업무표장에서 단체표장으로 변경출원이 가능한가요?

- 변경출원은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상호간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표장 ↔ 업무표장 등록출원 상호간에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44조).

3.3.3.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 한 경우에 이를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상표법 제45조).
- 상표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려면 '상표등록출원서 [구분항목 : 상표등록분할출원]'에 필요한 서류(상표등록출원서 서식의 [첨부서류]란 참조)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특허청에 직접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상단 → 책자/통계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함께 원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즉,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 상표출원의 지정상품이 일부 변경되므로 이에 관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보정(보완)서 [구분항목 : 출원서 등 보정]’로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3.4.1.

상표권 갱신등록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절차
 - 상표권의 갱신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 만약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 상의 인적정보가 등록원부 상의 등록권자의 인적사항 기재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건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서’를,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은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특허고객번호 상의 인적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 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정보를 일치하도록 변경(경정)해야 합니다.
- 상표권 갱신등록신청 시 공동 권리자가 있는 경우, 공유자의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19.10.24 시행).
-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수수료
 - 전액납부 시 1상품류 구분마다 310,000원이며 상표법 제72조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132,000원입니다. 2012년 4월 1일 이후 존속기간갱신신청 하는 것부터 1상품류 마다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분할 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9,120원(분할 납부의 경우 1회차에 납부)이 발생합니다.
 -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340,000원이며 상표법 제72조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213,000원입니다. 지방세 9,120원(분할 납부의 경우 1회차에 납부)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3.5.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

3.5.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 시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 출원 후 또는 상표등록 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다류 1출원 제도'에 의해 추가등록대상은 동일 상품류 구분내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류까지 가능하며,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3.5.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등록여부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 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44조 제2항, 제4항).

3.6. 선출원주의

3.6.1.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 선출원주의란, 상표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 동일자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출원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때에는 특허청장이 추첨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을 결정합니다.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과는 달리 추첨에 의해 서라도 하나의 출원인에게 등록을 받게 한 이유는 포기 또는 거절 결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경합된 출원 모두를 거절하면 제3자가 등록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표법 제35조 제2항).

3.7. 우선권주장

3.7.1.

상표등록출원 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 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으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일정 법규(제35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의 조약 당사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원을 하고 동일상표를 우리나라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상표법 제46조 제1항).
-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 시에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7.2.

우선권주장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 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제46조 제4항).
- 상표의 경우 우선권증명서류는 원문과 그 번역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 우선권주장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서류제출서 [구분항목 : 우선권증명서류]'를 통해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만일 우선권주장을 하는 자가 이 기간 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상표법 제46조 제5항).

3.8. 병행수입

3.8.1.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외국의 상표권자가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고 국내의 지점이나,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위탁판매인 등 동일인의 관계를 가진 자에게 상품의 독점수입을 허용하게 하는데, 제3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외국의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배포할 때,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자기의 국내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에 기하여 병행수입업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고 일부의 국가(미국 등)는 이를 침해로 판결한 예도 있고 이에 반하여 다른 나라(독일 등)에서는 침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과거 재정개정경제원)에서는 가격인하로 인한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관세청 고시 제2009-27호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하면서 전용사용권 자가 당해 상표부착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전량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만 제3자의 수입행위를 침해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외국과 국내의 상표권자의 동일성여부, 전용사용권자와 상표권자와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의 사용형태 등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99다42322호, 96도2191호 판결참조).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을 고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이용하거나 관세청에 직접 질의하시면 됩니다.

CHAPTER

II

출원절차

제1장 출원공통업무	87
제2장 특허·실용신안	98
제3장 디자인	106
제4장 상표	110

www.kipo.go.kr

목차

제1장 출원공동업무

1.1. 출원절차	87
1.1.1. 특허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87
1.1.2.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88
1.1.3. 특허출원한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심사진행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90
1.1.4. 출원 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91
1.1.5. 특허에 관한 절차를 변리사인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까?	91
1.1.6. 출원인(발명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92
1.1.7. 미성년자가 직접 출원을 할 수 있나요?	92
1.1.8. 법인격이 있는 조합의 특정지역 지부,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 대전지부와 같은 명의로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93
1.1.9.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형태의 조직으로서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단명으로 특허출원 할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93
1.1.10. 국립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발한 발명을 '국립 **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요?	93
1.1.11. 특허청에 출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 언제 출원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94
1.1.12. 특허청에 서면으로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자화통지서'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94
1.1.13.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내용을 실수로 오기재 한 경우에,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로 오기의 정정이 가능합니까?	94
1.1.14. 출원을 한 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통지서 등은 어떤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지·송달되는지요?	95
1.1.15.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주소란에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95
1.1.16. 출원 관련 서식은 어디서 받아볼 수 있으며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95
1.1.17. 출원서 등의 서류에 도장 대신 사인을 해도 되나요?	96
1.1.18. 포괄위임신청서 서식에 "포괄위임 설명확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96
1.1.19. 출원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96
1.1.20.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신고서 작성 시 변경 전 주소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 변경 전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97
1.1.21. 방식심사는 어떠한 사항을 심사하는지요?	97
1.1.22. 출원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위임장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해야 하나요?	97

제2장 특허·실용신안

2.1. 서지사항 작성방법	98
2.1.1. 출원서(명세서, 요약서)의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98
2.1.2. A를 특허로 이미 출원을 했는데, 이후 A+B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9
2.1.3. 선출원의 출원인이 A이며,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시 후출원의 출원인을 A로 변경하면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나요?	99
2.1.4. 2인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특허출원을 하고자 합니다. 출원인의 명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99
2.1.5.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을 특별히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원서에 이를 표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99
2.1.6.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인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100
2.1.7.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인 중 서류송달 대표자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100
2.1.8. 특정 변리사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인 선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101
2.1.9. 특허법인의 경우 법인자체로서 특허출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101
2.1.10. 특허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출원서에 별도로 해당 내용을 기재할 수 있나요?	101
2.2. 명세서등 작성방법	101
2.2.1. 명세서에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01
2.2.2. 특허(실용신안)출원 시 도면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까?	102
2.2.3. 배경기술 항목은 필수 기재 항목 인가요?	102
2.2.4. 청구항(CLAIMS)이란 무엇인가요?	103
2.2.5. 특허출원 시 청구범위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까?	103
2.2.6. 종속항의 인용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03
2.2.7. 특허출원할 때 외국어로 출원하고 추후 국어로 제출할 수 있나요?	104
2.2.8. 외국어 출원 시 외국어로 작성해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04
2.2.9. 외국어 출원 시 요약서의 흠결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04
2.2.10.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 시 서열목록파일은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나요?	105
2.2.11. 임시 명세서(논문, 연구노트, 기술서 등)를 첨부하여 출원이 가능한가요?	105

제3장 디자인

3.1. 서지사항 작성방법	106
3.1.1. 디자인출원서 작성 시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06
3.1.2. 디자인등록출원 시 참조번호란을 꼭 기재해야 되나요?	106
3.1.3. 출원서 작성 시 창작자란에 법인명을 기재할 수 없나요?	106

3.2. 도면 작성방법	106
3.2.1. 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06
3.2.2. 디자인 도면작성 시에 도면 대신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107
3.2.3. 글자체디자인출원인 경우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107
3.2.4. 부분디자인출원 시 도면의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108
3.2.5. 디자인출원 시 도면을 3D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109
3.2.6. 동적화상 아이콘 디자인의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109
3.2.7. 도면 작성할 때 일부 도면은 3D로 작성하고 일부 도면은 2차원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작성 가능한가요?	109
3.2.8. 한 벌 물품의 디자인출원 시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109

제4장 상표

4.1. 서지사항 작성방법	110
4.1.1.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의 기재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110
4.1.2. 상품분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110
4.1.3. 출원서 작성 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출원인란에 출원인 주소 및 기타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까?	110
4.1.4.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에 상품류는 확인이 되는데 상품 분류표에 해당되는 지정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110
4.1.5.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 상표유형은 어떤 경우 표시합니까?	111
4.1.6.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 상표견본의 개수는 몇 개까지 입력해야 합니까?	111
4.1.7.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 상표설명은 필수 기재 항목입니까?	112
4.1.8. 개인이 단체표장 출원할 수 있나요?	112
4.1.9. 단체표장 출원 시 2이상의 법인이 공동출원 할 수 있나요?	112
4.1.1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13
4.1.11. 개인이 업무표장 출원할 수 있나요?	114
4.1.12.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이 업무표장 등 상표등록출원 할 수 있나요?	114
4.1.13. 증명표장 출원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14
4.1.14. 상표견본을 칼라로 제출 할 경우 상표유형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15
4.1.15. 먼저 출원한 상표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나요?	115
4.1.16.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건을 상표로 변경출원이 가능한가요?	115
4.2. 상표견본 작성방법	115
4.2.1. 상표출원 시 상표견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115
4.2.2. 특허출원한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심사진행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116
4.2.3. 상표견본을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로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까?	116
4.2.4.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는 견본을 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	116
4.2.5. 동작상표출원 시 상표견본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116

제1장 출원공통업무

1.1. 출원절차

1.1.1.

특허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 특허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특허로 홈페이지 우측 최상단 이용안내의 “특허절차”를 통해 미리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
 -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 먼저 자신의 발명보다 먼저 출원·등록된 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기술 확인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은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문의처 : 특허전자도서관 ☎ 042-481-5130, 정보공개 및 기록관 ☎ 042-481-8568
- 출원서 작성 및 제출(특허법 제42조)
 - 출원서(요약서, 명세서, 도면)는 일반인도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하여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 필요서류는 특허청 홈페이지 → 책자/통계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 수수료 납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수수료는 접수번호(납부자번호) 부여일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접납부 : 전국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우편납부 : 우체국 통상환을 이용하여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납부(온라인출원의 경우) :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를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우 : 35208)

- 출원번호통지(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 출원 후 접수방법이 우편이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원번호를 우편으로 통지하며, 접수 방법이 방문인 경우 접수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출원번호를 통지하며, 온라인접수인 경우 접수 후 제출결과조회에서 인터넷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출원공개(특허법 제64조)
 -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원서 방식심사 수리된 이후 본인이 조기출원공개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경과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청구 및 심사
 - 심사관은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 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1개월 소요).
- 등록료 납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제6항)
 -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이후 추납기간은 6개월이며 추가납부기간에 따라 차등납부를 해야 합니다. 1개월 경과하기 전까지는 3% 가산, 1개월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6% 가산, 2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9% 가산, 3개월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2% 가산, 4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5% 가산, 5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8% 가산)에 설정등록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단, 우편납부 시에는 우체국 통상환으로 바꾸어 설정등록료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등기발송 하면 됩니다.
 - ※ 서면출원 절차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우측 상단 「이용안내」 → 유용한 Tip → 특허출원가이드”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2.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오른쪽 상단 ‘특허고객등록’ 코너 접속 후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오른쪽 하단 ‘민원서식’에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은 수수료가 없으며, 한 번 부여 받으면 향후 모든 특허절차수행 할 때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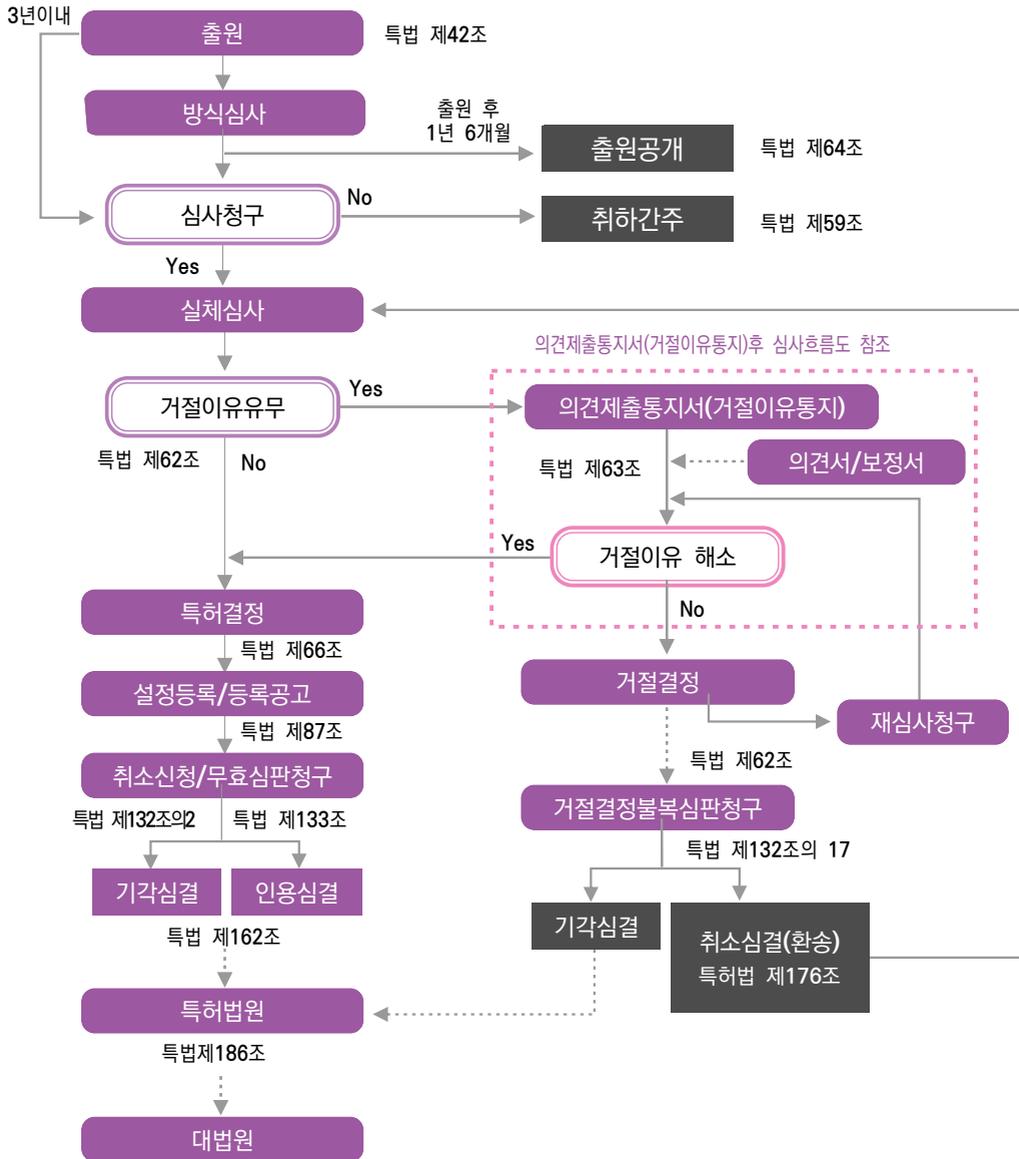
● 특허고객번호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1999년 이전 출원번호 : 1999년 이전 직권으로 부여된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 다시 특허고객번호신청 할 경우에는 반드시 1999년 이전 출원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기재 : 국내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국내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사업자등록번호는 선택 기재, 단 온라인 제출 시 필수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법인 및 외국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인감란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국내 거소(영업소)하는 외국 자연인(법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재하고 거소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인감(법인) 또는 서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인적정보가 잘못 등록된 경우 : 잘못된 인적정보가 기재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즉시 발견한 경우에는 접수담당자에게 가서 수정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적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시 인감도장은 꼭 동사무소에 신고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서명의 경우 출원인이 사용하는 서명을 등록하면 됩니다. 추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등록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시 날인한) 인감과 서명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 출원인 인감과 서명은 동시에 등록이 가능하며, 서명은 개인출원인에 한해 등록 가능.
- 출원과 동시에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직권등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에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지]란 다음의 기명·날인과는 별도로 반드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출원인의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인감(서명)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1.1.3.

특허출원한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심사진행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1.1.4.

출원 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이후에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허출원·특허법 제1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출원인변경신고·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권리관계변경신고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간위임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만 출원에 대한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

※ 특허청에서는 대전 본청 고객지원실과 서울사무소 5층 무료상담변리사와 7층 공익변리사센터에 민원상담관을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출원절차 등 특허행정분야에 관하여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방에도 상공회의소 내에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출원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니, 향후 산업재산권 절차진행 등과 관련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료변리상담

- 대전 본청 : 매주 화, 수, 목 14~17시 무료변리상담 운영(☎ 042-481-5215)

- 서울사무소 : 5층 무료상담변리사 02-3458-2258(월~금, 13:00~17:00)

※ 대한변리사회 : ☎ 02-3486-3486, 인터넷 www.kpaa.or.kr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 02-6006-4300, 인터넷 www.pcc.or.kr

1.1.5.

특허에 관한 절차를 변리사인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하나요?

- 먼저, 산업재산권에 전문지식을 가진 특정 변리사와 출원절차 진행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임계약이 성립하면 출원서의 작성 및 절차의 진행은 대리인이 준비하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대리인]란을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출원은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바, 특허출원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특정 대리인을 통하여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출원·특허법 제1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출원인변경신고·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권리관계변경신고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

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효가 발생되어 별도 선임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대리인선임신고 후에 대리인(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대리인(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대리권의 내용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특허청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1.1.6. 출원인(발명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현재 실무상 출원인과 발명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표기된 출원인을 당해 출원의 승계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모든 권리가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에게 주어지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허법 제33조). 만일 발명자가 이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계약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특허법에 명시된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주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발명자일 것
 -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방한 자이어서는 안 됩니다.
 -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5조).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 특허청 직원은 재직 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청 직원은 재직 중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법해석상 재직 중에도 출원 등은 가능하나 설정등록 시점 또는 권리이전 시점에 특허청 직원이 재직 중이면 안 된다는 사항으로 해석하면 됩니다(퇴직 후에는 가능).

1.1.7. 미성년자가 직접 출원을 할 수 있나요?

-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민법 제4조 준용)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하게 됩니다(특허법 제3조).
- 미성년자 출원 시 먼저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고 미성년자의 특허고객번호부여신

청 시 출원인 항목 아래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와 부모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증심으로 발급)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출원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 출원하게 되는데 이 경우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출원한 특허권에 대한 권리이전도 법정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증명서류(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1.1.8.

법인격이 있는 조합의 특정지역 지부,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 대전지부와 같은 명의로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 특허고객번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사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이 출원인 적격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출원인 적격이 없는 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인 적격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은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협동조합의 지부명의로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은 “대한민국(소속기관의 장)”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의 형태로, 기타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명의로 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1.9.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형태의 조직으로서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단명의로 특허출원 할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특허법상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며, 특허법 제25조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인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민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거나를 불문하고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법인의 경우에도 민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면 특허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임의단체) 특허에 관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출원할 수 없습니다.

1.1.10.

국립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발한 발명을 ‘국립 **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한 경우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법인체로서 특허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가기관인 경우는 국가(대한민국)가 권리주체가 되므로 특허출원 시에는 출원인을 “대한민국”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을 괄호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공립대학의 발

명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이므로 국가에서 특허권을 소유하는데, 다만 2002년 7월 1일부터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 중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이전전담조직”에서 승계하여 전담조직의 법인명으로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 출원하여야 합니다.

1.1.11.

특허청에 출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 언제 출원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는 특허청에 도달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출원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출한 날이 문서의 도달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편으로 출원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 소인이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특허법 제28조).

1.1.12.

특허청에 서면으로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자화통지서’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서와 기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심사절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서류의 내용을 전자화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17조의2). 특허출원서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게 되며(의견서는 서면 접수 건이라도 전자화 통지되지 않음), 전자화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

1.1.13.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내용을 실수로 오기재 한 경우에,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로 오기의 정정이 가능합니까?

- 출원내용의 오기재가 전자화 과정에서의 실수가 아닌 최초 출원서 및 명세서상의 오기인 경우에는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로는 정정할 수 없으며, 보정서 제출기간 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명세서등 보정]’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4.

출원을 한 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통지서 등은 어떤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지·송달되는지요?

- 문서의 수취방법은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 시 수취방법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번 지정한 문서 수취방법은 이후에 제출되는 서류 및 신규 출원되는 모든 건에 있어서도 지정된 방법에 의하여 통지됩니다.
- 이미 지정한 문서의 수취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각종 통지서 등은 특허고객번호에 기재된 주소(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로 발송하며,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기타의 통신수단(전화 등)으로 연락을 취한 후에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의 형태로 처리하게 됩니다.

1.1.15.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주소란에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시 [주소]란에는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본사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 또한, 출원서의 [발명자]정보란에는 발명자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발명자]란에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기재하고,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 그 [주소]의 기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시 송달주소를 기재하여 우편물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시 송달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를 통해 송달주소 추가가 가능합니다.

1.1.16.

출원 관련 서식은 어디서 받아볼 수 있으며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관련서식 : "특허청 홈페이지 우측 하단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작성예제도 볼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온라인 접수
 - 특허로 홈페이지 : www.patent.go.kr (프로그램 설치 후 진행)
 - 시간 : 평일 및 토요일 00:00~24:00 / 일요일 및 공휴일 10:00~24:00
 - 방문접수

- 장소 : 특허청 대전 본청 고객지원실, 특허청 서울사무소
- 시간 : 평일 09:00~18:00
- 우편접수
-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우: 35208)
- 우체국 소인일자(단, PCT 국제출원은 도달일)를 출원일로 인정함

1.1.17.

출원서 등의 서류에 도장 대신 사인을 해도 되나요?

- 출원서류의 인장날인은 특허고객번호 상의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시의 인감은 출원인의 성명이 확인되는 도장을 사용하거나 서명은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여 제출 가능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1.1.18.

포괄위임신청서 서식에 “포괄위임 설명확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 포괄위임 신청하기 전에 위임자가 수입자로부터 포괄위임의 중요사항을 상세히 설명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일자를 기재하고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항목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2015. 7. 29. 시행).
- 설명일자와 위임자 성명(명칭)은 자필로 기재해야 하고 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서명)과 동일한 도장(서명)으로 날인(서명)하거나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외국(법)인도 자필로 기재 후 서명해야 합니다.

1.1.19.

출원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특허고객번호 주소 정보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G4B등 대민 전자서비스를 활용하여 출원인의 자동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출원인의 주소, 법인출원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G4B(Government for Business) : 기업 활동 지원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업 종합행정 서비스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 철회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출원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특허청 특허고객번호상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법인은 G4B에 직접 신청해야함). 단, 송달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면 주소변경이 되어도 송달주소로 서류가 발송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제6항내지제8항).

1.1.20.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신고서 작성 시 변경 전 주소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 변경 전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 변경 전 주소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변경 전은 특허고객번호상에 기재되어 있어 증명서류상에 본인여부가 확인되므로 변경 후 주소만 기재해도 처리됩니다.
- 변경 전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변경 후 주소만 정확하게 기재하고 증명서류 상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주소변경 처리됩니다.

1.1.21.

방식심사는 어떠한 사항을 심사하는지요?

-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무효처분 합니다(특허법 제16조).
- 방식심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법령에 정한 방식, 수수료의 납부
- 방식요건에 관한 불비사항에 대해 절차보정을 명한 경우, 지정기간(1월 이내)을 경과한 뒤에도 당해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이면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효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식심사나 기초적 요건 심사에서 출원무효나 반려처분 된 경우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효 처분된 출원의 기술내용을 기초로 보정하여 재출원하여도 무효나 반려 처분 된 출원이 후출원의 선원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1.1.22.

출원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위임장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해야 하나요?

- 위임장에 대표자가 아닌 자가 서명하는 경우 위임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일반 수권사항 : 증명서류 없음
 - 특별 수권사항 : 공증서 또는 서명권한인정서 및 서명권한확인서 제출
- ※ 특별수권 사항
 1. 출원의 변경·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우선권주장 또는 취하, 7. 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8. 복대리인의 선임 (특허법 제6조, 디자인보호법 제7조, 상표법 제7조)

제2장 특허 · 실용신안

2.1. 서지사항 작성방법

2.1.1.

출원서(명세서, 요약서)의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 특허출원을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로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서
 - 특허출원서에는 ① 특허출원인의 성명, 특허고객번호 ② 대리인의 표시 ③ 발명의 명칭 ④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⑤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출원인 또는 발명자 등이 2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에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기재합니다.
- 명세서
 - 명세서는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문장을 통하여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표시키고 공표된 발명 중에서 보호대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공개된 경우 공중에게는 「기술문헌」으로 이용되는 한편 명세서의 청구범위는 발명자에게는 「권리」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 이상의 기능이 명세서에 의하여 달성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술문헌으로서의 소임을 달성하고,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특정하는 일을 합니다.
- 도면
 - 특허출원서 작성 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하며,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방법발명, 화학(물질) 발명은 도면 생략가능)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 시에 명세서에 도면이 있는 경우와 실용신안 출원 시에는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도면작성은 발명의 구성에 따라 상이하며 형상, 절차도, 분자구조, 회로도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이미지의 도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약서

-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을 요약 정리하는 서류로서 출원서류에 첨부합니다. 요약서에는 발명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10줄 이상 20줄 이내로 간결하게 발명을 요약 기재하면 됩니다.

2.1.2.

A를 특허로 이미 출원을 했는데, 이후 A+B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A+B를 출원할 때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하면 됩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서 선출원이 계속 중이라면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 A의 권리범위가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새로운 권리범위 B를 추가로 권리확보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은 불가하며 별도 새로운 신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2.1.3.

선출원의 출원인이 A이며,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시 후출원의 출원인을 A로 변경하면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나요?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서 제출시점에서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완전동일하거나, 후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출원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양도증 등 승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양도승계서류의 양도일자 후출원일자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1.4.

2인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특허출원을 하고자 합니다. 출원인의 명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때에는 발명자 또는 그 정당한 승계인이 출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란에 공동출원인 모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44조).

2.1.5.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을 특별히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원서에 이를 표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공동출원인 간의 지분은 약정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공동출원인 간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의 특허고객번호 다음에 [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n”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고, “지분약정서(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 또는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구분항목 : 출원인지분변경]'와 지분약정서(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 또는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6.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인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 11조). 선임신고의 방법은 특허출원 시 출원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법과 출원이후에 선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출원 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되는 특허고객번호 아래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기재하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 선임증(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 또는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출원 후에 대표자선임신고를 위해서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선정된 대표자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특허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출원의 포기·취하, 신청의 취하 등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행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의 실무에서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제11조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단독적으로 해당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1.7.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인 중 서류송달 대표자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 출원인이 서류송달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 증명서류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출원인) 전원이 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서류송달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송달할 서류는 그 서류송달 대표자에게 송달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송달받을 자 전원에게 송달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송달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라도 송달받을 자 전원에게 송달합니다. 출원인 대표자와 서류송달 대표자는 각자 다른 사람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출원인 대표자와 서류송달 대표자 선정을 해도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서류는 대리인에게 발송됩니다.

2.1.8.

특정 변리사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인 선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포괄위임제도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대리권을 부여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에 포괄 위임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위임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포괄위임번호를 기재하면 당해 절차의 위임 효과가 있습니다.
- 포괄위임 등록을 한 후에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변경신청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9.

특허법인의 경우 법인자체로서 특허출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 특허법인도 법인의 명의로 특허에 관한 절차의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2000. 7. 1. 시행). 특허법인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허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출원서에 기재하고, 그 아래에 필수 항목으로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변리사법 제6의6).

2.1.10.

특허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출원서에 별도로 해당 내용을 기재할 수 있나요?

- 특허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항목에 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는 과제고유번호(필수기재),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연구기간 등을 기재하며 과제가 여러 개인 경우 복수 기재도 가능합니다.
- 출원인이 개인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항목 기재하는 경우 '개인명의 사유'항목을 추가 기재할 수 있으며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보정대상은 아닙니다.

2.2. 명세서등 작성방법

2.2.1.

명세서에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도면은 일반적으로 발명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출원서 작성 시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방법발명, 화학(물질) 발명은 도면 생략가능)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허출원 시에 명세서에 도면이 필요한 경우와 실용신안 출원 시에는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용신안의 경우 도면은 사진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CAD로 작성한 도면은 출력하여 스캔받아 JPG, TIF 이미지로 만들어서 전자문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 도면에는 기계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사시도, 평면도, 절개도 등이, 전기·전자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배선도, 블록도 등이, 화학적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공정도, 화학구조식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면작성은 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또는 입면도 등을 흑백으로 선명하게 도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시도 및 단면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이미지의 도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우측 하단 “민원서식”에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특허출원서’의 작성 예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2.

특허(실용신안)출원 시 도면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까?

- 특허출원의 대상이 기계, 기구, 장치와 같은 물건에 대한 발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화학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과 같이 외형이 존재하지 않은 발명인 경우에는 도면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면은 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또는 입면도를 흑백으로 선명하게 도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시도 및 단면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의 도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관한 설명은 도면의 내용 중에 기재할 수 없으며, 명세서에서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표 등에 필요한 표시, 골조도, 배선도, 공정도 등의 특수한 도면에 있어서 그 부분명칭이나 절단면을 표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또한,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하므로 물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에는 출원서류가 반려 대상이 됩니다.

2.2.3.

배경기술 항목은 필수 기재 항목 인가요?

- 2011년 7월 1일 최초출원 건부터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항목 기재 의무화가 되었습니다(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배경기술에 관한 설명을 적거나, 그 배경기술이 개시된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배경기술 기재 불비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배경기술이 개시된 선행기술문헌의 정보를 추가하여 거절이유 해소 가능합니다. 다만, 배경기술의 구체적 설명을 추가하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4.

청구항(CLAIMS)이란 무엇인가요?

- 청구항이란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말합니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 특허인정여부는 대체적으로 청구항에 쓰인 내용들에 의해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2.5.

특허출원 시 청구범위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까?

- 2007년 7월 1일 출원 건부터는 청구범위 제출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의 2). 출원 시 청구범위가 없는 경우에도 출원이 가능하며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심사청구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됩니다. 청구범위 제출기간 내 심사청구 할 경우 심사청구 시 청구범위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범위 미제출 상태에서 심사청구 시 심사청구서는 반려됩니다.

2.2.6.

종속항의 인용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종래에 종속항은 「그 종속항이 속하는 독립항과 그 독립항의 다른 종속항 중에서~인용 할 수 있다」고 하여 종속항이 그 종속항과 그 종속항이 속하는 독립항 및 또는 동일한 독립항에 속하는 종속항만을 인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인용 할 수 있다」고 하여, 종속항이 2이상의 독립항을 인용할 수 있고, 하나의 독립항과 다른 독립항에 속하는 종속항을 인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독립항에 속하는 종속항을 2이상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하나의 종속항이 인용할 수 있는 2이상의 독립항은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가 서로 다른 독립항(예 : 물건과 장치)을 2이상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속항의 말미에 「~물건 또는 장치」로 기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재방법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또는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

2.2.7.

특허출원할 때 외국어로 출원하고 추후 국어로 제출할 수 있나요?

- 출원일 선점을 위해 외국어로 출원 후 국어 번역문 제출 가능하고 외국어 기재 가능 언어는 영어만 가능합니다(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 외국어출원의 경우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제출구분 :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로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하고 미제출 시 취하 간주됩니다(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 제42조의3 제4항).
- 외국어로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3,000원을 납부해야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3,000원에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 국어번역문에 오역이 있으면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제출하여 오역 정정 가능하고(특허법 제42조의3 제6항), 국어번역문 제출 전에는 명세서 보정, 분할·변경출원 및 심사청구가 불가하고 출원이 공개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47조 제5항, 제52조 제1항 단서, 제53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2항 제2호 및 제64조 제2항 제2호).
- 오역정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1,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1,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의2호).

2.2.8.

외국어 출원 시 외국어로 작성해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명세서 및 도면을 외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발명의 명칭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 요약서는 국문으로 기재해야 하며, 추후 국어 번역문 제출 시 국문 요약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2.9.

외국어 출원 시 요약서의 흠결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외국어 출원 시 명세서 및 도면을 외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요약서는 국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약서를 기재하지 않거나 영어로 기재한 경우 보정요구서가 발송되며, 보정 절차를 통해 보정 치유를 하면 됩니다.
- 보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명세서 등 보정서]'이며 온라인 제출 시에는 서식작성기에서 '보정서[보정구분 : 명세서 등 보정(외국어출원단계 요약서 보정)]'를 작성하면 되고, 별도 보정료는 없습니다.

2.2.10.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 시 서열목록파일은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나요?

-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서열목록작성기(KOPATENTIN)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여 서열목록을 작성한 후 명세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신청/제출 → 국내출원 → 전자출원SW설치

- 서열목록을 제출하는 출원의 경우 출원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서열목록 전자파일] 항목 기재요령

〈서면출원〉

- 출원 시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해서 출원하는 경우 ⇒ [서열목록 전자파일] : 첨부
- 출원시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미첨부하여 출원하는 경우 ⇒ [서열목록 전자파일] : 미첨부

〈온라인 출원〉

- 명세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여 출원하는 경우 ⇒ [서열목록 전자파일] : 미첨부
- 명세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미첨부하여 출원하는 경우 ⇒ [서열목록 전자파일] : 미첨부

2.2.11.

임시 명세서(논문, 연구노트, 기술서 등)를 첨부하여 출원이 가능한가요?

- 신속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하기 위해 기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술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한 문서(논문, 연구노트, 기술서 등)로 제출 가능합니다(2020년 3월 30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
- 출원 시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특허출원서 ‘기타사항’ 항목에 ‘임시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를 체크해야 하며, 출원료는 온라인 56,000원(hlz파일로 첨부 시 46,000원), 서면 66,000원에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이 가산됩니다.
- 다만,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로는 심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원일(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내에 정식 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취하 간주됩니다.

제3장 디자인

3.1. 서지사항 작성방법

3.1.1. 디자인출원서 작성 시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제1류, 3류, 2류, 5류, 9류, 11류, 19류)으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만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2월 1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부심사 대상품목 중 제1류, 제3류, 제9류, 제11류 추가

3.1.2. 디자인등록출원 시 참조번호란을 꼭 기재해야 되나요?

-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참조번호는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을 구분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단, 복수디자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참조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1.3. 출원서 작성 시 창작자란에 법인명을 기재할 수 없나요?

-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시에 법인이 출원인은 될 수 있지만, 창작자는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연인만이 창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창작자란에는 자연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3.2. 도면 작성방법

3.2.1. 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도면은 디자인의 보호범위 해석의 1차적 기준이므로 보정이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디자인 도면'으로 작성하며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흑색잉크로 선명하게 도시하여야 합니다.
-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우선순위로 하여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순으로 적습니다. 그 이외에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을 [참고도면 1.1], [참고도면 1.2], [참고도면 1.3]...순으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되, 그 도면의 명칭은 [참고도면 ○.○] 란의 다음 행에 적습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작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우측 하단 민원서 식 → 디자인 도면"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2.

디자인 도면작성 시에 도면 대신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 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10cm × 15cm 이하, 최소 7cm×10cm 이상의 크기로 하고 사진에는 디자인이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됩니다. 이 경우 사진은 도면규격에 의한 보조용지에 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
-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의하여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쉽게 파손되거나 변경·변질되지 않을 것
 - 취급 및 보존이 용이할 것
 - 용지에 첨부할 경우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1개 및 견본의 사진(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히 표현된 사진 각 1통)을 각각 서식에 첨부할 것

3.2.3.

글자체디자인출원인 경우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글자체디자인 도면』은 각 글자체디자인의 경우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의 3가지 도면을 모두 필수도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정하는 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중 일부가 없는 경우에는 글자체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3.2.4. 부분디자인출원 시 도면의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 부분디자인출원 시 도면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
- 부분디자인을 도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은 파선(---)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 다만,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1점 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
 - 채색 또는 경계선 등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
 -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써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 물품전체의 색채가 검정색인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칠함으로써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의 색채를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
 -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써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디자인이 검정색 등 무채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채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사진이나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3.2.5.

디자인출원 시 도면을 3D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 디자인 도면은 3D도면(3DS, DWG, DWF, IGS, IGES, 3DM)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 1개 또는 그 이상 제출(창작내용을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 도면 1.1, 도면 1.2 등) 가능하며 도면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도면별로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합니다.

3.2.6.

동적화상 아이콘 디자인의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 화상 아이콘 디자인을 동영상파일 형식의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 MPEG, WMV 또는 Animated GIF]파일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480) 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

3.2.7.

도면 작성할 때 일부 도면은 3D로 작성하고 일부 도면은 2차원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작성 가능한가요?

- 복수출원이나 보정 시 같은 도면의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파일 형식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출원시스템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2020년 8월 31일이 전 출원).
- 2020년도 8월 31이후 출원 부터 3D(2D 도면)과 2D 참고도면(3D 참고도면)을 병기하여 출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상디자인출원 뿐만 아니라 2D 및 3D 도면의 디자인등록출원 시, 참고도면 항목에 동영상 파일도 첨부 가능합니다.

3.2.8.

한 벌 물품의 디자인출원 시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각각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합된 상태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합니다. 또한 도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도면A 1.1부터 도면A 1.7은 착잔이고, 도면B 1.1부터 도면B 1.7까지는 받침접시이며, 도면C 1.1부터 도면C 1.7까지는 한 벌의 다기 세트임.

제4장 상표

4.1. 서지사항 작성방법

4.1.1.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의 기재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 “특허청 홈페이지 우측 상단 분류코드검색 → 상품분류코드”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품류를 기재하시고, 지정상품은 해당 류에 속하는 상품 세목을 기재하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기재요령 참조). 1개류에 속하는 지정상품 모두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정상품을 일일이 기재해야 합니다.

4.1.2. 상품분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현재 사용되어지는 상품분류는 NICE분류 11판이며,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품분류는 특허청 홈페이지 우측 상단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3. 출원서 작성 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출원인란에 출원인 주소 및 기타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까?

-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출원인은 출원인란에 출원인 성명(명칭)과 특허고객번호만을 기재하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기재요령 참조).

4.1.4.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에 상품류는 확인이 되는데 상품 분류표에 해당되는 지정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상품류는 확인이 되는데 지정상품이 상품분류에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상품명 을 직접 기재하면 됩니다.

4.1.5.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 상표유형은 어떤 경우 표시합니까?

- 상표유형은 해당 상표가 “일반상표”,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중 어느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 “일반상표”란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상표를 말합니다. 또한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도 일반상표에 해당합니다.
- “색채만으로 된 상표”란 단일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호나 문자, 도형 등에 색채가 결합된 것은 “색채만으로 된 상표”가 아닌 “일반상표”에 해당합니다.
- “입체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입체적 형상이 아닌 입체적으로 표현된 도형을 상표로 등록받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상표”로 지정해야 합니다.
- “홀로그램상표”란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한 것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 “동작상표”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동작을 나타낸 상표를 말합니다.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란 “일반상표”,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예 : 위치상표).
- “소리상표”란 소리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 “냄새상표”란 냄새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란 소리상표, 냄새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예 : 촉감상표).

4.1.6.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 상표건본의 개수는 몇 개까지 입력해야 합니까?

- 상표는 1출원주의이므로 하나의 출원서에는 한 개의 건본(도면)만이 첨부되어야 하나, 출원하는 상표가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특징적인 정지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사진)과 설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때 도면의 개수는 총 2개 이상 5개 이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체상표의 경우 3면이 보

이는 입체적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 미흡한 경우 보완할 수 있고 보완된 날을 출원일로 봅니다.

※ 2021년 1월 1일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면의 개수는 5장 이하로 첨부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예정

4.1.7.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 상표설명은 필수 기재 항목입니까?

- 출원하는 상표가 색채만으로 된 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설명란을 만들어 상표견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명은 500자 이내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시각적 표현”란을 만들어 기재해야 합니다.

4.1.8.

개인이 단체표장 출원할 수 있나요?

- 단체표장의 경우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만 출원이 가능하며 개인은 출원이 불가능합니다(상표법 제3조 제2항).

4.1.9.

단체표장 출원 시 20이상의 법인이 공동출원 할 수 있나요?

- 단체표장의 출원인 적격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표법 제3조(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서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 하나만 출원인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인 제한이 없어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게 되면 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하게 되어 있는데 단체 각각이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1법인만 가능합니다.

4.1.1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상표등록출원서(상표법 제36조에서 규정)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상표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상표법시행령 제3조).
 - ①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
 - ②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 ③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 ④ 그 밖에 단체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
 4.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의 경우에는 위 3번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상표법시행령 제3조).
 - ①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 ②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 ③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 ④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 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사실의 확인서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제외)
 - ③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의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7호).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증명자료를 첨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 현황(해당 지역전체, 출원인, 소속 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등.
 - 출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4.1.11. 개인이 업무표장 출원할 수 있나요?

- 개인도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업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개인으로서 본인이 지정업무와 관련한 비영리업무를 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인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나 법인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나 법인이 비영리업무를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합니다.

4.1.12.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이 업무표장 등 상표등록출원 할 수 있나요?

-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및 임의단체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업무표장 등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 임의단체: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

4.1.13. 증명표장 출원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증명표장의 경우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상표등록출원서(상표법 제36조에서 규정)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상표견본 1통
 2. 정관 또는 규약과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만 제출하며, 규약 및 규약의 요약서는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3.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상표등록출원서
 1. 상표견본 1통
 2. 정관 또는 규약과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만 제출하며, 규약 및 규약의 요약서는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3.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

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4.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1.14.

상표견본을 칼라로 제출 할 경우 상표유형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상표가 일반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중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표유형을 작성하며 아래와 같이 구별됩니다.
 - 일반상표 :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 +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경우
 - 색채만으로 된 상표 : 상표 전체가 색채로만 구성된 경우

4.1.15.

먼저 출원한 상표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나요?

-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합니다(상표법 제86조).

4.1.16.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건을 상표로 변경출원이 가능한가요?

- 상표,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제외),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제외) 상호간이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기초가 된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기초가 된 등록상표가 무효나 취소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한 후에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변경출원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4.2. 상표견본 작성방법

4.2.1.

상표출원 시 상표견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상표 견본은 가로, 세로의 길이에 구분 없이 직사각형 A4용지에 작성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다만,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는 가로 8cm × 세로 8cm의 빈 사각형을 테두리로 하여 사각형 내에 채색해야 합니다.

4.2.2.

특허출원한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심사진행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 로고와 상표명칭을 각각의 상표로 등록받고자 한다면, 각각 상표견본을 만들어 각각의 출원서를 작성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로고와 상표명칭을 하나의 상표견본으로 등록받고자 한다면 로고와 상표명칭을 하나의 상표견본으로 작성하여 출원서에 첨부하면 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4.2.3.

상표견본을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로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까?

- 상표는 등록받고자 하는 의도대로 상표 견본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를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견본에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를 같이 기재하여 상표견본을 작성하여 출원하고,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 각각에 대하여 등록받고자 한다면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를 각각의 상표견본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4.2.4.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는 견본을 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

- 소리상표출원 시 견본은 MP3, WAV, WMA 등 범용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3MB 이하여야 하고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냄새상표출원 시 견본은 30ml 이상의 액체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을 3mg 이상 도포한 향패치 30장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리파일·냄새견본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2.5.

동작상표출원 시 상표견본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 동작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견본으로 총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면의 개수는 5장 이하로 첨부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예정

CHAPTER

III

중간절차

제1장 중간공통업무	123
제2장 특허·실용신안	142
제3장 디자인	153
제4장 상표	156

www.kipo.go.kr

목차

제1장 중간공통업무

1.1. 각종서식 및 중간절차	123
1.1.1. 민원서식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123
1.1.2. 출원인의 명칭, 주소, 인감 등 정보를 변경하려면 어떤 서식을 작성하나요?	123
1.1.3. 통지서의 수취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23
1.1.4. 출원인정보변경절차를 진행할 때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124
1.1.5. 특허청으로부터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는데, 급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보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제수단은 없는지요?	124
1.1.6. 출원 후 익일까지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24
1.1.7. 보정요구서에 의한 지정기간 내에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은 어떻게 됩니까?	125
1.1.8. 출원서에 대리인을 기재해서 제출했는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25
1.1.9. 보정서를 잘못 제출하였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125
1.1.10. 의견제출통지서의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연장할 수 있다면 기간연장신청료는 얼마인가요?	126
1.1.11. 증명서류 원용 시 사본 제출 생략이 가능한가요?	126
1.1.12. 익명으로 정보 제출 가능한가요?	127
1.2. 출원인(대리인) 변경	128
1.2.1. 출원인을 변경할 수 있나요?	128
1.2.2. 등록결정서를 받은 건에 대해서도 출원인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128
1.2.3. 하나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에 출원 중인 여러 건을 작성해도 되나요?	129
1.2.4. 양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129
1.2.5. 상속 및 분할·합병으로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에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129
1.2.6.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출원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9
1.2.7. 특허의 공동출원인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특허청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130
1.2.8. 출원 시에 공동출원인 간에 설정된 지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130
1.2.9. 법인이 합병에 의해 출원인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출원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30

1.2.10.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출원인 변경을 하려는데, 법인국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법인국적증명서는 무엇이며 왜 제출해야 하나요?	131
1.2.11.	협약요구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1
1.2.1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작성 시 병합기재 가능한가요?	131
1.2.13.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대리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32
1.2.14.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2이상의 사건을 병합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중 일부사건에 절차상 흠결이 있어 처리 불가한 경우 일부 사건만 수리 가능한가요?	132
1.2.15.	제출한 서류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나요?	132
1.2.16.	특허고객번호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32

1.3. 출원서류의 공개 133

1.3.1.	출원공개란 무엇인가요?	133
1.3.2.	출원의 조기공개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33
1.3.3.	공보란 무엇인가요? 공개와 공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34
1.3.4.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134
1.3.5.	출원공개 효과는 무엇인가요?	134
1.3.6.	특허출원한 것을 타 업체에서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어 그 대응 방법으로 “출원공개 후 경고장 발송”하려고 합니다. 경고장 발송의 법적 효과가 무엇입니까? 또한 경고장 발송 없이, 특허등록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내는 경우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134
1.3.7.	본인이 특허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공개되어 있지만, 그 출원 내용은 공개된 타인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와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135
1.3.8.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출원 후의 보정에 의해 삭제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135
1.3.9.	출원공개 전에 특허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의 경우 선원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까?	135

1.4. 출원 취하·포기 136

1.4.1.	출원 중 취하(포기)서를 어떻게 제출하며, 취하서와 포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36
1.4.2.	출원 후 포기 또는 취하 되면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136
1.4.3.	취하서는 출원인 중 한명만 제출해도 되나요?	137
1.4.4.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137
1.4.5.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요?	137
1.4.6.	거절결정서 및 등록결정서를 받은 이후 취하할 수 있는지요?	137

1.5. 증명·복사	138
1.5.1.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증명서, 서류의 등·초본 발급, 열람·복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38
1.5.2. 선임된 대리인은 아니지만 포괄위임 뱀은 대리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 복사 신청 가능합니까?	139
1.5.3. 출원명세서(디자인 도면) 최종본(*.FIN)파일을 교부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40
1.5.4. 출원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0
1.5.5. 출원사실증명원에 발명자 정보도 기재되어 있나요?	140
1.5.6. 출원사실증명원에 권리관계변경신고 시 설정한 지분이 기재되나요?	141
1.5.7. 우선권증명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1
1.5.8.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41
1.5.9. 국내우선권주장으로 후출원한 경우 선출원건에 대한 복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141

제2장 특허·실용신안

2.1. 출원서등 보정	142
2.1.1. 보정의 범위 및 보정료는 어떻게 됩니까?	142
2.1.2.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 작성 시 보정료가 있는 항목은 어떤 항목인가요?	143
2.1.3. 위임장과 지분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위임장만 보정 할 경우 특허출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45
2.1.4.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서에 기재한 발명자(고안자, 창작자) 정정이나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145
2.1.5. 최초 출원 시에 우선권주장을 하였습니다.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입니까?	145
2.1.6. 국내우선권 주장 후에 후출원건에 대해서 출원인 변경을 하면 선출원건도 출원인 변경을 해야 하나요?	145
2.1.7. 출원 중 절차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연장이 가능한지요?	146
2.1.8.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를 서면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보정료가 차이가 있나요?	146
2.1.9. 출원서를 제출한 후에 위임장 미제출로 보정을 받고 보정서로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잘못 제출하여 다시 보정서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를 또 납부해야 하나요?	146
2.1.10.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주장 취지와 증명서류를 누락하거나 또는 추가할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하나요?	146

2.2. 명세서등 보정	147
2.2.1.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의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을 삭제,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147
2.2.2.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8
2.2.3. 명세서등 보정서의 제출원인번호는 어떤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148
2.2.4. 보정 시 심사청구항을 추가할 때 보정료 납부를 하는지요?	148
2.2.5. 보정서, 의견서의 지정기간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48
2.2.6. 특허출원 시 미완성발명을 보정에 의해 완성발명으로 보정한 경우, 명세서 등 보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며, 이에 대해 출원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149
2.2.7. 특허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150
2.2.8. 의견제출통지서의 대응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정된 기간을 넘긴 경우 향후 당해 출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150
2.2.9. 의견제출통지서에 지정기간단축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0
2.2.10.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이, 출원인이 아닌 발명자 명의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서류로 인정되는지요?	150
2.2.11. 청구범위제출유예건에 대해 청구항을 제출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무엇입니까?	151
2.2.12. 청구범위제출유예건에 대해 보정서 접수 시 기재하는 접수번호는 어떤 접수 번호를 작성합니까?	151
2.2.13. 청구범위제출유예건으로 출원한건에 대해서 공개시점이 되었는데 청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공개되지 않습니까?	152
2.2.14. 출원 후 거절결정서 받고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나요?	152
2.2.15. 임시명세서 출원 후, 정식 명세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52

제3장 디자인

3.1. 출원서등 보정 및 절차 보완	153
3.1.1. 출원인의 명칭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정요구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53
3.1.2. 단독 ↔ 관련, 심사 ↔ 일부심사로 변경 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무엇인가요?	153
3.2. 도면등 보정	154
3.2.1. 디자인출원 후 사진으로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지요?	154
3.2.2. 도면 또는 디자인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154
3.2.3. 보정서, 의견서의 지정기간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54
3.2.4. 디자인출원 시 도면 또는 사진으로 출원한 후 3D파일로 보정하거나 3D도면으로 출원한 후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정이 가능한가요?	155
3.2.5. 디자인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했는데 기한 내 증명서류 제출 못한 경우 추후 제출 가능한가요?	155

제4장 상표

4.1. 출원서등 보정	156
4.1.1. 상표등록출원 후 보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견본 보정이 가능합니까?	156
4.1.2. 상표등록출원 후에 익일까지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7
4.1.3. 지정상품보정 후에 상품류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보정료는 얼마입니까?	157
4.1.4. 상표등록출원 시 상표유형 없음으로 출원을 했는데 색채상표로 보정이 가능한가요?	157
4.1.5. 상표 분할출원 시 분할출원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157
4.1.6. 보정서를 통해 삭제된 지정상품에 대해 분할출원이 가능한가요?	158
4.1.7. 보정(보완)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로 지정상품 보정 시 보정내용 기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58
4.1.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후 정관 등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59
4.1.9. 증명표장 출원 시 정관을 미제출한 경우 보정료가 있습니까?	159
4.1.10.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출원 후 상표의 시각적 표현 부분을 보정할 수 있습니까?	159
4.1.11. 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의미를 몰라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을 체크하고 출원번호는 국내출원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60
4.1.12. 의견제출통지서 받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의견 제출할 수 있나요?	160
4.2. 상표견본 보정	160
4.2.1. “A”라는 상표로 출원하고 “B”라는 상표로 정정 가능한가요?	160
4.2.2. 상표 거절예고 통지서 받고 기간연장 가능한가요?	161

제1장 중간공통업무

1.1. 각종서식 및 중간절차

1.1.1.

민원서식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 특허청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상단 ‘책자/통계’ 선택 ‘민원서식’ 코너 또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우측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출원인의 명칭, 주소, 인감 등 정보를 변경하려면 어떤 서식을 작성하나요?

- 출원인의 정보를 변경 또는 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인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 시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법인 인감 변경 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개인 주소 변경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 개인 성명 변경 시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 개인 인감 변경 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진행 할 경우에는 출원인의 인감증명서 상 인감으로만 변경 가능하고 출원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1.3.

통지서의 수취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출원인의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통하여 수취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리사인 경우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1.1.4.

출원인정보변경절차를 진행할 때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출원인정보변경 시에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략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4조).
 1. 주민등록등(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호, 법인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증명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4.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5.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
 7.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8.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
 9.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

1.1.5.

특허청으로부터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는데, 급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보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제수단은 없는지요?

- 출원서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보정요구서에 의한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개월씩 4회까지 지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 연장신청서·기간단축신청서·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절차 계속신청서[신청 구분 : 법정(지정)기간 연장]'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정기간연장신청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3의2)
 -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1.1.6.

출원 후 익일까지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출원 후 익일까지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수수료미납에 대한 보정요구서가 발송되며, 발송된 보정요구서에 첨부된 수수료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그 지정된 기간이내에 전국의 국고수납은행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출원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1.7.

보정요구서에 의한 지정기간 내에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은 어떻게 됩니까?

- 출원인이 보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또는 지정기간 내에 보정은 했으나 제출된 보정서가 흠결을 치유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조). 무효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장은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요구를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요구를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무효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1.8.

출원서에 대리인을 기재해서 제출했는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제출기한 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 등 보정]'로 제출하지 않은 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료는 서면 : 14,000원, 온라인 : 4,000원입니다.

1.1.9.

보정서를 잘못 제출하였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 동일자에 보정서를 중복 제출 했을 경우에는 중복제출을 사유로 서류반려이유통지서가 발송되고 1개월 후 서류반려통지서가 발송되면 해당 서류의 처리 절차만 종료되고 다른 서류의 처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빠른 반려처리를 원할 경우 반려 이유 통지에 서류 반려 요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착오로 보정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정요구를 받게 되는데 보정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서류에 대해 무효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도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서류의 처리 절차만 종료되고 다른 서류의 처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빠른 무효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 보정 기한내에 지정기간 단축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즉, 보정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 취소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이 경우에 따라 서류반려이유통지서나 보정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처리 절차는 종료되고 다른 서류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1.1.10.

의견제출통지서의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연장할 수 있다면 기간연장신청료는 얼마인가요?

- 의견제출통지서의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와 그 흠결을 치유할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 연장신청서·기간단축신청서·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절차 계속신청서[신청 구분 : 법정(지정)기간 연장]’ 를 제출하면 됩니다(지정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만료일).
- 의견제출통지서의 지정기간의 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입니다.
- 5회 이상 기간연장 신청하는 경우 초과기간 인정에 따른 소명이 필요합니다.
- 초과기간 인정사유
 -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를 해임·변경한 경우
 -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새로운 출원인이 추가된 경우에 한함
 - 기간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후 이를 기간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 의견제출통지서의 송달이 1월 이상 지연된 경우
 - 원출원 또는 후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 거절이유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하게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정기간연장신청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3의2)
 -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1.1.11.

증명서류 원용 시 사본 제출 생략이 가능한가요?

- 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해 “위임장,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대표자 선임/승계인 증명서류”를 원용할 경우 사본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출원·청구 등의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으면서 아래의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위임장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우선권증명서류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절차를 밟는 경우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절차를 밟을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절차를 밟는 자가 제출명령을 받은 다음의 서류
 - 국적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또는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발급 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 비조약국 또는 비협정국 국민이 제출하는 증명서류
 - 절차를 밟을 자가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영업소) 또는 인감 등의 출원인정보변경을 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출원·청구 등의 절차를 밟을 때에 이미 상기의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그 내용이 동일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 때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사본을 제출할 시 또는 이미 제출된 동일 내용의 증명서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와 같이 첨부서류 란에 이미 제출한 원본을 원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위임장 1통(이하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함)
- 【서류명】특허출원서
【출원번호】10-2018-1234567

1.1.12.

익명으로 정보 제출 가능한가요?

- 출원 중에 제3자가 거절이유 등을 발견한 경우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사실이 공개될 경우의 부작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2020년 3월30일부터 익명으로도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익명으로 정보제출 시에는 정보제출활용결과 통지서가 정보제출인에게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정보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이용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정보제출서[제출구분 :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 시 전자서명을 해야 하므로 '제출인'항목 입력 및 '익명여부'항목에 체크하면 됩니다.
- 또한, 익명으로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별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1.2. 출원인(대리인) 변경

1.2.1.

출원인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원인에 의해 특허·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와 함께 권리관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 변경은 출원 중(출원에서 설정등록 이전까지)인 건에 대한 명의변경이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 1부
 -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계약서 또는 양도증 등)
 -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6개월 이내) 1통 : 양도증에 양도인의 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2013. 7. 22. 시행)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발급 후 6개월 이내 개인 또는 법인국적 증명서(공증)와 번역문

1.2.2.

등록결정서를 받은 건에 대해서도 출원인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특허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구분: 출원인 변경]’에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출원건의 설정등록전까지 출원인을 변경하는 권리관계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 특허 등록결정서 송달이후 설정등록 전에 출원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관계변경신고서는 출원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처리기간이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설정등록 절차 진행하기 10일정도 전에 미리 출원인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1.2.3.

하나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에 출원 중인 여러 건을 작성해도 되나요?

- 출원 중인 여러 건을 하나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로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에 각각의 사건을 표기하면 됩니다(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동일 권리에 한해 여러 건을 하나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로 작성 가능). 이 경우에 권리관계변경 수수료는 각건마다 온라인 11,000원/ 서면 13,000원(상속 및 법인의 분할·합병인 경우에는 온라인 5,000원/ 서면 6,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2호).

1.2.4.

양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 양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권리관계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양도증, 양도인의 공증받은 국적증명서(법인인 경우 공증 받은 법인국적증명서)와 번역문, 위임장(외국어인 경우 번역문 첨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관계변경 수수료는 각건마다 온라인 11,000원/ 서면 13,000원(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온라인 5,000원/ 서면 6,500원)입니다.

1.2.5.

상속 및 분할·합병으로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에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 상속 및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구분항목 : 출원인변경]'를 작성하고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합병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증 받은 분할계획서 등)를 제출하고 권리관계변경 수수료는 각건마다 온라인 5,000원/ 서면 6,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2호).

1.2.6.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출원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출원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와 변경원인 서류(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변경신고서[구분 : 출원인변경]'와 양도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증에 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를 제출합니다. 권리관계변경수수료는 각건마다 온라인 11,000원/ 서면 13,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1.2.7.

특허의 공동출원인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특허청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구분 : 출원인변경]’의 [변경원인]란을 일부양도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 1부
 - 양도증(양도증에 양도인의 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1통
 - 공동출원인의 동의서(동의서에 공동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1통
 - 양도인, 공동출원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 6월 이내)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2013. 7. 22. 시행),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 국적증명서(공증)와 번역문
 -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

1.2.8.

출원 시에 공동출원인 간에 설정된 지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공동출원인 상호간에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구분 : 출원인지분변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로 구분하여 출원인의 성명, 지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분약정서를 첨부해야 하고 지분약정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사건의 표시(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등), 지분약정사항, 작성일자, 공동 출원인 모두의 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2.9.

법인이 합병에 의해 출원인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출원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특허법 제37조에는 나머지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출원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허법 제38조에서 권리 승계에 해당하는 상속, 합병, 분할 등의 원인으로 출원인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2.10.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출원인 변경을 하려는데, 법인국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법인국적증명서는 무엇이며 왜 제출해야 하나요?

- 법인은 그 자체로서 외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미 법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이 본인회사 소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법인 인감에 대표자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등기관이 확인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처럼,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즉,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법인국적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 법인국적증명서의 예시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는 미국 법령 하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전술한 양도증서의 서명인인 ○○는 상기 법인의 대표자이며, 또한 상기법인을 대신하여 특허, 실용신안에 관한 소정 서류를 작성할 권리를 위임받은 수권자이다.

1.2.11.

협약요구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이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출원인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표인 경우 출원인간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출원인에게 추천일자를 통지하여 추천을 하고 추천에 의해 정해진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 만약 협약요구서를 받은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유지할 출원 건에 특허법시행규칙 제20호 서식 '권리관계 변경신고서[구분 : 협이에 의한 권리자선임]' 및 '권리관계 변경신고서[구분 : 출원인 변경]' 접수, 취하할 출원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취하서· 포기서[구분 : 특허 등 절차 취하]'를 접수하면 됩니다.

1.2.1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작성 시 병합기재 가능한가요?

- 대리인 선임, 대리인 해임, 대리인 사임,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해임, 복대리인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2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1.2.13.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대리인선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권리관계변경신고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위임사항에 “ooo 에 관한 출원인 변경”, “ooo 에 관한 출원인 변경에 관한 일체의 건”으로 기재되어 권리관계변경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관계변경신고만의 위임으로 봅니다. 즉, 향후 해당사건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건별 개별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2.14.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20이상의 사건을 병합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중 일부사건에 절차상 흠결이 있어 처리 불가능한 경우 일부 사건만 수리 가능한가요?

- 2이상의 사건을 병합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일부 건에만 반려사유가 있더라도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기재된 사건 전체가 반려됩니다.

1.2.15.

제출한 서류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나요?

- 해당서류가 수리되기 전에 서류반환요청 하면 취소 가능합니다.
 - 반환요청 가능 시기 :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 수리완료 전
 - 반환요청 대상 서류 : ① 권리관계변경신고서, ②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③ 서류제출서, ④ 정보제출서, ⑤ 수수료 사후감면신청서, ⑥ 취하(포기)서
 - 반환요청 시 이용하는 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서류반려요청서·반환신청서 [신청구분 : 반환신청]

1.2.16.

특허고객번호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특허고객번호의 중복 부여에 따른 정정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허고객번호의 오기재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잘못 출원되었다면 정당한 출원인으로 출원인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3. 출원서류의 공개

1.3.1.

출원공개란 무엇인가요?

- “출원공개”란 특허출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특허출원의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중복 투자 및 중복 연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특허법 제64조).
-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한 때 이루어집니다(특허법 제64조).

1.3.2.

출원의 조기공개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출원의 조기공개신청(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은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이 공개되기 전(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조기공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조기공개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디자인에 대하여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서식 제출 및 수수료 매건 온라인 21,000원, 서면 24,000원) 조기공개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출원이 공개됩니다.
- 출원공개 제외 대상
 -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출원
 - 등록공고를 한 출원
 -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 비밀취급을 요하는 발명

1.3.3.

공보란 무엇인가? 공개와 공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특허공보란 특허와 관련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특허청이 발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공개란 심사유무와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며, 공고란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특허권을 설정등록 할 경우 그 설정등록 된 특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1.3.4.

조기공개신청을 취할 수 있나요?

- 조기공개신청은 취할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신청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취하서· 포기서[구분항목 : 특허 등 절차 취하 - 조기공개절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3.5.

출원공개 효과는 무엇인가?

- 출원공개 효과(특허법 제65조) :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법 제62조에 규정된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2006. 10. 1.부터는 출원공개 전에도 출원계속 중이면 정보제공 가능).
- 한편,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는 후에는 그 특허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 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 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 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 등록 시까지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공개를 신청한다고 해서 특허의 심사 또는 등록까지의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1.3.6.

특허출원한 것을 타 업체에서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어 그 대응 방법으로 "출원공개 후 경고장 발송"하려고 합니다. 경고장 발송의 법적 효과가 무엇입니까? 또한 경고장 발송 없이, 특허등록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내는 경우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므로 특허권의 침해문제도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는 권리와 경고를 받

거나 출원공개 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추후 특허권이 설정등록이 되면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3.7.

본인이 특허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공개되어 있지만, 그 출원 내용은 공개된 타인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와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특허법상 선·후의 출원에 관한 등록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원래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와 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여 그 동일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본래의 선출원주의). 그러나 1980년 12월의 법 개정에서는 본래 의미의 선출원주의를 수정하여 후출원에 대한 선출원의 비교대상을 특허청구범위뿐만 아니라 명세서와 도면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3항, 제4항). 선원의 확대를 통하여 후출원서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원관계에 의하여 후출원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원의 확대 규정은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3.8.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출원 후의 보정에 의해 삭제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 본래적 의미의 선원에서는 후출원과 비교대상이 되는 선출원의 내용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었다가 보정에 의하여 삭제된 것은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반면에 출원 시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보정에 의해서 특허청구범위에 추가된 경우에는 선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확대된 선원의 지위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라면 이후 보정에 의해 삭제된 내용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출원 후의 보정에 의해 삭제된 발명이라도 출원 공개되며, 이로써 사회일반에게 공유된 발명에 대하여 사권화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9.

출원공개 전에 특허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의 경우 선원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까?

- 2006년 3월 3일 이후 특허출원된 사건이 출원공개 이전에 거절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선원의 지위를 배제합니다. 단, 협의 불성립으로 인해 거절된 대상 사건들은 선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1.4. 출원 취하·포기

1.4.1.

출원 중 취하(포기)서를 어떻게 제출하며, 취하서와 포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특허출원의 포기란 출원절차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로 출원포기가 된 경우에는 출원절차가 소멸되는데, 이는 포기서가 수리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원의 취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의 포기에 의하여 출원절차가 종료되면 보상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특허출원의 취하란 출원절차를 출원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출원의 취하가 있으면 출원절차가 특허출원 시에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이 취하된 때에는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출원공개 후에 취하되어 재출원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이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원의 “취하”란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출원을 철회하는 것을 말하며, 출원의 “포기”란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원의 취하는 출원의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흠결 등을 치유하여 완전한 출원으로 재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취하서·포기서[구분항목 : 특허 등 절차 취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취하서가 접수되면 서류상의 방식심사를 거쳐 출원취하로 처리되며, 취하서상의 보정, 반려 등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별도의 통지는 출원인에게 발송되지 않고 수리됩니다.

1.4.2.

출원 후 포기 또는 취하 되면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건(국제출원일이 2007. 7. 1. 이후 건에 대해 국내단계 진입한 건 포함)에 한해 출원 후 1개월 이내 해당 건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허, 실용신안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2013. 7. 1. 이후 출원건), 디자인출원료 및 우선권 주장료(2014. 7. 1. 이후 출원건), 상표출원료 및 우선권주장료(2013. 7. 1. 이후 출원건)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허·실용신안 :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 국제출원일이 2007년 7월 1일 이전 건에 대해 국내단계 진입 후 1개월 이내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 ※ 원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출원 시 원출원은 취하되므로 원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반환가능
 - 디자인 :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 분할출원,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
 - 상표 :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 마드리드 지정관청 진입한 출원
 -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 취하/포기한 경우 출원료 반환 가능
- 2015. 5. 18 이후 특허법이 개정되어 출원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심사착수 전에 출원취하를 하는 경우 심사청구료 반환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84조).

1.4.3.

취하서는 출원인 중 한명만 제출해도 되나요?

-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지만, 취하서는 공동출원인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므로 출원인 중 일부가 제출한 취하서는 반려됩니다.

1.4.4.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 특허법 제59조 제4항에서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의 출원심사를 청구한 이후에는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1.4.5.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요?

- 우선심사신청의 취하 또는 포기는 우선심사결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우선심사신청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에 특허청에 납부한 우선심사신청수수료 중 특허는 4만원, 실용신안은 2만원, 디자인은 1만4천원, 상표는 3만2천원(1상품류 구분마다)을 제외한 금액의 반환이 가능합니다.

1.4.6.

거절결정서 및 등록결정서를 받은 이후 취하할 수 있는지요?

- 취하서는 거절결정(거절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등록결정(설정등록 전) 이후에도 해당 출원이 계속 중이면 제출 가능합니다.

1.5. 증명·복사

1.5.1.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증명서, 서류의 등·초본 발급, 열람·복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출원이 공개된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해 누구나 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이 미공개 상태인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우편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열람신청서·복사신청서·발급신청서·재발급신청서·정정발급신청서 1부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통
 - 수수료(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동봉)
 - 인터넷 복사 신청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증명서발급 → 발급신청
- 수수료

서식명	신청 수수료
출원사실증명신청	온라인 : 무료 방 문 : 매건500원 × 신청부수 우 편 : (매건500원 × 신청부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우선권증명신청	방문/우편수령 : (증명료 매건500원 + 가산료(복사면수×100원)) × 신청부수 + (복사면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등록원부교부신청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	
심결문등본송달 증명신청	온라인 : 무료 방 문 : 매건500원 × 신청부수 우 편 : (매건500원 × 신청부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심판청구사실증명신청	
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	
반도체등록원부	
반도체서류철	방 문 : 매건500원 × 신청부수 우 편 : (매건500원 × 신청부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출원/거절/등록/심판서류철/명세서최종본	온라인 : 무료 방 문 : (복사면수 × 100원) × 신청부수 우 편 : (복사면수 × 100원) × 신청부수 + (복사면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 녹취테이프 : 개수 × 9,000원
최초출원인확인서	온라인 : 무료 방 문 : 매건500원 × 신청부수 우 편 : (매건500원 × 신청부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PCT서류철	방 문 : 복사면수 × 100원 우 편 : (복사면수 × 100원) × 신청부수 + (복사면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 우송료(등기우편료) 기준표

- 제증명 서류를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우송료(등기우편료)	신청부수(건)
2,450	1
3,140	2
3,760	3
4,380	4
5,000	5
5,620	6
6,240	7
6,860	8
7,480	9
8,100	10

● 수수료 납부 방법

- 우편 신청 시 : 우체국 통상환을 우편으로 발송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우)35208

- 방문 신청 시 : 신청서 접수 후 발급받은 “특허료·등록료·수수료의 납입영수증”을 지참하여 일
일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온라인 납부 시 : 온라인으로 증명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에 접속하여 온라인 납부 또는 인터넷 지
료(www.giro.or.kr)에서 납부

※ 각종 증명서류 복사·열람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수료 납부 확인 후 발급 처리하는데 통상 3일 정도 걸립니다.

※ 증명서류 수취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고 인터넷으로 수수료 납부할 경우 당일처리가 가능합니다.

1.5.2.

**선임된 대리인은 아니지만 포괄위임 맺은 대리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 복사
신청 가능합니까?**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선임된 대리인이 아니어도 포괄위임을 맺은 대리인이라면 공개건 및 미공개 건에 대한 서류의 등·초본교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공개 건에 대한 최종본 파일은 선임된 대리인인 경우에만 복사신청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포대복사 및 증명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임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위임 맺은 대리인이라도 출원, 등록, 심판 포대 복사 및 각종 증명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심판서류철복사신청은 선임된 대리인만 가능하고 서면신청은 개별위임장 첨부 또는 포괄위임 번호 기재해서 복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심결확정(당사자계심판) 또는 심결(결정계심판)후에는 제3자 누구나 온라인으로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제출한 서류만 발급 가능하고 서면으로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1.5.3.

출원명세서(디자인 도면) 최종본(*.FIN)파일을 교부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특허, 실용신안 명세서 및 디자인 도면에 대한 내용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명세서(디자인 도면) 최종본(*.FIN)파일이 필요합니다. 최종본 파일을 분실한 경우 특허청을 방문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신청구분 : 서류등본(초본) 교부]'로 선택하여 "출원명세서(디자인 도면) 최종본 파일"을 복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시 최종본을 받을 USB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출원명세서 및 디자인 도면 최종본 파일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증명서발급 → 발급신청 → 최종본 다운로드"에서 출원번호를 입력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5.4.

출원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원사실증명신청 자격은 출원인, 발명자, 등록권리자, 위임받은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출원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으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증명신청서· 접근코드부여신청서[신청구분 : 출원사실증명]을 작성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출원사실증명원은 온라인에서도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공인 인증서 등록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증명서발급 → 발급신청 → 출원사실증명신청' 코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5.5.

출원사실증명원에 발명자 정보도 기재되어 있나요?

- 발명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출원 중인 건에 대해서 발명자를 추가 및 정정한 경우 출원사실증명원을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 및 정정된 발명자도 확인됩니다.

1.5.6.

출원사실증명원에 권리관계변경신고 시 설정한 지분이 기재되나요?

- 권리관계변경신고를 통해 출원인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출원인은 기재되나, 지분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1.5.7.

우선권증명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권증명 신청 자격은 출원인, 발명자, 위임된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우선권증명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증명신청서· 접근코드부여신청서[신청구분 : 우선권증명]'를 작성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우선권증명서류는 온라인에서도 신청은 가능하나 방문/우편수령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공인 인증서 등록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증명서발급 → 발급신청 → 우선권증명신청' 코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5.8.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최초출원인확인서의 신청 자격은 최초 출원인, 발명자, 현재의 출원인, 등록권리자, 위임된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최초출원인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별지 제29호 서식 '열람신청· 복사신청서· 발급신청서· 재발급신청서· 정정발급신청서[신청구분: 서류등본(초본)발급]'의 [신청대상]란을 "최초출원인확인서"로 선택하여 복사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증명서발급 → 발급신청 → 최초출원인확인신청' 코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5.9.

국내우선권주장으로 후출원한 경우 선출원건에 대한 복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건이라면, 선출원이 취하간주 되었던 거절결정 확정되었던 상관없이 제3자는 일체 복사 불가합니다. 다만 관련 출원인이나 선임된 대리인이라면 가능합니다.
- 단, 제3자도 출원인으로부터 해당 서류 복사 가능하다는 동의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선출원에 대한 서류복사가 가능합니다.
- 다만, 2017년 3월 1일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국내우선권주장한 후출원건이 출원공개되거나 설정 등록되면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제3자의 서류열람이 가능합니다(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건의 출원일자가 2017년 3월 1일 이후 건부터).

제2장 특허 · 실용신안

2.1. 출원서등 보정

2.1.1.

보정의 범위 및 보정료는 어떻게 됩니까?

- 보정은 내용보정과 절차보정이 있습니다. 내용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보정하는 것이고 절차보정은 수수료 미납, 첨부서류 미제출 등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내용보정은 다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흠결을 스스로 보정하는 자진보정과 출원에 대한 심사 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발송한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한 통지보정이 있습니다.
- 자진보정 및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의 허용범위 특허법 제47조 제1항 본문과 동항 제1호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규사항 추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정기간(특허법 제47조)
 - 자진보정 : 특허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시 심사관으로부터의 거절이유통지 등이 없는 출원인은 특허결정등본 송달 전에는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 통지보정 : 자진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의견 제출 기간 내 또는 특허법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2009. 7. 1. 이후 출원건)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은 출원인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연장신청기간이 연장가능기간(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자동 승인하고, 초과된 경우에는 소명사항이 초과기간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관이 판단하여 인정 여부 결정합니다.
- 제출인 :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
- 보정료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내용보정(명세서등 보정) 구분 없이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보정료 14,000원, 온라인으로 제출 시 보정료 4,000원이며, 보정서 접수 후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방식담당자가 수수료 미납으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며 보정요구서 안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합니다.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제출기일까지 수수료 납부를 하면 됩니다.

2.1.2.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 작성 시 보정료가 있는 항목은 어떤 항목인가요?

-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합니다(특허청 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제2016-16호).

권리별	보정료 납부대상	
	보정사항	보정료 납부범위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공통	1. 위임장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포괄위임인 경우 출원서에 포괄위임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② 서명, 날인이 없거나 선명하지 않은 경우 및 정당하지 않은 인장을 날인한 경우 ③ 위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④ 위임자 및 수임자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⑤ 사건의 표시(출원번호 등)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2. 심판청구이유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번역문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권리 범위확인 심판청구시 첨부서류	①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③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등록된 소리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소리파일, 냄새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냄새견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권리별	보정료 납부대상	
	보정사항	보정료 납부범위
특허 · 실용신안	1. 명세서 (도면포함)	①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서에 서열목록을 전자파일로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2. 정정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서류	① 전용권자, 질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등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 청구의 필요적 기재서류 (16년9월신설)	① 전용권자, 질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등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	1. 도면	①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2. 출원변경	①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경우 ②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경우
상표	1. 단체표장의 경우 정관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2. 지정상품의 보정	①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이란 이유로 보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 i) 상표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상품류 구분)의 명칭을 동일하게 기재한 경우 ii) 지정상품을 “---부품, ---부속품, 기타 ---, 각종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 등과 같이 표기하는 경우
	3. 견본의 보정	①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4. 증명표장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5.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시각적 표현 보정	① 소리, 냄새상표 등의 시각적 표현을 보정하는 경우
	6. 업무표장의 경우 지정업무 경영사실 입증 서류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지정업무경영사실 입증서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2.1.3.

위임장과 지분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위임장만 보정 할 경우 특허출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지분약정서는 제출하지 않고 위임장만 보정할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분약정에 대하여만 일부 무효 처분합니다. 이 경우 지분약정을 제외한 출원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일부무효처분 대상 : 우선권 주장, 출원인대표자선임, 지분약정, 심사청구, 조기공개, 디자인비밀 보장청구,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공지에외주장

2.1.4.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서에 기재한 발명자(고안자, 창작자) 정정이나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서에 발명자·고안자·창작자 중 일부의 발명자·고안자·창작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때에는 그 출원의 설정등록전 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

2.1.5.

최초 출원 시에 우선권주장을 하였습니다.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입니까?

- 2001년 2월 3일 개정법령에 의하여 최초 출원서에 기재한 우선권주장은 보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선권주장을 최초에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특허법 제54조 제7항).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는 우선권주장 관련 출원의 최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해당 증명서류도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54조 제5항).
- 우선권주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1우선권주장마다 온라인: 18,000원 / 서면: 20,000원의(2012. 7. 1. 이후 신규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건부터)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1.6.

국내우선권 주장 후에 후출원건에 대해서 출원인 변경을 하면 선출원건도 출원인 변경을 해야 하나요?

- 출원시점에만 출원인이 동일하면 되고 후출원건에 대해서 출원인을 변경해도 선출원건은 출원인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2.1.7.

출원 중 절차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연장이 가능한지요?

- 출원 중 절차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매회 1월 또는 1월 이상 신청 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국내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2조).
- 방식담당자는 4개월에 해당하는 지정기간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차후 기간 연장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1.8.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를 서면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보정료가 차이가 있나요?

-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특허청 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에 의거하여 보정료 납부대상에 해당될 경우 보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보정료 14,000원, 온라인으로 제출시 보정료 4,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2.1.9.

출원서를 제출한 후에 위임장 미제출로 보정을 받고 보정서로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잘못 제출하여 다시 보정서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를 또 납부해야 하나요?

- 2013년 5월 24일 이후 보정서 접수하는 건부터 위임장 보정인 경우 최초 1회만 보정료를 납부하도록 보정료 납부요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동일 접수 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위임장 보정으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해당 건에 대해서 보정요구서를 받고 위임장 보정을 다시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2.1.10.

출원서에 공지에외적용주장 취지와 증명서류를 누락하거나 또는 추가할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하나요?

- 공지에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으로 보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015. 7. 29. 이후 출원건 부터).
- 보완 기간
 -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자진 보정기간, 통지 보정기간, 재심사청구와 동시)
 - 등록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설정등록전까지)
 -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한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함, 재심심결 포함)의 경우, 그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단, 설정등록전까지)

● 보완 대상

- 2015년 7월 29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실용신안도 동일)
- PCT 국내단계진입(203조서면)건은 국제출원일이 2015년 7월 29일 이후인 건부터 적용
- 파리조약 우선권은 후출원일이 2015년 7월 29일 이후인 건부터 적용

● 제출 서류 및 보완 수수료

1. 제출 서류

- 취지보완 + 증명서류 제출인 경우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완]'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제출구분 : 공지에의적용 보완 증명서류]'
- 증명서류만 제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제출구분 : 공지에의적용 보완 증명서류]'

2. 수수료

- 온 라 인 : 공지에의주장 1보완서마다 18,000원
 - 서 면 : 공지에의주장 1보완서마다 20,000원
- 예시) 보정서 1건 제출, 증명서류 2건 제출 : 보완료 18,000원
 보정서 2건 제출, 증명서류 각 1건씩 제출 : 보완료 36,000원

2.2. 명세서등 보정

2.2.1.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의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을 삭제,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 특허법 제47조 제1항 본문(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및 동항 제1호(최초거절이유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할 수 있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신규사항추가금지).
-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및 동항 제3호(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며(신규사항추가금지) 특허, 특허청구범위 보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①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③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 ④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위 내용 ①~③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2.2.2.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명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명세서등 보정]’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서를 작성할 때 [보정대상]을 “발명의 명칭”, [보정방법]을 “정정”, [보정내용]을 “변경 후 발명의 명칭”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정료 14,000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 4,000원이 소요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2.2.3.

명세서등 보정서의 제출원인번호는 어떤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 명세서 등 보정서는 자진보정인 경우 출원서의 접수번호를 적고 통지보정인 경우 의견제출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2.4.

보정 시 심사청구항을 추가할 때 보정료 납부를 하는지요?

-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정료 14,000원이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 4,000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심사청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을 추가할 때 추가심사청구료(청구범위 1항마다 44,000원 가산되며, 출원일자가 2014. 3. 1. 이전인 경우에는 청구범위 1항마다 40,000원 가산)가 발생하고, 심사청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심사청구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5.

보정서, 의견서의 지정기간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보정요구서, 의견제출통지서의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와 그 흠결을 치유할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 연장신청서· 기간 단축신청서·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 절차 계속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지정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만료일).
- 종류에 따른 기간연장신청(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 절차의 보정 중 방식심사에 따른 보정통지 : 1월씩 4회 지정기간연장 가능
 - ※ 2008년 7월 1일 이후 기간연장신청부터 4회 기간연장신청이 접수되어 방식 담당자가 수리할 때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기간연장 승인하지 않는다.”는 통지서가 발송됨(출원관계 사무취급규정 제12조 제4항)
 - 의견제출통지서 : 매회 1개월씩 총 4회까지 지정기간연장 가능
 - ※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송된 의견제출통지서 지정기간(2개월)의 연장가능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입니다. 초과 신청할 경우 연장신청서에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의견제출통지서와 4회째 연장을 승인할 시에 5회 이상 연장 신청 시 소명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을 통지합니다.

● 초과기간 인정사유

- ①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를 해임·변경한 경우
- ②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새로운 출원인이 추가된 경우에 한함
- ③ 기간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후 이를 기간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 ④ 의견제출통지서의 송달이 1월 이상 지연된 경우
- ⑤ 원출원 또는 후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 ⑥ 거절이유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 ⑦ 기타 불가피하게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제3자가 심사 청구한 출원에 관한 기간연장인 경우에는 ①~⑤의 경우라도 불인정

- 결정계 심판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한하여 2개월 이내로 승인
- 기술평가 의견제출통지서 : 1월 1회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정정청구불인정통지에 대한 기간연장 : 1월 1회 연장 가능

● 필요서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 연장신청서· 기간 단축신청서·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 절차 계속 신청서

● 지정기간연장신청료

-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 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우체국의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신청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대전 특허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2.6.

특허출원 시 미완성발명을 보정에 의해 완성발명으로 보정한 경우, 명세서 등 보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며, 이에 대해 출원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 특허법 제47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보정서가 제출되었다면 심사관은 신규사항추가금지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되고,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보정서가 제출되었다면 심사관은 그 보정을 각하하고 보정서 제출 이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에 출원인은 그 보정각하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특허거절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1조 3항).

2.2.7.

특허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특허출원 후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 서식 ‘의견서·답변서·소명서’는 출원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이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명세서등 보정]’는 명세서, 도면 등을 정정·추가·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2.8.

의견제출통지서의 대응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정된 기간을 넘긴 경우 향후 당해 출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니까?

- 지정기간이 경과되어 접수된 보정서는 부적법한 서류로 반려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따라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재심사하여 당초 거절이유를 반복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당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의 거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를 하거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9.

의견제출통지서에 지정기간단축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지정기간단축 신청에 체크하고 단축 이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축 이유는 통상 신속처리로 기재하면 되고 단축신청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정서 제출 시 지정기간 단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 연장신청서·기간 단축신청서·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절차 계속 신청서[신청구분 : 지정기간 단축]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지정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 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 포함)에는 그 제출일에 지정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2.2.10.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이, 출원인이 아닌 발명자 명의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서류로 인정되는지요?

- 당해 출원에 대한 모든 절차는 출원인(대리인은 수권범위 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 또는 선임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명자에 의하여 제출된 당해 서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서류는 제출인에게 반려하고 의견제출 통지 기간 내에 출원인 명의로 의견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2.11.

청구범위제출유예건에 대해 청구항을 제출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무엇입니까?

-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건으로 최초 출원 시【청구범위】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특허 청구범위를 제출하는 경우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명세서등 보정]’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서”를 작성할 때 보정서 별지내용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청구범위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청구범위】

【청구항 1】

.....

【청구항 2】

.....

-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정료 14,000원이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 4,000원이 소요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 출원한건이 최초 출원 시【청구범위】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른 기간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청구범위제출유예 출원건 청구범위 제출 기간〉

② 특허출원일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 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42조의2 2015. 1. 1. 개정)

2.2.12.

청구범위제출유예건에 대해 보정서 접수 시 기재하는 접수번호는 어떤 접수번호를 작성합니까?

- 자진으로 명세서등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출원 시의 출원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2.2.13.

청구범위제출유예건으로 출원한건에 대해서 공개시점이 되었는데 청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공개되지 않습니까?

- 특허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실용신안출원은 취하되며,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2.14.

출원 후 거절결정서 받고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나요?

- 2009년 6월 30일 이전 출원인 경우(최초출원일자 기준)
 - 거절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명세서등 보정]'를 작성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는 여러 번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인 경우(최초출원일자 기준)
 - 거절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명세서등 보정, 기타사항 : 재심사청구]'를 작성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기간 내 이더라도 명세서등 보정(재심사청구)은 1회만 제출 가능합니다. 만약,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없습니다.
 - ※ 최초출원일 기준이므로 분할출원, 변경출원은 원출원일로 소급적용 되어 원출원일자 기준으로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2.2.15.

임시명세서 출원 후, 정식 명세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2020년 3월 30일부터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하면서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명세서(논문, 연구노트, 기술서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출원일(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식명세서는 전문보정을 통해 제출하며 해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 내
 - 서 식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보정서[보정구분 : 임시 명세서 보정]
 - 수수료 : 온라인 4,000원, 서면 14,000원
- 임시 명세서 보정절차는 1회에 한해 제출 가능하며, 미제출 시 그 다음날 출원 취하 간주됩니다.

제3장 디자인

3.1. 출원서등 보정 및 절차 보완

3.1.1.

출원인의 명칭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정요구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출원인 명칭이 잘못 기재되어 보정요구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보정(절차보완)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를 제출하여 오기재 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3.1.2.

단독 ↔ 관련, 심사 ↔ 일부심사로 변경 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무엇인가요?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 심사등록출원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상호간의 변경 시에는 디자인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보정(절차보완)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를 제출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 “단독 ↔ 관련”, “심사 → 일부심사”로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 14,000원이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 4,000원입니다. 단, “일부심사 → 심사”로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63,000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53,000원 발생합니다(2015. 1. 1. 시행).
- 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재심사보정 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40,000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30,000원이 소요됩니다. 단,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여 재심사보정 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89,000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79,000원이 소요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제1항 제7호).

3.2. 도면등 보정

3.2.1.

디자인출원 후 자진으로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지요?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보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결정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자진으로 보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까지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48조).

3.2.2.

도면 또는 디자인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 도면 또는 디자인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나 디자인의 설명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보정(절차보완)서[보정구분 : 도면등 보정]'로 기재하여 보정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 도면을 보정하기 위해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면 제출 시에는 14,000원, 온라인 제출 시에는 4,000원의 보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3.2.3.

보정서, 의견서의 지정기간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보정요구서, 의견제출통지서의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와 그 흠결을 치유할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 연장신청서· 기간 단축신청서·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 절차 계속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정기간 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만료일.
- 종류에 따른 지정기간연장신청
 - 절차의 보정 중 방식심사에 따른 보정통지 : 매회 1개월씩 총 4회까지 지정기간연장 가능
 - 의견제출통지서 : 매회 1개월씩 총 4회까지 지정기간연장 가능

- 필요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 연장신청서· 기간 단축신청서·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 절차 계속 신청서
- 지정기간연장신청료 : 1회 20,000원, 2회 30,000원, 3회 60,000원, 4회 120,000원, 5회 이상 240,000원

※ 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우체국의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신청서와 함께 대전 특허청으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2.4.

디자인출원 시 도면 또는 사진으로 출원한 후 3D파일로 보정하거나 3D도면으로 출원한 후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정이 가능한가요?

- 2020년도 8월 31일 이전 출원건은 3D파일과 도면 또는 사진은 상호 보정이 불가능하며 혼합하여 보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3D파일로 출원한 경우 3D파일로만 보정이 가능(동일한 형식일 필요는 없음. 예 : 3ds → dwg)합니다.
- 2020년도 8월 31이후 출원 부터 3D(2D 도면)과 2D 참고도면(3D 참고도면)을 병기하여 출원 가능 및 3D로 출원한 도면을 2D 보정 또는 2D 출원한 도면을 3D 도면으로 보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상디자인출원 뿐만 아니라 2D 및 3D 도면의 디자인등록출원 시, 참고도면 항목에 동영상 파일도 첨부 가능하며, 도면 및 참고도면을 2D 및 3D도면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로 정정 가능합니다.

3.2.5.

디자인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했는데 기한 내 증명서류 제출 못한 경우 추후 제출 가능한가요?

- 출원 시 또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예고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신규성 상실예외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됩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견서로 신규성 상실된 내용을 기재 후 첨부서류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 디자인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2017. 9. 22. 개정)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 무효심판에 대응하는 답변서 제출 시

제4장 상표

4.1. 출원서등 보정

4.1.1.

상표등록출원 후 보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견본 보정이 가능합니까?

- 최초 상표(업무표장, 단체표장)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원공고 결정 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고, 출원공고 결정 후에는 거절이유나 이의신청 이유 등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상표법 제40조 및 제41조).
 -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 오기의 정정
 -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 그 밖에 제36조 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상표법 제36조 제2항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 상표견본 보정은 불가능합니다. 상표 이미지의 흐릿한 색상을 명확히 하는 경우, 상아닌 품질 표시 등 문자, 도형 또는 기호 등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보정이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변경된 상표견본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보정(보완)서”를 작성(보정구분 : 상표견본의 보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보완)서”작성 방법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시[보정할 사항][보정대상 항목] 상표견본[보정방법] 정정[보정 내용] 보정된 견본을 첨부형태로 기재해서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정료
 - 지정상품 및 견본보정 : 온라인으로 제출 시 4,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서면으로 제출 시에는 14,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1.2.

상표등록출원 후에 익일까지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표출원 후 익일까지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보정요구서가 발송되며, 보정요구서를 송달 받은 이후에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요구서에 첨부된 수수료 납입 영수증을 통해 납부하시거나,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정(보완)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접수 그 다음날까지 그 문서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미납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4.1.3.

지정상품보정 후에 상품류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보정료는 얼마입니까?

- ‘보정(보완)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 매건 14,000원이며, 보정 후 상품류 개수가 보정 전 상품류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마다 72,000원이 가산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는 매건 4,000원이며, 보정 후 상품류 개수가 보정 전의 상품류 개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가산됩니다(2014. 3. 1.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 2012년 4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수수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2012년 4월 1일 이후 상표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 받고 보정하는 경우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씩 가산금이 발생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4.1.4.

상표등록출원 시 상표유형 없음으로 출원을 했는데 색채상표로 보정이 가능한가요?

- 상표등록출원 시 첨부한 상표의 견본은 색채상표로 첨부하고 출원서에 상표유형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보정(보완)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로 상표유형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유형 보정인 경우 별도의 보정료는 없습니다.

4.1.5.

상표 분할출원 시 분할출원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상품류 자체를 통째로 분할하는 경우는 1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상품류의 지정상품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 서면은 1류당 72,000원, 온라인 제출 시 1류당 62,000원(2014. 3. 1. 시행)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지정상품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 명칭만으로 온라인으로 제출 시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 원출원일자가 2012년 4월 1일 이후 분할출원 건은 지정상품을 일부 분할출원하면서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씩 가산금 발생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4.1.6.

보정서를 통해 삭제된 지정상품에 대해 분할출원이 가능한가요?

- 분할출원이 불가능합니다. 분할출원 당시 유효하게 인정되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삭제한 지정상품을 다시 추가하는 보정서를 제출한 이후에 분할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분할한 지정상품을 다시 삭제하는 보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4.1.7.

보정(보완)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로 지정상품 보정 시 보정내용 기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보정할 경우에는 보정하는 상품류나 지정 상품만을 적고, 보정하지 않는 상품류나 지정상품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할 상품류와 지정 상품만을 적되, [보정 전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는 보정전에 작성되어 있는 삭제 또는 수정할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적고, [보정 후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는 보정하고자 하는 즉, 수정하여 등록받고자하는 상품류와 지정상품만을 적습니다.

- 보정내용 기재방법 예시

〈예시 1〉

보정 전 지정상품

1류 : A, B, C

2류 : D

보정 후 지정상품

1류 : A, B, E

2류 : D 삭제

【보정대상항목】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보정 전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1류

【지정상품】 C

【상품류】 제2류

【지정상품】 D

【보정 후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1류

【지정상품】 E

〈예시 2〉

* 지정상품 삭제 보정 시

예) a,b,c → c삭제

보정 전 : c

보정 후 : 기재안함

* 중복 입력된 상품 삭제보정 시

예) a,b,b → b삭제

보정 전 : b, b

보정 후 : b

* 지정상품 추가 보정 시

예) a,b → c추가

보정 전 : 기재안함

보정 후 : c

4.1.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후 정관 등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정관을 보정해야 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정(보완)서[보정구분 : 수정정관 제출]'에 수정된 정관과 정관 요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관 요약서 또는 정관 부속서를 보정해야 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정(보완)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에 정관요약서 또는 정관 부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1.9.

증명표장 출원 시 정관을 미제출한 경우 보정료가 있습니까?

- 정관을 미제출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서면 제출 시 14,000원, 온라인 제출 시 4,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4.1.10.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출원 후 상표의 시각적 표현 부분을 보정할 수 있습니까?

- 출원서에 상표유형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 서식 '보정(보완)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로 "상표의 시각적 표현" 항목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시각적 표현" 항목 보정인 경우 서면 제출 시 14,000원, 온라인 제출 시 4,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4.1.11.

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의미를 몰라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을 체크하고 출원번호는 국내출원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출원은 우선권주장에 하자가 있는 출원이므로 특허청에서 이에 대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주장에 대하여만 일부무효 처분되고 우선권주장을 제외한 출원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우선권주장 무효처분 시 우선권주장료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6조, 제79조).

4.1.12.

의견제출통지서 받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의견 제출할 수 있나요?

- 출원인이 의견서를 의견제출통지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계속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 제87조, 제210조).
- 제출 서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 연장신청서· 기간 단축신청서·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 절차 계속 신청서[신청구분 :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견(답변서, 소명서)[서류 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절차계속 신청료 : 40,000원 (의견서 제출 시 수수료 없음)

4.2. 상표건본 보정

4.2.1.

“A”라는 상표로 출원하고 “B”라는 상표로 정정 가능한가요?

- 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이미지의 흐릿한 색상을 명확히 하는 경우,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보정은 가능하겠으나(예 : 주식회사 삭제 등), 부기적 부분이 아닌 품질표시등 문자, 도형 또는 기호 등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보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표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표건본 보정은 불가능하고 신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상표법 제40조).

- 2014년 1월 1일 이후 오기의 정정은 그동안 지정상품 오기의 정정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표장도 오기의 정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되었습니다(다만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예) 표장에 “○○○주식회사”와 같이 기재된 경우 “○○○주식회사”로 정정하는 경우 오기의 정정으로 보고 인정함
- 2014년 1월 1일 이후 상표의 구성 중 부기적 부분에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견본을 보정하는 경우에 서면 제출 시 14,000원, 온라인 제출 시 4,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4.2.2.

상표 거절예고 통지서 받고 기간연장 가능한가요?

- 상표 거절예고통지서에 대한 기간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단, 기간단축 신청은 가능합니다.

CHAPTER

IV

심사절차

제1장 심사공통업무	168
제2장 특허·실용신안	184
제3장 디자인	193
제4장 상표	197

www.kipo.go.kr

목차

제1장 심사공통업무

1.1. 우선심사	168
1.1.1. 우선심사란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68
1.1.2. 특허와 실용신안의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무엇인가요?	168
1.1.3.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는 무엇인가요?	172
1.1.4.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실용신안등록출원도 적용되나요?	173
1.1.5.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173
1.1.6. 디자인의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무엇이고,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174
1.1.7. 상표의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무엇이고,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176
1.1.8.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얼마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178
1.1.9.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이 아닌 자의 공동출원인 경우에도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178
1.1.10. 개인이 출원한 건에 대해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하여,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를 받은 경우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통해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벤처기업)으로 출원인을 변경하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79
1.1.11. 실시 중임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특허출원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실시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요?	179
1.1.12. 특허·실용신안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너머에 해당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에 해당하는 분류에는 어떠한 분류가 해당되나요?	179
1.1.13. 우선심사신청의 취하도 가능한지요?	180
1.1.1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고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에 우선심사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나요?	181
1.1.15.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하거나, 우선심사 여부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납부한 신청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181
1.1.16.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에 대한 대응 기간의 기간연장신청을 하거나,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에 대응한 후에 그 대응 기간에 대한 기간단축신청이 가능한가요?	181
1.1.17. 이미 심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심사결정이 가능한지요?	181
1.1.18.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한가요?	182

1.1.19.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182
1.1.20. 외국인이 출원인일 때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182
1.1.21. 국가로부터 기술개발 지원을 받았는데 1인 기업인 경우에도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나요?	182
1.1.22. 일괄심사제도란 무엇입니까?	183

제2장 특허·실용신안

2.1. 심사청구 및 절차	184
2.1.1. 심사란 무엇인가요?	184
2.1.2. 심사청구란 무엇이며, 심사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84
2.1.3.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에 대해서도 심사청구가 가능한가요?	185
2.1.4. 임시명세서로 출원한 출원에 대해서도 심사청구가 가능한가요?	185
2.1.5.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나요?	185
2.1.6. 특허(실용신안)심사유예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유예희망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186
2.1.7.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료 납부도 유예 가능한가요?	186
2.1.8. 자연재해로 심사청구기간 내 (재)심사청구를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없나요?	186
2.1.9.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특허출원을 무권리자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했다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나요?	187
2.1.10. 재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187
2.2. 심사진행	188
2.2.1. 특허 분류(IPC, CPC)란 무엇인가요?	188
2.2.2. 선행기술조사란 무엇인가요?	188
2.2.3. 심사착수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88
2.2.4. 출원에 대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189
2.2.5.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보정사항을 누락한 경우 거절결정 되나요?	189
2.2.6. 의견제출통지 기간 내에 복수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모든 보정서에 대한 보정내용을 심사하나요?	189
2.2.7.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정할 수 없나요?	190
2.2.8.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심사관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90
2.2.9. 예비심사의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90
2.2.10. 재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심사관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91
2.2.11. 특허여부결정보류신청서는 어떤 경우 작성하나요?	191
2.2.12.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출원과 관련하여, [연장등록신청기간]을 잘못하여 최종 거절결정서를 받게 될 경우, 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30일 이내에 거절이유인 [연장등록신청기간]에 대한 보정이 가능한가요?	191

2.3. 특허결정	192
2.3.1 '결정'이란 무엇이고 결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192
2.3.2. 심사한 특허출원이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며, 출원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92
2.3.3. 등록된 권리를 분할출원 할 수 있나요?	192

제3장 디자인

3.1. 심사절차	193
3.1.1. 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93
3.1.2. 디자인도 특허나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선행디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193
3.1.3.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93
3.1.4.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도 심사등록출원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나요?	194
3.1.5. 디자인에도 재심사청구제도가 있나요?	195
3.2. 등록결정	195
3.2.1. 디자인등록결정서를 받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나요?	195

제4장 상표

4.1. 심사절차	197
4.1.1. 상표출원 후 심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97
4.1.2.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197
4.1.3.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97
4.1.4. 의견제출통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후 제출 가능한가요?	198
4.1.5.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이 심판은 청구하고 출원을 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해당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 누가 등록받을 수 있나요?	198
4.2. 출원공고결정	198
4.2.1.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출원공고결정서가 무엇인가요?	198
4.2.2.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언제쯤 등록받을 수 있습니까?	199
4.2.3. 출원공고결정 후 지정상품이나 상표의 보정이 가능한가요?	199

4.3. 이의신청	199
4.3.1.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절차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199
4.3.2. 이의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요?	200
4.3.3.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을 보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보정료가 발생하나요?	200
4.3.4.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에 대한 보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200
4.3.5.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출원인이 최초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200
4.4. 등록결정	201
4.4.1. 상표등록결정서를 받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나요?	201

제1장 심사공통업무

1.1. 우선심사

1.1.1.

우선심사란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우선심사”란 우선심사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의 우선심사 신청 및 특허청 심사관의 우선심사 결정에 의하여 본래의 심사 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모든 권리에서 시행 중이나, 그 신청대상은 권리별로 상이합니다.
- 특허와 실용신안에서의 우선심사란 심사청구 된 출원 중에서 그 심사청구의 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9조).
- 디자인과 상표에서의 우선심사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 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61조, 상표법 제53조).
- 우선심사의 신청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표 :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만 상표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거나, 상표법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중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없었던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할 수 없습니다.

1.1.2.

특허와 실용신안의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무엇인가요?

-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특허출원은 특허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우선심사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1999년 7월 1일 ~ 2006년 9월 30일 사이에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 산업 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 (6) 기타 국가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 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 (3)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 (4) 「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 (5) 삭제
- (6) 삭제
- (7) 삭제
- (8) 삭제
- (9) 삭제

사. 삭제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 중이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은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본다.

- (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특허선도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특허선도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발명에 대한 출원.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으로 한정한다.
-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 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의 출원. 다만,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 (4)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신청하는 발명과 관련된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 (5)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신청인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차. (삭제)

- 카. (삭제)
- 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 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다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 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 시설
 -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 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출원
- (1) 65세 이상 고령자
 - (2)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까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 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청요건을 갖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별표 1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
- 가.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이하 ‘대상국가등’이라 하고 정부간 기구를 포함한다)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하 ‘최우선일’이라 한다)과 대한민국 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 나.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과 대한민국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1.1.3.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는 무엇인가요?

- 특허심사하이웨이란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과 대한민국 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및 대상국가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 또는 최우선일과 대한민국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PPH나 PCT-PPH는 우선심사신청 대상 중의 하나이므로 시행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요국 특허청과의 심사협력을 강화하여, 상대국 특허청이 이미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심사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심사는 독자적으로 진행).
-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특허청(특허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PPH :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EPO,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유라시아, 페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34개)
 - PCT-PPH : 일본, 미국, 중국, 오스트리아, 노르딕 특허기구,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헝가리, EPO,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독일,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EAPO(유라시아특허기구),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총 31개국)
- 신청요건
 - 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청구항이 1개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어야 합니다.
 - 본원출원인 우리나라 출원에 심사청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상대국 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청구범위」 및 「그 번역문」
- 「상대국 특허청이 발부한 심사관련통지서」 및 「그 번역문」
- 상기 심사관련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 한국 특허출원과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항 대응관계설명표

※ 신청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신청서 서식, 제출 서류의 종류, 제출서류 및 제출 생략 조건, 심사절차)은 특허청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 제도 → 특허특허심사하이웨이 메뉴에서 해당국과의 세부 시행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4.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실용신안등록출원도 적용되나요?

-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특허출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1.5.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1통[구분항목 : 우선심사신청]
 -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에 의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생략가능)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 증명서류 1통
 - ※ 제3자 실시에 의한 경우 조기공개 신청
 - ※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훈령/예규/고시 →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별지 제5호 서식 참고.(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 → 민원서식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 이하 '고시'라고 함). 고시 제4조제1호 또는 제4조제2호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따라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고시 제4조제3호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 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고시 제4조 제4호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특허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

문기관에 요청한 출원)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된 출원임을 표시하고 의뢰기관, 의뢰일자 를 기재함으로써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는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훈령/예규/고시 →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별표 1에서 확인 가능

-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특허 : 200,000원, 실용신안 : 100,000원

1.1.6. 디자인의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무엇이고,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출원 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에 따라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나.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출원

다.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사.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발

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아. 「산업디자인진흥법」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
 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 (3) 「에너지법」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사업
- (5) 「산업융합 촉진법」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 (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7)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 (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차.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 (2)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 (3)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

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파.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하.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거.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 (2) ㈜웍스

너.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

●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1통[구분항목 : 우선심사신청]
-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 관한 고시」제4조에 의해 선행디자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생략가능)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 증명서류 1통
 - ※ 제3자 실시에 의한 경우 디자인 공개 신청
 - ※ 우선심사신청설명서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훈령/예규/고시 →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별지 제2호 서식 참고.(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디자인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6조제1항, 이하 ‘고시’라고 함). 고시 제4조 제2호거목에 따른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선행디자인 조사 의뢰된 출원임을 표시하고 의뢰기관, 의뢰일자를 적음으로써 디자인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는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는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훈령/예규/고시 →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별표에서 확인 가능
- 우선심사신청료 : 1디자인마다 70,000원

1.1.7. 상표의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무엇이고,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표등록출원은 상표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처분신청을 한 경우

-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3.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4.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 4의 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5. 「상표법」제167조의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 표장을 출원한 경우
 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출원
 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9.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1통[구분항목 : 우선심사신청]
 -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제9호에 의해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생략가능)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 증명서류 1통
- ※ 우선심사신청설명서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훈령/예규/고시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별지 제2호 서식 참고.(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 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제도 → 상표우선심사 제도 소개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내용”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시 제4조 제9호에 따른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선행상표 조사 의뢰된 출원임을 표시하고 의뢰 기관, 의뢰일자 를 적음으로써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표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는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훈령/예규/고시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별표에서 확인 가능

- 우선심사신청료 : 1개류마다 160,000원

1.1.8.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얼마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 특허 :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신청서 접수, 특허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우선심사 결정 후 해당 기술분야 심사관이 2개월(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또는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에 의하여 우선심사하는 출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3개월 또는 5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디자인 : 우선심사가 신청되면 심사관은 물품의 가분류일 또는 우선심사신청서의 심사관 이송일 가운데 늦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우선심사를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수해야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우선심사신청일부터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상표 : 우선심사가 신청되면 도형상표 분류 및 지정상품 분류는 분류담당자 또는 전문기관이 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하고, 분류가 완료되면 심사관은 도형상표분류일, 상품분류일 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선심사를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 결정서를 발송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우선심사신청일부터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보정요구가 되는 등 절차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 기간만큼 심사결과가 늦게 제공됩니다.
-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진행한 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포기 등)를 우선심사 신청인(제3자가 신청한 경우) 및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1.1.9.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이 아닌 자의 공동출원인 경우에도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출원인이 2인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이라도 벤처기업인 경우 우선심사를 인정합니다. 다만, 출원일, 우선심사 신청일, 우선심사여부 결정일 중 하나가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1.1.10.

개인이 출원한 건에 대해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하여, 우선심사신청 보완요구서를 받은 경우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통해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벤처기업)으로 출원인을 변경하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는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출원 시 출원인이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최초 출원 시 출원인은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출원 후 출원인 변경(벤처기업으로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최초 출원 시 출원인이 벤처기업의 대표자이고 그 출원인이 대표자로 있는 벤처기업으로 출원인 변경을 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1.11.

실시 중임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특허출원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실시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요?

- 실시 중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그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모두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그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서도 그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서류 외에도 출원된 발명이 실시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실시품 사진, 카탈로그, 설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실시 중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1.1.12.

특허·실용신안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너목에 해당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에 해당하는 분류에는 어떠한 분류가 해당되나요?

-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와 그에 따른 신특허분류체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별표 3 〉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
인공지능	Z01A
사물인터넷	Z01I
삼차원 프린팅	Z05P
자율주행차	Z03V
빅데이터	Z01B
클라우드 컴퓨팅	Z01C
지능형 로봇	Z03R
스마트 시티	Z03C
가상증강현실	Z03A
혁신신약	Z03M
신재생에너지	Z05E
맞춤형 헬스케어	Z03H
드론(무인기)	Z03D
차세대 통신	Z01T
지능형 반도체	Z05S
첨단소재	Z05M

1.1.13.

우선심사신청의 취하도 가능한지요?

- 우선심사의 신청은 그 우선심사 여부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관의 우선심사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의 효력이 발생하여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심사에 착수하기 때문입니다.
- 우선심사결정 후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하는 취하서가 제출되면 우선심사 취하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우선심사신청인(취하인)에게 통지하며 만약,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자와 우선심사신청 취하서의 접수일자가 동일자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 취하서는 반려됩니다.

1.1.1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고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에 우선심사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를 받은 후에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와 '출원서등 보정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우선심사의 대상을 기재하고 첨부서류(사유서, 변경된 대상에 따른 증명서류 등)를 제출하면 우선심사의 대상 변경이 가능하며, 심사관은 이에 따라 우선심사여부 결정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1.1.15.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하거나, 우선심사 여부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납부한 신청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우선심사의 신청이 부적합하여 각하되거나, 우선심사 여부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 그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한다면 우선심사 신청 시 납부한 비용의 20%(특허 : 40,000원, 실용신안 : 20,000원, 디자인 : 1디자인마다 14,000원, 상표 : 1상품류마다 32,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우선심사 신청이 각하되거나 우선심사 신청을 취하한 이후에도 우선심사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16.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에 대한 대응 기간의 기간연장신청을 하거나,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에 대응한 후에 그 대응 기간에 대한 기간단축신청이 가능한가요?

-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가 발송된 경우 그 대응 기간은 해당 서류의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매회 1월 또는 1월 이상 신청할 수 있으나 통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에 대응한 후 그 남은 대응기간에 대하여 기간단축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간연장 또는 기간 단축 시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기간연장(기간단축, 기간경과구제, 절차계속)신청서'를 사용합니다.

1.1.17.

이미 심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심사결정이 가능한지요?

- 심사착수 후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출원이 거절결정 또는 등록 결정되지 않았다면 방식심사 수리뿐만 아니라 우선심사결정도 가능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에 따라 심사착수 후 우선심사가 신청된 경우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되면 심사관은 이를 적합한 우선심사신청으로 인정하여 우선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중간서류 처리는 우선심사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1.1.18.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한가요?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소요기간은 한달이므로 우선심사를 신청하여도 그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방식심사에서는 수리가 될 것이나,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6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에 따라 심사착수예정시기가 우선심사신청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이 각하 결정될 수 있습니다.

1.1.19.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 우선심사 신청 대상으로 확대 하였습니다(2015. 2. 1. 이후 우선심사신청하는 건부터 적용).
- 우수디자인 출품작에 대하여는 전시회를 개최하므로 해당 디자인의 출원에는 반드시 '신규성상실예외주장'을 해야 합니다.

1.1.20.

외국인이 출원인일 때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외국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여부는 내국인 출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외국인이 출원한 경우에도 우선심사대상 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합니다.

1.1.21.

국가로부터 기술개발 지원을 받았는데 1인 기업인 경우에도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나요?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 바목 대상 중『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 추가되어 해당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2013. 3. 1. 시행).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프로젝트 중심의 창업기업)을 말합니다.

1.1.22.

일괄심사제도란 무엇입니까?

- 한 제품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리인 신청 불가).
- 일괄심사 신청인 : 일괄심사는 일괄심사 신청 대상출원의 출원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괄심사 신청 대상출원의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일괄심사 신청대상 : 2건 이상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2) 동일한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 ※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복수의 출원의 출원인이 각각 다르더라도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괄심사로 소요되는 기간 :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심사에 착수하여,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특허 심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일괄심사 신청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 → 출원신청 → 일괄심사신청 이용하여 일괄심사신청서 작성+증명서류 첨부(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신청인 정보, 일괄심사 대상 출원번호(2개 이상), 기술설명회 희망일, 착수희망일, 종결희망일 및 기술설명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제2장 특허·실용신안

2.1. 심사청구 및 절차

2.1.1.

심사란 무엇인가요?

- 발명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심사란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서 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를 말합니다.
- 특허법 제57조에서는 심사관에 의하여 출원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심사관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심사처리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하여 출원공개제도, 정보제출,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및 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1.2.

심사청구란 무엇이며, 심사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12조제1항). 따라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그 기간 내에 계속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간주됩니다(특허법 제59조제5항, 실용신안법 제12조제5항).
-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출원절차가 특허청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된 때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심사청구인 :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거나, 임시명세서로 출원한 경우, 외국어출원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12조제2항). 만약 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심사청구기간 :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으나, 2017. 2. 28. 이전 특허출원된 경우 그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한편,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원출원일로부터 3년(특허의 출원일이 2017. 3. 1. 이전인 경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3항, 실용신안법제12조제3항).
- 심사청구절차 :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구분항목:심사청구]'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기간 내에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료

구 분		특허	실용신안
심사청구료	기본료	143,000원	71,000원
	가산료	청구항 1항마다 44,000원	청구항 1항마다 19,000원

2.1.3.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에 대해서도 심사청구가 가능한가요?

-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제출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심사청구서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5호).
-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출원일(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최선일)부터 1년 2월이 되는 날까지 '보정서[구분항목 : 명세서등 보정]'로 청구범위를 추가한 후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2.1.4.

임시명세서로 출원한 출원에 대해서도 심사청구가 가능한가요?

- 임시명세서의 경우 명세서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일(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최선일)부터 1년 2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 요약서 필요한 도면을 임시명세서등 보정서로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21조 5항)
- 임시명세서는 명세서의 작성에 따라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이 제출된 후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2.1.5.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나요?

- 심사청구는 하나의 출원에 한 번만 인정되며 그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2.1.6.

특허(실용신안)심사유예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유예희망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 특허(실용신안)심사유예신청은 심사청구 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신청의 취하 또는 보정도 신청일로부터 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 심사유예희망시점은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심사청구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시점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최대 유예희망 시점의 경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유예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2.1.7.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료 납부도 유예 가능한가요?

- 심사유예신청 시 심사청구료 납부도 유예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를 이용하여 심사청구와 함께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료 납부유예]항목에 “필요”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후 심사청구료는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4항).

2.1.8.

자연재해로 심사청구기간 내 (재)심사청구를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없나요?

- 자연재해 등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재심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67조의3).
 - 서식 :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연장신청서[신청구분 : 기간경과구제]
 - 수수료 : 매건 온라인 : 15,000원 / 서면 : 17,000원
 - 첨부서류 :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 단, 특허출원의 소멸 여부에 대한 불확정성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출원의 회복은 출원심사·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됩니다.

2.1.9.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특허출원을 무권리자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했다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나요?

- 소급된 출원일(무권리자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 제3항).

2.1.10

재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 재심사제도란 거절결정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 심사관이 보정된 출원을 다시 심사하게 하는 제도로서 종전 심사전치제도를 이용하던 출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과하고 심사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
- 재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보정서[구분항목:명세서등 보정]’의 [기타사항]란에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재심사청구료와 보정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료 및 보정료

구 분		특허	실용신안
재심사청구료	기본료	100,000원	50,000원
	가산료	청구항 1항마다 10,000원	청구항 1항마다 5,000원
보정료		온라인 : 4,000원 서 면 : 14,000원	

-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및 분할출원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할출원은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재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재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4항). 이는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심사청구의 취하에 따라 절차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 심사진행

2.2.1

특허 분류(IPC, CPC)란 무엇인가요?

- 특허 분류는 발명에 속한 기술을 코드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따라 출원별로 부여되므로 심사관의 검색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허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문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을 세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IPC분류는 국제특허분류로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분류체계로 대부분의 특허 데이터베이스나 각국 특허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IPC분류를 통해 기술분야를 확인하거나 검색을 원하는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검색이 가능합니다.
- CPC분류는 선진특허분류라고도 하며, 유럽특허청과 미국특허청이 협력하여 개발한 새로운 특허분류체계로 2015년 1월 이후부터 모든 국내출원에 CPC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일부 CPC는 기존의 IPC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주제를 다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2.2.2

선행기술조사란 무엇인가요?

- 선행기술조사는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된 선행 기술을 검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행기술조사에는 특허법 제36조의 선출원 및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의 검색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3

심사착수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심사착수는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별, 기술분류별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행하여집니다. 이 때 심사착수란 심사관이 출원서류철을 이관받아 특허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 보정요구, 특허결정서 등본 등을 최초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심사관별, 기술분류별로 심사청구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며, 출원의 종류가 같을 때에는 출원번호순으로 진행합니다.
-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은 해당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에 착수하며, 원출원이 심사청구된 후 분할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원출원이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에 착수합니다.

2.2.4.

출원에 대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 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 각 호에 따른 거절이유로 인해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만약, 출원의 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63조).

2.2.5.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보정사항을 누락한 경우 거절결정되나요?

-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서 등을 반영하여 출원을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있고 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인 경우에는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거절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 의사 등을 명확히 표시하였는데 단지 그러한 보정이 보정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서 동일한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특실 심사기준 제8부제3장 거절이유 재통지(1)).
- 동일한 거절이유의 재통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 의사와 내용을 의견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였으나
 - ② 보정서에는 그러한 보정 내용이 누락되었고
 - ③ 보정서에서 누락된 보정내용으로 보정이 되었다면 그에 관한 거절이유가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 ④ 보정서에서 누락된 보정내용에 관한 거절이유를 제외하고는 기통지되었던 다른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되었고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도 없을 것
- 한편, 대리인이 없는 출원에 있어서 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명세서 보정의 방법을 알지 못하여 의견서에만 보정의 의사 등을 표시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①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②~④는 충족하지 않음) 심사관이 출원인의 적정한 보정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일한 거절이유의 재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2.2.6.

의견제출통지 기간 내에 복수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모든 보정서에 대한 보정내용을 심사하나요?

- 2013년 6월 30일 이전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복수의 보정서 제출 시 각각 보정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하고 2013년 7월 1일 이후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마지막 보정 전에 제출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마지막으로 제출된 보정서만 반영되어 심사합니다.

2.2.7.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정할 수 없나요?

- 명세서등 보정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 제2항).

2.2.8.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심사관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출원인이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응한 최종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과 면담을 하여 예비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보정안 리뷰 제도가 있습니다.

- 보정안 리뷰 신청 대상 :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출원 중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보정안*을 제출한 출원

※ 보정안은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형태로 보정안 리뷰 신청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정안 리뷰 신청 절차

-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특허로 홈페이지(www. patent. go.kr) → 신청/제출 → 심사신청 → 보정안 리뷰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합니다.

※ 보정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보정안 리뷰 신청 가능 합니다.

- 면담 희망일시(보정안 리뷰 신청일부터 2주 내지 3주 사이), 면담 참석자(대리인이 없는 경우 출원인 반드시 참석,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반드시 참석) 등을 기재합니다.

2.2.9.

예비심사의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예비심사란 공식심사 전에 출원인과 심사관이 직접 만나 출원인에게 사전 심사 결과를 제공하고 심사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예비심사 대상 출원 :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 중인 건 중 고난이도 특허분류에 해당하는 출원

※ 고난이도 특허분류 정보 : 특허청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특허/실용신안 → 특허심사3.0 → 예비심사

- 예비심사 신청절차 : 우선심사 결정서 발송일부터 14일 내에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신청/제출 → 심사신청 → 예비심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합니다.

2.2.10.

재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심사관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출원인이 거절결정서에 대응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기 전에 심사관과 면담을 통하여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재심사 면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면담 신청 기간 :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심사 면담 신청을 위하여 거절결정서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재심사 면담 신청 절차 : 전자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 홈페이지(www. patent. go.kr) → 신청/제출 → 심사신청 → 재심사 면담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며, 이 때 보정안 설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정안 설명서 다운로드 경로: 특허로 → 신청/제출 → 심사신청 → 재심사 면담신청 → 하단 첨부서류, 다운로드 버튼

2.2.11.

특허여부결정보류신청서는 어떤 경우 작성하나요?

- 특허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출원 권을 기초로 우선권주장하기 위하여 해당 출원의 출원일 후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특허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 보류 신청 전에 이미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거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2.2.12.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출원과 관련하여, [연장등록신청기간]을 잘못하여 최종 거절결정서를 받게 될 경우, 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30일 이내에 거절이유인 [연장등록신청기간]에 대한 보정이 가능한가요?

- 특허법 제90조(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6항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연장 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 현행 특허법 제90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2.3. 특허결정

2.3.1

‘결정’이란 무엇이고 결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의 「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결정이란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판단으로서 특허성 구비 여부의 확인 행위입니다.
- 결정의 종류에는 ‘특허성을 부정’하는 「거절결정」과 ‘특허성을 인정’하는 「특허결정(등록결정)」이 있으며,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거절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특허법 제132조의17에 의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법 제67조의2에 의거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을 받은 자는 법정절차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2.3.2.

심사한 특허출원이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며, 출원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심사관은 심사의 결과 거절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하고, 출원인에게 그 결정의 등본을 송달합니다(특허법 제66조).
- 출원인은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등록료에 추가납부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면(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6항) 설정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

2.3.3.

등록된 권리를 분할출원 할 수 있나요?

- 등록결정 이후 표준 결정 등에 따라 추가 권리화 필요가 있더라도 이미 설정등록 완료된 권리는 분할출원이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2015년 7월 29일 이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취소심판(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설정등록료의 정상납부 기간 내라면, 그 설정등록 전 또는 그 설정등록과 동일자에 분할출원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디자인

3.1. 심사절차

3.1.1.

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평균 8개월 정도 후에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며, 출원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의견제출통지가 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그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만,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면 거절결정 됩니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등록요건 가운데 타인의 선행디자인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는 평균 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3.1.2.

디자인도 특허나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선행디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 특허나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에서도 신규성, 창작성과 같은 디자인 등록요건의 판단을 위하여,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디자인 조사는 출원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신규성, 창작성 뿐 아니라 선출원과 같은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3.1.3.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는 달리 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자인출원으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1조).
- 디자인보호법 제58조에서는 심사관에 의하여 출원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심사관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심사관은 심사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견서나 보정서의 제출에 따라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해서도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합니다.

3.1.4.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도 심사등록출원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나요?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2항내지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합니다.
- 심사하지 않는 등록요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신규성, 제2항의 용이창작 중 공지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작,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제35조제2항의 자기의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 및 제46조 선출원의 제1항과 제2항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고 이를 심사관이 별도의 선행디자인 조사 등 없이 인지한 경우에는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심사하는 등록요건
 - ①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 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 ②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용이 창작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관련디자인으로 출원된 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디자인인등록출원되거나 관련디자인등록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 기본디자인으로 표시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출원인과 다른 경우
 - 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
 -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출원된 경우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2014년 6월 30일 이전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것으로서 2015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경우

3.1.5.

디자인에도 재심사청구제도가 있나요?

- 재심사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거절결정서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에 출원서 기재사항, 도면의 기재사항 및 도면,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하여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
-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보정(절차보완)서’의 [기타사항]란에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표시하여 제출하면서 재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심사 청구하는 때에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료
 - 동일(심사/일부심사)출원 보정은 전자문서 제출 : 30,000원 / 서면 제출 : 40,000원
 - 일부심사→심사 변경 보정은 전자문서 제출 : 79,000원 / 서면제출 : 89,000원
-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당초의 거절결정을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재심사에 의해서도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나 재심사에 의해 당초거절이유가 해소되고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합니다.

3.2. 등록결정

3.2.1.

디자인등록결정서를 받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나요?

- 등록결정서란 디자인출원이 거절이유가 없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있다는 심사관의 결정을 통지하는 문서로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위한 근거가 됩니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은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한 경우에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설정등록료를 받고 디자인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디자인권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90조).
- 구비서류 :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등록료] 1부
- 등록료 : 설정등록료(제1년부터 제3년까지)
 - 디자인심사등록 : 75,000원(1디자인마다 매년 25,000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 75,000원(1디자인마다 매년 25,000원)

● 납부기간

- 디자인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6항).
1. 1개월이 지나기 전 :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2개월이 지나기 전 :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3. 3개월이 지나기 전 :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4. 4개월이 지나기 전 :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5개월이 지나기 전 :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6. 6개월이 지나기 전 :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제4장 상표

4.1. 심사절차

4.1.1.

상표출원 후 심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상표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 상표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53조,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4.1.2.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 내용에 따라 제출기간 내에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또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정(보완)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답변, 소명)서[구분항목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에는 의견내용을 기재하고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서의 지정상품 등을 삭제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정(보완)서[구분항목 : 출원서등 보정]'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

4.1.3.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상표는 출원 후 약 9개월(우선심사의 경우 약 3개월) 전후로 심사가 진행되어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상표등록의 목적은 상표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타인의 사용은 배제하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있으므로, 상표등록 전이라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1.4.

의견제출통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후 제출 가능한가요?

- 2013년 10월 6일 이후 상표출원 건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그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접수된 의견서는 반려대상입니다.
- 출원인이 의견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법 제55조제3항에 의한 절차 계속 신청(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연장신청서[신청구분 :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계속신청 시 수수료는 40,000원 발생합니다.

4.1.5.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이 심판은 청구하고 출원을 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해당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 누가 등록받을 수 있나요?

-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출원한 출원인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4.2. 출원공고결정

4.2.1.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출원공고결정서가 무엇인가요?

- 출원공고란 상표등록출원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실체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표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 출원공고결정서는 최종 결정 통지가 아니므로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출원인에게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를 통지하며 이후에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4.2.2.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언제쯤 등록받을 수 있습니까?

-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이 있는 후에 출원공고가 되고, 이의신청기간(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출원공고 기간과 동일)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통상 이의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개월경과 시점에 심사관은 등록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2.3.

출원공고결정 후 지정상품이나 상표의 보정이 가능한가요?

- 출원공고 결정 후에도 상표법 제41조제1제항 각 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의견서 제출기간
 -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간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부터 30일

4.3. 이의신청

4.3.1.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절차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란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출원내용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출원을 거절결정 하도록 요구하는 공중의 의사표시입니다(상표법 제60조).
- 이의신청절차
 - 이의신청은 「누구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이고, 이의신청이유는 상표법상 「거절이유」중에서 일부사유를 제외한 것입니다.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이의결정 :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의결정'이라 합니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관 합의체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이유 있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합의체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이유 없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 합니다.

- 이의신청료 : 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4.3.2.

이의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요?

- 상표등록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어(상표법 제 60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출원이 등록된 이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

4.3.3.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을 보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보정료가 발생하나요?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정(보완)서[구분항목 : 이의신청서등 보정]'를 이용하여 이의 신청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을 보정할 수 있고, 이때 보정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3.4.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에 대한 보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의신청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연장(기간단축, 기간경과구제, 절차계속)신청서[신청구분 : 법정(지정)기간연장]'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연장은 재내자는 1회 30일, 재외자는 1회 30일, 2회 30일씩 각각 연장 가능합니다. 기간연장신청 시 수수료는 1회째 20,000원, 2회째 30,000원을 납부합니다.

4.3.5.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받은 출원인이 최초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서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연장(기간단축, 기간경과구제, 절차계속)신청서[신청구분 : 법정(지정)기간연장]'를 제출하고 수수료 20,000원을 납부하여 1회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4.4. 등록결정

4.4.1

상표등록결정서를 받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나요?

- 등록결정서란 출원상표에 관하여 거절이유가 없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됩니다. 상표(단체표장, 업무표장 등)권의 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상표(업무표장, 단체표장 등)등록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 결정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상표 등록료를 납부 받아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 등록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상표법 제82조).
- 구비서류 :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등록료] 1부
 - ※ 등록결정서에 첨부된 납입고지서를 통하여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료 및 등록세
 - 등록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132,000원)
 - ※ 2012년 4월 1일 이후 출원하여 설정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 등록하는 것부터 1상품류 구分的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상기 등록료 금액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이 가산됩니다.
 - 등록세 : 9,120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 ※ 분할납부 하는 경우 등록세는 1회차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간
 - 상표등록료(지정상품 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72조).
 -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20,000원을 납부하여 1회에 한해 30일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4조).

CHAPTER

V

등록절차

제1장 등록공통업무	209
제2장 특허·실용신안·디자인	238
제3장 상표	250

www.kipo.go.kr

목차

제1장 등록공통업무

1.1. 권리이전	209
1.1.1. 권리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209
1.1.2. 여러 건을 권리이전 하는 경우 하나의 권리이전등록신청서로 병합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10
1.1.3. 양도증이 여러 장인 경우 양도증에 간인을 해야 하나요?	210
1.1.4. 법인의 특허권 양도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나요?	211
1.1.5. 권리이전 시 하나의 양도증을 원인증명서류로 하여 여러 건을 병합신청 하는 경우에 건별로 인자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12
1.1.6. 권리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합니까?	212
1.1.7.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까?	213
1.1.8.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특허권자가 법인합병을 등록원인으로 권리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213
1.1.9. 권리이전 시 기존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원용이 가능한가요?	213
1.1.10. 등록권자인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청산)으로 인한 권리이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14
1.1.11. 권리이전 시 양도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주소 이전부터 먼저 진행하고 권리이전을 해야 합니까?	215
1.1.12. 질권 이전, 실시(사용)권 이전등록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215
1.1.13. 실시(사용권)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실시(사용)권자에게 권리이전 가능한가요?	215
1.1.14.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 시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216
1.1.15. 상표권자가 사망 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표권을 양도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16
1.1.16. 법인의 흡수합병 시 상표권은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216
1.1.17. 경매를 통해 특허권을 낙찰 받았을 경우 자동으로 권리자 명의를 변경되나요?	217
1.1.18. 권리이전 시 제출하는 양도증 또는 국적증명서의 공증인과 권리자의 국적이 달라도 되나요?	218
1.1.19.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하고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보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8

1.1.20. 권리에전 신청 후 보정요구서가 발송된 경우 반드시 공동 신청해야 하나요?	218
1.1.21. 권리에전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신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219
1.1.22. 권리에전등록신청은 반드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219
1.1.23.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리에전 신청 시 등록수수료 등 납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19
1.2. 실시(사용)권	220
1.2.1. 실시(사용)권이란 무엇입니까?	220
1.2.2. 권리가 외국인인 경우에 실시(사용)권 설정등록신청 시 구비서류가 무엇입니까?	221
1.2.3. 공유 권리자 1인이 행방불명인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222
1.2.4. 특허권 등에 대하여 실시(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실시(사용)권자 이외에 등록권자 본인의 실시도 가능한가요?	222
1.2.5. 공동권리(권리자 : 갑, 을)인 특허권 등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전용실시(사용)권 설정등록이 가능한가요?	222
1.2.6. 실시(사용)권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까?	223
1.2.7. 특허청에 실시권 설정등록 신청하면 처리 완료되었다는 통지서가 별도 발송되나요?	223
1.3. 기타 변동등록	224
1.3.1.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을 받으면 존속기간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존속되나요?	224
1.3.2.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까?	224
1.3.3. 상표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까?	225
1.3.4. 권리에전신청, 실시권 설정등록신청 등 변동등록신청 후 보정요구서가 발송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6
1.3.5. 등록 이후 명칭,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6
1.3.6.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26
1.3.7. 포기에 의한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27
1.3.8. 실시(사용)권도 말소할 수 있나요?	227
1.3.9.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228
1.3.10. 혼동으로 인한 실시(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228
1.3.11. 질권이란 무엇이며, 산업재산권을 대상으로 질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228
1.3.12. 처분금지처분이 등록된 권리에 대해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29
1.3.13. 본인이 소유한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질권을 설정해준 경우에 질권자도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229
1.3.14. 지분등록이란 무엇인가요?	230
1.3.15.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230

1.3.16. 지분이나 특약 설정한 경우 등록증과 등록원부에도 표기가 되나요?	231
1.3.17. 공유특허권자 중 1인의 채권을 기초로 특허권을 경매할 수 있나요?	231
1.3.18. 개인 소유 특허권을 국가에 기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31
1.3.19. 등록절차의 취하가 가능한가요?	231
1.3.20. 가압류된 권리를 말소등록 신청 시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32
1.4. 등록원부 발급	232
1.4.1. 등록원부 발급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2
1.4.2.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 시 등록원부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나요?	233
1.4.3. 등록원부기록사항발급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나요?	233
1.4.4. 영문으로 된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234
1.4.5. 등록원부 발급신청서에서 신청대상 중 등본과 사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34
1.5. 특허(등록)증 재발급·정정발급	234
1.5.1.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234
1.5.2. 등록권자의 주소 및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변경된 사항이 특허(등록)증에 표기되는지요?	235
1.5.3. 권리이전 후에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신청 시 새로운 권리자 명의로 특허(등록)증이 재발급 되는지요?	236
1.5.4. 영문으로 된 특허(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236
1.5.5. 영문 이외에 다른 외국어로 특허(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까?	236
1.5.6. 등록증도 등록원부처럼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까?	237
1.5.7. 대리인이 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 시 위임장 미제출로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 보정료가 발생하나요?	237
1.5.8. 특허(등록)증 정정발급신청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237

제2장 특허·실용신안·디자인

2.1. 신규설정등록	238
2.1.1. 신규설정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8
2.1.2. 등록료 납부 마감일에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등록료 납부일은 언제까지입니까?	239
2.1.3. 설정등록 시 일부 청구항(디자인)을 포기할 수 있나요?	239
2.1.4.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를 제출한 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았는데 다음날까지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239

2.1.5.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240
2.1.6.	설정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40
2.1.7.	설정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등록 포기된 출원을 회복시킬 수 있나요?	240
2.1.8.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출원인을 변경한 경우 등록결정서에 첨부된 납입영수증으로 등록료 납부 가능한가요?	241
2.1.9.	설정등록 된 후에도 발명자·고안자·창작자를 추가·정정·삭제할 수 있나요?	241
2.2.	연차등록료 납부	241
2.2.1.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241
2.2.2.	연차등록료 납부 시 해당 연차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242
2.2.3.	연차등록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	243
2.2.4.	연차등록료가 얼마입니까?	243
2.2.5.	연차등록료 납부 시 청구항의 일부를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4
2.2.6.	복수디자인 연차등록료 납부 시 복수디자인의 일부디자인을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4
2.2.7.	목록화 된 연차등록안내서를 받을 수 있나요?	245
2.2.8.	연차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45
2.2.9.	연차등록안내서는 등기로 발송되나요?	245
2.3.	이의신청	246
2.3.1.	디자인권의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246
2.3.2.	이의신청에 의하여 디자인권 등의 등록이 취소결정 된 경우 이에 불복할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247
2.3.3.	이의신청관련 답변서, 보정서 혹은 수수료를 기한 내에 제출 못했을 경우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247
2.3.4.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247
2.3.5.	출원 시 대리인이 별도의 대리인선임신고 없이 이의답변서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한 각종 중간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247
2.4.	등록공고(공보)	248
2.4.1.	등록공고란 무엇입니까?	248
2.4.2.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48
2.4.3.	공보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48
2.4.4.	등록공고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지요?	249

제3장 상표

3.1. 신규설정등록	250
3.1.1. 상표설정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50
3.1.2. 상표권 갱신등록료 및 설정등록료 분할납부제도란 무엇입니까?	251
3.1.3. 상표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장 가능합니까?	251
3.1.4. 등록면허세는 얼마이며, 어디에 납부해야 하나요?	251
3.1.5. 등록료납부기간은 등록결정서 발송일부터인지 송달받은 날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52
3.1.6. 상표설정등록 시에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수 있나요?	252
3.1.7. 상표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분할 납부한 경우 2회차 분할 납부 안내 관련 통지가 되나요?	252
3.2. 존속기간갱신등록	255
3.2.1.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52
3.2.2.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권리자 모두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하나요?	253
3.2.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면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되나요?	254
3.2.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일부 지정상품만 갱신 가능한가요?	254
3.2.5.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어떤 위임사항이 필요한가요?	254
3.3. 지정상품추가등록	254
3.3.1.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54
3.3.2.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장 가능합니까?	255
3.3.3. 지정상품추가등록료를 납부하면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되나요?	255

제1장 등록공통업무

1.1. 권리이전

1.1.1.

권리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등록된 권리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다른 이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권리이전절차를 살펴보고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양도증)
 - 양도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하여 1통(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된 것
- 구비서류 준비요령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 양 당사자는 특허청 절차를 위해 미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양도증)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양도증 또는 산업재산권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류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및 양도의 취지, 작성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의 경우 서류에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등록원부와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기재사항 일치여부 : 두 서류상의 권리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초본(제출서류 생략정보 기재 가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2012. 1. 1.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 5항에 따라 첨부 생략 가능)하여 i)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건은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서 를 제출하고, ii)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은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를 제출한 후 이전이 가능합니다.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를 공증 받아

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 권리이전 등록료 : 매건 마다 특허권 53,000원, 실용신안 및 디자인권 40,000원, 상표권 113,000원, 상속 및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 권리이전 지방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 매건 21,600원(등록면허세 :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상속의 경우 14,400원(등록면허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 인지세 : 양도증 1통당 부과하며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가액에 따라 인지세 차등 부과

과세문서의 기재금액	인지세
기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00원
1천만원 이하 및 무상	0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0,000원

※ 권리이전등록료와 함께 납부.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통

1.1.2.

여러 건을 권리이전 하는 경우 하나의 권리이전등록신청서로 병합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각 건 상호간에 신청구분, 등록권리자(양수인), 등록의무자(양도인), 지분을 적은 경우에는 그 지분, 특약, 등록원인 및 가등록 신청 여부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권리이전등록신청서로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권리별 병합신청만 가능합니다.
- 그러나 여러 건을 병합하여 권리이전 하는 경우에는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등록증재발급신청의사를 기재하여 신청하더라도 권리이전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증 재발급은 불가능하므로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절차를 따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1.1.3.

양도증이 여러 장인 경우 양도증에 간인을 해야 하나요?

- 양도증 뿐만 아니라 등록의 원인이 되는 서류(권리이전등록신청서의 매매계약서, 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의 계약서, 승낙서, 말소등록신청서의 포기서 등)가 여러 장일 때에는 간인을 하여 여러 장의 서류가 하나의 문서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 간인은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원인서류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으로 서류의 두 장을 연결하여 찍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양도증 등에 등록권리자의 날인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되었거나 서명으로 된 경우에는 날인한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나 서명으로 간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간인은 원인서류의 작성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변리사)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변리사)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간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리인(변리사)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해당 대리인사무소 명칭과 간인을 하는 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리인번호 상에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1.1.4.

법인의 특허권 양도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법인인감은 관할 등기소에 신고 된 법인을 대표하는 인감을 말하고,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을 대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회사를 대표하는 인감을 말하며 등기소에 신고 된 인감은 아닙니다.
- 법인의 지식재산권 거래 편의를 위하여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사용인감으로 특허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인감계에는 사용인감 및 법인인감 날인 외에 이전 대상 권리의 등록번호, 용도(권리이전 등), 제출처(특허청), 사용인감 사용에 따른 법률적 책임 소재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도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상에 공동대표이사 000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양도증에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공동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

법인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고 대표이사가 모두 합의하여 공동으로 서명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 따라서 모든 서류에 복수의 공동대표가 모두 날인해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권한행사 불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이사 000'으로 기재됨.)

1.1.5.

권리이전 시 하나의 양도증을 원인증명서류로 하여 여러 건을 병합신청 하는 경우에 건별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2010년 1월 1일부터 인지세법 개정(제9917호, 2010. 1. 1.)에 따라 양도증에 수입인지를 부착 하던 방식에서 권리이전등록료 및 등록면허세와 함께 인지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인지세는 양도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차등 과세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양도증에 여러 건을 병합 기재하여 권리이전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 1통당 부과되는 인지세를 납부 하면 됩니다.

※ 과세대상 문서의 기재금액(양도증상에 기재된 양도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에 맞는 인지 세액을 납부(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의 기재금액	인지세
기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00원
1천만원 이하 및 무상	0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0,000원

1.1.6.

권리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합니까?

- 등록의무자(양도인)와 등록권리자(양수인) 모두 권리이전신청서와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서로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즉, 등록의무자(양도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므로 반드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등록의무자(양도인)가 국내 거주하는 자연인 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권리자(양수인)의 경우 특허고객번호상의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중 어느 것이든 날인 가능합니다. 등록권리자(양수인) 역시 국내 거주하는 자연인이고 특허고객번호에 서명이 등록된 경우에는 서명으로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1.1.7.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까?

- 특허권 등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전하거나 법령에서 정해진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등록권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나, 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 등의 양도에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전부이전'과 그 일부를 양도하는 '일부이전',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전체를 양도하는 '지분전부이전'과 그 일부를 양도하는 '지분일부이전'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등은 상속·유증·회사의 합병등과 같은 일반승계, 질권행사 또는 강제집행, 법원의 이전판결, 특허권의 수용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의 이전은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01조, 상표법 제96조).

1.1.8.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특허권자가 법인합병을 등록원인으로 권리지분전부이전 등록신청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 제출하지 않습니다. 권리와전과 관련하여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등록원인이 '양도'인 경우입니다. 그 외 등록원인이 상속, 법인합병·분할, 기타 법률규정 등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1.9.

권리이전 시 기존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원용이 가능한가요?

- 이미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는 원용 가능하며, 원용하는 경우 첨부서류란에 원용하고자 하는 서류명 및 관련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2012년 11월 7일부터는 [등록심사지침 제10호] 첨부서류의 원용에 관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미 제출된 다른 등록신청에 첨부된 서류나 여러 등록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 중 어느 하나에 첨부된 서류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피 원용되는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첨부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 당해 신청서류를 반환한 경우에는 원용을 할 수 없습니다.

1.1.10.

등록권자인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청산)으로 인한 권리이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파산 또는 해산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산신고 또는 해산(청산)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파산관재인이나 청산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양도증) : 양도증상에는 양도인란에 법인명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함께 기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법인인감을 날인
 - 양도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 ※ 양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국적증명서(공증) 및 그 번역문 첨부
 - 파산관재인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부착한 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그 번역문을 첨부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감사위원의 동의서 첨부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외국(법)인의 경우 공증 받은 (법인)국적증명서 및 그 번역문
 - 당사자(등록의무자 및 등록권리자)로부터 받은 위임장(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각 1통
- 권리이전등록료 및 등록면허세
 - 권리이전등록료 : 매건 특허 53,000원, 실용신안/디자인 40,000원, 상표 113,000원
 - 등록면허세 : 매건 21,600원
 - 인지세 : 양도증 1통당 부과하며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가액에 따라 인지세 차등 부과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소멸(디자인은 제외)
 -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청산 종결 등기일의 다음날에 소멸됩니다(특허권, 실용신안권은 2017. 3. 1.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해당).
 - ※ 특허법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 ※ 상표법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1.1.11.

권리이전 시 양도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주소 이전부터 먼저 진행하고 권리이전을 해야 하나요?

- 권리이전 시 등록원부상에 기재된 등록권리자의 주소지는 권리이전등록서류에 기재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보정요구서가 발송될 수 있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먼저 등록의무자의 표시를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2011년 9월 5일 [등록심사지침 제2호] 당사자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등록심사지침이 마련되어 성명(명칭)과 주민(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하거나, 성명(명칭)과 주소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당사자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등록심사지침 제6조 주소의 확인 참고).
- 또한, 2005년 7월부터 특허권 등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등록신청서와 등록원부상 주소와 상이해도 등록신청서류에 주소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특허고객번호상의 주소변경을 해주던 '주소 직권경정 제도'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에 근거가 있으나, 등록심사지침 제2호에 따라 실무상 동일성이 확인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1.1.12.

질권 이전, 실시(사용)권 이전등록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11호 및 12호에 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대상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권리자체 이전에 관한 등록이고, 질권 및 실시(사용)권 이전은 권리자체의 이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1.13.

실시(사용)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실시(사용)권자에게 권리이전 가능한가요?

- 등록원부에 실시(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시(사용)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권리이전이 가능합니다. 실시(사용)권자에게 해당 특허권 등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실시(사용)권은 혼동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말소됩니다(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4조 제1항 제5호).

1.1.14.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 시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권리자 사망확인 및 상속인확인 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원인 : 상속

-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서 정본”을 신청하여 첨부

- 등록원인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임의서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상속인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특허권을 누가 갖는지에 관한 내용(지분설정가능) 기재, 상속인 모두의 인감 날 인 또는 서명 기재)하고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1.1.15.

상표권자가 사망 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표권을 양도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표권자가 사망하면 상표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먼저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당해 권리를 이전 등록한 후 상속인이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상표권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상표법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1.1.16.

법인의 흡수합병 시 상표권은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 법인은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상법 제234조)하게 되며, 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235조).

- 즉, 합병등기(상법 234조)에 의해 상표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나,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96조 제1항). 한편, 법인합병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상표법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합병을 등록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신청)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17.

경매를 통해 특허권을 낙찰 받았을 경우 자동으로 권리자 명의가 변경되나요?

- 특허권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특허권을 낙찰 받았을 경우 해당 법원의 등록권자명의 변경촉탁에 의해 권리자 명의가 변경됩니다.
- 낙찰 받은 자가 법원에 등록권자명의변경촉탁 신청을 하고, 법원은 특허청에 등록권자명의변경촉탁서, 법원의 매각명령(또는 양도명령)의 결정서 정본, 매각조서 및 촉탁수수료(통상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권자명의변경 촉탁수수료 : 특허 74,600원, 실용신안·디자인 61,600원, 상표 134,600원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법원 경매절차에 앞선 특허권 압류등록시에 공유자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미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본 첨부 가능하며,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등록 되었다면 매각 후 명의변경촉탁시에 첨부)

[참고] 법원 결정·판결 등에 관한 권리이전등록 절차 비교

□ 회생·파산에 의한 자산매각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자산 매각(법원사이트 매각공고)
- 등록원인 : 양도
- 양수인과 양도인(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양도계약서 작성
-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공동신청
- 원인서류 : 양도계약서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관리인, 파산관재인), 법원허가서(허가목록에 등록번호 있어야함), 파산관재인인 경우 개별위임장

□ 이행 판결

- 판결문 주문 : '권리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 판결
- 등록원인 : 판결
-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단독신청 및 대위신청 가능
- 원인서류 : 판결문
- 첨부서류 : 확정증명원

□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의 민사집행

- 양도명령시 주문 :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라'
- 매각명령시 주문 : '채권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 법원을 통해 등록권리자 명의변경 촉탁
- 명의변경 촉탁서와 함께 인수하지 아니하는 권리의 말소 촉탁도 함께 진행(촉탁서에 등록원부상 말소대상 순위번호 표시)
- 원인서류 : 결정문, 매각조서(매각명령인 경우)
- 첨부서류 : 통상환

1.1.18.

권리이전 시 제출하는 양도증 또는 국적증명서의 공증인과 권리자의 국적이 달라도 되나요?

- 권리자의 국적과 공증인의 국적이 달라도 됩니다. 2012년 6월 20일 [등록심사지침 제9호] 외국에서 작성한 공증서류에 관한 등록심사지침이 마련되어 권리자와 공증인의 국적이 달라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1.1.19.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하고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보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출한 신청서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도록 하고 그 등록의 효과는 등록신청 당시로 소급되어 적용합니다.
-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보정 기간 내에 등록보정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제출인], ([대리인]), [등록보정대상], [보정할 사항] 항목을 기재하고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기간 중에는 보정횟수에 제한 없이 보정이 가능합니다.

1.1.20.

권리이전 신청 후 보정요구서가 발송된 경우 반드시 공동 신청해야 하나요?

- 등록보정 시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를 유지하되,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는 보정이나 중요하지 않은 변경사항'은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2012. 12. 30. 시행규칙 개정).
 - 보정서를 유형별로 분석한 하단의 사례에 속하는 경우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 당사자 일방에게만 보정사유가 있어 공동신청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ex : 당사자 1인의 특허고객번호 정보가 현행과 상이한 경우, 당사자 1인의 성명(명칭)을 오기제한 경우 등)
 -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는 신청서의 수정(ex : 등록원인을 오기제한 경우, 원용서류 정보를 오기제한 경우,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를 반대로 기재한 경우 등)
 - 계약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첨부서류의 제출(ex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판결문 등의 제출)
- ※ 단,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중요사항은 공동신청 하여야 함.

1.1.21.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신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0조 제1항의 단서 조항 삭제(2015. 1. 6. 시행)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재되기 전까지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대한 등록신청반려요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반려 요청 후 반려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수수료 반환 신청을 통해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0조(등록신청의 반려신청)제1항 :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1.1.22.

권리이전등록신청은 반드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에서는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록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허용됩니다.
- 등록원인서류(예 : 양도증)에 취지 기재 시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의사 표시를 기재한 경우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권리이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등록권리자와의 위임만으로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또한 유질계약에 의한 질권의 실행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고 등록의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의 실행에 따른 통지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권리이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 제10항).

1.1.23.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리이전 신청 시 등록수수료 등 납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특허료 및 등록수수료) 특허법 제83조는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세) 지방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105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권리자(양수인)인 경우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 (인지세) 인지세법 제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 후 계약서를 각자 나눠가지는 경우, 국가가 보유한 계약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므로(인지세법 제7조), 국가가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계약서를 원인으로 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①). 그 반대의 경우는 계약서를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므로 인지세를 면제(인지세법 제6조)합니다.
- 그 밖에 국가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어 권리이전 등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수수료, 지방세, 인지세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기준 요약]

구 분	국 가		지 방 자 체 단 체	
	등록권리자 (양 수 인)	등록의무자 (양 도 인)	등록권리자 (양 수 인)	등록의무자 (양 도 인)
등록수수료	면제	납부	납부	납부
지방세	면제	납부	면제	납부
인지세	납부	면제	납부	면제

1.2. 실시(사용)권

1.2.1.

실시(사용)권이란 무엇입니까?

-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실시권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이고, 사용권은 상표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 실시권(사용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사용)권」과 「통상실시(사용)권」이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허락실시(사용)권」, 「법정실시(사용)권」 및 「강제실시권」으로 나눠집니다.
- 전용실시권(사용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물권에 준합니다.

● 통상실시권(사용권)

-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상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봅니다.
- 따라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 중복계약이 가능하며, 당해 권리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특정 제품에 대한 각각의 통상실시권 계약이 가능합니다. 각기 상이한 2개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상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등록료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 설정계약서 또는 허락서의 형태)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공증)와 그 번역문 제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외국(법)인의 경우 공증 받은 (법인)국적증명서 및 그 번역문
-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와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통

● 등록료 및 등록면허세

- 전용실시권(사용권) : 매건 72,000원
- 통상실시권(사용권) : 매건 43,000원
- 등록면허세 : 없음

1.2.2.

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실시(사용)권 설정등록신청 시 구비서류가 무엇입니까?

- 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 권리에 실시(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사용권)설정 등록신청서, 등록원인증명서류(실시권(사용권) 설정계약서), 공증 받은 권리자의 국적증명서(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국적증명서)와 그 번역문,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며, 등록원인증명서류 및 위임장 등 제출서류의 언어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글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1.2.3.

공유 권리자 1인이 행방불명인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 특허법 제99조 제4항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방불명된 공유권리자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특허에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 제22조에 따라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 법원의 처분 등이 있는 경우 그 재산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으면 행방불명된 권리자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4.

특허권 등에 대하여 실시(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실시(사용)권자 이외에 등록권자 본인의 실시도 가능한가요?

-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정한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는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특허법 제100조). 다만,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해준다면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이외에는 특허권자가 당연히 해당 특허권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다수의 타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특허권자의 실시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02조). 즉,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물론 다수의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실시권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1.2.5.

공동권리(권리자 : 갑, 을)인 특허권 등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전용실시(사용)권 설정등록이 가능한가요?

- 갑이 을로부터 취득한 전용실시(사용)권은 을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사용)권이므로 형식적으로 갑이 취득한 특허권 등의 지분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을이 갑에게 전용실시(사용)권을 설정등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2.6.

실시(사용)권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까?

- 전용실시권의 효력은 특허청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특허청에 반드시 전용 실시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등록하지 않은 전용실시권은 독점적인 통상실시권과 같은 효력이 인정 될 뿐입니다.
- 상표 전용사용권의 효력 역시 독점성을 권리의 본질로 하므로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전용사용권의 범위 내에서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동일 범위 내에서의 중복적인 전용사용권의 허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개정된 상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전용 실시권과는 달리, 특허청에 설정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상표법 제100조). 단,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반면, 통상실시(사용)권은 등록이 대항요건이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그 실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특허청에 그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특허권 등에 대하여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1.2.7.

특허청에 실시권 설정등록 신청하면 처리 완료되었다는 통지서가 별도 발송되나요?

- 특허청에 접수하는 변동등록서류에 대해서만 등록완료안내서가 발송되며, 이 중 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도 포함됩니다. 등록완료안내서 발송 대상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송 대상 목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 질권설정등록신청서
- 말소등록신청서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2016. 6. 29. 이후부터 발송, 권리자 특허고객번호상의 수취방법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만 발송)

1.3. 기타 변동등록

1.3.1.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을 받으면 존속기간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존속되나요?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특허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1개월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2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3개월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5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까지는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6항).
-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납부기간 내에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
- 또한, 연차등록료를 추가납부기간(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못했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의3 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84조 제3항).

1.3.2.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까?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법령에서 정한 소멸사유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특허법 제88조, 실용신안법 제22조, 디자인보호법 제91조)

-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특허법 제81조,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82조)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특허법 제124조, 디자인보호법 제111조)
 -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실용신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날에 소멸(제124조 제2항)
-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로는 디자인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 특허권은 사권이므로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에 실시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시권·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19조, 디자인보호법 제106조).

1.3.3.

상표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까?

- 상표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법령에서 정한 소멸사유
 -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상표법 제83조)
 -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날에 소멸(상표법 제106조 제2항)
 -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106조 제1항)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불이행에 따른 소멸(상표법 제213조)
 -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취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될 경우(상표법 제119조 및 제117조)
-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1조). 다만, 상표권에 사용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사용권·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2조).

1.3.4.

권리이전신청, 실시권 설정등록신청 등 변동등록신청 후 보정요구서가 발송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권리이전신청, 실시권 설정등록신청 등 변동등록 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어 보정요구서가 발송된 경우 등록의무자, 등록권리자가 공동신청으로 등록보정서를 통해 흠결이 해소되면 처리합니다.
-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권리자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는 보정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1.3.5.

등록 이후 명칭,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원인의 인적정보가 등록원부상의 등록권자의 인적사항 기재내용과 상이할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건은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를,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은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 주소 자동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건의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은 등록번호별로 신청을 해야 하며 여러 건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각각의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서 1부, 주소 등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제출서류 생략정보 기재 가능),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제출서류 생략정보 기재 가능),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통
- 수수료 : 없음

1.3.6.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말소등록신청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기타 이들의 권리에 설정된 지분, 실시(사용)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가처분등록, 명의인의 승낙, 판결 등의 원인으로 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 말소등록 신청서 1부(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포기서 또는 계약해제증서 등)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외국(법)인의 경우 공증 받은 (법인)국적증명서 및 그 번역문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외국(법)인의 경우 공증 받은 (법인)국적증명서 및 그 번역문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통

- 말소등록료 : 무료 (2019년 7월 9일 이후)

1.3.7.

포기에 의한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에서는 등록에 관한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청구항,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권리일부말소)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 제1항 제7호).

1.3.8.

실시(사용)권도 말소할 수 있나요?

- 특허(등록)권 뿐만 아니라, 실시(사용)권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말소등록 신청서 1부(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포기서 또는 계약해제증서 등)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외국(법)인의 경우 공증 받은 (법인)국적증명서 및 그 번역문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외국(법)인의 경우 공증 받은 (법인)국적증명서 및 그 번역문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통
- 말소등록료 : 무료 (2019년 7월 9일 이후)

1.3.9.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 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지분의 양도, 질권설정 등과 같은 행위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본인 지분의 포기는 공유자의 동의 없이 포기 가능합니다. 참고로, “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99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2항, 상표법 제93조 제2항).

1.3.10.

혼동으로 인한 실시(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두 개의 지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그 한쪽은 다른 쪽에 흡수되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 혼동에 해당하는 경우
 - 질권자가 권리이전을 받은 경우
 - 전용(통상)실시(사용)권자가 권리이전을 받은 경우
 - 통상실시권자가 동일한 실시범위(내용, 기간, 지역)내에서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은 경우
 - 전용(통상)실시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가 그 실시권을 이전 받는 경우
- 혼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용실시권자가 권리이전을 받았으나 다른 공유권리자가 있는 경우
 - 실시권자가 권리이전을 받았으나 그 실시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질권자가 권리이전을 받았으나 후순위 질권설정이 있는 경우
 - 실시(사용)권의 실시(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1.3.11.

질권이란 무엇이며, 산업재산권을 대상으로 질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특정된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을 대상으로 질권 설정등록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질권설정등록신청서 1부(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질권설정계약서 또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외국(법)인의 경우 공증 받은 (법인)국적증명서 및 그 번역문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외국(법)인의 경우 공증 받은 (법인)국적증명서 및 그 번역문
 -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통
- 질권설정등록료 및 등록면허세
 - 질권설정등록료 : 권리구분 없이 매건 84,000원
 - 등록면허세 : 없음

1.3.12.

처분금지가처분이 등록된 권리에 대해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양도 등 기타의 처분행위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라도 가처분 채무자와 계약한 상대방 사이에는 완전히 유효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등록된 권리도 실시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그 유효를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며,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당해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당해 실시권은 말소될 수 있습니다.

1.3.13.

본인이 소유한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질권을 설정해준 경우에 질권자도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 일반적으로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9조 및 제345조). 특허권자는 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특허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1조).

-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는 없으며(특허법 제121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 다만,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22조).

1.3.14.

지분등록이란 무엇인가요?

- 지분등록은 임의사항(강제사항이 아님)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지분등록 없이 설정, 이전, 말소가 가능합니다. 지분은 반드시 전체 지분에 대한 비율이어야 하며 분모는 반드시 자연수로, 분자는 자연수 및 소수로 기재 가능합니다(지분은 0이 될 수 없음). 지분등록은 설정등록 시에도 가능하며, 이 때는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등록료)’에 지분을 기재하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17년 11월 28일 이후 설정등록 건부터, 출원 중 설정된 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 납부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등록원부에 반영됩니다.

● 구비서류

- 공유지분확인등록신청서 1부(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공유지분확인서)
- 등록권리자의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외국(법)인의 경우 공증 받은 (법인)국적증명서 및 그 번역문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외국(법)인의 경우 공증 받은 (법인)국적증명서 및 그 번역문
- 공유자 모두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통

● 수수료 : 없음

1.3.15.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 특약은 특허법 제99조 제3항(특허법 제100조 제5항 및 제102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28조(「특허법」의 준용),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디자인보호법 제7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록할 때 기재합니다.

※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 특약의 변경은 '변경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로 제출 가능하며, 특약의 말소는 '말소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특약말소를 체크하여 특약신청인의 공동신청으로 말소 가능합니다.

1.3.16.

지분이나 특약 설정한 경우 등록증과 등록원부에도 표기가 되나요?

- 등록원부에는 지분과 특약 설정 시 모두 표기하고 있으나, 등록증은 특허권의 상징적인 징표이므로 지분과 특약 관련해서는 등록증에 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 권리이전 시 특약 설정 방법 : 권리이전등록신청서의 [등록원인]란 기재사항 다음 줄에 [특약]란을 만들어 그 약정사항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란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

1.3.17.

공유특허권자 중 1인의 채권을 기초로 특허권을 경매할 수 있나요?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동권리자는 그 지분을 각각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지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몫은 균등한 것(민법 제262조 제2항)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각 권리자의 공유지분은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에 매각명령(양도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3.18.

개인 소유 특허권을 국가에 기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국유특허에 한하여 특허청이 관리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 특허권 등은 특허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의 특허권은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총괄청) 또는 관리청(소관 정부부처)에 기부할 수는 있으나,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기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3.19.

등록절차의 취하가 가능한가요?

- 취하란 신청하였던 일이나 제출하였던 서류 등을 도로 거둬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록 관련 서식 중 '취하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0조에서는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등록신청의 철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이용하는 서식명은 ‘등록신청반려요청서’입니다.

- 이용서식 : 등록신청반려요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신청인 :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공동신청
- 신청시기 : 등록원부에 등재되기 전까지 가능
- 신청 대상 : 신규 설정등록 및 연차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변동등록(권리이전등록신청,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 등)

1.3.20.

가압류된 권리를 말소등록 신청 시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특허법 제119조에 의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 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8조에 의해 가압류 또는 압류 등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말소등록 시 해당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4. 등록원부 발급

1.4.1.

등록원부 발급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에 관한 등록원부 발급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구분항목 : 등록원부 발급)’ 1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 신청서 한 장에 여러 건 기재 가능
 - 온라인 신청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증명서발급 → 발급신청 → 등록원부/등록서류 복사 → 등록원부 교부신청
 - ※ 등록된 인증서가 없는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 신청 가능

● 수수료

- 등록원부 등본, 사본 : 무료(온라인발급), 매건 500원(서면/우편발급)
- 우편발급 시 별도로 우송료(등기우편료) 부과

● 수수료 납부 방법

- 우편신청 시 :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을 서식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우)35208
- 방문신청 시 : 신청서 접수 후 발급받은 '특허료·등록료·수수료의 납입영수증'을 지참하여 익일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인터넷납부 시 : 지로사이트(www.giro.or.kr) 회원가입하고 결제계좌 등록한 후 온라인 납부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 납부 → 온라인 납부 코너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의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
 - ※ 국고수납은행에 수수료 납부할 경우 확인 후 발급 처리하는데 통상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바로 수취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 납부한 영수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 ※ 증명서류 수취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고 인터넷으로 수수료납부 할 경우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 등록원부는 등본과 사본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은 특허청장의 직인이 들어가며 사본은 특허청장 직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 등록원부 사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1.4.2.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 시 등록원부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나요?

-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은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면 등록원부의 정보도 일괄 변경되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건의 등록원부는 등록번호별로 개별 관리되어 등록번호별로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을 한 경우에만 통합관리가 되며, 이후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 시 일괄적으로 변경됩니다.

1.4.3.

등록원부기록사항발급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나요?

- 등록원부기록사항발급관 설정등록 이후에 등록원부상에 기재되는 변동등록서류에 대한 복사신청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신청구분 : 등록원부 기록사항발급)'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1.4.4.

영문으로 된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는 기술의 내용 또는 지정상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국어로 번역·발급할 경우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등이 있어 영문으로 된 특허 등록원부는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4.5.

특허원부 발급신청서에서 신청대상 중 등본과 사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등록원부 등본은 특허청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사본은 특허청장 직인 날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1.5. 특허(등록)증 재발급·정정발급

1.5.1.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등록증은 건당 1부(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권리자 수만큼)씩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권리이전으로 인하여 특허증의 재발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구분항목 : 특허(등록)증 재발급 또는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2018년 7월 1일부터 전자등록증 발급 제도가 신설되어 서면으로만 발급되던 등록증을 PDF파일 형태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나, 신청서 작성시 [구분항목]은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전자등록증은 ‘특허로 홈페이지(로그인 필요) → 조회/발급 → 전자등록증 신청/확인 → 전자등록증 수신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특허로 사이트의 출원인정보변경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전자등록증 수신을 선택한 경우 특허고객번호 상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도 해당 특허(등록)증 파일이 발송됩니다.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구분항목 : 특허(등록)증재발급 또는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1부
 - 전자출원 SW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 서식작성기,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구분항목 : 특허(등록)증 재발급 또는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 제출

- 특허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 특허로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전자등록증 신청/확인 → 발급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멸된 권리의 특허(등록)증은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 특허(등록)권자의 주소 및 성명이 등록원부와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원부와 특허고객번호정보가 상이 한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건은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신청한 다음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 신청을,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은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신청을 선행해야 합니다.
- 재발급되는 특허(등록)증은 현재의 권리자 명의로 발급됩니다.
- 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신청 시 등록증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편집이 불가합니다.

● 수수료

- 특허(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료 : 매건 온라인 5,000원, 서면 6,500원, 전자문서 무료(2018. 7. 1. 시행)
-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발급 신청료 : 매건 온라인 7,000원, 서면 9,000원

● 수수료 납부 방법

- 우편신청 시 :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을 신청서 서식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우)35208
- 방문신청 시 : 신청서 접수 후 발급받은 특허료·등록료·수수료의 납입영수증을 지참하여 익일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인터넷납부 시 : 지로사이트(www.giro.or.kr) 회원가입하고 결제계좌 등록한 후 온라인 납부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온라인납부" 코너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의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

- 수취 방법 : 우편, 방문 또는 전자문서(특허로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전자등록증 신청/확인 → 전자등록증 수신함)

1.5.2.

등록권자의 주소 및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변경된 사항이 특허(등록)증에 표기되는지요?

- 등록권자의 주소 및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건은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은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제출서류 생략정보 기재 가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첨부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제출한 다음 처리된 이후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특허(등록)증에 변경된 현재 사항의 주소 및 명칭 등이 기재됩니다.

1.5.3.

권리이전 후에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신청 시 새로운 권리자 명의로 특허(등록)증이 재발급 되는지요?

-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현재의 권리자 명의로 특허(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한편, 2017년 9월 22일부터 권리이전등록신청 시 신청서에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 없이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수리 후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구분, 등록원인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양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와 함께 수령인으로 기재한 1명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의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여러 권리를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1.5.4.

영문으로 된 특허(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영문등록증은 발급 가능합니다.
 - 특허 및 실용신안 : 2006. 5. 1. 이후
 - 디자인 및 상표 : 2015. 1. 1. 이후
-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의2 서식) 및 디자인과 상표인 경우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특허 및 실용신안 영문 등록증 발급신청 시에는 번역문 미첨부).
- 영문등록증 발급 신청료 : 매건 온라인 5,000원, 서면 6,500원, 전자문서 무료

1.5.5.

영문 이외에 다른 외국어로 특허(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까?

- 특허, 실용신안 권리는 영문 등록증 이외 다른 외국어 등록증(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에 대하여 발급 가능합니다(2011. 4. 1. 이후 신청부터 적용). 다만, 디자인, 상표 권리는 영문 등록증만 발급 가능합니다(디자인 및 상표 : 2015. 1. 1. 이후).
- 영문 등록증 이외의 다른 외국어 등록증은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본 신청서에 적힌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이 해당 외국어로 정확하게 번역된 외국어 Text파일(*hwp·doc·docx 중 택1), 외국어가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증서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면 외국어 특허(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등록)증 발급 신청료 : 매건 온라인 5,000원, 서면 6,500원, 전자문서 무료

1.5.6.

등록증도 등록원부처럼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까?

- 2018년 7월 1일부터 전자등록증 발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설정 등록, 권리이전, 등록증 재발급(이용 서식 : 설정등록료 납부서,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신청서)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 수령”으로 선택한 경우 PDF 파일 형태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용 특허(등록)증은 전자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외국어 특허(등록)증은 전자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권리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전자문서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5.7.

대리인이 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 시 위임장 미제출로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 보정료가 발생하나요?

- 외국어등록증 발급신청 시 위임장 미제출하여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 ‘출원서등 보정서’에 위임장 또는 포괄위임번호 기재하여 접수하면 되고, 별도의 보정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8.

특허(등록)증 정정발급신청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으며(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이와 같이 그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발명자를 해당 특허권이 설정등록 된 이후에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하나, 설정등록 당시 전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서식 :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구분항목 : 특허(등록)증 정정발급)’ 1부
 - 첨부서류
 - 1) 공통 : 기발급된 등록증(공동권리인 경우 공동권리자 모두의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 2) 등록권리자 발명자 전원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다만, 삭제되는 발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되는 발명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하여 함께 제출)
 - 3) 발명자 기재가 명백한 오기에 의한 경우 : 발명자 기재가 명백한 오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기간 : 설정등록 후 권리유지 중에 있으면 가능하며, 연차등록료 회복신청 기간에는 불가
 - 수수료 : 없음

제2장 특허·실용신안·디자인

2.1. 신규설정등록

2.1.1.

신규설정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규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등록)결정한 것을 출원인 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등록)료를 납부 받아 특허(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상표의 신규설정등록절차 주요 차이점〉

구 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상표
설정등록기간	3월(정상납부)+6월(추가납부)	3개월+30일(연장신청 시)
권리의 유지	연차등록(1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10년마다)
등록료 감면	설정 및 연차등록료 감면	감면제도 없음
권리범위의 확장	없음	지정상품추가등록
분할납부	불가능	설정등록료·갱신등록료 분할납부 가능

● 구비서류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 1부
- 감면·면제 대상인 경우 그 증빙서류 1통

※ 감면 /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결정서와 함께 발송되는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납부안내서(영수증)’를 기간 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할 경우 설정등록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등록기간 :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 (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 다만, 기간경과 후 6개월 이내 특허(등록)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1개월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1개월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2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3개월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5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까지는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 특허(등록)료 납부 전 출원인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변경된 경우 :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 (경정), 정정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설정등록료**

권리의 종류와 설정된 보호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 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별 존속기간**

-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특허법 제88조)
-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실용신안법 제22조, 구법 적용분인 출원일자 1999년 7월 1일 이전 출원 건은 15년)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디자인보호법 제91조, 1998. 3. 1. ~ 2014. 6. 30. 출원한 것은 등록일로부터 15년, 1998. 3. 1. 이전 출원 건은 등록일로부터 10년)

2.1.2.

등록료 납부 마감일에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등록료 납부일은 언제까지입니까?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서류제출일) 다음날까지 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우편 제출 시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서식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로 등의 징수규칙 제8조).

2.1.3.

설정등록 시 일부 청구항(디자인)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등록결정을 받은 후 설정 등록 시 일부 청구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청구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의 [포기대상]항목에 포기하려는 청구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설정등록료 납부서에 포기대상 기재 시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별도의 포기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출원한 건은 디자인의 일련번호에 따라 디자인별로 각각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취하(포기서) 제출 없이 등록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2.1.4.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를 제출한 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았는데 다음날까지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 설정등록 기간 내에 다시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를 제출하여 다시 제출한 납부서에 대한 납부자번호를 부여 받아서 다음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설정등록 기간(정상 납부기간 3월, 추가 납부기간 6월) 경과 후에는 등록 포기간주 됩니다.

2.1.5.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특허 등의 등록번호는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2~3일 후에 알 수 있으며, 특허(등록)증은 약 7~8일 정도 지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1.6.

설정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설정등록 시 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보전요구서를 발송합니다. 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보전요구서를 수령한 날부터 1개월이며 정상(또는 추가)납부마감일 이전에 보전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만 납부하고, 이후에 보전할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1조의2 및 디자인보호법 제83조 등록료의 보전).
- 보전요구서가 송달된 경우 보전서에 기재된 제출기일까지 첨부된 납입영수증으로 납부하거나,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납부서(구분항목 : 등록료 보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부여받은 접수번호로 보전금액은 익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우편 제출 시에는 보전금액을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식과 함께 발송).
- 등록일자는 최초의 설정등록을 위한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 제출일자가 아니라 ‘납부서(구분항목 : 등록료 보전)’ 제출일 또는 보전요구서의 납입고지서로 보전료를 납부한 날이 됩니다.
 ※ 등록료 보전제도는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와 ‘납부서(구분항목 : 연차 등록료)’, ‘납부서(구분항목 :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에 한해 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적용(상표 설정등록 및 존속기간갱신 등록: 9,130원 이상 납부)되며, 등록료 전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할 수 없습니다.

2.1.7.

설정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등록 포기된 출원을 회복시킬 수 있나요?

- 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출원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 포기된 특허출원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등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특허법 제81조의3, 디자인보호법 제84조).
 - 제출기간 :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 단,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 설정등록료 납부서
 - 첨부서류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소명서 및 소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수수료 : 등록료 (추가기간의 경우 가산금 있음)
- 그러나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도 천재지변 등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일단 기간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점 유의하여 등록료를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1.8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출원인을 변경한 경우 등록결정서에 첨부된 납입영수증으로 등록료 납부 가능한가요?

- 등록결정서를 받고 출원인을 변경한 경우 등록결정서를 받은 대리인과 출원인 변경신고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에 한해 해당 고지서로 바로 납부 가능하지만 이외에는 별도 납부서 작성해서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상이한 경우 등은 변경된 출원인으로 납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부여 받은 접수번호로 등록료 납부해야 합니다.

2.1.9

설정등록 된 후에도 발명자·고안자·창작자를 추가·정정·삭제할 수 있나요?

- 종전에는 출원의 등록여부결정 후에는 출원서에 적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의 기재가 누락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발명자·고안자·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9년 6월 10일부터(단, 디자인의 창작자 정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등록여부결정 후에도 발명자·고안자·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면 발명자·고안자·창작자를 추가,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 연차등록료 납부

2.2.1.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납부서(구분항목 : 연차 등록료)'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우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차료를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납부서 서식과 함께 동봉하여 특허청으로 발송). '납부서(구분항목 : 연차 등록료)'의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우측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 코너에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납부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연차등록안내서’가 발송되며, 발송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거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온라인납부” 코너 등에서 간편하게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허(1999. 6. 30. 이전 및 2006. 10. 1. 이후 출원한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납부란 특허(등록)권의 설정등록일(1997. 7. 1. 이전 설정등록 된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단, 1999. 7. 1. ~ 2006. 9. 30. 내에 출원하여 선등록된 실용신안의 2~3년차 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 연차분을 당해 연도 개시일 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허(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간경과 후 6월 이내에 추가납부 할 수 있습니다.
 - ※ 1개월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1개월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2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3개월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5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까지는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 상기 추납기간이 경과한 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이 본래의 납부기간의 만료 시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 제3항).
 - 2014년 6월 11일부터(디자인인 경우 2016년 4월 28일 이후부터) 특허(등록)료를 추가납부기간(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서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고, 실시증명서류 첨부 없이도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부터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0%가 할인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11항).
- 납부 시 유의사항
 - 특허(등록)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우편 제출 시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납부서 서식과 함께 동봉하여 제출).
 - 이해관계인도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권리별 연차등록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2.

연차등록료 납부 시 해당 연차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 연차료 납부 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1997년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일이 그 이전이면 출원공고일 기준, 그 이후이면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디자인은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2.3.

연차등록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

-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일반 우편으로 권리자에게 연차 등록료납부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연차등록안내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아보지 못한 경우라도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 → 사건번호별 검색' 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를 이용하여 기한 내에 납입고지서로 국고수납은행 또는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는 권리자가 권리 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연차등록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권리자의 연차등록안내서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기한내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
- 또한, 기존에는 권리자 국내인에게만 한정하여 통지하던 것을 2013년 8월 2일부터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하고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2.4.

연차등록료가 얼마입니까?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연차등록료는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만약, 연차등록료를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로 납부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1개월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2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3개월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5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까지는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 연차등록료(해당 연차 정상납부기간이 2009. 1. 1. 이후인 경우 적용)〉

연 차	기 본 료	가 산 료
4 - 6년차	기본료 매년 40,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7 - 9년차	기본료 매년 100,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38,000원
10 - 12년차	기본료 매년 240,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55,000원
13 - 25년차	기본료 매년 360,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55,000원

〈실용신안 연차등록료(해당 연차 정상납부기간이 2009. 1. 1. 이후인 경우 적용)〉

연 차	기 본 료	가 산 료
4 - 6년차	기본료 매년 25,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7 - 9년차	기본료 매년 60,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14,000원
10 - 12년차	기본료 매년 160,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20,000원
13 - 25년차	기본료 매년 240,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20,000원

〈디자인 연차등록료(해당 연차 정상납부기간이 2014. 7. 1. 이후인 경우 적용)〉

연 차	디자인심사 연차등록료	디자인일부심사 연차등록료
4 - 6년차	각 디자인마다 매년 35,000원	각 디자인마다 매년 34,000원
7 - 9년차	각 디자인마다 매년 70,000원	각 디자인마다 매년 34,000원
10 - 12년차	각 디자인마다 매년 140,000원	각 디자인마다 매년 34,000원
13 - 20년차	각 디자인마다 매년 210,000원	각 디자인마다 매년 34,000원

2.2.5.

연차등록료 납부 시 청구항의 일부를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연차등록료 납부 시에 청구항의 일부를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말소등록 신청서(구분항목 : 권리 일부말소)'를 제출하고 감축된 청구항 수에 따른 '납부서(구분항목: 연차등록료)'를 제출하여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해당 연차의 추가납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권리 일부말소 등록이 되어야 해당연도 연차등록료에 적용(감축된 청구항 수에 따른 금액)됩니다.

2.2.6.

복수디자인 연차등록료 납부 시 복수디자인의 일부디자인을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복수디자인 출원한 권은 복수디자인의 일부를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 일부말소로 '말소등록신청서(구분항목 : 권리 일부말소)'를 제출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해당 연차의 추가납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권리 일부말소 등록이 되어야 해당연도 연차등록료에 적용(감축된 디자인 수에 따른 금액)됩니다.

- 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 출원한 건은 디자인의 일련번호에 따라 디자인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권리일부말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일련번호의 등록번호로만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2.2.7.

목록화 된 연차등록안내서를 받을 수 있나요?

- 권리자의 착오, 부주의 등으로 연차등록료를 불납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엽서로 연차등록료 납부기한 및 절차를 납입고지서와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등록 권리자의 경우 다량의 우편물을 수취해서 개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특허청에서는 이에 대해 다량의 개별통지 대신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이 도래한 다수의 권리를 매월 한번 목록화하여 약 3개월 전에 소멸예고 대상권리 리스트를 발송할 수 있도록 목록화 된 연차등록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 My특허로 → 편의 서비스 → 연차등록안내 신청 → 목록화된 연차등록안내서 우편수령
- 개인의 경우 목록화 된 연차등록안내서는 신청에 의해서만 받아볼 수 있고 수취방법은 우편과 이메일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월별 납부 건이 3건 이상인 때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목록화 된 연차등록안내서로 발송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된 연차등록안내서 각각의 건에 대해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2.8.

연차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2014년 6월 11일 이후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디자인의 경우 2016. 4. 28. 이후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납부서(납부구분: 연차등록료)'에 회복신청 원인을 기재하고 정상기간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면,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9.

연차등록안내서는 등기로 발송되나요?

- 정상 납부기간의 연차등록안내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연차등록료 추가납부안내서는 대기업 및 대리인의 경우 일반우편(무음발송), 개인 및 중소기업은 등기(무음발송)발송됩니다. 그리고 회복 신청 안내통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됩니다(2015. 10. 변경).

- 회복신청 안내서의 경우에는 총 2차에 걸쳐 발송되며, 1차 회복신청 안내서는 추납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발송하며, 2차 회복신청 안내서는 추납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발송합니다(2015. 5. 변경).
- 현재 연차등록안내서 이메일 대상을 국내 등록권자(외국등록권자인 경우 국내등록대리인)에서 국내 등록권자가 연차등록안내서 이메일 발송 신청 시 지정 대리인이나 질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발송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015. 10. 변경).
- 서비스 신청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 My특허로 → 편의 서비스 → 연차등록안내 신청

2.3. 이의신청

2.3.1.

디자인권의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디자인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일부심사등록권에 한해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절차
 - 이의신청은 「누구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까지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수수료는 1디자인마다 50,000원입니다.
- 이의결정
 - 디자인권이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취소사유 또는 직권심사에 의해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심사관합의체에서 그 권리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며, 권리자는 이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이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취소사유 또는 직권심사에 의해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된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합니다.
 -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합의체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2.3.2.

이의신청에 의하여 디자인권 등의 등록이 취소결정 된 경우 이에 불복할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이의신청에 의하여 디자인권 등의 등록이 취소결정 된 경우 이에 불복할 때에는 등록취소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2.3.3.

이의신청관련 답변서, 보정서 혹은 수수료를 기한 내에 제출 못했을 경우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받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의 이의에 대하여 권리자의 답변기회를 놓친 것일 뿐, 담당심사관은 본원과 이의증거에 대하여 양자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의결정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유지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을 보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서 부분을 권리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수수료를 미납부하거나 이의신청 대리인의 위임장을 미제출한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 위의 사항을 보정하지 못하면 기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무효 처분됩니다.

2.3.4.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등본의 송달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심사관의 직권심사에 의한 의견진술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75조). 참고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2.3.5.

출원 시 대리인이 별도의 대리인선임신고 없이 이의답변서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한 각종 중간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 이의답변서 제출 시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선임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나, 이의답변서 이외의 중간서류 제출 시에는 별도의 대리인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및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포괄위임을 받은 경우라면, 이의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4. 등록공고(공보)

2.4.1. 등록공고란 무엇입니까?

- 등록공고란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이 된 이후에 등록된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에게 공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고제도의 취지는 등록된 내용을 공개하여 그 권리내용을 공시하고, 타인의 중복투자를 방지함과 아울러 특허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디자인권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한 공중심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실권리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의 경우 종전에는 등록공고가 발간되지 않았으나, 상표법 개정에 의해 2016년 9월 1일 이후 등록된 건부터 등록공고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2.4.2.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입니다. 단, 심사관의 직권보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 달 ~ 두달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4.3. 공보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2014년 7월 1일 부터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보의 주소 공개방식(전체/일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대상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연인인 권리자, 출원인, 발명자(고안자), 창작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특허로 접속 →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 → 공보의 주소게재 방식[변경신청/신청결과] → 공보의 주소게재 변경 신청 → 신청결과 조회 확인
 - 서면 : 별지 제 1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신청 기간 : 언제든지 가능(제한 없음)
 - 적용 대상 : 1998년 이후 발간된 공보문서부터 적용
 - 표시 방법 : 시·군·구 이하주소는 표시하지 않음
 - 소요 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9일 이내

2.4.4

등록공고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지요?

- 2001년 7월 2일부터 설정등록 이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인터넷공보”에서 등록된 특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공보로 게재된 공보는 권리별(특허, 실용, 디자인: 공고일로부터 3월, 상표: 공고일로부터 2월)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디자인일부심사: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 상표 :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특허정보검색사이트(www.kipris.or.kr)를 통하여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상표

3.1. 신규설정등록

3.1.1.

상표설정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표(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권의 설정등록이란 상표(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증명표장 등)등록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 후 등록 결정 한 것에 대하여 출원인으로부터 설정등록료를 납부 받아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면서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 등록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상표법 제82조).
- 구비서류
 - 납부서 1부(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등록료 및 등록면허세
 - 등록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2회 분할납부 시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132,000원)
 - 등록면허세 : 9,120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 ※ 2012년 4월 1일 이후 출원하여 설정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하거나 2012년 4월 1일 이후 존속기간갱신신청하는 것부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상기 등록료 금액에 초과하는 지정상품 마다 2,000원(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상표등록료(지정상품 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 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기간 내에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지로사이트(www.giro.or.kr),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온라인납부” 코너 등에서 등록료와 등록면허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상표등록료 납부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특허청(본청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등록료)”(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한 후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반드시 ‘납부서’를 제출한 일일까지 등록료와 등록면허세를 합산한 금액을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지로사이트(www.giro.or.kr),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온라인납부” 코너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등록료)’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

및 등록면허세를 우체국에서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 후 작성한 '납부서'와 함께 동봉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수료 20,000원을 납부하여 1회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1.2.

상표권 갱신등록료 및 설정등록료 분할납부제도란 무엇입니까?

- 종전에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등록료 10년분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였으나, 2010년 7월 28일부터는 상표권자가 원할 경우 갱신등록료 5년분을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 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전과 같이 갱신등록료 10년분을 한 번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3호 서식)에 분할 납부의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상표권 설정등록료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5호서식)에 [납부회차] 란을 1회차로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2010. 7. 28. 이후 최초로 출원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
※ 2회차 등록료를 5년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는 바로 소멸됩니다.

3.1.3.

상표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장 가능합니까?

- 상표등록료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고 수수료 20,000원을 납부하여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4조).

3.1.4

등록면허세는 얼마이며, 어디에 납부해야 하나요?

- 상표설정등록 시 등록료 이외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9,120원(등록면허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이며, 2005년 7월 1일부터 등록(지방)세와 특허(등록) 수수료의 통합징수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청에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표출원의 상품류가 다류인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는 9,12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3.1.5.

등록료납부기간은 등록결정서 발송일부터인지 송달받은 날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상표등록료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고 수수료 20,000원을 납부하여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4조).

3.1.6.

상표설정등록 시에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수 있나요?

- 2018년 1월 1일 이후 설정 등록하는 건부터 설정등록료 납부서에 포기하려는 지정상품을 기재하여 지정상품별로 그 등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3.1.7.

상표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분할 납부한 경우 2회차 분할 납부 안내 관련 통지가 되나요?

- 상표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분할 납부제도에 따라 1회차를 먼저 납부한 경우 2회차 납부시점(5년 이내)에 맞춰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안내서가 발송됩니다. 설정등록료 및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모두 총 2회에 걸쳐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안내서가 발송되며, 2회차 등록료 납부마감일 6개월 전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등록료 납부마감일 3개월 전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3.2. 존속기간갱신등록

3.2.1.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상표(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권의 존속기간 갱신에 대하여 2010년 7월 28일 이후 갱신하는 건부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상표법 제84조).

● 신청기간

-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 2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 다만,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 갱신등록료 및 등록면허세

- 갱신등록료 : 정상납부기간 1상품류 구분마다 310,000원(2회 분할납부 시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194,000원), 추가납부기간 1상품류 구분마다 340,000원(2회 분할납부 시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213,000원)
 ※ 2012년 4월 1일 이후 출원하여 설정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하거나 2012년 4월 1일 이후 존속기간갱신신청하는 것부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상기 등록료 금액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 등록면허세 : 9,120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2.2.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권리자 모두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하나요?

-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공동권리자 중 1인만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종전에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공유자가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없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신청서에 갱신등록제외 지정상품을 기재 시 지정상품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또는 공유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갱신기간 6개월에도 적용). 공유자 동의서 첨부 시 동의서에 갱신제외대상항목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3.2.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면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되나요?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료를 납부 하면, 갱신등록여부가 등록원부에 등재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으로 인해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되거나 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2.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일부 지정상품만 갱신 가능한가요?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갱신등록 제외대상]에 존속기간갱신을 원하지 않는 지정상품을 기재하면 원하는 지정상품만 존속기간이 갱신됩니다. 일부 지정상품을 갱신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포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2.5.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어떤 위임사항이 필요한가요?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상표권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위임사항이 필요합니다. 또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갱신등록 제외대상을 기재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포기에 관한 위임사항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3. 지정상품추가등록

3.3.1.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표(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권의 지정상품추가등록이 있는 건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정상품추가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75조).

-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및 등록면허세
 - 지정상품추가등록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 등록면허세 : 없음

※ 2012년 4월 1일 이후 출원하여 설정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하거나 2012년 4월 1일 이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것부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상기 등록료 금액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3.3.2.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장 가능합니까?

- 지정상품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연장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고 수수료 20,000원을 납부하여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4조).

3.3.3.

지정상품추가등록료를 납부하면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되나요?

- 지정상품추가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지정상품추가등록 여부는 원권리의 등록번호를 통해 등록원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CHAPTER

VI

심판절차

제1장 심판청구 및 절차	266
제2장 결정계심판	279
제3장 당사자계심판	287
제4장 분쟁 및 기타	301

목차

제1장 심판청구 및 절차

1.1. 심판청구 및 절차	262
1.1.1.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이 무엇입니까?	262
1.1.2. 특허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63
1.1.3. 심판청구 시 심판청구 비용이 얼마입니까?	264
1.1.4. 심판비용액결정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65
1.1.5. 심판비용액결정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265
1.1.6. 심판청구서 등 심판과 관련한 서류제출 시 특허고객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또한 심판 청구인의 출원인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266
1.1.7. 심판청구서(심판청구료, 청구의 이유 등) 및 중간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6
1.1.8. 심판청구건에 대해 우선심판신청도 가능한가요?	266
1.1.9. 심판관련 지정기간연장 신청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267
1.1.10. 심결문 검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8
1.1.11.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268
1.1.12. 재심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269
1.1.13.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 서류 제출하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9
1.1.14. 신속심판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까?	270
1.1.15. 심판청구서 및 심판관련 중간서류에서 사건의 표시 또는 심판사건의 표시항목 중 심판종류 란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271
1.1.16. 특허심판원에서 심결문 수령 후 소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이며, 소제기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271
1.1.17. 심결문 등본은 어떻게 송달받습니까?	272
1.1.18. 심판청구 취하도 가능한가요?	272
1.1.19. 2이상의 심판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나요?	272
1.1.20. 심판청구 취하서 제출 시 반드시 피청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273
1.1.21. 부가기간지정신청서 제출 시 심결등본수령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273
1.1.22. 심판청구서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포괄위임장만 첨부하여도 포괄위임 효력이 있나요?	273

1.1.23. 심판청구의 일부 취하가 가능한가요?	273
1.1.24. 심결 후 심판사건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제기 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인데,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심판청구 취하 시 심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74
1.1.25. 심판절차가 중지된 심판건에 대해 심판사건의건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274
1.1.26. 결정각하와 심결각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75
1.1.27. 신속심판 처리기간 및 신속심판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76
1.1.28. 우선심판 처리기간 및 우선심판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77
1.1.29. 심판원에서 확정되거나 심결이 되지 않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일반인 또는 제3자가 서류열람 또는 복사 할 수 있나요?	278

제2장 결정계심판

2.1. 결정계심판	279
2.1.1. 결정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279
2.1.2.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80
2.1.3.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인 란에 출원인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280
2.1.4.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281
2.1.5.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경우에 어떤 절차로 처리됩니까?	281
2.1.6.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방식상의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281
2.1.7.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계류 중에 당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에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281
2.1.8.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판관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며, 심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282
2.1.9.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출원 취하 하는 경우 심판청구료는 반환되나요?	282
2.1.10.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판진행 중에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282
2.1.11. 정정심판이란 무엇이며, 청구인 및 청구기간, 정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83
2.1.12. 등록특허의 청구항 중 독립항만을 남기고 나머지 종속항은 포기(말소) 신청을 한 이후에 정정심판을 통해서 포기했던 종속항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283
2.1.13. 재심사청구, 심판청구, 분할출원을 함께 할 수 있나요?	284
2.1.14. 재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바뀌는 점은 없나요?	284
2.1.15.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됩니까?	285
2.1.16.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서'와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보정서'를 동일자로 제출한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됩니까?	285
2.1.17.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재심사청구 없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이유를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까?	286
2.1.18.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심판단계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기간연장 가능한가요?	286

제3장 당사자계심판

3.1. 당사자계심판	287
3.1.1. 당사자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287
3.1.2. 특허무효심판이란 무엇입니까?	288
3.1.3.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289
3.1.4. 특허무효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89
3.1.5. 특허 무효심판계속 중 피청구인(권리자)이 그 등록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는 것입니까?	289
3.1.6. 특허무효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까?	290
3.1.7.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에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까?	290
3.1.8.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에서 청구항이 삭제되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290
3.1.9. 정정심판, 무효심판, 취소신청 중 정정청구 시 대비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290
3.1.10. 취소신청제도란 무엇입니까?	291
3.1.11. 취소신청 진행 중 대응하는 서식은 무엇입니까?	293
3.1.12.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293
3.1.13.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294
3.1.14.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294
3.1.15.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중에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 정정이 가능한가요?	295
3.1.16.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중 권리가 소멸된 경우 심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95
3.1.17.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란 무엇입니까?	295
3.1.18.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청구란 무엇입니까?	296
3.1.19. 구술심리는 어느 장소에서 진행되나요? 당사자 법인 대신 법인 직원이 방문해도 발표 가능합니까?	297
3.1.20.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받은 후 기일변경신청 가능한가요?	297
3.1.21. 기술설명회와 구술심리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298
3.1.22. 발명자도 구술심리 참석 가능한가요?	299
3.1.23. 당사자계심판 청구 시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분송달이 되나요?	299
3.1.24.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 발송 후 심리종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99
3.1.25.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 후 의견서 등이 제출되면 다시 심리종결예정시기를 통지해 주나요? 심리종결한 후에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해 심리를 하나요?	300

제4장 분쟁 및 기타

4.1. 분쟁 및 기타	301
4.1.1.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301

4.1.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2
4.1.3. 경쟁업체에서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303
4.1.4. 출원인(발명자)에게 상당한 특허나 실용신안 내용을 변리사가 출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지와 이런 피해의 경우 소송 외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304
4.1.5. 본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무단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주장을 하여 경고했는데, 상대방이 특허출원 시에 이미 동일한 발명을 독자적으로 완성하여 실시해 왔으므로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요?	304
4.1.6.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어 경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경고장을 보낼 때의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305
4.1.7.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침해 시 구제수단은 무엇입니까?	305
4.1.8.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305
4.1.9.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306
4.1.10.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절차를 취해야 하나요?	306
4.1.11. 특허권 침해여부를 특허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06
4.1.12. 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특허권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307
4.1.13. 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특허권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307
4.1.14.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 특허가 출원 당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공용발명)이었다면 권리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308
4.1.15.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까?	308
4.1.16. 특허발명이 어떤 경우에 타인의 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성립합니까?	309
4.1.17. 디자인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09
4.1.18. 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10
4.1.19. 상표출원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한 상호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311
4.1.20.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품질 오인을 불러일으킨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11
4.1.21. 위조상품이란 무엇인가요?	312
4.1.22.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12
4.1.23. 특허청에서 위조상품의 감정도 해 주나요?	312
4.1.24.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313
4.1.25. 심판 또는 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313
4.1.26.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란 무엇입니까?	315
4.1.27.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316

제1장 심판청구 및 절차

1.1. 심판청구 및 절차

1.1.1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이 무엇입니까?

● 특허심판의 개념

- 특허심판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처분에 의해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상의 쟁송절차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특허법원의 전심절차로서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 특허심판의 단계

-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처리에는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심결에 불복 시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의 종류

- 특허심판은 결정계심판과 당사자계심판으로 구분되는데, 결정계심판은 당사자가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하며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이 여기에 속합니다. 당사자계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사용권등록취소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 여기에 속합니다.
- 2017년 3월 1일 특허법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등록된 특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의 청구

-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40조 제1항).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청구서 등이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합니다.
- 심판번호는 방식심사와는 상관없이 심판청구서 접수 시 즉시 부여됩니다.

● 특허심판의 비용

-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관이 심결 또는 결정으로 정합니다.(특허법 제165조 제1항)
-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의 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65조 제3항).

1.1.2.

특허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 심리 → 심결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심판절차는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 또는 특허로(www.paten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판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의2 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 특허거절결정일자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청구 시 첨부서류
 - 정정심판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 첨부
 -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첨부
 - 통상실시권허락심판 : 통상실시권 허락을 원하는 청구인의 특허 등록번호와 통상실시권 설정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특허 등록번호,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심판청구서에 기재

● 심판청구서의 수리

-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수수료 납부 등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관을 지정하여 심판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방식심사결과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제출기간 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기간 내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 의해 절차무효처분되거나(특허법 제16조) 심판관의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합니다(특허법 제141조 제2항).

● 주의사항

- 심판청구서의 사건의 표시(심판종류) 기재 : 심판종류란에는 구체적으로 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특허고객번호의 기재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반드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므로(특허법 제28조의2),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심판청구서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처 : 심판에 관한 서류는 반드시 특허심판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으로 잘못 지정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서류반려처분 등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1.3.

심판청구 시 심판청구 비용이 얼마입니까?

● 심판청구료

구 분	권 리	특허·실용신안★	디 자 인 ★		상 표	
		거절·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	거절·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전자 문서 제출	기본료	매건 150,000원	1디자인마다 240,000원	매건 20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240,000원	매건 20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면 제출	기본료	매건 170,000원	1디자인마다 260,000원	매건 22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260,000원	매건 22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심판청구료가 감면됩니다.(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한함. 상표 제외) 단, 청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청구인 모두가 감면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청구인이 개인(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함,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 70%, 전담조직인 경우 50% 감면

※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 전자문서 제출 : 매건 25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270,000원

1.1.4.

심판비용액결정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특허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무효심판(특허법 제134조), 권리 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및 정정무효심판(특허법 제137조)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패소자 부담인 경우에는 예외).
-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결주문을 확인하여 심판비용액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에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비용납부서 등 증거서류와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첨부하고 수수료(500원)를 납부한 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심판비용액의 범위(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결정에 관한 고시 제8조)
 -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서, 기타 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 출석통지에 의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일당, 숙박료 또는 여비
 - 신청에 의해 여비를 예납시키고 실시한 현장검증에 소요된 일당, 숙박료 또는 여비
 - ※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범위 이내에서 산정
-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방식 완료 후 청구인(승소자)이 제출한 청구서 및 비용계산서 각 부분을 첨부한 최고서를 상대방에게 송달방에 기간(통상 30일 이내)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 비용액을 결정한 때에는 비용액결정서에 비용계산서 부분 1통을 첨부하여 양당사자에게 발송하며 청구인(승소자)이 직접 피청구인(패소자)에게 비용청구를 하면 됩니다.
- 강제집행문 부여 신청(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집행문부여등 신청서') 시에 특허법 제166조에 따라 강제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심판비용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후 강제 집행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집행관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강제집행문 부여 신청은 불복기간(심판비용액결정 등본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1.1.5.

심판비용액결정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심판비용액결정 청구는 심결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 민법을 준용하며,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1.1.6.

심판청구서 등 심판과 관련한 서류제출 시 특허고객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또한 심판 청구인의 출원인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 2002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심판절차와 관련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특허고객번호 사용하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 대한 주소, 인감 등의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의 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 담당자가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접수하여 해당 특허고객번호를 가진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보변경 처리하게 되어 심판원에는 별도의 서류를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1.1.7.

심판청구서(심판청구료, 청구의 이유 등) 및 중간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합니다(특허법 제141조 제1항). 보정 명령을 받은 청구인은 ‘보정서[보정구분 : 심판청구서등 보정]’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정명령이 없더라도 자진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 보정사항
 - 심판청구서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오기재(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심판사건의 표시 오기재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정정심판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청구서에 실시하려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와 명칭,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번역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1.1.8.

심판청구건에 대해 우선심판신청도 가능한가요?

-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제1항).

● 우선심판의 대상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으로서 우선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 요청이 있는 경우
- 국제간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요청이 있는 경우
-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다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자기 실시 중이거나 준비중인 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에 대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은 제외한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 우선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심판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제2항).

1.1.9.

심판관련 지정기간연장 신청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 심판절차 관련 지정기간연장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소명서에 기재된 연장 사유, 심판기간, 우선심속심판 여부 등을 심판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 지정기간연장 신청 시 연장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에 대한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1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회 연장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 다만, 우선심판 또는 신속심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승인하고 있으며, 그 이후는 불승인합니다.

● 지정(법정)기간연장 신청 대상 서류

- 법령에 의하여 제출기간(지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서류(심판청구서부분송달에 따른 답변기간, 정정청구서 제출기간, 보정서 제출기간,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심문서에 대한 답변기간 등)
- 다만, 심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내용 통지서(우선심판결정통지서,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상표/디자인/기술설명회개최통지서 등)는 지정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법정)기간연장 신청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3항 제11호, 제3조 제3항 제11호, 제4조 제3항 제10호, 제5조 제3항 제10호)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신청구분 : 지정기간연장]'를 우편접수 시에는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우체국의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신청서와 함께 특허심판원으로 등기우편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1.1.10.

심결문 검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결문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홈페이지(www.kipris.or.kr)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심결문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별도로 작업이 필요하게 되므로, 심결 일로부터 대략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검색 및 다운로드 됩니다.

1.1.11.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 심판원이 한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에 심결 또는 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비용액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86조 제7항)
-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특허법 제186조 제1항). 상기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 특허법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89조 제2항).
-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 제8항). 상고는 특허법원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2.

재심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내재되어 심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심결을 한 기관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78조).
- 재심 사유
 - 일반재심사유(특허법 제178조 제2항) : 특허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심판관이 관여한 때
 -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등
 -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특허법 제179조 제1항)
 -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 재심청구 가능
 - ※ 이 경우 재심청구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
- 재심청구 기간
 -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80조 제1항).
 -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특허법 제180조 제2항).
 -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80조 제3항).
 - 다만,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의 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합니다(특허법 제180조 제4항).
 - 단,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특허법 제180조 제5항).

1.1.13.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 서류 제출하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 기간 및 상고기간의 계산에는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됩니다.

- 특히 민법 제161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날에도 제소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우편으로 심판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물의 통신 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특허법 제28조 제2항)하지만,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예외 없이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1.1.14.

신속심판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까?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신속심판대상이 되는 경우 신속심판을 신청하면 신속히 심판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단, 제31조에 의한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신속심판대상

- 특허법 제164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상표법 제151조 제3항에 의하여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이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신청서를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사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용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청구한 최초의 정정심판으로서 신속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신속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

-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중소기업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심판사건
 -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 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 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 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1.1.15.

심판청구서 및 심판관련 중간서류에서 사건의 표시 또는 심판사건의 표시항목 중 심판종류 란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심판청구서'에 사건의 표시 또는 심판사건의 표시항목의 심판종류 란에는 구체적으로 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1.1.16.

특허심판원에서 심결문 수령 후 소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이며, 소제기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 심결(결정)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제기 가능하며, '부가기간 지정신청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기간 지정이 가능합니다. 부가기간지정신청은 특허법 제186조 및 부칙 제557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됩니다. 소제기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소제기기간 만료일까지 특허심판원에서 부가기간이 지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소제기기간 만료일 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당사자의 주소·대리인 유무·교통·통신의 편리성 및 접근용이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내국인의 경우 2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심판장 직권에 의하여 정하며 신청인, 당해사건의 상대방, 참가인에게 통지합니다. 부가기간 지정은 직권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특허심판원 예규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 지정에 관한 지침' 참조).

1.1.17.

심결문 등본은 어떻게 송달받습니까?

-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 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심결문 등을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경우 전자송달을 하며, 송달받을 자가 심결 등본 등을 온라인(특허로, www.patent.go.kr)을 이용하여 확인할 때 송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심결등본 등을 발송일로부터 4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확인하지 않으면 특별송달(우편)방법으로 심결등본 등을 재발송합니다.
- 심결문의 반송되어 온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재발송하며, 재발송 심결문이 반송되어 온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합니다. 공시송달한 경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공시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키프리스(www.kipris.or.kr) 또는 서류열람복사신청을 통해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1.18.

심판청구 취하도 가능한가요?

- 심판청구의 취하란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심판청구는 심결확정(예정)일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특허법 제161조 제1항).

1.1.19.

2이상의 심판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나요?

-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60조). 심리병합을 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심판관(합의체)에 의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 심리병합의 요건
 -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할 것
 - 2이상의 심판이 동일 종류일 것
 - 심리종결 전일 것

1.1.20.

심판청구 취하서 제출 시 반드시 피청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 당사자계심판에 있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피청구인의 동의서 첨부 없이 취하가 가능합니다. 답변서 제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피청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일부 취하인 경우도 동일).

1.1.21.

부가기간지정신청서 제출 시 심결등본수령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 부가기간신청서 제출 시 심결등본수령일자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1.22.

심판청구서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포괄위임장만 첨부하여도 포괄 위임 효력이 있나요?

- 포괄위임은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위임하는 것으로 포괄위임등록신청을 거쳐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포괄위임등록번호 없이 포괄위임장만 제출한 경우 위임장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정 대상입니다.

1.1.23.

심판청구의 일부 취하가 가능한가요?

- 심판청구의 일부취하라 함은 심판대상의 일부를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철회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A, B 2개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특허 무효를 청구한 후에 그 일부인 A 또는 B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 ①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2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1조 제2항). 그러나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1 청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의 일부(예 : 1항 중 A 또는 B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A만)에 대하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 ② 디자인등록의 무효에 대하여는 일부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일부취하가 가능합니다.
 - ③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의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마다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 그러나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일부를 취하 할 수 없습니다.
 - ④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일부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이상의 정정사항에 대하여 하나의 정정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중의 일부사항에 대하여 삭제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1.1.24.

심결 후 심판사건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제기 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인데,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심판청구 취하 시 심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심판청구의 취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1조 제1항) 따라서 ‘심결 이후 심판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언제든지 심판청구 취하가 가능하며, 심판과정에서 피청구인의 답변이 있었다면 피청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취하서를 어느 단계에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지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대법원에서 상고 취하를 할 경우
 - 대법원 소만 없었던 것이 되므로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됩니다.
 - ② 대법원에서 소 취하하거나, 특허법원에 소 취하할 경우
 -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소까지 없었던 것이 되므로 특허심판원 심결이 확정됩니다.
 - ③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취하 하는 경우
 - 해당 심판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만일, 특허심판원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는 심결이 취하되었으므로 소를 각하처리하게 됩니다.

1.1.25.

심판절차가 중지된 심판건에 대해 심판사건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 특허, 실용신안(2017. 3. 1. 특허법 개정), 상표법(2016. 9. 1. 상표법 전면 개정)에 따라 당사자가 심판절차 중지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판절차중지통지서’가 발송되어 심판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도 심판사건의견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중지사유가 해소되어 심판절차중지가 취소될 때까지 심판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심판사건의견서의 부분송달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1.26.

결정각하와 심결각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결정각하	심결각하
의의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심판장 단독명의로 처리	부적합한 심판청구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가 심판청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주체	심판장	심판관 합의체
객체	<p>① 심판청구서 기재방식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청구서 기재방식 : 당사자 성명 및 주소 기재 방식위반 /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미기재 또는 오기재 / 심판사건 오기재 / 청구이유 미기재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미첨부 - 정정심판에서 정정명세서 또는 필요한 도면 미첨부 <p>② 심판의 절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능력위반, 대리권의 흠결, 수수료미납, 기타 방식 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심판사항이 아닌 심판청구 - 실존하지 않는 자가 당사자인 경우 -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 당사자 적격이 없는 심판청구, 즉, 이해관계 없는 자가 한 심판청구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심판청구 - 특허심판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동일한 심판청구 - 심판청구 시에는 적법한 심판청구였으나, 심판청구 후 대상 출원이 취하/포기되어 심판 대상물이 소멸한 경우 -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심판청구 - 심결확정 전에 재심청구되거나, 재심사유가 아닌 것을 이유로 재심청구한 경우 - 제척/기피결정의 불복심판 청구
절차	보정기회부여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음
불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소제기 - 특허청장을 피고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소제기 - 결정계는 특허청장을, 당사자계는 원심판의 피청구인을 피고로 함

1.1.27.

신속심판 처리기간 및 신속심판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속심판대상 사건(2020. 7. 14. 시행)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신속심판 신청서 필요여부	심판관의 신속심판 결정통지
1. 특허법 제164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상표법 제77조의27 제3항에 의하여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심판사건 중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은 제외)	×	관련 기관으로 부터 통보 사실이 접수된 날 또는 심판관이 지정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
1의 2.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은 제외)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신청서를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사건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용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사건	○	
4.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해당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신속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4의 2.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신속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5.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		
6.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사건		
7.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	

1.1.28.

우선심판 처리기간 및 우선심판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우선심판 대상 사건(2020. 7. 14. 시행)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우선심판 신청서 필요여부	심판관의 우선심판 결정통지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상표, 디자인, 2001. 6. 30. 이전 특허사건, 1999. 6. 30. 이전 실용신안사건)	×	사건 이관일 부터 10일 이내
2.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	
3.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	
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	
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	우선심판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6.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7.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		
8.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		
9. 침해분쟁의 사건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사건	×	사건 이관일 부터 10일 이내
10.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다만, 출원과 동시 심사청구 &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 자기 실시 중이거나 준비 중인 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 도록 해당 전문 기관에 요청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인 경우 미적용		
11.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 심판사건은 제외	○	우선심판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2.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서 특허분류가 A61K 또는 C07K(의약품)에 해당하는 사건	×	사건 이관일 부터 10일 이내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허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	우선심판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1.1.29.

심판원에서 확정되거나 심결이 되지 않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일반인 또는 제3자가 서류열람 또는 복사 할 수 있나요?

- 특허법에서는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심판서류의 일반열람을 허가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16조)
- 다만, 심판 또는 재심이 계속 중인 경우 등으로써 열람·복사 등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심판사무취급규정 제84조) 심결 미확정건(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포함)인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복사가 심판사건의 당사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 또한,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 등의 열람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에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열람·복사의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열람·복사의 제공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85조 내지 제86조)

제2장 결정계심판

2.1. 결정계심판

2.1.1.

결정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 결정계심판이란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하며,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며 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판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습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법 제33조)
 -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
 - 실용신안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실용신안법 제33조)
 - ※ 1999년 6월 30일 이전 및 2006년 10월 1일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한함. 1999년 7월 1일 ~ 2006년 9월 30일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채택되어 거절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0조)
 -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상표법 제116조)
- 취소결정불복심판
 -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구 특허법 제132조의3)
 - ※ 2007년 7월 1일부터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무효심판으로 통합
 -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구 실용신안법 제54조)
 - ※ 실용신안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취소결정은 2006년 9월 30일 이전 출원에 한함.
 - ※ 2007년 7월 1일부터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무효심판으로 통합
 -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0조)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 구 특허법 제51조, 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 ※ 1999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과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된 특허출원은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보정각하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서 다룰 수 있음.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불복심판(구 실용신안법 제54조의2)
 - 2001년 7월 1일 ~ 2006년 9월 30일에 출원된 선등록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
- 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실용신안법 제51조)
 - 2001년 7월 1일 이후 심판청구 시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 실용신안인 경우 기술평가가 특허 심판원 또는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 절차와 이의신청 절차에서 정정청구서로 특허를 정정

2.1.2.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거절결정”이란 심사관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에 대해 실제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거절이유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출원은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제도는 심사관의 일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불복을 허용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기관 스스로에게 시정의 기회를 주어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및 기재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우측 하단 → 민원서식”에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심판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특허법 제15조 제1항). 연장신청을 위해서는 특허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신청구분 : 법정기간연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특허심판원장)
- 대리인을 통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출원 시에 제출했던 위임장에 심판에 관한 절차가 위임되어 있다면 원용사항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1.3.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인 란에 출원인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 공동출원인인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인 란에 공동출원인 모두 또는 그 중 한명만 기재도 가능합니다.

2.1.4.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 거절결정을 받은 자(승계인 포함)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청구 해야 합니다.

2.1.5.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경우에 어떤 절차로 처리됩니까?

-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는 재심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재심사청구 대상 출원건에 대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할 경우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2009년 6월 30일 이전 출원 건은 심사전치가 가능하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출원인이 심판청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보정서[보정구분 : 명세서등 보정]'를 제출한 경우에는 곧바로 심판절차를 밟지 않고 당해 출원을 심사했던 심사관으로 하여금 보정된 출원을 다시 심사하게 하며, 명세서등의 보정이 원래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다른 거절이유가 없을 때에는 원결정(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하거나, 보정에 의해서도 원래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거절결정을 하지 않고 원결정을 유지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함으로써 심사전치는 종료됩니다.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원결정 유지통지를 받으면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을 지정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게 합니다.

2.1.6.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방식상의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 심판장이 심판청구서의 흠결을 보정요구 하였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정을 하였으나 그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장의 결정으로서 그 심판청구서를 각하합니다(특허법 제141조). 한편, 심판청구서가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경우, 출원이 취하·포기된 경우 등 부적절한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합니다(특허법 제142조).

2.1.7.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계류 중에 당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에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불복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심판계류 중에 당해 출원의 취하나 포기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목적이 없어진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결로써 각하됩니다. 한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 자체를 취하여 심판절차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의 거절결정은 확정됩니다.

2.1.8.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판관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며, 심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면담 또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은 원래의 결정에서 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거절이유의 적절 여부 및 심판청구인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함은 물론 원결정의 거절이유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재심리합니다.
- 원래의 거절이유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원결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때, 심판청구인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 디자인도면,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2.1.9.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출원 취하 하는 경우 심판청구료는 반환되나요?

- 거절결정불복심판 진행 중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해당 출원을 취하하는 경우, 출원취하와 심판청구 취하를 동일자에 진행 해야 합니다(동일자 제출 시, 출원 취하서와 심판취하 두 개 중에 무엇을 먼저 제출하는지 순서는 관계 없음).
- 동일자 제출이 아닌 경우, 출원 취하서를 먼저 제출 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결각하 됩니다.(심결각하의 경우 심판청구료의 1/2 반환 불가능)
- 심리종결통지 받기 전까지 출원 취하와 심판 취하를 동시진행하는 경우, 심판취하로 심결 확정되며, 이 경우에 심판청구료의 1/2 반환 가능합니다.
※ 심리종결통지 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심판청구료의 1/2 반환)

2.1.10.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판진행 중에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 종래에는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절차를 독립하여 진행할 수 있었으나, 2001년 2월 3일 개정법에서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무효심판에서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36조 제2항).
※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11.

정정심판이란 무엇이며, 청구인 및 청구기간, 정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정정심판이란 특허권 등이 설정등록 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 청구인
 - 정정심판은 권리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 ※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의 범위(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 특허(또는 실용신안)의 정정은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정정의 범위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2001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 적용).
 - 정정의 결과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단, 특허의 경우 ㉠ 및 ㉡ 요건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출원당시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청구기간
 - 정정심판은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가능하며, 청구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정심판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실용신안기술평가 포함)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취소결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가 취소되거나 무효심판에 의하여 모든 청구항에 대해 무효가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1.12.

등록특허의 청구항 중 독립항만을 남기고 나머지 종속항은 포기(말소) 신청을 한 이후에 정정심판을 통해서 포기했던 종속항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 정정의 범위는 특허권자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표시를 신뢰하는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적 기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정정심판의 범위(정정요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범위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또는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일 것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일 것
 -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닐 것
 - 정정 후에 특허청구범위는 출원 시 독립해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
- 정정심판을 통해 포기했던 종속항을 다시 살리는 것은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여, 위에서 언급된 정정심판의 범위에 해당 되지 않아 정정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1.13.

재심사청구, 심판청구, 분할출원을 함께 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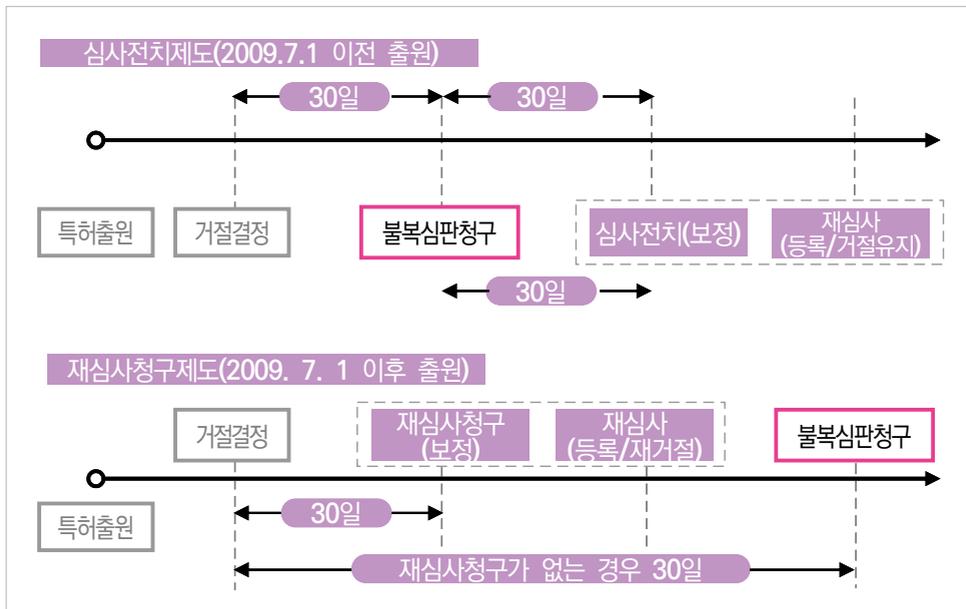
-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으로 거절결정 된 경우(개정법 적용 대상 출원) 재심사청구와 분할출원, 심판청구와 분할출원은 동시에 할 수 있고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가능 기간에 심판청구 대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사청구기간 내에 분할출원 선행 후 재심사청구 하거나 재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어도 분할출원 가능합니다.
 - 재심사청구 후 재거절결정서 받고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가능 기간에 심판청구 없어도 분할출원 가능합니다.
 - 재거절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여 취소환송된 건에 대해 다시 거절결정이 된 경우 분할출원 및 재심사청구 가능합니다.
 - ※ 특허법 제15조에 따라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되면 분할출원, 재심사청구기간도 함께 연장됩니다.

2.1.14.

재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바뀌는 점은 없나요?

- 심사전치 제도를 폐지하고 재심사청구 제도(특허법 제67조의2)를 도입하여 (종전)거절결정 후 출원인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별지 제9호 '보정서(보정구분 : 명세서등 보정)'를 제출하는 경우에 심사전치 되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 (개정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시행일 및 적용대상 :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 출원하는 것부터 적용되며, 변경·분할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이 소급 되어 원출원일이 기준이 된다.

〈절차 비교도〉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거절결정 후 명세서등 보정 없이 바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거나, 거절결정 후 명세서등 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사 후 또 다시 거절결정된 경우에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 출원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에는 명세서등 보정은 할 수 없으며(제출 시 반려), 심판청구 시에 청구의 이유까지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2.1.15.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되니까?

- 심판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청구 보정서는 반려(심판청구서의 무효·취하 여부에 불문)됩니다.
※ 심판청구서가 무효·취하되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재심사청구로 보정서 제출 가능합니다.

2.1.16.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서'와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보정서'를 동일자로 제출한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되니까?

- 보정서에 재심사청구의 취지 기재가 없고, 보정서의 수신인을 특허심판원장으로 하였다든 점에서 재심사를 청구하는 보정서로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서로 취급하고 보정서는 반려됩니다.

2.1.17.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재심사청구 없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이유를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경우,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 출원건에 대해서는 바로 심판관 지정이 이루어지므로 심판청구 당시에 청구의 이유가 없다면 보정요구서(통상 4주)가 발송됩니다.
- 보정요구기간 내에 '보정서[보정구분 : 심판청구서등 보정]'(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로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여야 하며, 보정이 되지 않으면 결정각하가 됩니다.

2.1.18.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심판단계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기간연장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지정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회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사유에 따라 담당 심판관이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연장 가능합니다(매회 기간연장신청 시 소명서는 반드시 첨부).

제3장 당사자계심판

3.1. 당사자계심판

3.1.1.

당사자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 당사자계심판이란 일단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이 부여된 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내용 자체의 유·무효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일반 소송절차처럼 당사자 대립구조로 진행되며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당사자계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고, 심판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하며(통상실시권허락심판은 제외), 참가가 허용됩니다.
- 무효심판
 - 특허의 무효심판 : 특허법 제133조
 - ※ 2006년 10월 1일 이후 청구된 무효심판의 계속 중에 청구된 정정청구의 적법 요건 판단 시에는 특허의 정정요건 중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일명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특허법 제134조, 실용신안법 제31조의 2)
 -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실용신안법 제31조, 구 실용신안법 제49조)
 - ※ 2006년 10월 1일 이전 또는 이후 출원에 관계없이 실용신안무효심판의 경우에는 정정요건 중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일명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
 -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상표법 제117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상표법 제118조)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상표법 제214조)
-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상표법 제121조
 -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청구되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전용실시권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 제1항, 실용신안 제33조).
 - 2007년 1월 3일 이후에 청구되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전용실시권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상표법 제121조).
- 정정의 무효심판 : 특허법 제13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실용신안법 제52조
- 통상실시권허락심판 : 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구 실용신안법 제53조,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상표법 제119조
-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 상표법 제120조

3.1.2.

특허무효심판이란 무엇입니까?

- 특허의 무효심판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 된 특허권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를 무효로 할지 여부는 행정권의 행사로서, 오로지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일단 설정등록이 되면 무효이유가 존재하여도 특허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원도 소송사건 등의 선결문제로서 무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무효심판은 특허권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에 특정인에게 부당한 권리를 부여한 결과가 되어 산업발달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특허를 정리하려는 취지입니다.
-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적격판단은 심결 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설정등록 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었으나 2017년 3월 1일 특허법 개정으로 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되어 무효심판 청구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가능
 - 피청구인 : 특허권자
- 무효사유(특허법 제133조 제1항)
 -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락된 경우
 -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 무권리자에게 권리가 허락된 경우
 -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락된 경우
 - 조약에 위배되어 권리가 허락된 경우 등
 - ※ 특허 무효사유는 법으로 정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것을 이유로 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무효의 효과
 -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깁니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보상금청구권도 특허가 무효 된 경우에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소급효의 예외 : 특허가 특허권 발생 이후에 생긴 후발적 무효사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무효 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 실시료·손해배상금 등 반환 문제에 있어서는 실시권 설정계약 당시에 특허가 무효 된 경우 이미 지급한 실시료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는 이행의무가 있

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실시료를 반환해야 하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실시료의 반환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무효 된 특허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실시권의 경우와는 달리 특허권자는 그 손해배상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특허가 특허법 제104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무효 된 경우에는 무효 된 원 특허권자 등은 일정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

3.1.3.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한정됩니다. 2006년 10월 1일부터 특허이의신청이 무효심판으로 통합되면서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가능하였으나, 2017년 3월 1일 특허법 개정으로 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되어 그 이후 무효심판은 불필요한 심판의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그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1.4.

특허무효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심판청구서에 이해관계의 주장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청구서의 전체 취지로 보아 실질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불충분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도록 보정요구서를 발송합니다.
- 보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인이 소명되면 심판을 진행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결로써 각하합니다(특허법 제142조).

3.1.5.

특허 무효심판계속 중 피청구인(권리자)이 그 등록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는 것입니까?

- 특허무효심판 계속 중에 권리자가 그 특허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본법상의 이해관계인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 양도는 심판 피청구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또한 심결이나 판결의 효력은 그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심결이나 판결의 종국에 이르기 까지 당사자로서 자기 승계인을 위하여 행위를 할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이에 대하여 등록원부상에 예고 등록되므로 양수인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특허에 대한 등록원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1.6.

특허무효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까?

- 무효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서상의 기재사항 기재여부 및 수수료 납부여부에 대한 방식상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부분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며, 무효심판청구인과 특허권자 상호간의 변박·반박 등의 절차를 통해 무효심판청구 이유의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무효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심판청구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인용하는 심결로서 무효심결을 하게 됩니다.

3.1.7.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에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다니까?

-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인 특허권자는 심판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 기간 내 또는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특허법 제136조에 규정한 1)청구범위의 감축 2)오기의 정정 3)불명료한 기재 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의2).

3.1.8.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에서 청구항이 삭제되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에서 청구항이 삭제되는 경우, 제출된 정정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등록원부상의 청구항 수를 기준으로 정정청구료 또는 심판청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정정청구료

- 전자문서 제출 시 : 매건 기본료 30,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가산
- 서면 제출 시 : 매건 기본료 40,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가산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제출 시 매건 26,000원, 서면 제출 시 매건 36,000원

3.1.9.

정정심판, 무효심판, 취소신청 중 정정청구 시 대비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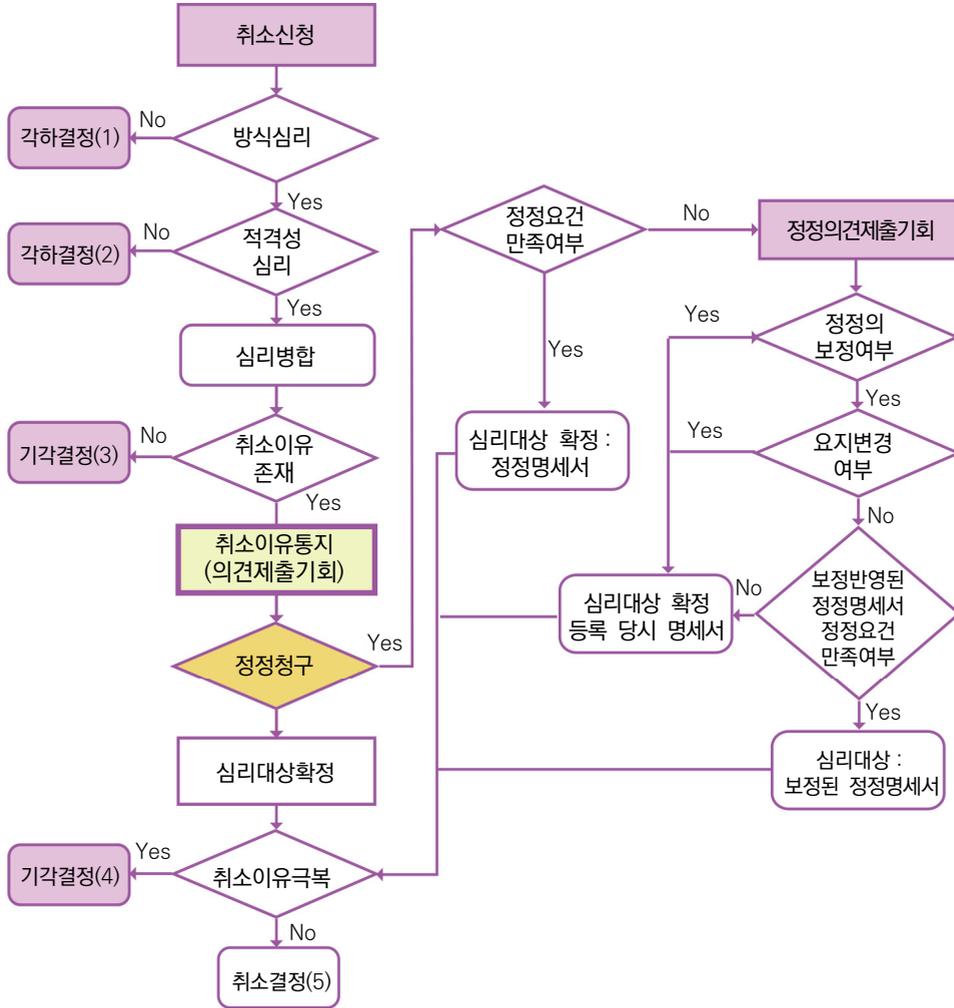
- 정정심판, 무효심판 청구 또는 취소신청 시 정정하는 명세서의 정정 전 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심판청구 및 취소신청 시 대비표를 미기재한 경우 보정요구서가 발송되며, 심판청구서등 보정서로 보정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보정료 발생).

3.1.10.

취소신청제도란 무엇입니까?

-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소신청의 대상
 -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 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 청구항 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수수료 1건당 11,000원)
- 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
 - 신청이유 :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출원입니다.
 - 증거자료 : 서면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한정합니다.
 - ※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통지한 선행기술만으로는 신청 불가
 - ※ 등록공보 상 기재되어 있으나 거절이유로 통지되지 않은 인용문헌인 경우 해당 문헌으로 취소신청 가능
 - 신청이유 및 증거방법의 보정기간 : 취소신청기간에 추가, 변경 가능하지만, 취소이유통지 후에는 불가능 합니다
 - ※ 신청이유를 누락한 경우 보정통지 대상
- 심리기관
 - 3인 또는 5인 합의체
 - ※ 심판과 동일하게 제척·기피 신청 가능
- 당사자
 - 취소신청인 : 누구든지 신청 가능 합니다
 - 특허권자 : 특허권 공유 시에는 전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참가인 : 전용실시권자 등은 권리자 측 보조 참가 가능합니다.
- 취소신청 및 그 취하 가능시기
 - 신청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다만, 권리 소멸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 ※ 신청기간 경과후의 신청서와 권리 소멸 후의 신청은 합의체가 각하, 다만, 취소신청 이후에 사유 발생시점부터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리 진행
 - 취하 가능시기 :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가능하고, 다만, 취소이유 통지 이후에는 취하 불가능합니다.

● 취소신청 흐름도



3.1.11.

취소신청 진행 중 대응하는 서식은 무엇입니까?

- 취소의견제출통지서
 - 정정청구서
 - 서식경로 : 국내중간서식 > 특허/실용신안 > 정정청구서 > 심판(취소신청)절차
 - 취소신청사건의견서
 - 서식경로 : 국내중간서식 > 특허/실용신안 > 의견(답변,소명)서 > 취소신청사건의견
- 정정청구서 제출 후 보정요구서 발송
 - 취소신청서 등 보정
 - 서식경로 : 국내중간서식 > 특허/실용신안 > 보정서 > 취소신청서등 보정
- 정정의견제출통지서
 - 정정명세서등 보정
 - 서식경로 : 국내중간서식 > 특허/실용신안 > 보정서 > 정정명세서등 보정 > 심판절차
 - 취소신청사건의견서
 - 서식경로 : 국내중간서식 > 특허/실용신안 > 의견(답변,소명)서 > 취소신청사건의견

※ 취소신청서는 신청이 있을 때마다 부분송달(취소신청서에 보정이 있는 경우, 중간서류부분송달)하지만 특허권자는 취소신청부분송달서에 답변서 제출하지 않음

3.1.12.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와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사용 특허권과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권리의 충돌 또는 마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안별로 가리는 제도입니다.
- 유형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경쟁대상물(확인대상 발명)이 자기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으로『“확인대상 발명”은 등록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
 -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 이해관계인 측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예정)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으로『“확인대상 발명”은 등록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

●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자가 청구인이 됩니다.
- 피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자가,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 효과

-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은실시는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 됩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1.13.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청구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개정 특허법 제135조 제1항·제2항, 실용신안 제33조).
- 2007년 1월 3일 이후에 청구하는 상표권·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상표법 제121조).

3.1.14.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을 잘못 특정(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하여 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확인대상 발명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대상 발명을 잘못 특정한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을 엄격히 제한(위반 시 심결각하)하고 있어 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1.15.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중에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 정정이 가능한가요?

-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중에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

3.1.16.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중 권리가 소멸된 경우 심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권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되면 심판을 진행할 목적물이 없어지므로, 권리범위확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각하심결을 합니다.

3.1.17.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란 무엇입니까?

-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당해 등록특허의 실시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자기의 발명특허의 실시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허락 해주도록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특허가 선원인 다른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권과 이용·저촉관계에 있을 때 그 특허권의 실시를 조정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 제도적 취지 : 선·후원 권리 간에 이용·저촉관계가 있고 그 권리간의 실시를 조정함으로써 발명의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심판청구의 요건
 - 이용·저촉관계가 있을 것
 -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을 것(특허, 실용신안)
 -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허락을 하지 않거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것
-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은 당해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며, 피청구인은 선출원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됩니다.
 - 한편, 선원자가 후원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후 특허법 제138조 제3항에 의하여 후원권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 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원자가 심판의 청구인이 되고 후원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 효과

- 통상실시권을 허락 받은 자가 심결주문에 정하고 있는 대가를 정해진 시기에 지급 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할 자가 공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적 통상실시권이 발생합니다.

3.1.18.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청구란 무엇입니까?

-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취소사유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불사용한 경우일 것
-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불사용하였을 것
-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1일 상표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 적격을 확대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청구 당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자입니다.

● 청구대상

- 당해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상표법 제119조 제2항). 이는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라도 사용하면 나머지 상품에 대한 사용의제효과로 인해 취소를 면할 수 있으므로, 지정상품 각각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 일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시에는 동일 유사군코드에 속한 지정상품 모두를 청구대상으로 해야 일부지정상품이 취소된 상표권에 남아있는 유사상품으로 인한 거절 이유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청구시기

-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청구는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중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

-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의 불사용 사실을 주장할 경우, 피청구인인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이상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3항).

- 2013년 10월 6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법률 제11747호)에 의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자에 대해 인정되었던 심결확정 후 6월 이내 독점출원권

(상표법 제8조 제5항 삭제)은 폐지되었으며, 시행 전에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5조).

3.1.19.

구술심리는 어느 장소에서 진행되나요? 당사자 법인 대신 법인 직원이 방문해도 발표 가능합니까?

- 일반적으로 구술심리는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에서 개최합니다.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은 정부대전청사 2동 1501호(심판정 1, 심판정 2, 심판정 3)와 1811호(대심판정), 별관(소심판정, 대심판정)에 위치해 있습니다.
- 아울러 원격영상구술심리는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영상심판정(별관 소심판정, 대심판정)과 서울사무소의 영상심판정(5층)에서 동시에 개최합니다.
- 다만, 당사자 쌍방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 일정사유 충족 시에는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특허심판원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술심리 개최 가능합니다.
 - ※ 고객의 시간 및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원격영상구술심리 실시(2014. 4.부터 시행)
-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지배인 등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 심판당사자로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며, 법인의 소속직원은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법인을 대표한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고 참관인으로 참석합니다. 다만, 소속 직원 등이 사건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심판장의 허락을 얻어 그 부분만 당사자를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3.1.20.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받은 후 기일변경신청 가능한가요?

-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받고 기일변경신청하려면 기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 이용가능)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기일변경신청서 민원서식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민원안내 → 심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일 변경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 기일 변경신청서에 상대방의 동의가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 대리인 또는 증인이 질병으로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고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한 경우
 - 기일이 이보다 먼저 지정된 법원의 기일과 경합하는 경우
 -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 또는 증인이 공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 명백한 경우
 -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이유로 제3자의 증명서가 첨부되어 심판장이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할 경우
- 기일 변경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당사자 1인에 2인 이상의 대리인이 있고 그중 1인에게 기일변경청구의 이유가 생겼을 경우
 - 지정기일 직전에 기일변경청구가 있어 증인 기타 지정기일에 출석할 자에게 연락할 수 없을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불문
- 직권에 의한 기일의 변경
 - 심판장은 공시송달로 인하여 기일 내에 기일지정통지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 제3항).
- 변경 기일
 -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합니다.
- 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 통지
 - 증인, 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의 취하, 그 밖의 사정으로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3.1.21.

기술설명회와 구술심리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 기술설명회와 구술심리는 심판사건의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심판관의 참석 하에 이루어지며 조기에 심판을 종결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심판관의 참석범위 : 구술심리는 합의체 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데 비해, 설명회는 주심심판관만 참석해도 됩니다.
 - 개최장소 : 구술심리는 심판정에서 개최되는데 비해, 설명회는 심판정, 심판장실, 면담실, 특허청 서울사무소 등에서도 가능합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3).
 - ※ 고객의 시간 및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원격영상구술심리 실시(2014. 4.부터 시행)
 - 증인신문과 엄격한 형식 : 증인신문은 일반적으로 구술심리와 함께 실시되며, 당사자·증인이 진술할 때는 선서 등의 엄격한 형식 하에 진행됩니다. 이에 비해, 설명회에서는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드물고 당사자가 진술할 때도 형식적 절차 없이 심판장 또는 심판관의 지휘 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결과보고 : 구술심리는 개최 후에 심판사무관 등이 정해진 형식의 구술심리조서를 작성하는데 비해, 설명회는 심판관이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설명회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1.22.

발명자도 구술심리 참석 가능한가요?

- 구술심리에서 발명자는 심판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참관인 또는 증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의 경우 발언할 수 없으나, 발명자가 해당기술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심판장의 허락을 얻어 그 부분만 설명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인신청을 하여 심판부에서 증인출석요구를 한 경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약, 심판장이 사전에 발언을 허락하였거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발명자가 재외자인 경우, 심판장이 통역인을 지정함이 원칙이나, 통역인이 필요한 자가 통역인을 동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구술심리 개최일 전에 통역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1.23.

당사자계심판 청구 시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분송달이 되나요?

-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가 부분 송달됩니다. 피청구인에게 부분 송달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개인/법인 : 등록시 또는 최근 사건의 대리인에게 선임 여부를 물어 대리인선임신고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등록권자 대리인(선임된) 또는 최근 대리했던 대리인이 대에게 발송연락되는 대리인이 없다면 피청구인권리자에게 특별송달
 - 국내개인/법인 :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에게 직접 송달 등록권자 대리인 선임 관계없이 등록권리자에게 직접 발송

3.1.24.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 발송 후 심리종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제도는 법정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심리종결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자 통지하는 것이며,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 내용과 심리종결 시기가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심판관 인사이동에 의한 합의부 변경 등 상황에 따라 심리종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1.25.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 후 의견서 등이 제출되면 다시 심리종결예정시기를 통지해 주나요? 심리종결한 후에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해 심리를 하나요?

- 특허심판원에서는 당사자에게 심리종결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자 2000년 5월부터 법정절차는 아니지만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증거나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이를 심리에 반영하고 심결을 할 정도로 사건의 심리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면 심리종결통지 후 심결을 합니다. 이때 일방의 의견제출에 대해 상대방의 답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필요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시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 또한,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2조제4항, 상표법제149조제4항,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제4항)

제4장 분쟁 및 기타

4.1. 분쟁 및 기타

4.1.1.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특허권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권리(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로 되어 있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특허발명이 실시되고 있으며
 -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 있고
 -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특허가 침해된다고 합니다.
-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특허법상의 민·형사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로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허출원 후 당해 출원내용이 법적절차에 따라 공개된 이후에 출원인은 당해 출원을 무단 실시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 경고할 수 있으며, 등록된 후에는 동 기간 중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
- 특허권 침해의 유형
 - 직접침해
 -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
 - 간접침해 (침해로 보는 행위)
 - 제3자의 일정행위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장차 특허권을 침해할 전단계로서의 형태를 가지는 실시행위를 법률규정에 의하여 침해로 의제한 것을 의미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권 침해 여부 확인
 - 특허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로서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허심판의 하나로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서(특허법 제135조), 특허발명과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침해물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에 관한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하단 →민원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권 침해 시 구제수단

- 민사적 구제수단 :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내지 132조).
※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 형사적 구제수단 :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특허법 제225조, 제230조).
- 행정적 구제수단 : 특허청은 이러한 특허침해와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1670-9779

4.1.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우리기업간은 물론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에 발생하는 분쟁 또한 날로 급증하고 첨단기술분야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분쟁내용이 고도화, 복잡화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간이 중재·조정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 이에 특허청에서는 쟁송능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재판이나 심판에 비하여 신청절차가 간편합니다.
 - 신청비용을 무료로 처리합니다(단,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선임할 수도 있는 대리인, 감정인의 비용 등은 당사자 부담).
 - 비공개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합의가 잘 될 경우 몇 년이 소요될 사건이 단기간(2~3개월)내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정보 이용의 확대에 따른 상표권과 도메인네임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동 제도의 분쟁해결 영역을 넓힙니다.
 - 조정위원회가 화해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Cross-License 계약, 기술협력계약 등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개자의 역할도 맡아 『분쟁당사자 관계』를 『기술파트너 관계』로 엮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정신청 대상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분쟁〉

-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련된 분쟁
-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분쟁〉

- 조정신청일 현재 특허청에 출원·등록되어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와 권리범위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
- 기타 화해의 알선·조정을 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위원회 위원)
- 위원 : 특허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인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중 15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
- 간사 :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절차

- 조정신청서 작성(신청인) → 조정신청서 접수 → 답변서 및 출석요청 → 답변서 작성(피신청인) → 답변서 접수 → 조정부 구성 → 조정회의 개최 및 조정안 작성 →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서 송부 →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서 접수 → 조정조서 작성 → 분쟁해결

※ 신청 및 문의처

- 우)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온라인신청 : www.koipa.re.kr/adr
- 이메일신청 : lp.adr@korea.kr
- 팩스 : 02-2183-5899
- 문의처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1670-9779

4.1.3.

경쟁업체에서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특허법 제94조).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나,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복잡한 소송절차에 앞서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먼저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기술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하여 미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4.1.4.

출원인(발명자)에게 상당한 특허나 실용신안 내용을 변리사가 출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지와 이런 피해의 경우 소송 외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3조). 다만, 발명자가 한 발명을 타인(변리사 등)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출원한 경우, 특허법상의 조치로는 무권리자출원이라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하고 발명자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을 증명하면서 정당한 권리자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하에서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출원일은 무권리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 변리사법 제23조에서는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 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1.5.

본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무단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주장을 하여 경고했는데, 상대방이 특허출원 시에 이미 동일한 발명을 독자적으로 완성하여 실시해 왔으므로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요?

- 특허의 등록요건으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선발명자의 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이미 그와 같은 발명을 사업으로서 실시하거나 사업설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며(특허법 제103조), 통상실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란 당해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발명을 한 경우 그 자로부터 지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라도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주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대한 확정력 있는 판단은 사법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습니다.

4.1.6.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어 경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경고장을 보낼 때의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경고장은 변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자 또는 출원인이 직접 무단 침해자에게 보낼 수 있으며,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상대방에게 알려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공개 또는 등록공보, 특허증 등)를 첨부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4.1.7.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침해 시 구제수단은 무엇입니까?

- 설정등록 된 특허권은 독점배타권을 가지므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허침해 시 그 침해에 대한 법적구제 수단 중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특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은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에 대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특허법 제230조 제1호)을 두고 있습니다.

4.1.8.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만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따라서 통상실시권자는 직접 법적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4.1.9.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동일합니다. 먼저, 침해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특허권의 침해가 됨을 알거나(고의), 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리 하여 알지 못하고(과실),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은 특허공보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시되는 점을 이유로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고(특허법 제130조), 손해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판매 수량에 의하여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4.1.10.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절차를 취해야 합니까?

- 침해자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특허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침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며(특허법 제225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특허법 제225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도 일정한 벌금형을 부과합니다(특허법 제230조).

4.1.11.

특허권 침해여부를 특허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로서 민·형사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허심판의 하나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타인의 실시행위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특허발명을 중심으로 어떤 대상물이 적극적으로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그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며,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것
 -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 이해관계인인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것

4.1.12.

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특허권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 특허무효의 주장 : 특허권 침해로 판단되었지만 아울러 특허권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특허취소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당해 경고의 법적 효과도 상실하게 됩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 권리침해 주장을 받은 자는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별개의 발명일 경우 또는 공지의 발명일 경우 그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항변함과 아울러 전문가(변리사)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실시권 존재의 주장 : 실시권이 존재할 경우 이는 정당한 실시로서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하며, 또한 특허발명을 특허출원 이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던 경우에는 특허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주장 하여야 합니다.

4.1.13.

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특허권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 실시의 중지 : 특허권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자는 자기의 실시가 특허권침해라고 판단되면 그 물품의 제조·판매나 사용 등을 즉시 중지함으로써 고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실시권 설정 또는 특허권의 승계 :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은 자는 그 물건을 계속해서 제조·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권자와 협의하여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권을 양도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청구 : 특허권침해주장을 받은 자는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특허권등과 이용·저촉관계가 있을 때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 받은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허락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의 청구 전에 먼저 선원의 특허권자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이 타인의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상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 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 발명의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등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해야 함).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 화해·중재 : 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는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원고인 특허권자와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1.14.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 특허가 출원 당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공용발명)이었다면 권리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특허법은 당해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입니다. 법원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공용발명)이었다면 특허무효의 심결 없이도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1.15.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까?

-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특허권자인 상대방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특허발명 전부에 대하여 각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업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4.1.16.

특허발명이 어떤 경우에 타인의 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성립합니까?

- 이용발명은 기본 발명의 구성전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하고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발명입니다. 이용발명의 경우 후권리자가 선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는 본인의 권리를 실시할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특허발명의 저촉관계는 특허발명이 선출원 된 타인의 권리와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고, 특허와 디자인간 또는 특허와 입체상표간에는 선원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저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1.17.

디자인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디자인권의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4조).
 -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으며
 -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있고
 -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디자인권이 침해된다고 봅니다.
- 침해의 유형
 - 직접침해
 -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디자인권자 등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간접침해
 - 직접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침해의 예비적 단계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침해로 의제한 것이며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서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침해
 - 후출원 디자인의 권리자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함에 있어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거나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실시하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됩니다.
-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적 제도
 - 디자인의 경우 타인의 모방 용이성 및 권리범위의 협소성을 고려하여 관련디자인 등록제도·비밀디자인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등록디자인을 물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권 침해 시 구제수단

민사적으로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한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고소·고발을 통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은 이러한 디자인권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1670-9779

4.1.18.

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상표권의 침해 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21조).

- 침해의 유형

- 동일범위침해 :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유사범위침해 :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간접침해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려 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상표권 침해 예방조치

-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그러나 미등록상표이더라도 주지·저명성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

- 상표 등록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권 제도”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는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 전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서면 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1670-9779

4.1.19.

상표출원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한 상호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은 해당 지역 내에서 상호로 사용한 경우(간판으로 사용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1.20.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품질 오인을 불러일으킨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표권자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 제1항 제1호).
- 취소 사유
 - 상표권자에 의한 상표의 부정사용일 것
 -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것
 - 품질의 오인·타인의 상품과의 혼동을 초래하였을 것
 - 고의에 의한 사용일 것
- 확정심결의 효력
 - 취소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며, 따라서 취소심결 확정 전에 제3자가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1.21. 위조상품이란 무엇인가요?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조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상표법 :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상표법 제108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
- 위조상품에 대한 신고는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ippolice.go.kr>)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1666-6464

4.1.22.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상표법(제230조)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1.23. 특허청에서 위조상품의 감정도 해 주나요?

- 위조상품의 진위여부 감정은 해당 상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권리자 즉, 상표권자 또는 국내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특허청에서는 감정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1.24.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는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포상금 지급 대상 : 위조상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자를 그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신고사건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4.1.25.

심판 또는 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 산업재산권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를 지원해드립니다.

※ 문의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02-6006-4300

● 지원분야

-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무효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위 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지원분야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
- 지원대상 심판 또는 소송에 해당할 것
-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것
- 서류의 제출기한이 정해진 사건은 기한이 임박하지 않을 것

● 지원대상자

- 소기업
-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해당)
-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등록 장애인
-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
- 다문화 가족
- 한부모 가족
-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 대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소기업
- 영세개인발명가(월소득 220만원 이하)

● 신청관련 서류

- 심판·소송대리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 등록원부, 등록공보
- 주장사실 증명서류(경고장, 침해품 사진, 침해품 판매사실 증명서류 등)

● 신청 시기 : 수시

● 처리절차

01 신청서 제출(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02 담당 공익 변리사 지정

03 지원여부 심사·결정(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

04 심판·소송 수행

4.1.26.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란 무엇입니까?

- 특허심판원은 대리인이 없는 심판 당사자(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의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상 면제 대상자
 - 소기업
 - 산업재산권 관련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기업
 - (예비)청년창업자(만39세 이하)
 - ※ 심판청구인이 등록권리자라면, 공동권리자 모두 대상에 해당되어야만 국선대리인 선임 가능
- 심판 종류
 - 특허심판원에 제출 되는 사항으로 심판종류에 특별한 제한은 없음
 - ※ 특허취소신청서는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이 아님
- 신청대상
 - 심판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만 가능
- 선임 신청기간
 - (청구인)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피청구인) 심판사건답변서 제출기일 이내
 - ※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까지
- 신청방법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특허법 제139조의2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제1항, 상표법 제124조의2제1항)
- 심판청구료 반환
 - 심결등본송달 이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된 심판건에 대한 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 반환
 - 반환 절차
 - 일반적인 반환신청 절차와 동일, 국선대리인 선임 심판건 당사자(납부자)에게 별도 '수수료 반환안내서'가 발송되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납부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 제출
 - 사업자서식작성기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국선대리인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서, 국선대리인 사임 신청서

4.1.27.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 지적권 분쟁 대응 역량 제고 및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쟁 단계별 맞춤형 지적권 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국제 지적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02-2183-5871~90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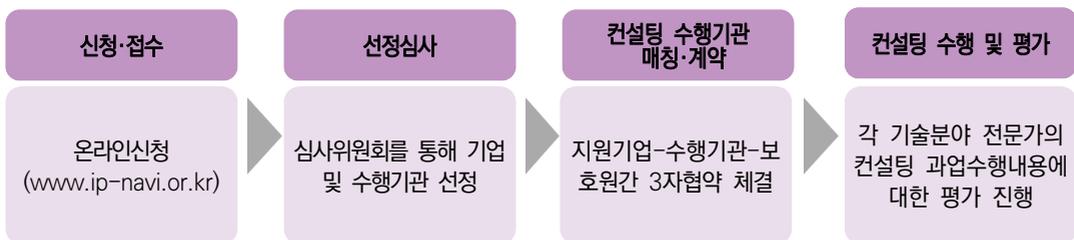
- 수출(예정)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히 조사·분석 및 종합적 대응전략 제공
-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 소송 대응, 라이선스 분쟁, 권리행사 전략 제공
-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상표·디자인 현지화 전략 제공
- 해외에서 유통되는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 수출(예정)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적권 분쟁 대응 전략 제공

- 지원절차



CHAPTER

VII

수수료

제1장	수수료 납부	320
제2장	수수료 반환 및 납부사항정정	335

목차

제1장 수수료 납부

1.1. 수수료 및 납부방법	320
1.1.1 권리별 출원료가 어떻게 됩니까?	320
1.1.2 보정료가 어떻게 됩니까?	321
1.1.3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321
1.1.4 특허청 수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합니까?	322
1.1.5 납부자번호란 무엇입니까?	322
1.1.6 수수료 자동납부란 무엇인가요?	323
1.1.7 상표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분할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324
1.1.8 특허료 차등납부제도가 무엇입니까?	324
1.2. 감면·면제대상	325
1.2.2 수수료 면제대상 중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서 유족 및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327
1.2.3 복수의 개인발명가가 공동 출원하는 경우 감면대상인가요?	327
1.2.4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327
1.2.5 종전 중소기업이 규모가 확장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328
1.2.6 설립 후 3개월 미만인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감면서류로 첨부되는 사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328
1.2.7 중소기업확인서도 제출 생략 가능한가요?	328
1.2.8 개인출원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요?	329
1.2.9 감면대상과 면제대상의 출원인이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329
1.2.10 장애인의 경우 수수료 면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329
1.2.10 장애인의 경우 수수료 면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329

1.2.11. 면제혜택 부여 시 출원이나 등록 건수에 제한이 있나요?	329
1.2.12. 제출생략이 가능한 감면·면제 증명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30
1.2.13. 상표출원 수수료도 감면·면제 혜택이 있나요?	330
1.2.14. 지방자치단체의 인정범위와 감면 시 첨부할 서류가 무엇입니까?	330
1.2.15. 수수료를 선납하는 경우 감면(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330
1.2.16. 중소기업 공동연구로 감면대상인 경우 제한이 있나요?	331
1.2.17. 국가가 출원인인 경우 수수료 또는 위임장 보정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331
1.2.18. 감면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대상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331
1.2.19. 4년분 이후의 연차등록료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332
1.2.20. 연차등록료도 평균감면율로 적용받나요?	332
1.2.21. 특허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한 비용지원제도가 있나요?	332
1.2.22. 해외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지원제도가 있나요?	333

제2장 수수료 반환 및 납부사항정정

2.1. 수수료 반환	335
2.1.1. 반환대상이 되는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35
2.1.2. 특허수수료를 반환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337
2.1.3. 특허수수료 직권반환제도란 무엇입니까?	337
2.1.4. 수수료 감면대상인데 감면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338
2.1.5. 수수료 반환받은 금액과 납부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338
2.1.6. 수수료사후감면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8
2.1.7. 출원 취하, 소멸된 건도 수수료사후감면신청 가능한가요?	339
2.1.8.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을 한 번에 여러 건 신청할 수 있나요?	339
2.1.9. 상표 중복출원 한 건 출원료 반환 가능한가요?	339
2.1.10. 수수료 반환 신청 시 제3자 또는 대리인 통장으로 반환이 가능한가요?	339
2.1.11. 특별재난지역 지식재산 포인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40
2.2. 납부사항정정	341
2.2.1.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41
2.2.2. 온라인으로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도 가능한가요?	341

제1장 수수료 납부

1.1. 수수료 및 납부방법

1.1.1

권리별 출원료가 어떻게 됩니까?

- 권리별 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 허

전 자	국 어	46,000원	서 면	국 어	66,000원 + 가산료
	외국어	73,000원		외국어	93,000원 + 가산료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실용신안

전 자	국 어	20,000원	서 면	국 어	30,000원 + 가산료
	외국어	32,000원		외국어	42,000원 + 가산료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디자인

전 자	심 사	1디자인마다 94,000원	서 면	심 사	1디자인마다 104,000원
	일부심사	1디자인마다 45,000원		일부심사	1디자인마다 55,000원

상 표

전 자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서 면	1상품류 구분마다	72,000원
	+ 지정상품	가산료		+ 지정상품	가산료

※ 지정상품 가산료 : 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전자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지정상품 가산료

- 출원료는 수수료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1.2.

보정료가 어떻게 됩니까?

-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도면·견본 등) 시 보정료 : 전자 매건 4,000원, 서면 매건 14,000원
- 디자인변경 보정료
 - 단독디자인 ⇔ 관련디자인으로 보정 시 보정료
전자 1디자인마다 4,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14,000원
 - 심사 ⇒ 일부심사로 보정 시 보정료
전자 1디자인마다 4,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14,000원
 - 일부심사 ⇒ 심사로 보정 시 보정료*
전자 1디자인마다 53,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63,000원
※ 보정 시 출원료 차액(49,000원)은 수수료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음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 시 보정료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전자 4,000원 / 서면 14,000원
- 상품류 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전자 매건 4,000원 / 서면 매건 14,000원
 -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전자문서 제출 시 62,000원 가산, 서면 제출 시 72,000원 가산
 - 2012. 4. 1. 이후 출원 건부터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씩 가산

1.1.3.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납부자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고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의 번거로움과 반환대기시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말고 추후 보정요구서(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받아 제출기간 내에 납부하기 바랍니다(다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와 기타 등록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정 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2012년 7월 1일 보정제도 도입으로 변동등록 관련 수수료는 보정 가능

1.1.4.

특허청 수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출원서, 납부서 등을 먼저 제출한 후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국고수납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서이트를 이용한 납부, 각 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납부, PG서비스(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납부 : 국고수납 은행에 직접 납부
- 온라인 납부 : 인터넷 지로서이트를 이용한 납부, 각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 PG서비스(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를 이용하여 납부
 - 인터넷 지로서이트 : “www.giro.or.kr 접속 후 로그인 → 국고금 → 특허수수료”에서 납부
 - 인터넷뱅킹 : 각 은행 인터넷뱅킹의 “공과금 납부”메뉴에서 납부
 - PG서비스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 납부 → 온라인납부”메뉴를 이용하여 납부방법 선택(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후 납부
- 우편 납부 :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하여 제출
- 가상계좌 납부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시 부여된 농협은행 입금전용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납부(오전 1:30 ~ 오후 11:00만 납부가능)
- ARS 납부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전화한 후 연결된 상담사가 특허고객번호 등으로 납부대상 건을 조회하여 ARS 서비스로 호 전환을 하면, 수수료 납부자가 납부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 불가) 정보를 입력하여 납부
- 수수료납부기한이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휴일이 끝나고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
(예) 1월 1일 출원서 제출 → 1월 2일까지 납부(2일이 공휴일인 경우 3일까지 납부)

1.1.5.

납부자번호란 무엇입니까?

- 납부자번호는 서류제출 후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접수번호와 동일합니다. 납부자번호는 총 15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일 납부자번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에는 국고수납은행에서 체크디지트 오류로 납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기간 내에 두 번 이상 납부한 경우 납부사항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1.1.6.

수수료 자동납부란 무엇인가요?

-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등의 특허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특허청에서 사전 등록된 금융기관 예금계좌(기업은행 또는 농협은행)에서 국고로 자동계좌이체시키는 방법입니다.
- 자동납부대상 수수료
 -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등 1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자동 납부하는 경우(A타입)
 - 제4년분부터의 연차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 하는 경우(B타입)
- 자동납부 신청 방법
 - 자동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자동납부 → 자동납부신청”에서 사전에 자동납부신청
 - 작성한 서식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표시하고 전자문서로 제출
- 자동납부 취하 방법
 - 이미 신청된 자동납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자동납부 → 자동납부취하”에서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 신청
 - 자동납부 계좌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전 계좌에 대한 자동납부 취하를 먼저 신청한 후 변경대상이 되는 계좌를 기재하여 자동납부신청
- 자동계좌이체 시도
 - A타입 : 서식 제출 후 즉시 1차 계좌이체가 시도 되고, 잔고 부족 시 서류 제출일의 익일 16시에 2차 계좌이체 시도
 - B타입 :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의 12시에 1차 계좌이체가 시도 되고, 잔고 부족 시 당일 16시에 2차 계좌이체 시도
- 자동계좌내역 확인
 - 자동납부신청(취하)서의 제출결과 확인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자동납부 → 자동납부신청 → 자동납부신청(취하)이력조회”에서 확인
 - 수수료 자동납부 내역 확인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자동납부 → 자동납부내역조회”에서 확인

1.1.7.

상표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분할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상표등록료 2회 분할 납부

상표 등록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납부서(납부구분 : 설정등록료, [납부대상의 표시] 납부회차 항목에 1회차로 체크)’를 제출 후 익일까지 1회차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 동일서식인 ‘납부서(납부구분 : 설정등록료, [납부대상의 표시]에서 등록번호로 설정 후 납부회차 항목에 2회차로 체크)’ 접수 후 익일까지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상표권은 소멸합니다.

- 2회 분할 납부 시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132,000원(지방세 9,120원은 1회차에 납부)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2회 분할 납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기간 내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분할납부체크)’를 제출 후 익일까지 1회차 등록료를 납부하고,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별지 제25호 서식 ‘납부서(납부구분 : 존속기간갱신등록료)’ 접수 후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상표권은 소멸합니다.

- 2회 분할 납부 시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정상납부 194,000원 / 갱신추가납부 213,000원(지방세 9,120원은 1회차에 납부)

※ 2012년 4월 1일 이후 출원하여 설정등록, 지정상품 추가등록, 존속기간 갱신등록부터 1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상기 등록료 금액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납부 1,000원) 가산

※ 2014년 1월 1일 이후 상표 설정등록 및 갱신 신청하는 건부터 지방세 4,560원 → 9,120원으로 인상

1.1.8.

특허료 차등납부제도가 무엇입니까?

●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여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때의 납부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납부료의 차등납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특허법 제 81조 제2항).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 추가납부 가산비율

- 정상납부 금액기준 1개월 이내 : 3%, 2개월 이내 : 6%, 3개월 이내 : 9%,
4개월 이내 : 12%, 5개월 이내 : 15%, 6개월 이내 : 18% 가산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보전료의 가산비율

- 보전해야 할 금액 기준 3% 가산

1.2. 감면·면제대상

1.2.1.

수수료를 감면·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수수료 감면·면제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감면·면제 대상 수수료
 - 출원료(변경·분할출원료 포함) 및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 70% 감면, 전담조직은 50% 감면)
 - ※ 단, 상표는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정료도 감면·면제 대상이 아님
- 감면·면제 대상
 - 수수료 면제(100%) (출원인과 발명(고안·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독립유공자 포함)
 -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본인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학생(초·중·고 재학생에 한함)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군 복부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2012년 4월 1일 이후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하는 건부터 적용)
 - 수수료 85% 감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수수료 70% 감면 :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
 - ※ 외국인 감면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 출원인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수수료 70% 감면 혜택
 - 수수료 50% 감면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특히, 실용신안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만 해당)*,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등

* '21년 상반기 시행예정

- 4년분~존속기간 만료까지 연차등록료 50% 감면: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기술신탁관리기관, 은행
- * (기술신탁관리기관)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
- * (은행) (은행)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권리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24.12.31.까지 이전받는 경우에 한정

- 질권의 행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신탁의 설정

- 수수료 30% 감면 : 중견기업(2013년 1월 1일 이후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하는 건부터 적용)
- 4년분~9년분 연차등록료 30% 감면 : 중견기업

● 제출서류

- 수수료 감면·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 심사청구서 또는 납부서 등에 감면·면제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개인 감면,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생계급여 증명서 1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증명서류 1통
- 장애인 수첩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류 1통
- 현재 학기 재학증명서(학생) 1통
- 복무증명서 1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증명서류 및 공동연구 수행사실에 대한 증명서류 1통
- 국·공립연구기관 증명서류 1통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법인·단체 증명서류 1통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사본 1통,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은행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및 다음 중 하나의 증명서류 1통
 -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확인서 1통

- ※ 수수료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는 신청 시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 2009년 1월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번 제출한 경우 인정년도부터 3년의 유예기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동안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출원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 설정등록료 납부 시 감면적용을 받은 경우, 4년분~존속기간만료까지 연차등록료 납부 시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안내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단, 권리이전 등 권리자 변동 시 납부서와 함께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 관리 → 수수료정보안내"에서 "출원료 등의 감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

수수료 면제대상 중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서 유족 및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자녀
 -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1.2.3.

복수의 개인발명가가 공동 출원하는 경우 감면대상인가요?

- 복수의 개인발명가가 공동으로 발명하여 공동출원 한 경우에는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개인출원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원인 중에 비발명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2.4.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제출서류 생략정보 기재 가능)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중 한 가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업확인도 중소기업 감면 시 첨부 가능합니다. 단,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동안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며,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증명서류 중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는 직전 3개 사업년도 (2021년도 제출 기준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서류를 제출합니다.
 - 설립 후 3개월 미만인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사유서로 인정
 - 설립 후 3개월 이상 ~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창업이후부터 서류제출 이전 월까지 서류 제출
- ※ 중·소기업 증명서류 직전 3개 사업년도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중소기업 감면서류 제출 인정년도+3년) 동안 동일한 서류 재제출 면제

1.2.5.

종전 중소기업이 규모가 확장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의 변경, 다른 중소기업과의 합병, 업종의 추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1.2.6.

설립 후 3개월 미만인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감면서류로 첨부되는 사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 3개월 미만의 신규설립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증명서류로 사유서+사업자등록증 첨부가능 합니다.
 - 제출유예 서류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3개월 경과된 뒤에는 반드시 감면서류를 제출
 - 사유서에는 ①주된 업종, ② 창업이후 평균 매출액, ③신규설립 기업이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미지재시 불허)되어 있어야 함
 - 반드시 법인이나 대표자의 도장 날인(변리사 도장은 인정되지 않음)

1.2.7.

중소기업확인서도 제출 생략 가능한가요?

- 중소기업확인서 확인 가능한 법인의 경우 색인정보 기재하지 않고 감면사유에 중소기업으로만 체크하면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없이 감면 가능합니다.
- “특허로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검색/확인 → 특허고객/대리인 검색 메뉴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중소기업확인서 등록된 기업은 출원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출원번호 중 1가지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중소기업확인서 입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에서 중소기업확인서 입수를 확인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 색인정보 기재하지 않고 감면사유에 중소기업으로만 체크하면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없이 감면 가능합니다.

1.2.8.

개인출원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요?

- 개인출원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감면가능 합니다. 개인 출원인이 사업자의 대표자에 해당되고,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합니다.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감면서류(중소기업 확인서)
 -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본인(출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과 동일인이어야 함
 - ※ 법인등록번호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는 제출 불가
-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1.2.9.

감면대상과 면제대상의 출원인이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공동출원인 모두 해당 수수료 및 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만 해당)에 감면율(면제는 100%로 환산)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 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소수점 이하 올림)을 적용합니다. 출원인 모두 감면 및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장애인의 경우 수수료 면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출원인과 발명(고안·창작)자가 동일하고 출원인이 장애인인 경우 면제대상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설정등록)료 입니다. 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년분~존속기간만료까지 연차등록료는 50% 감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됩니다.

1.2.11.

면제혜택 부여 시 출원이나 등록 건수에 제한이 있나요?

- 장애인 등 수수료 면제대상의 경우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

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 복수디자인 등록 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가 면제됩니다.

1.2.12.

제출생략이 가능한 감면·면제 증명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제출하는 서식 첨부서류 항목에 제출서류 생략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제출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인 증명서류,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6항).

1.2.13.

상표출원 수수료도 감면·면제 혜택이 있나요?

-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면제·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서만 수수료의 면제·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상표출원 시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를 6천원 감면하는 제도를 2015년 1월 1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1.2.14.

지방자치단체의 인정범위와 감면 시 첨부할 서류가 무엇입니까?

- 지방자치단체의 인정범위는 시, 도, 군, 구가 있으며, “구(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하는 구(자치구)에 한정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므로 감면받기 위하여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1.2.15.

수수료를 선납하는 경우 감면(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 납부하는 경우 총 납부금액의 10%(2019. 7. 9. 징수규칙 개정)가 감면(할인)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11항).

1.2.16.

중소기업 공동연구로 감면대상인 경우 제한이 있나요?

-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아닌 자가 소기업 또는 중기업과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즉, 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 감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에 따른 감면은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에 한해 감면됩니다.

● 증명서류

- ①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② 공동 연구결과물에 대한 출원 사실 확인서(임의서식)

※ 필수 기재항목

- 중소기업&중소기업이 아닌자 등 대상이 되는 출원인 정보(명칭, 특허고객번호)각각 기재 및 날인
- 사건의 표시(발명의 명칭 등)기재
- "중소기업 출원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출원인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공동으로 출원함을 확인함" 기재
- 중소기업이 아닌자와 중소기업의 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이나 인감 날인 아닌 일반적인 도장 날인도 인정

※ 확인서 원용은 불가

1.2.17.

국가가 출원인인 경우 수수료 또는 위임장 보정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위임장 보정료 및 기타 보정료 등도 면제됩니다(특허법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 상표는 모든 수수료 납부해야함

1.2.18.

감면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대상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이며, 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대상은 영리법인입니다.
 - 영리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 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이 있습니다.

1.2.19.

4년분 이후의 연차등록료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4년분~존속기간만료까지 연차등록료에 대하여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4년분~존속기간만료까지 연차등록료에 대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50% 감면이 적용됩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 * (기술신탁관리기관)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
 - * (은행)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권리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24.12.31.까지 이전받는 경우에 한정

- 질권의 행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신탁의 설정

- 4~9년분 연차등록료에 한하여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30% 감면 적용됩니다.
- 4~6년분에 한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한시적(2022년 2월 28일까지 연장)으로 20% 추가 감면됩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입니다.

1.2.20.

연차등록료도 평균감면율로 적용받나요?

- 4년분~존속기간만료까지의 연차등록료는 등록권리자가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되어야 하고 평균 감면율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1.2.21.

특허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한 비용지원제도가 있나요?

- 모태펀드를 통한 사업화자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모태펀드 산하 펀드를 통해 우수특허 사업화 기업 및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등에 투자형태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우수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 발명진흥법 상 '발명의 평가기관'의 IP가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펀드운용사가 투자를 결정한 특허기술
- 공공의 우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 최근 5년 이내에 대학, 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 받은 실적이 있거나, 본 조합 투자 이후 6개월 이내에 이전 받은 기업
-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 지식재산권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자문, 지식재산 시스템·DB 구축,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컨설팅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기업
-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의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프로젝트 :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의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주관하되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

● 지원 내용

- 펀드별 특화된 지원 대상 위주로 펀드운용사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
- 모태조합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특허기술사업화 기업, 공공IP 이전기업, IP프로젝트 등에 투자]

● 지원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042-481-8593
- 한국벤처투자(주) 신사업투자2팀 : 02-2156-2030

※ 지원시책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허청 홈페이지 → 정책/업무 → 지원시책 → 지식재산권활용지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2.

해외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지원제도가 있나요?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면서 해외의 권리획득 및 침해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 목적
 - 해외 진출기업이 직면한 현지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
- 지원 대상
 - 권리획득 및 침해조사 지원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운영(예정)중인 자
 - 지재권 상담 :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권리획득 및 분쟁대응 지원
 - 상표, 디자인출원 : 현지 국가 출원비용의 50% 지원(단, 기업별로 최대 8건)
 - 피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 : 현지 소요비용의 70% 지원(단, 기업별로 최대 3건)
- 지재권 상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절차, 권리확보, 분쟁대응 등 지재권 관련 상담

● 지원 절차

- 권리획득 및 침해조사 지원 :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 → 결과통보 → 비용지급 → 사후관리
- 신청서식 및 온라인 신청 : 해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www.ip-desk.or.kr) 이용
- 지재권 상담 : 전화, E-MAIL, 내방 상담, 현지출장(필요 시)

● 지원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042-481-5992
 - 코트라 해외지재권보호실 : 02-3460-3359, 3357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 지원시책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허청 홈페이지 → 정책/업무 → 지원시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수수료 반환 및 납부사항정정

2.1. 수수료 반환

2.1.1.

반환대상이 되는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특허법 제84조·실용신안법 제20조·디자인보호법 제36조·상표법 제38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대상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납부, 기간경과 납부 등 과오납 된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및 등록세
 - 불수리(반려)된 경우 기 납부한 특허료, 국제조사료, 국제예비심사료, 등록료 등 수수료 및 등록세
 - 출원무효처분 및 실용신안출원각하의 경우 출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심사청구료, 등록료, 우선권주장신청료)
 - 우선심사가 각하되거나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한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한 (특허 : 40,000원, 실용 : 20,000원, 디자인 : 14,000원, 상표 : 1개류마다 32,000원) 우선심사신청료
 -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건부터 적용
 - 출원 후 심사착수 전 취하, 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 ※ 2015년 5월 18일 이후 최초로 특허출원을 취하(취하간주 포함)하거나 포기하는 건부터 적용
 - 특허(등록)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해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해당분
 -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해당분
 -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 출원 후 1개월 이내 해당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허·실용신안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디자인출원료, 상표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2010년 7월 28일 이후 심사중인 상표등록출원,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한 특허·실용신안 출원,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적용)

〈 반환 제외 대상 〉

- 특허·실용신안 :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 단, 원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출원 시 원출원은 취하되므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반환가능
 - 디자인 :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
 - 상표 :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 마드리드 지정관청 진입한 출원,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
 - 심판청구료 :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를 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 및 지정상품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출원 또는 보정(재심사 보정을 포함)한 경우 분할출원료, 보정료 등을 제외한 출원료 차액
 -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
 - 디자인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
 - 상표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
 - 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심리의 종결을 통지 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감면·면제 대상이었으나 감면·면제 사유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로 감면·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출원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감면·면제대상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수수료사 후감면신청 하는 경우 대상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적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청구료)

〈 제외 대상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에 대한 심사청구 시 국 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한 경우의 감면대상은 제외
-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를 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 및 지정상품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2.1.2.

특허수수료를 반환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특허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특허법 제84조 제3항).
-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등록료의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원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출원료(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착수 전 취하 또는 포기 시 심사청구료는 반환 가능)
 - 보정에 의하여 청구항 수를 감소시킨 경우 가산된 심사청구료
- 수수료 반환 신청서 접수 방법
 - 수수료 반환 신청은 온라인, 팩스, 우편 접수 가능
 - 온라인 : 특허로 사이트 수수료관리의 수수료 반환신청 이용
 - 우 편 : 우체국접수(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4동(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앞
 - 팩 스 : 042-472-3453
 - ※ 다만, 팩스(042-472-3453) 접수는 반환신청서 상의 수신인(본인)이 직접 본인계좌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
 - ※ 고객지원실, 서울사무소 등의 방문접수 불가

2.1.3.

특허수수료 직권반환제도란 무엇입니까?

- 2019년 1월 1일 부터 특허수수료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수수료 반환신청 없이 반환 금액을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직접 반환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서식 제3호 ‘과오납 수수료 등의 반환(환급)금 지급계좌 사전등록(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적용 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수수료 반환대상 건부터 적용
 - 수수료반환 안내서 발송 → 납부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 등록된 계좌로 수수료 반환,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 기한이 지난 다음날 반환
- 반환받을 계좌 사전등록
 - 온라인 신청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 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반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메뉴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통장계좌 사본 첨부하여 신청
 - 우편, 방문 신청 : ‘과오납 수수료 등의 반환(환급)금 지급 계좌 사전등록(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 첨부해서 제출

2.1.4.

수수료 감면대상인데 감면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시점에 감면·면제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 ‘수수료사후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면제에 따른 차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8항).

2.1.5.

수수료 반환받은 금액과 납부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 2011년 10월 5일부터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일부 개정으로 반환대상 수수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이자가 포함되어 반환되므로 납부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의 2(반환대상 수수료 등에 대한 이자) 제1항에서 반환대상 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15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2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자를 포함해서 수수료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 반환여부 확인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신청내역조회”에서 반환신청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 수수료 반환신청 후 반환받기까지는 약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2.1.6.

수수료사후감면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수료사후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사후감면신청은 수수료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수료납부시점에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사후감면신청 및 반환액 수령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포괄위임등록번호 기재해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통장사본도 첨부해야 하지만, 통장사본을 등록했으면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1.7.

출원 취하, 소멸된 건도 수수료사후감면신청 가능한가요?

- 출원 취하, 거절확정, 등록 후 소멸된 건도 수수료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수수료사후감면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사후감면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납부시점에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1.8.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을 한 번에 여러 건 신청할 수 있나요?

- 사후감면 신청인이 동일한 경우 각 절차별로 여러 건을 병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병합신청 가능하여도 수수료사후감면신청서에 10건 이내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
 - 병합신청 건 중 1건이라도 잘못 신청한 건이 있으면 전체 반려
- 병합신청 가능하여도 출원·등록·심판 절차 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1.9.

상표 중복출원 한 건 출원료 반환 가능한가요?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취하(포기)서 접수하는 건은 중복출원 여부 상관없이 상표등록출원료의 반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출원일 기준 1개월 이후 취하(포기)서 접수하는 건에 대해서는 중복출원이 명백한 상표출원의 경우에만(최초의 거절이유 통지 등이 발송된 경우는 제외) 상표등록출원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로·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 요령 제2조 제9호).
 - 중복출원 판단기준 : 출원일, 출원인, 지정상품, 표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
 -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원 취하(포기)하는 건부터 적용
 - 반환대상으로 확정되면 수수료반환안내서 발송

2.1.10.

수수료 반환 신청 시 제3자 또는 대리인 통장으로 반환이 가능한가요?

- 수수료 반환은 원칙적으로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반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국고금관리법 제23조에서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반환대상건의 납부가 제3자 통장에서 출금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개인이 수수료반환통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납부는 법인에서 진행한 경우)

- 수수료 반환신청서
- 법인 통장 사본
- 권리자에게 받은 위임장 (특허고객번호 상 도장 날인 혹은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 실제로 법인 통장에서 출금이 되었다는 증명서류
 -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 항목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위임장 없이 반환신청 가능(본인 인증서로 로그인 한 것으로 위임장을 대체, 이와 같이 제3자 통장으로 반환 신청할 경우, 제3자의 실명번호를 기재하여야 반환처리 됨)

● 수수료반환안내서 수신대리인이 아닌 타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 수수료반환신청서
- 수수료반환에 대한 위임장(제1호서식)
 - ※ 포괄위임으로 불가능
 - ※ 특허고객번호 상 도장 날인 혹은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제출
 - ※ 대리인에게 반환정보가 있는 경우 필요 없음
 - 대리인 신분증(개인: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의 통장사본
 - ※ 통장사본이 등록된 경우 필요 없음
 - ※ 개인대리인의 변리사사무소 명칭의 통장도 제출 가능함

2.1.11.

특별재난지역 지식재산 포인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출원 및 등록 등 특별재난 지역에 해당하나 추가감면 받지 못한 경우 지식재산 포인트로 신청하여 이후 수수료로 반환이 가능합니다.

● 반환방법

- ① 특허로 사이트의 '수수료 관리'에서 '지식재산포인트 신청'을 선택후 부여원인 직접 선택(인증서 로그인)
 - ※ 포인트 부여대상에서 제 8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신청을 선택
 - ※ 선택방법
 - * 제8조제1항제1호내지 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디자인등록출원료, 특허(실용신안)심사청구료
 - * 제8조제1항제3호내지 제4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 *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 PCT 국제조사료
 - ※ 증명서류
 - 개인: 주민등록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생략 가능. 단, PCT 국제조사료의 경우 생략 불가)
 -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개별위임장(위임사항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식재산포인트 신청에 관한 위임에 관한 모든 절차)
- ② 방식심사 완료되면 수수료 반환 안내서를 발송
- ③ 수수료 반환 안내서 받은 수신인이 수수료 반환신청 진행

2.2. 납부사항정정

2.2.1.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수료 반환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
-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할 서류에 별지 제1호 서식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의 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납부서’ 작성 시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의 정정신청] 항목에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 기재
 - ※ 중복수납 및 기간경과 납부 등으로 과오납 통지서 등 반환통지서 없이 정정 신청하는 경우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반환대상 금액과 납부대상 금액이 일치하거나 반환대상의 금액이 납부대상 금액보다 클 경우 납부사항 정정이 가능

2.2.2.

온라인으로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도 가능한가요?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정정신청” 메뉴에 인증서 로그인 후 반환대상과 납부대상을 선택하고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CHAPTER

VIII

국제출원

제1장 PCT 국제출원	351
제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386
제3장 헤이그 국제출원	400

www.kipo.go.kr

목차

제1장 PCT 국제출원

1.1. PCT 국제출원개념	351
1.1.1.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351
1.1.2. 국제출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52
1.1.3. PCT-SAFE에 의한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352
1.1.4. ePCT를 통해 출원서(RO/101)작성한 경우 제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53
1.2. PCT 국제출원절차	354
1.2.1. PCT 국제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354
1.2.2. PCT 국제출원을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까?	354
1.2.3.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선택 후 PCT 국제출원 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55
1.2.4. 국제출원 시 선택하는 국제출원 언어는 무엇입니까?	355
1.2.5.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수리관청에서 방식심사를 합니까?	355
1.3. PCT 우선권주장	355
1.3.1.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까?	355
1.3.2. 우선권주장하여 국제출원 시 우선권 서류의 제출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356
1.3.3.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까?	357
1.3.4. 우선권 서류 송달신청서의 신청구분에 우선권 서류제출과 우선권 서류 송달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358
1.3.5. 우선권주장하여 PCT 출원 시 선출원인과 PCT 출원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까?	358
1.4. PCT 국제출원서류 작성	358
1.4.1. 국제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단일성'이란 무엇이며, 단일성을 결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358
1.4.2. 서열목록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359
1.4.3. PCT 국제출원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59
1.4.4. PCT 국제출원 시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조약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360

1.4.5.	PCT 국제출원 시 수리관청, 선택관청, 지정관청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360
1.4.6.	PCT 국제출원서에 출원인 및 발명자, 대리인 주소 기재 시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 가능합니까?	360
1.4.7.	PCT 국제출원서에 출원인 및 발명자, 대리인 주소 기재 시 우편번호는 5자리로 기재하여야 합니까?	361
1.5.	PCT 국제공개	361
1.5.1.	PCT 국제출원을 조기공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61
1.5.2.	국제공개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361
1.5.3.	국제출원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국제사무국에서 요약서를 별도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공개 시 출원인에게 별도 통지 및 출원인은 영어요약서가 잘못된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합니까?	361
1.6.	PCT 국제출원 보정 및 출원정보변경	362
1.6.1.	출원인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을 언제 보정할 수 있습니까?	362
1.6.2.	국제출원서류에 제출한 도면이 불선명하다고 국제출원보정요구서(PCT/RO/106)를 받은 경우 보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62
1.6.3.	PCT 출원 후 출원인/발명자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63
1.6.4.	PCT 출원 후 대리인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63
1.7.	PCT 국제출원 취하	364
1.7.1.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364
1.7.2.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364
1.7.3.	출원인은 지정국의 지정 또는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365
1.8.	PCT 국제조사	365
1.8.1.	국제조사기관이란 무엇입니까?	365
1.8.2.	국제조사보고서란 무엇입니까?	365
1.8.3.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란 무엇입니까?	366
1.8.4.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366
1.8.5.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수령 후 출원인의 대응방법과 견해서 내용에 대한 출원인과의 의견교환 기회가 있습니까?	367
1.8.6.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사무국에 대한 보정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68
1.8.7.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368
1.8.8.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특정 청구항에 대하여도 국제예비심사를 합니까?	368
1.8.9.	출원인은 국제조사 단계에서 명백한 잘못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368
1.8.10.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된 정정을 신청하면 잘못된 기재가 바로 정정됩니까?	369
1.8.11.	출원인이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서 청구의 범위 일부에 대하여만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국제출원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369

1.8.12.	국제출원하면 국제조사용 번역문은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까?	369
1.8.13.	보충적 국제조사가 무엇입니까?	370
1.8.14.	PCT CS&E가 무엇입니까?	370
1.9.	PCT 국제예비심사	370
1.9.1.	국제예비심사란 무엇입니까?	370
1.9.2.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371
1.9.3.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어떤 언어로 작성됩니까?	371
1.9.4.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72
1.9.5.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372
1.9.6.	국제예비심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372
1.9.7.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372
1.9.8.	국제예비심사는 언제 개시됩니까?	373
1.9.9.	견해서(Written Opinion)란 무엇이며, 출원인이 견해서 수령 후 대응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74
1.9.10.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령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374
1.9.11.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374
1.9.12.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출원인은 명백한 잘못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374
1.9.13.	국제예비심사는 어느 정도까지 비밀사항입니까?	375
1.9.14.	국제예비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의 의견교환이 가능합니까?	375
1.10.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375
1.10.1.	국제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까?	375
1.10.2.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누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까?	375
1.10.3.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I :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376
1.10.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II : Applicant(s)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합니까?	376
1.10.5.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III :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합니까?	376
1.10.6.	출원인은 Box No. IV : 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 중 수개의 check-box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376
1.11.	PCT 국제예비심사 보정	377
1.11.1.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무엇입니까?	377
1.11.2.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377

1.12. PCT 국제예비심사보고서	378
1.12.1.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된 후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반영합니까?	378
1.12.2.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됩니까?	378
1.12.3.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습니까?	378
1.12.4.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특허성 유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까?	378
1.12.5.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출원인, 국제사무국 및 선택관청에 어떻게 전달됩니까?	378
1.12.6. 국제단계에서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국제사무국에서 IB/373통지서가 출원인에게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어떤 경우에 발송되나요?	379
1.13. PCT 국내진입단계	379
1.13.1.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79
1.13.2.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시 출원인 변경 및 발명자 변경은 가능합니까?	379
1.13.3.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PCT 국제출원을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번역문 및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80
1.13.4.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80
1.13.5. 국내단계 진입 후 이를 원출원으로 하여 분할 또는 변경출원 하는 경우의 명세서 양식은 어떤 것을 써야 합니까?	380
1.13.6. PCT 국제출원 후 대한민국 진입기한은 언제이며, 진입기한 경과 시 회복 가능합니까?	381
1.13.7. 국제단계에서 PCT 국제출원 시에 신규성 의제에 관한 선언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381
1.13.8. 국제출원 시 우선권주장을 하였으나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단계 진입 후 제출 가능한가요?	381
1.13.9.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기준일이 경과 되지 않아서 반려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기준일은 무엇이며, 언제 보정이 가능합니까?	382
1.13.10. 우선권 회복 제도를 통해 PCT 출원한 경우 국내서면제출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우선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382
1.13.11. 국제공개 전 국내단계 진입 시 심사청구하는 경우, 국제출원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382
1.13.12. 국내단계진입시 국제단계에서 기재된 발명의 명칭과 203조 서면에 기재되는 발명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 지정관청 방식에서 보정요구서 발송하나요?	383
1.13.13. 국내단계진입시 PCT 국제출원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지정관청 방식에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나요?	383
1.14. PCT 국제출원 수수료	383
1.14.1.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383
1.14.2. 국제출원수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384
1.14.3. 국제예비심사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384
1.14.4.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출원인이 납부한 수수료는 어느 경우에 반환됩니까?	385
1.14.5.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385
1.14.6. PCT 국내단계 진입 시 조사보고서 또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385

제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2.1. 마드리드 국제출원요건	386
2.1.1. 기초출원(기초등록)이란 무엇입니까?	386
2.1.2. 2이상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기초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386
2.1.3. 국제출원 후에도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386
2.1.4. 국제출원 시 출원인 자격은 무엇입니까?	387
2.1.5. 마드리드 국제출원 언어는 어떻게 됩니까?	387
2.1.6.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는 무엇입니까?	387
2.2. 마드리드 국제출원절차	387
2.2.1. 마드리드 국제출원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387
2.2.2. 국제출원서의 국제등록일은 어떻게 됩니까?	388
2.2.3. 기초출원 건의 일부지정상품을 삭제한 경우 본국관청은 국제사무국으로 기초출원 일부 효력 소멸통지를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388
2.2.4. 업무표장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가능합니까?	388
2.2.5. 각 기관 별로 대리인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388
2.3. 마드리드 국제출원서 작성방법	389
2.3.1. 국제출원서식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389
2.3.2.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은 무엇입니까?	389
2.3.3. 국제출원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다른 표시로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까?	390
2.3.4.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390
2.3.5.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에 대한 표장 사용의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390
2.3.6. 국제출원서의 표장의 견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390
2.3.7. 비전형상표(소리, 홀로그램 등)출원 또는 등록 건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 할 경우 국제출원서에 어떻게 작성 합니까?	391
2.3.8. 국제출원서(MM2)서식의 2번 (d) E-mail address 항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391
2.4. 지정관청 국제출원 심사절차	391
2.4.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처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391
2.4.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92
2.4.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과정에서 보정요구서를 받고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392
2.4.4. 거절통지 기한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392
2.4.5.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국내상표출원인이나 국내상표등록권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392

2.4.6.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에 대한 보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392
2.4.7.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리인선임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393
2.4.8.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 가능합니까?	393
2.4.9.	우리나라 진입 후 중간서류 제출 시 특허고객번호를 반드시 부여 받아야 합니까?	393
2.5.	사후지정	393
2.5.1.	국제등록 후에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393
2.5.2.	사후지정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394
2.5.3.	사후지정일은 언제입니까?	394
2.5.4.	사후지정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94
2.6.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394
2.6.1.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이란 무엇입니까?	394
2.6.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95
2.7.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395
2.7.1.	국제등록 권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95
2.8.	국제등록 명의변경	396
2.8.1.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96
2.8.2.	국제등록의 일부 상품·서비스업에 대해서만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396
2.8.3.	국제등록 명의변경신청만 하고 기초출원(기초등록)의 명의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396
2.9.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	397
2.9.1.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397
2.9.2.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397
2.9.3.	국제출원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398
2.9.4.	마드리드 갱신수수료는 얼마입니까?	398
2.9.5.	마드리드 개별 수수료 선언 국가 중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대상 국가는 어디입니까?	398
2.10.	마드리드 재출원제도	399
2.10.1.	마드리드 재출원제도는 무엇입니까?	399
2.11.	마드리드 대체제도	399
2.11.1.	마드리드 대체제도는 무엇입니까?	399

제3장 헤이그 국제출원

3.1. 헤이그 국제출원제도	400
3.1.1. 헤이그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400
3.2.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	400
3.2.1. 헤이그 국제출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400
3.2.2. 헤이그 국제출원 시 출원인 적격은 어떻게 됩니까?	401
3.2.3. 헤이그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은 어떻게 됩니까?	401
3.2.4. 헤이그 국제등록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402
3.2.5.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을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까?	402
3.2.6.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후 수리관청에서 보정요구서 또는 대체서류제출요청서를 받아 온라인으로 보정서 또는 대체서류를 제출할 경우 DMZ(DM1)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까?	402
3.2.7.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402
3.2.8.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시 도면 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403
3.2.9. 국제사무국에서 방식 심사 후 하자 발생 시 발송하는 통지서가 무엇입니까?	403
3.3. 헤이그 국제공개	404
3.3.1. 헤이그 국제출원의 국제공개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404
3.4. 헤이그 국제등록 명의변경	404
3.4.1. 헤이그 국제디자인의 등록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4
3.5. 지정관청 국제출원 심사절차	405
3.5.1. 우리나라 지정국에서 보정요구서 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까?	405
3.5.2. 우리나라 지정국 진입 후 대리인 선임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405
3.5.3. 우리나라 진입 후 중간서류 제출 시 특허고객번호를 반드시 부여 받아야 합니까?	405
3.5.4. 헤이그 지정국에서 우선권증명서류 서류제출요청서 받고 DAS코드 기재해서 서류제출서 접수 가능한가요?	406

제1장 PCT 국제출원

1.1. PCT 국제출원개념

1.1.1.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현재 PCT 회원국은 153개국으로(2020. 12. 31.기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국가가 미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 PCT 국제출원의 특징
 -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우리나라)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1.1.2. 국제출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
 - 해외에 직접 출원할 경우,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초의 출원일을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출원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출원절차 및 비용은 각 자국법에 따라 다르므로 각 국가별 특허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접 해외에 출원할 경우 각 자국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보다 쉽게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3. PCT-SAFE에 의한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 PCT-SAFE에 의한 국제출원이란 WIPO에서 개발한 국제출원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PCT-SAFE의 Full Electronic - physical media 방식
 - PCT-SAFE의 Full Electronic - physical media 방법으로 PCT 출원서(Request),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요약서 작성 및 도면 첨부(통합명세서작성기)
 - PCT 출원서(Request) 작성(PCT-SAFE)
 - 작성된 PCT 출원서(Request)와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 결합(PCT-SAFE)
 - 팩시밀리 서명(도장 또는 서명 이미지)
 - 제출매체를 물리적 매체(physical media)로 선택
 - 특허로 홈페이지 → 출원신청 → PCT 국제출원 → 온라인제출
서명: 팩시밀리 서명 선택 → 찾아보기 클릭 → *.wad, *.hash.txt 파일 각각 선택 → 열기 클릭 → 제출

- PCT-SAFE의 Full Electronic - online 방식
 - PCT-SAFE의 Full Electronic - online 방법으로 PCT 출원서(Request),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요약서 작성 및 도면 첨부(통합명세서작성기)
 - PCT 출원서(Request) 작성(PCT-SAFE)
 - 작성된 PCT 출원서(Request)와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 결합(PCT-SAFE)
 - 강화된 전자서명(WIPO 인증서)
 - 제출매체를 온라인(online)으로 선택
 - 특허로 홈페이지 → 출원신청 → PCT 국제출원 → 온라인제출
서명: 강화된 전자 서명 → 찾아보기 클릭 → *.sg1, *.zg1, *.hash.txt 파일 각각 선택 → 열기 클릭 → 제출.
※ hash.txt 파일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닙니다.
- PCT-SAFE 소프트웨어 배부처
 - WIPO 홈페이지
 - 특허로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국제출원 → PCT 국제출원 → 전자출원 S/W 설치
- 수수료 감면
 - PCT-SAFE Fully Electronic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300 스위스프랑이 감면됩니다.

1.1.4.

ePCT를 통해 출원서(RO/101)작성한 경우 제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수리관청을 KR로 선택한 경우
 - 특허고객번호/대리인번호 - ePCT(WIPO)계정 연계 후, ePCT 통하여 제출
※ 연계방법(최초 1회만 실시): 특허로 인증서 로그인 > 출원신청 > PCT국제출원 > ePCT계정정보연계 진입 > ePCT 로그인(강력인증) > 특허고객번호 - WIPO계정연동 정보확인
※ WIPO ePCT demo사이트: <https://pctdemo.wipo.int>
- ePCT 절차 확인하는 방법
 - 특허로-신청/제출-PCT국제출원-하단에 알아들시다 메뉴에서 절차 확인 가능

1.2. PCT 국제출원절차

1.2.1. PCT 국제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PCT 국제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출원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국제조사 후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되며, 출원인은 필요한 경우 조약 PCT 제19조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출원인이 국제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에 국제사무국에 의해 국제공개 됩니다.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게 됩니다.
 -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일부 체약국(탄자니아, 룩셈부르크)에 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접수되고, 동 체약국이 선택국으로 선택된 경우에만 그 체약국 국내단계 진입기한이 우선일로부터 20개월에서 최소 30개월로 연장됩니다.
 - 심사의 진행 : 출원인이 번역문 등을 제출하고 심사청구하면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각국 특허청의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제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하의 국제사무국(스위스 제네바 소재)에 의해 행하여집니다.

1.2.2. PCT 국제출원을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까?

- PCT 국제출원은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국에 그 번역문을 제출할 시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원인이 해당 국가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임의대리인은 대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97조).

1.2.3.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선택 후 PCT 국제출원 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 대한민국 국민(자연인·법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법인)
-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 하는 자.

1.2.4.

국제출원 시 선택하는 국제출원 언어는 무엇입니까?

- 국제출원 언어는 수리관청이 정합니다.
- 우리나라가 수리관청인 경우 국제출원 언어는 국어, 영어 또는 일어이며 국제출원서(request)와 명세서 언어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국제출원 언어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성명, 주소, 국적, 거주국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1.2.5.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수리관청에서 방식심사를 합니까?

- 수리관청에서 국제출원서를 방식심사하며, 방식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출원일을 인정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정 또는 보완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수리관청의 국제출원일 인정은 모든 지정국에 정규의 국내출원이 제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1.3. PCT 우선권주장

1.3.1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까?

-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 후 당해 출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각국에서 특허등록 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우선권주장하여 제출할 수 있는 우선권회복 제도가 있습니다(우선권회복 제도 PCT 규칙 26bis.3).
- 우선권회복 조건
 - 신청서는 수리관청에 제출되어야 함
 - 우선권기간의 최대 연장 : 2개월
 -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의 진술
 - 상기 진술을 뒷받침할 선언 또는 기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
- 우선권회복 기준

우선권회복은 해당 관청의 적용기준에 따라 우선권 기간 내에 출원하지 못한 것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거나, 비고의적이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규정의 적용을 유보하였으며 따라서 수리관청에서의 우선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한국은 유보).

1.3.2.

우선권주장하여 국제출원 시 우선권 서류의 제출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 제출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PCT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우선권서류송달신청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출하면 출원인이 직접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수리관청의 책임 하에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줍니다.
-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과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중 먼저 만료하는 기간)과 국제출원일로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가 가능하니

- 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식은 별지 제39호 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신청구분 : 우선권주장의 보정/우선권주장의 추가]'입니다.
- 우선권주장 보정 또는 추가를 통해 우선권주장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 서류를 다시 제출(우선권주장 출원이 국내출원인 경우 우선권 서류 송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48호 서식 '우선권 서류 송달 신청서[신청구분 : 우선권 서류송달]'입니다.
 - 2018년 5월 29일 이후 국제출원 건을 우선권주장 보정 또는 추가 시 별지 제39호 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신청구분 : 우선권주장의 보정/우선권주장의 추가]'에 우선권 서류 송달 신청을 체크할 경우 우선권 서류 송달신청서 제출 효과가 발생하여 별도 우선권 서류 송달 신청은 할 필요 없습니다.
 -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1.3.3.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까?

-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과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중 먼저 만료하는 기간)과 국제출원일로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식은 별지 제39호 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신청구분 : 우선권주장의 보정/우선권주장의 추가]'입니다.
- 우선권주장 보정 또는 추가를 통해 우선권주장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 서류를 다시 제출(우선권주장 출원이 국내출원인 경우 우선권 서류 송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48호 서식 '우선권 서류 송달 신청서[신청구분 : 우선권 서류송달]'입니다.
- 2018년 5월 29일 이후 국제출원 건을 우선권주장 보정 또는 추가 시 별지 제39호 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신청구분 : 우선권주장의 보정/우선권주장의 추가]'에 우선권 서류 송달 신청을 체크할 경우 우선권 서류 송달신청서 제출 효과가 발생하여 별도 우선권 서류 송달 신청은 할 필요 없습니다.
-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1.3.4.

우선권 서류 송달신청서의 신청구분에 우선권 서류제출과 우선권 서류 송달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우선권 서류제출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 우선권서류송달은 국내 출원한 건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여 국제출원 한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송달신청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별도 우선권 증명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수리관청에서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줍니다.

1.3.5.

우선권주장하여 PCT 출원 시 선출원인과 PCT 출원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까?

- 조약 우선권주장하여 PCT 국제 출원 시 기본적으로 출원인이 일치해야 하며 우선권주장의 정당한 승계인도 출원 가능합니다. 만약, 출원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수리관청에서는 별도의 입증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각 국내단계 진입 시 자국법에 따라 승계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명서류가 무엇인지는 각 지정관청 법률에 따르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지정관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1.4. PCT 국제출원서류 작성

1.4.1.

국제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단일성'이란 무엇이며, 단일성을 결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 국제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발명의 단일성'이라 합니다.
-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면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에게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이 정한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최초로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만 국제조사를 수행합니다.

- 출원인이 추가수수료 납부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납부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4.2.

서열목록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열목록은 PCT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서열목록(Sequence Listing)작성기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별도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또한, 서열목록은 명세서에는 첨부하지 않고 PCT RO 101 서식에서 생물학 부분에 "명세서에 서열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체크하고, "내용" 부분에서 서열목록 항목 생성되면, 해당 목록 클릭 후,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1.4.3.

PCT 국제출원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출원서 서식(Request Form) 배부처 : 특허청, 특허청 서울사무소, 각 시도 지역지식재산센터
- 출원서 서식(Request Form) 다운로드 : 특허청 홈페이지, WIPO 홈페이지
- 국제출원 제출처 :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
- 제출서류
 - 서면 : 출원서(Request),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각 3부
 - PCT-SAFE online으로 선택 : PCT-SAFE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제출
 - PCT-SAFE physical media로 선택 : CD-R 제작 후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서 작성 제출
 - ePCT 웹사이트(PCT.WIPO.INT)에 접속하여 출원서 생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
 - 우선권주장 시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특허청(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우선권 서류 송달 신청 대상인 경우 출원서에 체크하고 증명서류 생략)
- 국제출원 시기 : 우선권주장 시에는 반드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도달주의 채택 : 우편 출원 시는 출원서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4.4.

PCT 국제출원 시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조약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니까?

-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누락된 경우는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사항입니다. 따라서 통상 수리관청에서 보정을 명하게 되며,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출원인이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국제조사기관에서 심사관에 의해 새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에서 작성한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의 내용을 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요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약서에 대한 수정 및 작성된 요약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1.4.5.

PCT 국제출원 시 수리관청, 선택관청, 지정관청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수리관청이란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이며, 지정관청이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입니다. 선택관청이란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선택한 국가의 국내관청으로, 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 가능하며, PCT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국 사람이 A 발명품에 대하여 미국·일본·캐나다·중국·멕시코에서 특허를 받고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시킨 후, 임의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우리나라는 현재 한국 특허청, 오스트리아, 호주 및 일본 특허청 중 택일)에 청구하면서 이 심사 결과를 활용할 나라로 미국, 중국을 선택한 경우
 - 수리관청 : 한국 특허청
 - 지정관청 : 미국·일본·캐나다·중국·멕시코 특허청
 - 선택관청 : 미국·중국 특허청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원 건에 대해서는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PCT 체약국 모두가 지정관청, 선택관청이 됩니다.

1.4.6.

PCT 국제출원서에 출원인 및 발명자, 대리인 주소 기재 시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 가능합니까?

- 2014년 1월 이후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에 따라, 2014년 이후 제출되는 PCT 국제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지번 주소 기재 시 보정요구서(PCT/RO/106)가 발송됩니다.

1.4.7.

PCT 국제출원서에 출원인 및 발명자, 대리인 주소 기재 시 우편번호는 5자리로 기재하여야 합니까?

- 2016년 8월 이후 우편번호 체계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제출되는 PCT 국제출원서에는 반드시 우편번호 5자리로 기재하여야 하며, 우편번호 6자리 기재 시 보정요구서(PCT/RO/106)가 발송됩니다.

1.5. PCT 국제공개

1.5.1.

PCT 국제출원을 조기공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에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공개되며, 그 전에 조기공개하려면 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조기공개 신청 및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수수료 200 스위스프랑).
- 조기공개 신청을 받으면 WIPO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고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합니다.

1.5.2.

국제공개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국제공개는 출원서 자체를 제외한 출원인이 제출한 국제출원 전문이 공개되는데, 출원서의 서지 사항과 요약서가 기재된 표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 조약 제19조 보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된 사항 및 설명서, 국제조사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4년 7월 1일 이후 국제출원 건부터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도 같이 공개됩니다.

1.5.3.

국제출원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국제사무국에서 요약서를 별도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공개 시 출원인에게 별도 통지 및 출원인은 영어요약서가 잘못된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합니까?

- 요약서 영문 번역은 국제사무국의 책임이자 권한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자료는 국제출원의 공개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진행되는 추가적 절차입니다.

- 국제사무국은 영어요약서에 대해서만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국제공개 사실 및 자료 확인을 위해 공개사실에 관한 통지서(PCT/IB/311)를 출원인에게 발송합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영어 요약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정정 절차는 없습니다.

1.6. PCT 국제출원 보정 및 출원정보변경

1.6.1.

출원인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을 언제 보정할 수 있습니까?

- 국제조사 단계에서 보정은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청구범위에 한해서 보정이 가능합니다(조약 제19조, 단 청구항만 가능, 국제사무국에 1회에 한해 제출).
- 국제예비심사 단계에서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때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조약 제34조,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이 대상,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횡수에 제한 없이 제출가능).
-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서류 관련 보정 시 보정료는 없습니다.

1.6.2.

국제출원서류에 제출한 도면이 불선명하다고 국제출원보정요구서(PCT/RO/106)를 받은 경우 보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불선명한 부분을 수정한 결과 기존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신청구분 :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불선명한 도면을 선명하게 작성한 대체용지 및 보정 전후의 차이점을 기재한 서한을 첨부하여 우선일로부터 26개월 이내에 국제조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 수리관청에 보정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 국제출원 시 제출한 위임장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의 보정통지서(RO/124)'를 발송하며 해당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리관청에 보정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그리고, 국제출원 언어가 한국어이며 발명의 설명에 영문 기탁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 요구서(RO/108)'를 발송하며,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1.6.3.

PCT 출원 후 출원인/발명자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신고구분 : 출원인 변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위임 대리인이 진행하여야 하며, 양수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 양도에 의한 변경 후 출원인(양수인)이 변경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의 명의를 변함이 없으나 단순히 명칭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신고구분 : 출원인정보변경]’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등-첨부서류 생략정보 기재 가능)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CT 출원 후 출원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리관청에 제출된 변경사항은 수리관청이 국제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또는 수리관청의 요청에 따라 출원인의 정보 등을 변경하며, 변경기록 통지서(PCT/IB/306)를 수리관청 및 출원인에게 발송합니다.
- 출원언어가 국어인 경우 출원인 변경 및 정보변경신고 시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에 대하여는 영어로 병기해야 합니다(Rule 4.16).
- 출원인 변경 및 출원인 정보변경 절차 진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발명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8호 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신고구분 : 발명자(고안자)변경]’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8호 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신고구분 : 발명자(고안자)정보변경]’에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발명자 변경 및 정보변경 신고 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출원인 변경 및 정보변경 신고 시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명자 변경 및 발명자 정보변경 절차 진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1.6.4.

PCT 출원 후 대리인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신고구분 : 대리인선임]’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8호 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신고구분 : 대리인정보변경]’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변경 및 대리인 정보변경 절차 진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1.7. PCT 국제출원 취하

1.7.1.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면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국제사무국 또는 우선일로부터 29개월 10일까지 수리관청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취하서 [제출기관 : 수리관청, 취하구분 : 국제출원]’를 제출하여 취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국내단계 진입한 후 국제 출원 취하는 가능하나 국제출원이 취하되더라도 국내단계 진입한 출원 건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국내단계가 이행된 경우 국내단계 진입된 출원 건을 취하하려면 각 지정 국가마다 국내법에 따라 취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 단, 국제공개 전 취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까지 제출 권장하며 17개월까지 제출 시 처리 가능합니다 (도달주의)
 - ※ 국제출원을 취하하기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1.7.2.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국제예비심사청구 취하 또는 선택국 취하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제출 시 우선일로부터 29개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달주의).
- 국제예비심사 취하를 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취하서[제출기관 : 국제예비심사기관, 취하구분 : 국제예비심사청구]’를 제출하면 되고, 선택국 선택을 취하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취하서[제출기관 : 국제예비심사기관, 취하구분 : 선택국]’를 제출하면 됩니다.

1.7.3.

출원인은 지정국의 지정 또는 우선권주장을 취할 수 있습니까?

- PCT 출원 이후 우선일로부터 29개월 10일 이내 수리관청에 제출(국제사무국에 제출 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하여 지정국의 지정 또는 우선권주장은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지정(KR)의 경우, 15개월이내 취하서를 제출해야만 선출원이 취하되지 않습니다.
- 지정국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를 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취하서(PCT 용도)'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1.8. PCT 국제조사

1.8.1.

국제조사기관이란 무엇입니까?

- 국제조사기관은 특허협력조약 동맹총회(PCT 동맹 총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 중에서 국제조사(즉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PCT 동맹 총회에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인적 조건과 자료적 조건이 있습니다.
-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대한민국(KR), 유럽특허청(EP), 미국(US), 일본(JP), 스웨덴(SE), 호주(AU), 오스트리아(AT), 러시아(RU), 스페인(ES), 중국(CN), 캐나다(CA), 핀란드(FI), 노르딕(XN), 브라질(BR), 이스라엘(IL), 인도(IN), 이집트(EG), 우크라이나(UA), 칠레(CL), 싱가포르(SG), 터키(TR), 비세그라드(XV), 필리핀(PH) 총 23개 기관이 있습니다.
- 출원인은 출원서(Request)에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수리관청이 정한 국제조사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으로 대한민국 특허청(KR), 오스트리아 특허청(AT), 호주특허청(AU), 일본특허청(JP), 싱가포르(SG) 특허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특허청을(JP)을 조사기관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 국제출원 언어는 일본어로 선택하여야 하며, 서면 출원만 가능합니다.

1.8.2.

국제조사보고서란 무엇입니까?

- 국제조사보고서는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로서 보고서에는 국제조사 제외대상 여부 확인,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요약서 및 요약서와 함께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 발명에 관한 분류, 관련기술에 관한 문헌의 인용 등의 사항이 기

재됩니다.

-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참조하여, 국제출원을 취하할 것인지 여부 및 국제출원을 보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1회에 한해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제조사기관인 특허청은 조사용 사본(Search Copy) 수령일로부터 3개월과 우선일로부터 9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국제조사기관은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PCT/ISA/210),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PCT/ISA/237)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PCT/ISA/203)를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동일한 날 송부하고,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국제공개 합니다.
- 2014년 7월 1일 이후 국제출원 건부터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도 같이 공개됩니다.

1.8.3.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란 무엇입니까?

- 2004년도부터 국제조사기관에서도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까지 판단하게 되며 이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PCT/ISA/237)’로 작성합니다.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기한은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한과 동일합니다. 내용면에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와 유사하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 단계로서 특허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출원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출원인과 의견교환 없이 특허성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제출원 건에 대하여 작성됩니다.

1.8.4.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국제출원의 대상(Subject Matter)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 동식물의 품종 또는 동식물의 생산에 관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다만, 미생물학적 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한 생산물은 제외)
 - 사업 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 정보의 단순한 제시
 -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under PCT)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아서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명세서 또는 청구의 범위가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다중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이 특허협력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PCT) 6.4(a)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경우
 - 국제조사기관이 청구의 범위 전부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서식 PCT/ISA/210)는 작성되지 않으며,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서(서식 PCT/ISA/203)를 작성하여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이 선언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 전부에 대하여 국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조약 제17조 제2항(a)).
 - 반면에, 청구의 범위 일부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외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 받게 되며, 해당란을 통하여 어느 범위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출원 그 자체에 관한 절차의 계속 여부 또는 지정관청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송부하는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다만,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국제예비심사를 받는 경우에 국제조사를 받지 않은 청구항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1.8.5.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수령 후 출원인의 대응방법과 견해서 내용에 대한 출원인과의 의견교환 기회가 있습니까?

- 국제출원인의 대응방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비공식 의견 제출은 가능합니다.
- 견해서 내용에 대해 출원인과의 의견교환 기회는 없습니다.
-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Art 34).

1.8.6.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사무국에 대한 보정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로부터 2개월과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청구범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조약 제19조, 조약 규칙 46.1).
- 보정을 할 때 제출을 위한 특정된 서식은 없으며,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임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부여하고 관련 서지사항 등을 기재한 후 보정내용이 반영된 청구항을 포함하는 전체 청구범위의 대체용지(Amended Sheet)와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및 보정 전의 청구범위와 보정 후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재한 서한(Letter)을 제출해야 하고, 보정이 명세서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1.8.7.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 조약 제19조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의 범위에 관해서만 보정을 할 수 있으며,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는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1.8.8.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특정 청구항에 대하여도 국제예비심사를 합니까?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특정 청구항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않으며 견해서(Written Opinion)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1.8.9.

출원인은 국제조사 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출원인은 국제조사 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원서(Request) 이외의 부분(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또는 국제조사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한해 가능합니다.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은 우선일로부터 26개월 이내에 관할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조약 규칙 91.1 및 91.2).

1.8.10.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하면 잘못된 기재가 바로 정정되니까?

- 출원인이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하였어도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인정해야 정정되며, 명백한 잘못의 정정이 허가된 경우 잘못이 출원 시의 국제출원에 있는 경우 국제출원일, 잘못이 출원 시의 국제출원 이외의 서류에 있는 경우(잘못이 국제출원의 보정에 있는 경우 포함) 당해 서류의 제출일부터 유효합니다.
- 다만, 조기국제공개가 청구된 경우에는 조기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때까지, 조약 제64조(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공개가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송달되는 때까지 정정인정의 통지가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면, 정정인정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1.8.11.

출원인이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서 청구의 범위 일부에 대하여만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국제출원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의 계속 여부 또는 지정관청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송부하는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국제예비심사를 받는 경우에 국제조사를 받지 않은 청구항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국의 국내법령에서 “출원인이 특별수수료를 당해 지정국 특허청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국제출원부분이 당해 지정국에 있어서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1.8.12.

국제출원하면 국제조사용 번역문은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국제조사용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국제출원을 국어로 하고, 국제조사기관을 오스트리아(AT), 호주(AU), 싱가포르(SG)한 경우에는 국제조사용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제조사용 번역문은 국제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5호 서식 ‘서류제출서 [제출구분 : 국제조사용 번역문]’에 번역문을 첨부해서 수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출원 번역문 제출 및 가산료 납부요구를 받게 되며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 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제출하고, 익일까지 가산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미제출 시 국제출원 취하로 간주됩니다.

1.8.13.

보충적 국제조사가 무엇입니까?

- 출원인에게 주(主) PCT 조사에 추가하여 국제조사기관에 대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보충적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2009년 1월 1일 발효).
- 보충적 국제조사의 목적
 - 국내단계에서의 새로운 선행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이점을 제공
 - 출원인에게 늘어나는 다양한 언어의 선행기술을 고려한 추가적인 조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보충적 국제조사는 참여하는 국제조사기관(ISA)이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적용대상
출원일에 관계없이, 보충적 국제조사 신청을 위한 우선일로부터 19개월 기한이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만료하는 국제출원

1.8.14.

PCT CS&E가 무엇입니까?

- 하나의 PCT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선진5개국(한국, 유럽, 중국, 미국, 일본) 특허청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사업으로, PCT CS&E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는 출원인이 선택한 특허청의 의견은 유지되지만, 모든 5개청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PCT국제조사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제출원 언어가 한국어, 영어인 경우에 한해 PCT 국제출원서에 협력심사 신청서를 첨부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출원인 1인당 최대 10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원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 2019.6.28이후 국제출원 시부터 한국어 확대 적용, 별도 영어 번역문 제출

1.9. PCT 국제예비심사

1.9.1.

국제예비심사란 무엇입니까?

- 국제예비심사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예비적”이라 함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판단이 국제출원의 특허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그 국제출원이 선택한 각 선택관청의 독자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 “비구속적”이라 함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판단이 각 선택관청의 판단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선택관청은 국제예비심사의 결과와는 별개로 각 자국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선택관청이 심사과정에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각 선택관청의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입니다.
- 국제예비심사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 결과물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선택관청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 절차 중에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보정하려 할 때에도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9.2.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대한민국(KR), 유럽특허청(EP), 미국(US), 일본(JP), 스웨덴(SE), 호주(AU), 오스트리아(AT), 러시아(RU), 스페인(ES), 중국(CN), 캐나다(CA), 핀란드(FI), 노르딕(XN), 브라질(BR), 이스라엘(IL), 인도(IN), 이집트(EG), 우크라이나(UA), 칠레(CL), 싱가포르(SG), 터키(TR), 비셰그라드(XV), 필리핀(PH) 총 23개 기관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R), 오스트리아 특허청(AT), 일본특허청(JP), 호주특허청(AU), 싱가포르 특허청(SG)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될 수 있으며, 일본어 출원인 경우에 한해 일본특허청을 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3.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어떤 언어로 작성됩니까?

-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당해 국제출원이 공개된 언어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2009년 이후 한국어 출원은 한국어로, 영어출원은 영어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1.9.4.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예비심사는 다음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보고서 및 조약 규칙 43의1.1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견해서 또는 조약 제17조 제2항(a)에 언급된 선언서가 출원인에게 송부된 날로부터 3개월
 - 우선일로부터 22개월
- 한편, 국제조사보고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이상,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빨리 제출할수록 국제예비심사에 많은 시간이 사용될 수 있어서 보다 우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결정하고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속히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1.9.5.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은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유무에 관하여 비구속적이고 예비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1.9.6.

국제예비심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그 결과물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선택관청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 절차 중에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보정하려 할 때에도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출원인은 수리관청에 대하여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인 선임이 필수조건은 아님).

1.9.8.

국제예비심사는 언제 개시됩니까?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국제조사보고서(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선언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있어야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합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하자가 있거나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국제예비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하여야 심사를 개시합니다. 다만,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관할 국제조사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제조사와 함께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정에 관한 사항 란에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출원인이 표기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당해 보정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이 배분되도록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어느 경우든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이 보정서의 사본을 이미 송부 받았다고 기재하지 않는 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보정서의 사본을 송부합니다. 그러나 국제사무국이 송부하는 사본을 기다리면 국제예비심사가 연기될 것입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정에 관한 사항 란에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출원인이 표기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다음 중 하나가 먼저 발생할 때까지는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수령한 때
 - 출원인이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수령한 때
 - 조약 규칙 46.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한 때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정에 관한 사항 란에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동시에 제출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수령하거나 보정서 제출명령서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합니다.
- 2019년 7월 1일 이후 국제예비심사 청구하는 건부터 출원인이 명시적인 요청이 없는 한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수수료 납부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가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접수된 후 언제든지 예비심사착수 가능합니다. 단, 출원인이 조약 규칙 54의1(a)에 따른 예비심사청구기간까지 심사착수 지연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착수 할 수 없습니다.

1.9.9.

견해서(Written Opinion)란 무엇이며, 출원인이 견해서 수령 후 대응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통지서로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와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즉, 국제예비심사 제외 대상 유무, 명세서 등의 불명료성 유무, 신규성 유무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견해서는 국내출원에 있어서의 거절이유통지서와 유사합니다.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견해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약 제34조 보정(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견해서의 주된 역할은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견해서에는 출원에 있을 수 있는 기타의 실제적임 흠결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며, 국제출원의 형식상의 하자에 대한 의견도 포함됩니다(조약 규칙 43의1(a) 및 66.2(a)).

1.9.10.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령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먼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방식심사 사항을 점검합니다. 방식심사 결과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 또는 보완을 명합니다.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즉시 출원인에게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수리일을 통지합니다.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또는 그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국제사무국은 각 선택국에 선택사실을 통지하고, 출원인에게는 통지사실을 알립니다.

1.9.11.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6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원서(Request) 이외의 부분(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한해 가능합니다.

1.9.12.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출원인은 명백한 잘못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 명백한 잘못의 신청서를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하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제사무국은 정정의 거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가능한 국제출원과 함께 정정신청서, 거부 사유서 및 출원인의 간단한 의견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1.9.13.

국제예비심사는 어느 정도까지 비밀사항입니까?

- 국제사무국과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유무나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 선택의 취하 여부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정보는 선택관청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

1.9.14.

국제예비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의 의견교환이 가능합니까?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심사과정에서 전화, 서면,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출원인과 비공식적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출원인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1.10.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1.10.1.

국제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까?

- 국제예비심사절차는 국제조사와 달리 선택적 절차로써, 출원인이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개시되는 절차입니다. 출원인은 국제출원 언어에 따라 별지 제51호 2서식 'PCT국제예비심사청구서(영어출원 시 별지 제51호 서식 PCT DEMAND)'를 작성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서면으로 2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1.10.2.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누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까?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출원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며,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출원인 중 최소 1인의 서명(기명날인)을 하는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서명에 대해 보정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출원인을 대리하여 대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으며,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을 명합니다.

1.10.3.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I :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

-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제출원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며 참조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발명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되,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새로운 발명의 명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10.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II : Applicant(s)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

- 출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국적, 거주지 등의 기재요령은 PCT출원서(Request)의 출원인항목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출원인만을 기재하되, 공동출원인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원인 겸 발명자도 출원인에 속하므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명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자("Inventor Only")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되거나 출원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변경된 사항으로 출원인 항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92bis.1).

1.10.5.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III :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

-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자가 대리인인 경우 AGENT, 모든 출원인을 위하여 특별히 선임한 일반대표자인 경우 COMMON REPRESENTATIVE에 표시하고, 각 경우에 따라 체크박스에도 체크표시를 하면 됩니다.

1.10.6.

출원인은 Box No. IV : 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 중 수개의 check-box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과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모두 고려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Box에 체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11. PCT 국제예비심사 보정

1.11.1.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무엇입니까?

-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청구의 범위 부분만 가능함).
-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는 보정은 할 수 없으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서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보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조약 제34조 보정서가 접수되면 별도 국제공개는 되지 않으며(국내단계 진입 기간 경과 후 국제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조회 가능), 보정을 고려하여 심사의 기초로 삼은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합니다.
- 조약 제34조 보정서는 별지 제39호 서식 ‘보정서·보완서·정정 신청서·추가 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구분을 ‘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으로, 제출기관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표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조약 제34조 보정 시 별도 보정료는 없습니다.

1.11.2.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어서 보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서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보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12. PCT 국제예비심사보고서

1.12.1.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된 후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반영합니까?

-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개시 이후에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1.12.2.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됩니까?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유무 및 그 이유,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1.12.3.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습니까?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신청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

1.12.4.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특허성 유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까?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는 신규성 유무 등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특허성 유무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1.12.5.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출원인, 국제사무국 및 선택관청에 어떻게 전달됩니까?

-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동일한 날에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국제사무국은 이를 선택관청에 송부합니다.

1.12.6.

국제단계에서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국제사무국에서 IB/373통지서가 출원인에게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어떤 경우에 발송되나요?

-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IB/373통지서인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1장)'라는 통지서로 발행하여 1부를 출원인에게 송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후에는 각 지정관청에 송부합니다.

1.13. PCT 국내진입단계

1.13.1.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특허법 제201조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 또는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 연장 신청한 경우, 우선일로부터 32개월 이내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PCT국내단계 진입 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에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기 제출한 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를 통해 제출합니다(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 또는 기간 내 심사 청구한 경우 심사청구 시).
-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서면 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에 국어번역문 연장 신청한 다음, 우선일로부터 32개월 이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 제출서'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1.13.2.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시 출원인 변경 및 발명자 변경은 가능합니까?

- 국내단계진입 시 출원인 및 발명자는 국제단계에서 인정된 "국제공개된 출원" 또는 "변경기록통지서"의 출원인 정보 및 발명자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국내단계진입 시 출원인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 정당한 권리 승계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국내단계 진입 후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정등록 전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 [구분항목 : 출원인변경]’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등록이후에는 권리이전을 통해 가능). 그리고 발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정등록 전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 [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등록이후에는 등록증 정정발급신청을 통해 가능).

1.13.3.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PCT 국제출원을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번역문 및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우리나라가 수리관청이며,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우리나라 국내단계 진입 시 번역문 제출은 생략하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수수료는 국내 특허출원(또는 실용신안) 출원료를 적용합니다.

1.13.4.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9조 및 제34조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 기한(우선일로부터 31개월, 국어번역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한 경우 우선일로부터 32개월)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 [제출구분 :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로 해당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국내단계 진입기한 이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하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아닌 심사청구일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제출구분 :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로 국제단계에서 이루어진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5.

국내단계 진입 후 이를 원출원으로 하여 분할 또는 변경출원 하는 경우의 명세서 양식은 어떤 것을 써야 합니까?

- 국내단계 진입 후 이를 원출원으로 하여 분할 또는 변경출원 하는 경우 명세서 양식은 국내 명세서 양식을 이용하며, 출원 수수료는 국내 분할 또는 변경 출원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후의 절차는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1.13.6.

PCT 국제출원 후 대한민국 진입기한은 언제이며, 진입기한 경과 시 회복 가능합니까?

- 우선일로부터 31개월내에 국내단계 진입해야 하며, 진입기한 경과 후 회복신청 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 없습니다.

1.13.7.

국제단계에서 PCT 국제출원 시에 신규성 의제에 관한 선언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 PCT 국제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200조 특례 규정에 따라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특허법 제200조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PCT 출원서(Request)에 공지예외주장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 [제출구분 : 공지예외적용대상]'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지예외주장이 인정됩니다.
- PCT 국제출원일이 2015. 7. 29. 이후 건은 특허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지예외 적용 보완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1.13.8.

국제출원 시 우선권주장을 하였으나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단계 진입 후 제출 가능한가요?

- PCT규칙 17조에 따라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관청은 그 우선권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출원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1회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국내법은 특허법 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는 자가 PCT규칙 17조에 따른 우선권 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의 2).
- 만약 그 기간 내에도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13.9.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기준일이 경과 되지 않아서 반려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기준일은 무엇이며, 언제 보정이 가능합니까?

- 기준일이란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내법에 의한 처리기준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이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 경우 기준일 경과 후에 명세서 등 보정서의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이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되며 심사청구 이후 명세서 등 보정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제특허출원은 PCT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제출원일 이후에는 보정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수수료의 납부 및 번역문 제출 전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계속될 것인지 여부가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의 내용도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일 전 보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08조).

1.13.10

우선권 회복 제도를 통해 PCT 출원한 경우 국내서면제출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우선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26의 2.2.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우선권 기간의 만료일 후이나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일 경우 해당 우선권주장은 무효로 간주되지 않으며, 동 조약 규칙 제26의2.3조 및 제49의3.2조에 따라 추후 수리관청이나 지정관청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청은 우선권 회복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진입 시 우선권주장은 무효로 간주되나, 우선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기간 내에 우선권주장 출원한 경우, 우리나라 국내서면 제출 기간의 기산일은 우선권주장 출원의 출원일이 됩니다.

1.13.11

국제공개 전 국내단계 진입 시 심사청구하는 경우, 국제출원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PCT 국제공개 전 국내단계 진입 시 심사청구하는 경우, 방식심사를 위해 필요한 국제출원 관련 서류(국제출원서, 발명의 설명, 우선권 증명서류 및 조사보고서 등)를 지정관청이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서류 제출 안내서’ 발송을 통해 요청하였으며, 관련 서류 입수 시까지는 203조 서면 방식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9년 5월 20일 이후 국내단계 진입 건부터 ePCT 웹서비스 연계를 통해 직접 해당 국제출원 관련서류의 입수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국제출원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1.13.12

국내단계진입시 국제단계에서 기재된 발명의 명칭과 203조 서면에 기재되는 발명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 지정관청 방식에서 보정요구서 발송하나요?

- 국제단계의 영문발명의 명칭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표기 되기는 하나, 국문과 영문의 해석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정관청 방식에서 보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만약, 발명의 명칭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출원인 측에서 변경을 요청할 경우가 발생하면 203조 서면 제출이후에 [명세서 등 보정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1.13.13

국내단계진입시 PCT 국제출원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지정관청 방식에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나요?

- 특허법 제203조 서면 제출 후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가 국제단계와 불일치할 경우 특허청은 특허법 제46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실시합니다. 단, 국제단계의 언어가 국어가 아닌 외국어인데 잘못 기재하여 번역된 명세서를 첨부할 안할 시에는 특허법 제201조에 따라 해당 번역문을 제출 안한 것으로 간주되어 반려처리 되니 제203조 서면 제출 시 해당 언어 및 명세서 첨부여부를 재확인바랍니다.

1.14. PCT 국제출원 수수료

1.14.1.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국제출원료 (2020. 12. 31. 기준)
 - 기본료 :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스위스프랑, 30매 초과 시 1매당 15 스위스프랑
- 조사료 (2020. 12. 31. 기준)
 - 한국 : 450,000원(한국어), 1,200,000원(영어), 일본 : 783,000원
 - 오스트리아 : 2,495,000원, 호주 : 1,869,000원, 싱가포르: 1,955,000원
 - ※ 추가수수료는 국제조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한국특허청에 있어서 추가수수료는 1발명당 225,000원입니다.

● 송달료: 45,000원 (2020. 12. 31. 기준)

※ PCT-SAFE 또는 ePCT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출원 시 국제출원료 중 300스위스프랑이 감면됩니다.

● 참고사항

- 관련서식 : 특허청홈페이지 → 민원서식 → 분야별 서식 → 출원·심판 → PCT 국제출원
- PCT 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 시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하여야 함(특허청 홈페이지 및 특허로 내 수수료정보 확인)

1.14.2.

국제출원수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2013년도부터 PCT 국제출원료 납부 통화가 변경되어, 국제출원 수수료 중 국제출원료는 WIPO 표준통화인 스위스프랑(CHF)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국제출원료 외 수수료(조사료, 송달료)는 원화(KRW)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출원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7호 서식 국제출원료에 대한 수수료 납부서와 국제출원료 이외의 수수료 납부서를 각각 제출하고,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제출원 수수료는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가 아니라 수수료 납부서를 제출하고 부여받은 각각의 접수번호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산료는 미납된 수수료의 50%를 기본으로 하며, 최저 금액은 송달료, 최대 금액은 국제출원료의 50%가 됩니다.

※ 2018년 5월 29일 이후 수수료 납부통지서 발송 건부터 납부통지서에 부여된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수수료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 납부서는 접수할 필요 없습니다.

● 수수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수리관청에서 가산료를 포함하여 미납수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PCT/RO/133)를 발송하며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없을 시에는 출원취하로 간주됩니다.

1.14.3.

국제예비심사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예비심사료(Preliminary Examination Fee)”와 “취급료(Handling Fee)”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급료는 PCT 조약규칙에 의하여 200CHF로 정해져 있고, 예비심사료는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국제사무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국제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료가 450,000원이고 취급료는 255,000원입니다(2020. 12. 31. 현재).

-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인 조사료는 수리관청에 납부하지만,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납부된 수수료 중 취급료는 국제사무국에 송금합니다.

※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서 당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1.14.4.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출원인이 납부한 수수료는 어느 경우에 반환됩니까?

- 예비심사료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 반환되며, 취급료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반환됩니다.

1.14.5.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출원인은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사유 또는 추가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사유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추가수수료 납부·이의신청료 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에 첨부하여 추가수수료 납부를 명령한 국제조사기관 또는 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1.14.6.

PCT 국내단계 진입 시 조사보고서 또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 4항에 따라 PCT국내단계 진입 시 한국 조사기관 또는 예비심사기관에서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예비심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료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19년 7월 9일 심사청구하는 건부터 적용).
- 심사청구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심사청구 시 감면 체크를 하면 됩니다. 또한 명세서등 보정 절차를 통해 청구항 추가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단계 진입 후 명세서등 보정을 통해 청구항 추가되는 경우에도 감면 가능, 제3자의 심사청구 시 감면 불가
수수료사후감면신청은 국제출원일자가 2015.1.1.이후 건부터 신청가능

※ 유럽특허청(EPO)에서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한 경우 (2018. 10. 1 심사청구건부터 감면대상 제외)

제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2.1. 마드리드 국제출원요건

2.1.1. 기초출원(기초등록)이란 무엇입니까?

-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기초상표를 말합니다. 즉,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 출원인은 반드시 특허청에 계속 중인 본인의 상표등록출원(기초출원) 또는 본인의 상표등록(기초등록)이 있어야 합니다(상표법 제167조 및 제169조).

2.1.2. 20이상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기초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 기초출원·기초등록의 건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2 건이상의 국내출원 및/또는 국내등록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내출원 및/또는 국내등록의 출원인과 표장이 모두 엄격히 동일해야 하며,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품·서비스가 그러한 기초출원/기초등록의 상품·서비스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2.1.3. 국제출원 후에도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기초상표(기초출원/기초등록)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기초상표의 변경 시 영향을 받습니다. 즉, 기초상표의 상품·서비스 일부 또는 전체가 소멸되는 경우 국제등록도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이라고 하며, 종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출원인(권리자)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초상표를 계속 중인(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본국관청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취소, 만료, 무효 등으로 상품/서비스 일부 또는 전체가 소멸되는 경우 이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이러한 통보에 근거해 국제사무국은 그 변경된 만큼 국제등록의 효력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의정서 제6조(3)).
- 기초상표의 효력 소멸이 국제등록의 효력 소멸로 이어지는 이러한 절차를 집중공격이라 하며, 국제등록은 5년의 종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초상표로부터 독립합니다.

2.1.4. 국제출원 시 출원인 자격은 무엇입니까?

- 출원인 자격이란 본국관청과 출원인과의 관계를 말하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168조).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가진 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 하는 경우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과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 국제출원인은 기초출원 및/또는 기초등록의 출원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2.1.5. 마드리드 국제출원 언어는 어떻게 됩니까?

- 국제출원의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소속관청(본국관청)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출원 언어로 영어만 선택 가능합니다.

2.1.6.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는 무엇입니까?

- 출원인은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로 영어 또는 불어, 스페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특허청은 국제출원서의 사용언어로서 영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2. 마드리드 국제출원절차

2.2.1. 마드리드 국제출원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공식서식인 ‘국제출원서(MM2 서식)’를 본국관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청이 본국관청인 경우 MM2 서식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상표법 제169조).
- 기타 서류로 미국(US)을 지정계약당사자에 포함시키는 경우 ‘사용의사 선언서’(MM18) 1부, 유럽연합(EM)을 지정계약당사자에 포함시키는 경우 유럽연합의 영역 안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등록의 선순위를 주장할 때에는 ‘선순위권주장신청서’(MM17)를 첨부합니다.

- 국제출원 신청료는 매건 15,000원(전자문서 제출 시 매건 5,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신청수수료)는 출원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2.2. 국제출원서의 국제등록일은 어떻게 됩니까?

- 국제등록일은 기본적으로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이지만,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수령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2.2.3. 기초출원 건의 일부지정상품을 삭제한 경우 본국관청은 국제사무국으로 기초출원 일부 효력 소멸통지를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마드리드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국관청은 기초상표의 효력 소멸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알게 된 즉시 국제사무국에 적절히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기초상표의 효력 소멸이 확정되는 이후 즉, 심사·심판의 최종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출원의 일부 상품이 삭제된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완료되어 국내등록부가 생성된 이후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합니다.
- 기초상표의 효력 소멸에 관한 통지는 국제등록 권리자와 국제사무국에 발송합니다.
 - 기초출원(기초등록)소멸사전통지서 : 국제등록 권리자(또는 본국관청 대리인)
 - 기초출원(기초등록) 소멸통지서 : 국제사무국

2.2.4. 업무표장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가능합니까?

- 상표법 제179조에 따라 업무표장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할 수 없습니다.

2.2.5. 각 기관 별로 대리인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본국관청 대리인 :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과는 별개의 대리인으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 대리인입니다. 국제출원, 사후지정,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특허청이 통지한 '대체서류 또는 보정서 제출요청서', '하자통지서' 등에 대하여 대응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대리인인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제출 시 위임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특히 본국관청에 대한 대리인과 국제사무국에 대리인이 다른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자보정서'는 본국관청 대리인이 특허청에 제출

해야 하나, 하자보정서에 첨부하는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는 국제사무국 대리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국제사무국 대리인 : 국제사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을 국제출원 시에 선임하려면 ‘국제출원서(MM2)’의 4번 항목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국제출원서(MM2)’에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추후에 대리인선임신고서(MM12)를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선임의 효력발생일은 국제사무국이 대리인선임 통지를 수령한 날이 됩니다.
- 지정국관청에 대한 대리인 : 본국관청 또는 국제사무국 대리인과 별개로 출원인은 각 지정 국가의 국내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3. 마드리드 국제출원서 작성방법

2.3.1.

국제출원서식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마드리드의정서에 적용되는 국제출원서식을 MM2라고 합니다.
- MM2 서식은 WIPO 웹사이트(<https://www.wipo.int/madrid/en/forms/>)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식작성 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해외상표출원의 ‘서식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전자출원 시에는, 통합서식작성기에서 MM2 서식 및 작성예시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3.2.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은 무엇입니까?

- 원칙적으로 기초상표의 상품·서비스업 범주 내에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상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감축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상표의 상품·서비스업이 포괄명칭인 경우 세분화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업의 영문 표시는 특허청의 상품분류코드와 WIPO의 MGS(<http://www.wipo.int/mgs/>) 서비스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합니다. NICE 분류체계에 맞지 않는 분류(class), 불명확하거나 영문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하자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특허청(본국관청)을 통해 하자를 치유해야 합니다.
- 위의 하자통지서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가 첨부된 ‘하자보정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3.3.

국제출원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다른 표시로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까?

- 지정국마다 다르게 상품 및 서비스업을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MM2의 10(b)항목에 국가와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을 감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이와 같이 감축(Limitation)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삭제되는 상품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3.4.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 출원인은 마드리드 프로토콜 회원국이면 어느 국가이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상표가 있는 본국관청을 지정계약당사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기도 합니다.

2.3.5.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에 대한 표장 사용의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사용의사 선언을 요구하나, 그 선언에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계약당사자(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지정계약당사자가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된 표장의 사용의사 선언을 요구한다고 WIPO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해당 선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즉, 미국이 이에 해당되므로 미국을 지정계약당사자에 포함한 경우에는 반드시 MM18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지정신청(MM4)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미국을 지정국으로 선택하였으나 국제출원서 제출 시 MM18 서식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특허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MM18 서식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MM18 서식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미국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3.6.

국제출원서의 표장의 견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표장 기재 란의 크기는 가로 8cm×세로 8cm로 하며, 표장의 견본은 충분히 선명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의 표장 기재 란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전면을 붙여야 합니다. 표장의 크기가 국제출원에 요구하는 크기가 아니면 합치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출원 시, 이미지(jpg, tif)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표장은 기초출원·기초등록의 표장과 엄격히 동일하여야 합니다. 확대/축소는 가능하나 컬러의 변경, 모양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3.7.

비전형상표(소리, 홀로그램 등)출원 또는 등록 건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 할 경우 국제출원서에 어떻게 작성 합니까?

- 현재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음성파일, 영상파일 등의 제출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비전형상표의 경우 기초상표의 그래픽 묘사(graphical representation)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즉, MM2의 7(a)항목에, 기초상표에 표시되어 있는 그래픽 묘사(예를 들어, 입체상표의 투시도(perspective view), 소리상표의 기보(musical notation) 등)와 동일하게 작성하며, 기초상표 견본에 여러 개의 도면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아울러 MM2의 9(d)항목의 해당란(입체상표, 소리표장 등)을 선택합니다.
- 비전형표장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MM2 서식의 9(e)항목의 (i)란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의 설명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며, 필요 시 (ii)항목에 보다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2.3.8.

국제출원서(MM2)서식의 2번 (d) E-mail address 항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 ‘국제출원서(MM2)’ 서식의 2번(d) E-mail address 항목은 국제사무국에서 발송하는 통지서를 전자적 수단(E-mail)으로 수신하고자 할 때 기재하는 항목이며 기재한 E-mail 계정으로만 통지서 수신이 가능합니다.
- 출원인의 사용 가능한 이메일을 기재하면, 국제사무국에서 발송하는 모든 통지서는 E-mail로 받게 되며, 출원 건별 이메일 수신 여부는 각 출원서의 2번 (d) 기재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4. 지정관청 국제출원 심사절차

2.4.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처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 대한민국 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 기한은 국제사무국이 지정통지를 한 날(또는 마드리드 규칙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입니다. 그러므로 18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8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늦은 이의신청의 가능성을 통보한 경우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는 18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2.4.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가거절통지는 국내상표의 “의견제출통지서”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가거절통지는 보호를 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가거절통지서”, 이의신청에 의거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발송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또는 보정서)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직권가거절통지 시 의견제출기간은 2개월이 부여됩니다.
-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가거절통지를 받고 의견제출기간은 월 단위로 2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과정에서 보정요구서를 받고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방식심사 단계에서는 보정서 제출기간이 1개월이며,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 기간연장은 1회 1개월씩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4.4. 거절통지 기한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국제사무국이 거절통지 기한(18개월) 내에 지정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국제등록은 그 지정국에서 등록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에 의한 가거절 통지는 18개월이 지나서도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4.5.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국내상표출원인이나 국내상표등록권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국내법 절차에 따라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내(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4.6.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에 대한 보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마드리드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에 대한 보정기간은 연장 할 수 없습니다(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35조).

2.4.7.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리인선임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가 있기 전에는 특별히 대리인 선임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에 의하여 직권가거절통지 또는 이의신청을 기초로 한 가거절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리인 선임을 하면 됩니다.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직권가거절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특허청에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또는 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위임장(또는 포괄위임번호 기재)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리인 선임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②항).

2.4.8.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 가능합니까?

-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186조, 187조).

2.4.9.

우리나라 진입 후 중간서류 제출 시 특허고객번호를 반드시 부여 받아야 합니까?

- 2016년 9월 1일 이후 국제등록명의인이 중간서류 제출 시 별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필요 없으며 국제등록부상의 출원인 상세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포괄위임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 접수서류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5. 사후지정

2.5.1.

국제등록 후에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 국제등록 후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국을 추가하는 것을 사후지정이라 하며 사후지정을 하면 보호 영역이 확대됩니다(상표법 제172조).
- 지정국 추가는 의정서 가입국 대상이며, 국제출원 시 지정하지 않은 국가 및 국제출원 후 신규 가입국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필리핀, 에스토니아, 나미비아, 인도, 브라질 5개 국가는 가입 이후 국제출원한 건부터 사후지정 신청 가능합니다.
- 국제출원 시 지정하지 못한 지정상품도 추가 가능하나,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지정상품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5.2.

사후지정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 ‘사후지정신청서(MM4 서식)’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별지 제35호 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제출구분 : 국제출원서 등]’에 사후지정신청서(MM4 서식)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기재한 사후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사후지정과 관련된 수수료는 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사후지정 수수료(기본수수료, 보충수수료, 개별수수료)와 대한민국 특허청에 납부하는 신청수수료(서면 제출 시 15,000원, 전자문서 제출 시 5,000원)가 있습니다.

2.5.3.

사후지정일은 언제입니까?

-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도달일이 사후지정일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는 사후지정신청서가 특허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도달일이 사후지정일이 됩니다.

2.5.4.

사후지정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사후지정의 존속기간은 해당 국제등록의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사후지정일로부터 기산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국제등록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

2.6.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2.6.1.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이란 무엇입니까?

-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등록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갱신 신청 시 해당 국제등록의 지정국 전체를 선택하거나 일부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 무효·포기가 된 지정국에 대해서는 갱신이 불가하며, 취소·무효·감축된 상품에 대해서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갱신 신청 시 국제등록 사항에 관한 변경, 예를 들어, 권리자의 명칭·주소 또는 지정 상품(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2.6.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때에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를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제출구분 : 국제출원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 수수료(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보충수수료, 개별수수료)는 국제등록명의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료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납부하며,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수수료는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 신청료는 서면 제출 시 매건 13,000원(전자문서 제출 시 3,000원)이며,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갱신수수료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존속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이내에 납부 시 할증 수수료(갱신 기본수수료의 50%)가 발생합니다.

2.7.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2.7.1.

국제등록 권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제등록 권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신청서(MM9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지 않음). 국제사무국에 MM9 서식을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에 국제등록 권리자의 명칭 또는 주소 등 변경된 사항을 통지합니다.
- 국제등록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국제등록건수 관계없이 매 신청 시마다 국제사무국에 150 스위스프랑(CHF)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8. 국제등록 명의변경

2.8.1.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은 국제사무국에 직접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계약당사자 관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은 국제등록 권리자 또는 국제등록 대리인의 경우 국제사무국 또는 권리자의 계약당사자 관청을 통해 제출 가능하나, 새로운 권리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계약당사자 관청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시에는 ‘명의변경 등록신청서(MM5)’를 제출하면 되고, 특허청에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제출구분 : 국제출원서 등]’에 영어로 작성된 ‘명의변경 등록신청서(MM5)’, 변경원인 증명서류(양도 시 양도증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공증된 국적증명서)등), 대리인 위임 시 위임장(또는 포괄위임번호-마드리드 본국관청 위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표법 제174조).
- 명의변경 신청 수수료는 매건 177 스위스프랑이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에 명의 변경 신청 시에는 신청 수수료가 부과되며 매건 13,000원(전자문서 제출 시 매건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8.2.

국제등록의 일부 상품·서비스업에 대해서만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일부의 상품·서비스업에 대해서만 명의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MM5 서식의 해당 항목(6번 항목)에서 일부 명의변경(partial change in ownership)을 선택하고 관련 지정국 및/또는 해당 상품·서비스업을 기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2.8.3.

국제등록 명의변경신청만 하고 기초출원(기초등록)의 명의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 국제등록 명의인과 기초출원(기초등록)의 권리자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아닌 경우, 기초출원(기초등록)에 대해 추가 명의변경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으며, 기초출원(기초등록)의 명의변경은 본국관청의 국내절차에 따라 진행가능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

2.9.1.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는 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기본수수료(Basic fee), 추가수수료(Supplementary fee), 보충수수료(Complementary fee), 개별수수료(Individual fee)와 우리나라 특허청에 납부하는 신청수수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정국 중 추가수수료와 보충수수료 대신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가 있어 지정국에 따라 국제출원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기본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 12. 31. 현재)
 - 기본료 : 흑백표장 653 스위스프랑, 색채표장 903 스위스프랑
 - 추가수수료 : 기본 3개류 초과 시 각1류마다 100 스위스프랑
 - 보충수수료 : 각 지정국마다 100 스위스프랑
 - 개별수수료 : 개별수수료 선언 국가에 대해서만 납부
- 특허청에 납부하는 신청수수료는 온라인 5,000원, 서면 15,000원입니다.
-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국제출원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IPO 홈페이지 수수료 사이트 (<https://www.wipo.int/madrid/en/fees/sched.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는 감면 및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2.9.2.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는 WIPO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수수료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WIPO 웹사이트(<https://www.wipo.int/madrid/feescalculator/>)에서 해당 항목(제출일, 본국관청, 류의 개수, 킬러유무 등)을 선택하고 각각의 지정국을 체크한 후 'Calculate'를 클릭하면 총금액(tota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Fees of contracting parties'항목의 'Details'를 클릭하면 각 지정국별 수수료 상세내역 확인과 감축에 따른 류의 개수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9.3.

국제출원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국제출원 수수료는 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사무국에 수수료 납부하는 방법은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에서 자동으로 수수료가 인출되는 방법과 국제사무국 계좌 (Credit Suisse, CH51 0483 5048 7080 8100 0)로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내 시중은행에서 '스위스의 WIPO 은행계좌'로 외환 송금하는 방법
 - * 은행코드(Swift/BIC code) : CRESCHZ80A
 - * 은행명 : CREDIT SUISSE
 - * WIPO 계좌번호 : CH51 0483 5048 7080 8100 0
-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제출원서 사본 송부서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신청수수료는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를 제출하고 받은 접수번호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2.9.4.

마드리드 갱신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수수료에 대해서 지정국 중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가 있어 존속기간 갱신을 하고자 하는 지정국에 따라 존속기간 갱신수수료가 다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madrid/en/fees/sched.html>)
- 만약 특허청을 경유하여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할 경우 신청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며, 서면 제출 시 매건 13,000원(전자문서 제출 시 매건 3,000원)입니다. 그리고 갱신수수료는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9.5.

마드리드 개별 수수료 선언 국가 중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대상 국가는 어디입니까?

- 마드리드 개별수수료 선언 국가 중 1, 2차 총 2회 납부해야 하는 대상 국가는 쿠바, 일본, 브라질 세 국가이며, 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 기한
 - ※ First Part Fee(1차 수수료) : 마드리드 출원 시 납부
 - ※ Second Part Fee(2차 수수료) : 국제사무국이 발송한 등록결정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

2.10. 마드리드 재출원제도

2.10.1.

마드리드 재출원제도는 무엇입니까?

-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국관청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실효되어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국제등록을 국내 상표출원으로 전환하여 출원 시 일정요건에 부합하면 출원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상표법 제205조 참조)
- 재출원의 인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제등록 효력소멸이 본국관청의 신청에 의한 것일 것
 - 국제등록의 권리자이었던 자가 출원할 것
 - 국제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
 - 국제등록의 표장과 동일한 표장으로 출원할 것
 - 재출원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부상의 지정상품 범위 내일 것

2.11. 마드리드 대체제도

2.11.1.

마드리드 대체제도는 무엇입니까?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표장이 국내등록상표의 표장과 동일하고 또한, 동일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내등록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상표법 제183조 참조)
- 대체 인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제등록상표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 국제상표출원일(사후지정 시 사후지정일)이 국내상표 등록일 이후일 것

제3장 헤이그 국제출원

3.1. 헤이그 국제출원제도

3.1.1.

헤이그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출원인의 계약당사자 관청(특허청, 이하 “수리관청”이라 함)에 제출하면 복수의 국가 또는 정부 간 기구(이하 양자를 “계약당사자”라 함)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고 국제출원에서 지정한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헤이그 협정에 따른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지역)의 관청(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효과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특허의 PCT국제출원,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써 디자인에 관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헤이그 시스템은 1934년 협정, 1960년 협정, 1999년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934년 협정은 그 적용이 동결되었고, 현재는 1960년 협정 가입국가와 1999년 협정 가입국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 가입국가로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1999년 협정에 가입한 계약당사자만을 지정계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2.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

3.2.1.

헤이그 국제출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헤이그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국제출원서(DM1)‘서식 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75조). 국제출원 신청료는 매건 15,000원(전자문서 제출시 매건 5,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제출원의 수수료는 기본료, 공개료, 추가수수료, 지정수수료(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개별지정수수료)가 있으며, 이들 수수료는 국제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 12. 31. 현재)
 - 기본료 : 최초 1디자인 397 스위스프랑, 추가디자인마다 19 스위스프랑
 - 공개료 : 1도면마다 17 스위스프랑
(서면제출인 경우 도면이 표현된 첫 면을 초과하는 면마다 150 스위스프랑)
 - 추가수수료 : 디자인의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는 1 단어 당 2 스위스프랑
 - 표준지정수수료(1수준) : 1디자인 42 스위스프랑, 추가디자인마다 2 스위스프랑
 - 표준지정수수료(2수준) : 1디자인 60 스위스프랑, 추가디자인마다 20 스위스프랑
 - 표준지정수수료(3수준) : 1디자인 90 스위스프랑, 추가디자인마다 50 스위스프랑
 - 개별지정수수료 : 계약당사자가 지정한 금액
-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기본료, 공개료, 추가수수료, 표준지정수수료, 개별수수료)는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시중은행에서 ‘스위스의 WIPO 은행계좌’로 외환 송금하는 방법
 - ※ 은행코드(Swift/BIC code) : CRESCHZZ80A
 - ※ WIPO 계좌번호 : CH51 0483 5048 7080 8100 0(Credit Suisse)
 -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에서 인출하는 방법
-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신청수수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3.2.2.

헤이그 국제출원 시 출원인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헤이그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으로 아래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 국민
 - 계약당사자인 정부 간 기구의 소속 국가의 국민
 - 계약당사자 영역에 주소가 있는 자
 - 계약당사자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가 있는 자
 - 계약당사자 영역에 거주지(거소)가 있는 자(1999년 협정에만 해당)

3.2.3.

헤이그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은 어떻게 됩니까?

- 국제출원일이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국제출원을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고, 출원일의 연기를 가져오는 하자가 없으면 특허청에 접수한 날(WIPO에 제출한 경우 WIPO에서 접수한 날)이 국제출원일 이면서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3.2.4.

헤이그 국제등록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국제등록의 보호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 단위로 계약당사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보호기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장 존속기간을 국제등록일로부터 20년까지로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였습니다.

3.2.5.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을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까?

- 대리인이 수리관청인 특허청을 통해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수리관청용 위임장만 제출하며, 별도 국제사무국용 위임장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단, DM1 서식의 5번 대리인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국제출원 건부터 국제사무국 위임장 제출 의무 폐지

3.2.6.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후 수리관청에서 보정요구서 또는 대체서류제출요청서를 받아 온라인으로 보정서 또는 대체서류를 제출할 경우 DMZ(DM1)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까?

- 국제출원서의 기재내용을 수정하여 보정서 또는 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DMZ(DM1) 파일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3.2.7.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 우선권주장하여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시 우선권 증명서류는 국제출원 시 또는 각 지정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 시 제출하는 경우는 국제출원서(DM/1) 13번 항목에 DAS코드를 기재하거나 우선권 증명서류를 ANNEX V를 이용하여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ANNEX V는 한국(KR)을 지정하는 경우만 제출가능하고, DAS코드 또한 DAS를 통해 서류제출 가능한 국가만 가능하니 그 외에는 각 지정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정국에 직접 제출할 경우 자국법에 따라 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 관청에 별도 확인 후 절차 진행하면 됩니다.
- 우리나라가 지정국인 경우 별도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 요청 통지서가 발송되며,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 [제출구분 : 우선권증명서류]'에 우선권 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제공개 전에는 특허청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2.8.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시 도면 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 헤이그 국제출원 시 디자인은 총 100개까지 가능하나,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도면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디자인을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표현한 많은 전망도를 포함할 수도 있으나, 여러 각도에서 본 여러 개의 전망도가 하나의 도면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2.9.

국제사무국에서 방식 심사 후 하자 발생 시 발송하는 통지서가 무엇입니까?

-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서를 접수하고 국제출원이 요건에 맞는지 판단하며, 국제출원이 협정 및 규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국제사무국은 일정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도록 하자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하자통지 및 보정기간
 - 국제출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국제사무국은 하자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국제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하자 보정 기간의 기산일은 국제사무국이 하자 통지서를 발송한 날이며 하자 보정 기간은 국제출원인이 하자 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날이므로 보정 기간 이내에 보정서가 접수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하자통지의 유형
 - 출원일의 연기를 수반하는 하자
 - 자기지정 금지에 관한 하자
 - 계약당사자가 통지한 특별요건 등에 관한 하자
 - 수수료 미납 등 기타 요건의 하자

3.3. 헤이그 국제공개

3.3.1. 헤이그 국제출원의 국제공개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 국제등록의 공개는 일반적으로 국제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됩니다.
- 국제출원인이 국제공개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공개연기 신청을 하고 연기할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연기를 신청한 국제등록의 공개는 연기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것으로 보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 국제공개 연기기간
 - 1960년 협정에 따른 계약당사자 지정 : 최장 12개월
 - 1999년 협정에 따른 계약당사자 지정
 - 연기기간 관련 선언이 없는 계약당사자 지정 : 최장 30개월
 - 연기기간을 30개월보다 짧은 것으로 선언한 계약당사자 지정 : 선언에서 통지된 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이 만료하는 때

3.4. 헤이그 국제등록 명의변경

3.4.1. 헤이그 국제디자인의 등록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명의인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신청서(DM/6)'를 작성하여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사무국에 DM/6 서식을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에 국제등록명의인의 명칭 또는 주소 등 변경된 사항을 통지합니다.
- 국제등록명의인 성명 또는 주소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144 스위스프랑(CHF)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건의 국제등록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144 스위스프랑(CHF)에 추가 되는 국제등록마다 72 스위스프랑(CHF)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5. 지정관청 국제출원 심사절차

3.5.1.

우리나라 지정국에서 보정요구서 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까?

-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지정국 방식심사 단계에서는 보정서 제출기간이 1개월이며,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 기간연장은 월 단위로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11조).
-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지정국 실체심사단계에서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회 1개월씩 2개월 연장 가능하며,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 규정 22조).

3.5.2.

우리나라 지정국 진입 후 대리인 선임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 지정국 진입 후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신고구분 : 대리인선임]'에 위임장(또는 포괄위임번호 기재)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우리나라 진입 후 출원인이 최초로 제출하는 의견서, 보정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서류 제출서에 위임장(또는 포괄위임번호 기재) 첨부 시 대리인 선임효가 발생하여 별도 대리인 선임신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3.5.3.

우리나라 진입 후 중간서류 제출 시 특허고객번호를 반드시 부여 받아야 합니까?

- 2017년 9월 22일 이후 출원인 측에서 중간서류 제출 시 별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필요 없으며 국제등록부상의 출원인 상세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포괄위임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 접수서류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5.4.

헤이그 지정국 에서 우선권증명서류 서류제출요청서 받고 DAS코드 기재해서 서류제출서 접수 가능한가요?

- 우선권증명서류 서류제출요청서를 받은 후, DAS코드 기재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 기재한 DAS코드로 우선권주장서류를 WIPO(국제사무국)에 요청 후 우선권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올바른 DAS코드가 아닐시, 보정요구서가 나갈 수 있으니 코드 기재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CHAPTER

IX

전자출원

제1장	전자출원제도	414
제2장	사전등록절차	420
제3장	(통합)서식작성기	426
제4장	통합명세서작성기	430
제5장	기타 소프트웨어	436
제6장	웹기반 전자출원(웹작성/제출)	439
제7장	온라인출원	441
제8장	PCT 전자출원	443
제9장	마드리드 전자출원	446
제10장	헤이그 전자출원	447
제11장	통지서 수신	448
제12장	온라인 증명서 발급	450

목차

제1장 전자출원제도

1.1. 전자출원제도	414
1.1.1. 전자출원제도가 무엇입니까?	414
1.1.2.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414
1.1.3. 전자출원 시 이점이 있습니까?	414
1.2. 전자출원방법	415
1.2.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전자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15
1.2.2. 상표 전자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16
1.2.3.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OS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416
1.2.4. 출원명세서 최종본(*.FIN)파일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417
1.2.5. 미성년자도 전자출원이 가능한가요?	417
1.2.6. 전자출원 후 진행절차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417
1.2.7. 서열목록 작성기에서 서열 목록을 몇 개까지 입력할 수 있나요?	418
1.2.8. 특허로 홈페이지 연결 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확인]을 선택하시면 설치페이지로 연결됩니다.”라는 창이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418
1.2.9. 특허로 홈페이지 이용 시 “보안 콘텐츠만 표시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419

제2장 사전등록절차

2.1.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420
2.1.1.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법인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면 “주민(법인)번호로 실명인증에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입력하시려면 확인을, 계속 진행하시려면 취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420
2.1.2.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인감은 꼭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나요?	420
2.1.3.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본인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420

2.1.4.	사전등록절차는 1인만이 신청 가능한데 공동출원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등록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421
2.1.5.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위임장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421
2.1.6.	포괄위임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그 결과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421
2.2.	신청결과조회	421
2.2.1.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진행한 경우 결과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421
2.2.2.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진행한 후 접수번호를 분실하였는데 처리결과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1
2.3.	인증서 사용등록	422
2.3.1.	인증서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422
2.3.2.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422
2.3.3.	특허청 전용 공인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2
2.3.4.	법인 공인인증서 등록 시 공인인증서 등록을 위한 사전절차 안내 팝업창이 나타나고 인증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3
2.3.5.	특허청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였지만 사용하는 PC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공인인증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3
2.3.6.	공인인증서 등록 시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 시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신원확인코드가 같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3
2.3.7.	브라우저 인증서는 무엇인가요?	424
2.4.	출원인 정보변경	424
2.4.1.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24
2.4.2.	G4B를 통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이 가능한가요?	425

제3장 (통합)서식작성기

3.1.	(통합)서식작성기	426
3.1.1.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26
3.1.2.	온라인 제출문서 생성 시 첨부된 첨부서류 확인이 가능한가요?	427
3.1.3.	온라인 제출문서 "검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427
3.1.4.	온라인 제출 시 "중복제출 여부 확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427
3.1.5.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전자문서 제출 시 "상세정보로 입력한 출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7
3.1.6.	(통합)서식작성기 실행 후 자동업데이트 실패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7

3.1.7.	(통합)서식작성기에 사용자 DB가 있는데 용도는 무엇입니까?	428
3.1.8.	(통합)서식작성기의 사용자 DB를 다른 PC로 이동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28
3.1.9.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출원서 작성 시 발명자란에 법인의 특허고객번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429
3.1.10.	수수료 면제·감면대상의 경우 해당 사항을 어느 부분에 기재하나요?	429
3.1.11.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상표출원서의 제출문서 생성 시 “상표건본 Image 화일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떤 오류인가요?	429
3.1.12.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제출문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작업폴더를 초기화하던 중 오류 발생, 다른 프로세서에서 사용 중이므로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429
3.1.13.	통합서식작성기가 작업표시줄에만 표시되고 화면상에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429

제4장 통합명세서작성기

4.1.	통합명세서작성기	430
4.1.1.	통합명세서작성기 실행 시 “프린트 초기화에 실패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430
4.1.2.	전자출원으로 복수디자인등록 출원 시 도면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30
4.1.3.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명세서 작성 후 제출파일 생성/변환 시 “다음 위치에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의 [발명(고안)의 내용] 항목 중 1번째 문단”이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31
4.1.4.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명세서 작성 시 “[발명(고안)의 명칭]의 한글명칭 우측에는 종괄호와 함께 영문 명칭을 병기하여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31
4.1.5.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문서 작성 시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및 한영 전환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1
4.1.6.	캐드로 작성한 도면을 통합명세서작성기 도면에 첨부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첨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432
4.1.7.	다른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한 도면을 통합명세서작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32
4.1.8.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명세서를 제출파일 생성/변환 시 “이미지의 좌우에는 내용(공백포함)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32
4.1.9.	통합명세서작성기에 첨부하는 도면 이미지 생성 시 스캔 할 때 해상도는 어떻게 되나요?	432
4.1.10.	통합명세서작성기에 첨부하는 도면 이미지의 크기에 제한이 있나요?	432
4.1.11.	전자출원 후 명세서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보정하고자 할 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33
4.1.12.	명세서등 보정서 별지(*DTA) 생성작업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433
4.1.13.	디자인출원 후 도면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온라인으로 보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33
4.1.14.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발명의 명칭 기재 시 글자 수 제한이 있나요?	434
4.1.15.	전자출원 후 최종본(*.FIN)파일을 이용해서 명세서등 보정서를 작성하고 저장할 때 *.FIN파일이 아닌 *.HLT 파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34

4.1.16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명세서 출력 시 바코드 출력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434
4.1.17.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특수문자 사용 시 깨진 문자 형태로 표시되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435
4.1.18.	통합명세서작성기(NK-EDITOR) 설치 중 도움말 설치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5
4.1.19.	통합명세서작성기 실행 후 자동업데이트 실패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5
4.1.20.	통합명세서작성기 실행 후 새 문서를 열면 문서가 열리지 않고 “응답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5

제5장 기타 소프트웨어

5.1.	첨부서류입력기	436
5.1.1.	첨부서류입력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436
5.1.2.	첨부서류입력기를 통해 *.ATT파일로 생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436
5.1.3.	첨부서류입력기를 통해 여러 장을 스캐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37
5.1.4.	첨부서류입력기에서 지원되는 이미지 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437
5.2.	통지서 열람기	437
5.2.1.	통지서 열람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437
5.2.2.	통지서 열람기를 통해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438
5.2.3.	통지서 열람기에서 통지서에 첨부된 첨부서류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나요?	438
5.2.4.	통지서 열람기를 통해 통지서 내용 확인 시 ‘.PDF 파일에 대한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8

제6장 웹기반 전자출원(웹작성/제출)

6.1.	웹기반 전자출원	439
6.1.1.	웹작성이란 무엇인가요?	439
6.1.2.	웹작성으로 서류작성 중 작업한 내용을 저장 후 추후에 저장된 내용을 불러와 문서작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439
6.1.3.	웹작성으로 서류작성 시 명세서 파일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통합명세서작성기(NK-EDITOR)만 이용해야 하나요?	440
6.1.4.	상용워드 SW(한글, MS-Word)를 이용해서 웹작성으로 진행한 경우 명세서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440

제7장 온라인출원

7.1. 온라인출원	441
7.1.1. 온라인출원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441
7.1.2. 온라인출원 시 잘못 클릭하여 제출파일이 두 번 전송되었고, 제출결과조회를 확인 해보니 접수번호가 두 개 부여되었습니다. 어떤 번호를 사용해야 하나요?	441
7.1.3. 온라인출원 시 제출파일 크기에 제한이 있나요?	441
7.1.4. 특허로 홈페이지의 온라인 제출에서 전송서류 선택 시 “헤더파일(outheader. xml)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선택한 파일이 최신버전의 Keaps에서 작성한 파일인지 확인하신 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442
7.1.5. 온라인출원 후 수수료를 납부할 전용 계좌번호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442
7.1.6. 출원번호 통지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442

제8장 PCT 전자출원

8.1. PCT 전자출원	443
8.1.1. PCT-SAFE를 이용한 PCT 전자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43
8.1.2. ePCT를 이용한 PCT 국제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43
8.1.3. PCT 중간서류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까?	444
8.1.4. PCT 전자출원에 사용되는 파일의 이름에 제한이 있습니까?	444
8.1.5. PCT 전자출원에서 허용되는 이미지 형식은 무엇입니까?	444
8.1.6. PCT-SAFE에 명세서(Application-body)를 첨부했는데 발명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REQUEST 항목에 노란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445
8.1.7. PCT-SAFE 실행 시 “데이터베이스 연결오류” 메시지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445
8.1.8. PCT 전자출원 시 전자서명 할 수 있는 인증서는 무엇입니까?	445

제9장 마드리드 전자출원

9.1. 마드리드 전자출원	446
9.1.1. 마드리드 전자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46
9.1.2. 마드리드 중간서류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까?	446

제10장 헤이그 전자출원

10.1. 헤이그 전자출원	447
10.1.1. 헤이그 전자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47
10.1.2. 헤이그 중간서류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까?	447

제11장 통지서 수신

11.1. 통지서 수신	448
11.1.1. 수취방법이 온라인인 경우 통지서수신함에서 다운받은 *.ZIP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48
11.1.2. 통지서 수신함에서 통지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448
11.1.3. 통지서 수취방법을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48
11.1.4. 통지서 수신함에서 통지서 다운로드 시 인증서 비밀번호 넣고 다운로드 창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49

제12장 온라인 증명서 발급

12.1. 온라인 증명서 발급	450
12.1.1. 온라인으로 증명서류 신청 후 발급까지 처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450
12.1.2.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450
12.1.3. 증명서 수신함에서 발급문서를 열람 및 출력하려고 합니다. 발급서류별 차이가 있습니까?	450
12.1.4. 등록원부 및 서류철복사신청은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450
12.1.5. 증명원 출력 시, 인쇄버튼을 눌러도 출력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51
12.1.6. 증명서 신청 후 발급문서를 수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51
12.1.7. 신청결과조회에서 접수번호와 수수료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451
12.1.8. 수수료를 납부했는데도 증명서발급의 신청결과조회에서는 “첨부서류 확인 중”이라는 표시만 나타납니다. 어떤 사항 때문입니까?	451
12.1.9. 등록원부 발급 신청 시 “신청을 실패하였습니다.”라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452
12.1.10.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증을 출력했는데 등록증 상에 특허청장의 직인과 금장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52
12.1.11. 온라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합니까?	452
12.1.12. 증명서류 신청 서식별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453

제1장 전자출원제도

1.1. 전자출원제도

1.1.1. 전자출원제도가 무엇입니까?

-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문서제출 또는 통지서 등의 수령을 위하여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과 특허청이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단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한 One-Stop 민원처리 절차입니다.

1.1.2.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이하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를 사전에 부여 받아야 합니다. 특허청은 특허고객번호를 기초로 출원인의 기본정보를 관리하며, 제출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를 관리합니다.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절차를 진행할 경우 미리 사용 첨부하고자 하는 인감 또는 서명 이미지 파일(4cm×4cm크기 / *.JPG)을 준비하여야 하며,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특허고객번호 발급이 완료된 후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오른쪽 상단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 사용등록”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특허청 전용 공인인증서(한국무역정보통신)를 등록 합니다.
※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 시 개인은 인감 또는 서명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인은 인감만 가능).

1.1.3. 전자출원 시 이점이 있습니까?

- 특허청 방문 없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출원 가능합니다.
- 서면 출원에 비해 출원료가 저렴합니다.
- 출원관련 서류를 파일로 저장하므로 문서관리가 용이합니다.

1.2. 전자출원방법

1.2.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전자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전자출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완료한 후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오른쪽 상단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 사용등록”에서 공인인증서나 특허청 전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를 완료한 후에 전자출원 S/W를 통해 서식을 작성합니다. 출원절차를 진행하기 전 자신이 등록하려는 산업재산권에 대해 선행기술 자료를 먼저 검색합니다.

- 선행기술 정보검색 방법

선행기술 자료에 대한 검색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먼저 자신이 등록하려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타인에 의하여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검색 방법: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권리별로 접속하여 검색 요건 기입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이용 문의는 한국특허정보원(042-483-471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전자출원방법

- 서식작성기(NKEAPS) 또는 통합서식작성기(PKEAPS)에서 출원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전자문서파일(특허명세서 또는 디자인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파일(특허명세서 또는 디자인 도면) 작성 방법 : 통합명세서작성기(NK-EDITOR)를 통해 명세서를 작성한 후 제출파일(생성/변환) 작업을 통하여 서식작성기와 결합을 하기 위한 *.HLZ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제출파일(생성/변환)시 출원 후 보정서 생성에 사용되는 최종본파일(*.FIN)도 함께 생성됩니다).

- 특허, 실용신안 도면은 이미지 파일 *.TIF, *.JPG파일만 삽입이 가능합니다.

- 디자인 도면은 이미지 파일(*.TIF, *.JPG), 3D 도면(*.DWG, *.DWF, *.3DS, 3DM, *.IGS, *.IGES) 및 동영상 파일(*.MPG, *.MPEG, *.SWF, *.WMV, *.GIF) 등 삽입이 가능합니다.

※ 명세서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민원서식다운로드”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제출 방법 : (통합)서식작성기에서 해당 권리의 출원서를 작성한 후 전자문서제출 → 제출문서생성 → 전자서명 → 온라인 제출 과정을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첨부서류는 첨부서류입력기를 통해 *.ATT파일로 만들어 (통합)서식작성기 첨부서류에 첨부합니다(첨부서류입력기를 다운받아 설치한 뒤 첨부서류 선택 창에서 첨부서류를 선택해서 직접 스캔 또는 스캔 받은 *.TIF, *.JPG, *.PDF 파일을 *.ATT파일로 저장한 뒤 첨부하면 됩니다).

※ PDF파일은 별도의 ATT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바로 (통합)서식작성기에 첨부 가능합니다(*.ATT로 자동 변환 됨).

1.2.2.

상표 전자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전자출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완료한 후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오른쪽 상단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 사용등록”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특허청 전용공인인증서(한국무역정보통신)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를 완료한 후에 전자출원 S/W를 통해 서식을 작성합니다. 출원절차를 진행하기 전 자신이 등록하려는 산업재산권에 대해 선행기술 자료를 먼저 검색합니다.

- 선행기술 정보검색 방법

선행기술 자료에 대한 검색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먼저 자신이 등록하려는 상표가 타인에 의하여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검색 방법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권리별로 접속하여 검색 요건 기입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이용 문의는 한국특허정보원(042-483-471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 전자출원방법

- 상표출원을 하기 전 국제상품분류에 의한 상품 류 및 지정상품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출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상품분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메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를 온라인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출원 S/W인 (통합)서식작성기 또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오른쪽 중간 웹작성/제출”에서 상표출원서를 작성합니다.

- 상표의 견본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상표견본은 가로, 세로의 길이에 구분 없이 A4용지 안에 작성합니다(다만,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는 가로 8cm × 세로 8cm 의 빈 사각형을 테두리로 하여 사각형 내에 채색해야 합니다). 작성 후 스캔 등을 받아 *.JPG, *.PNG 파일로 상표 견본 란에 첨부하면 됩니다.

1.2.3.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OS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 전자출원S/W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O/S는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Windows 10이 있습니다.

※ 2014년 4월 8일부터 Windows XP에 대해 MicroSoft사의 윈도우 업데이트가 중단되었습니다. 보안 등의 취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1.2.4.

출원명세서 최종본(*.FIN)파일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 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본(*.FIN)파일이 필요합니다. 최종본 파일을 분실한 경우 특허청을 방문하여 별지 제29호 서식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로 [신청구분 : 서류등본(초본)교부]’로 선택하여 ‘출원명세서 최종본 파일’을 복사 신청하면 됩니다.
- 출원명세서 최종본 파일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증명서발급 → 발급신청 → 최종본 다운로드”에서 출원명세서 최종본 파일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소프트웨어 통합명세서작성기를 이용한 최종본 다운로드 방법은 상단 메뉴 중 “☯ → 최종본 다운로드” 기능을 선택하여 특허로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출원인 인증서로 로그인 및 해당 출원번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 8. 15부터 디자인등록출원 후 도면보정서 별지 작성을 위한 최종본 파일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2.5.

미성년자도 전자출원이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전자출원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 등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을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3조), 미성년자가 처음으로 출원을 하려면 그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특허고객번호를 먼저 부여받으신 후, 미성년자의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제출인] 항목 아래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취지]란 아래에 “xxx의 법정 대리인 ooo”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출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공인인증서 등을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오른쪽 상단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 사용등록”에서 등록하고 서류 제출 시 법정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출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1.2.6.

전자출원 후 진행절차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 특허청에 출원절차 진행 후 진행사항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에서 조건별 검색 또는 사건번호별 검색으로 조회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특허관리 서비스는 특허정보를 고객별/서비스 유형별로 제공하여 고객이 자신의 출원·권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허관리 제공 내역

- 특허업무처리정보의 공개

- 출원·심사·심판·국제출원·이의신청·기술평가 절차의 업무처리정보 제공
- 등록원부의 기본정보 및 등록료납부 기한정보 등 제공
- 접수서류·통지서·공보문서 등의 전자문서 제공
- 서류제출 및 수수료납부 관련 기한정보 제공

- 맞춤형 출원·권리정보 제공

- 다수의 사건에 대한 일괄조회 지원
-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사건번호 목록을 제공하여 다수의 출원·권리정보를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지원
-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업무절차별 법정·지정기간 정보 조회 지원
- 본인확인 및 부인방지를 위하여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본인에게 공개 전 출원정보 및 관련문서 등을 제공

- 심사착수 대기 순번 정보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의 심사대기 순번 정보를 제공
- 각 출원건별 방식심사 완료, 분류대기(특실), 심사국 지정, 심사과 지정, 심사관 지정 상태에 따른 대기 순번 정보 제공

※ 유의사항 : 접수문서 및 발송문서의 다운로드 서비스는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1.2.7.

서열목록 작성기에서 서열 목록을 몇 개까지 입력할 수 있나요?

- 서열목록 작성기에서 입력 가능한 단위서열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단위서열에 나열되는 염기서열은 핵산(DNA, RNA), 한 문자 아미노산은 10만개 미만, 세 문자 아미노산은 5천개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1.2.8.

특허로 홈페이지 연결 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확인]을 선택하시면 설치페이지로 연결됩니다.”라는 창이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이용 시 악성코드 탐지 및 보안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nProtect Online Security)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내 메시지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로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프로그램 설치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오른쪽 상단 특허고객등록 → 특허고객등록 → 특허로 사용환경 안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9.

특허로 홈페이지 이용 시 “보안 콘텐츠만 표시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나타난 메시지 오른쪽의 “모든 콘텐츠 표시”를 선택하면 됩니다.
- 해당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 하는 방법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를 선택하여 www.patent.go.kr 추가합니다. 그리고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사용자 지정 수준 선택 → 기타 → 혼합된 콘텐츠 표시 항목”을 “사용”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 시 '이 영역에 추가할 사이트는 http://로 시작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화면 하단의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필요' 항목의 체크를 해지한 후 추가 버튼 선택 합니다.

제2장 사전등록절차

2.1.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2.1.1.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법인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면 “주민(법인)번호로 실명인증에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입력하시려면 확인을, 계속 진행하시려면 취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체계가 예외로 적용되는 체크디지트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체크디지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로 법인등록번호가 맞으면 “취소”를 선택한 후 다음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면 됩니다.

2.1.2.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인감은 꼭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나요?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필수는 아닙니다. 특허청에 서면으로 서식 제출 시 서식에 날인해야 하는 도장이므로 사용하기 편한 사용인감을 사용하셔도 되며,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날인한 도장이 특허청에서는 인감의 역할을 합니다.
※ 추후 특허청에 각종서식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특허고객번호’에 등록 된 도장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2.1.3.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본인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본인증명서류로 국내자연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본인증명서류는 *.JPG, *.TIF, *.PDF 파일 형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첨부서류입력기’로 작성된 *.ATT 파일도 첨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활용동의 항목에서 동의를 체크하면 본인증명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색인정보를 기재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출원인구분이 국내자연인(개인)의 경우에는 생략할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색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하면 됩니다.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생략할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색인정보 : 대표자 또는 담당자 성명, 대표자 또는 담당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2.1.4.

사전등록절차는 1인만이 신청 가능한데 공동출원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등록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공동출원의 경우 각각의 출원인마다 사전등록절차(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 인증서 등록)를 진행해야 합니다.

2.1.5.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위임장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 위임장 제출은 위임장 원문과 번역문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에는 첨부서류입력기에서 '위임장(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전용)'을 선택해서 원문과 번역문 두 가지를 스캔해서 하나의 첨부파일(*.ATT)로 생성한 후 첨부서류란에 첨부해 전송하면 됩니다.

2.1.6.

포괄위임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그 결과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 포괄위임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결과 확인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MY특허로 → 포괄위임관련신청 → 포괄위임조회”로 접속하여 출원인(대리인) 정보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신청결과조회

2.2.1.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진행한 경우 결과확인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진행하신 경우 해당 결과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 등록 및 정보변경 신청 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신고서의 처리결과는 접수번호 또는 출원인/대리인 정보를 이용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2.2.2.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진행한 후 접수번호를 분실하였는데 처리결과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진행하신 경우 접수된 신고서의 처리결과는 접수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접수번호를 잊었을 경우에는 출원인/대리인 정보(성명과 주민번호 또는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접수기간)를 이용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2.3. 인증서 사용등록

2.3.1.

인증서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특허청에서는 현재 명의도용 방지 등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 체계를 전면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인증서의 종류
 -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
 - 은행용 공인인증서
 - 특허청전용 공인인증서(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가능)

2.3.2.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 특허청 전자출원에 사용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있으며,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에서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오른쪽 상단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 사용등록”에서 특허고객번호 입력 후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이동 된 페이지에서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인증서창에서 특허청에 등록할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 입력창에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 ‘인증서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메시지 확인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2.3.3.

특허청 전용 공인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특허업무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 발급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하며 인증서 등록업무는 공인인증기관에게 이관 조치되었습니다.

- 특허청전용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으로 본인 확인 등록을 합니다.
 - 대표전화 : 1566- 2119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오른쪽 상단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 사용등록”에서 특허고객번호 입력 후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이동 된 페이지에서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인증서창에서 특허청에 등록할 특허청전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 입력창에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 ‘인증서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메시지 확인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2.3.4.

법인 공인인증서 등록 시 공인인증서 등록을 위한 사전절차 안내 팝업창이 나타나고 인증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특허고객번호정보에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고 수리된 이후에 인증서 등록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 ※ 2012년 이전에 특허고객번호를 발급한 법인이 2013년 이후에 공인인증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에 관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3.5.

특허청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였지만 사용하는 PC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공인인증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특허청 전자출원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에 특허청 정보가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등록한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재등록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재등록절차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오른쪽 상단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 사용등록 → 특허고객번호 입력 후 신청 → 재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2.3.6.

공인인증서 등록 시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 시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와 신원확인코드가 같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인인증서에 포함된 신원정보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포함된 신원정보가 서로 상이해서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등록해야 합니다.

2.3.7.

브라우저 인증서는 무엇인가요?

- 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것으로 사용자 PC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최초 1회만 인증서를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Chrome 등)에 변환 저장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인증서가 브라우저에 저장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브라우저 별로 인증서를 각각 등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한 전자서명 시에는 브라우저인증서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특허청 정보가 등록되어있는 인증서가 하드디스크 또는 이동식디스크에 있어야 합니다.

2.4. 출원인 정보변경

2.4.1.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을 하시려면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거나 (통합)서식작성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하는 방법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로그인 후 →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정보변경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변경하는 항목을 수정한 후 입증서류(전·후 사항 확인 가능한 입증서류)를 *.TIF, *.JPG, *.PDF, *.ATT 파일로 증명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정보변경하는 방법
(통합)서식작성기에서 “공통서식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 구분항목에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 출원·심사등록절차”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입력항목에서 첨부서류 항목 체크). 변경항목 수정 후 입증서류(전·후 사항 확인 가능한 입증서류)를 *.PDF 또는 첨부서류입력기를 통한 *.ATT파일을 첨부서류 란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PDF파일은 별도의 ATT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바로 (통합)서식작성기에 첨부 가능합니다(*.ATT로 자동 변환 됨).

2.4.2.

G4B를 통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이 가능한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업 지원플러스(G4B)를 통하여, 법인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을 신청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조」에 의하여 특허청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변경을 처리합니다.
- 변경항목은 특허고객번호(국내법인)의 상호, 주소 정보만 가능합니다.
※ 기업지원플러스(G4B) 기업관련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기업전용 포털서비스 (www.g4b.go.kr)

제3장 (통합)서식작성기

3.1. (통합)서식작성기

3.1.1.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특허청 전자출원소프트웨어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서식작성을 완료한 후 온라인 제출 마법사를 이용하여 특허청에 전송합니다.
- (통합)서식작성기를 통한 전자문서 온라인 제출 과정

특허청에 제출할 서식작성이 완료된 이후 작성서식 상단의 메뉴 중 “전자문서 제출 또는 문서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온라인 제출마법사를 시작합니다.

 - 1단계[서식변환] : 서식을 특허청 표준문서(XML)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온라인 제출 마법사 화면 하단의 “제출문서 생성” 버튼을 클릭 후 “제출문서 생성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생성된 제출문서를 확인하시겠습니까?” 대화상자에서 “예”를 선택하여 작성된 문서를 통합부어를 통해 확인합니다.
 - ※ 제출문서 생성 시 오류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 오류메시지를 참고하여 작성된 서류를 수정합니다.
 - 1-1단계[온라인 검증] : 작성된 서류를 온라인 제출 전에 특허청에 연결하여 제출문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온라인 제출문서 검증”버튼 클릭 →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대화상자에서 “예” 선택 → 인증서 로그인 → 검증 결과 확인 → “다음단계”버튼을 클릭합니다.
 - 2단계[전자서명] : 각 출원인/대리인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서명버튼을 클릭하여 출원인(대리인)의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을 수행한 후 “다음단계”버튼을 클릭합니다.
 - 3단계[중복제출 확인] : 제출 전 제출문서의 중복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중복제출 여부 확인”을 선택하여 검증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단계”버튼을 클릭합니다.
 - 4단계[온라인 제출] : 전자서명된 파일을 제출파일로 생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온라인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문서를 인터넷으로 특허청에 접수합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접수번호 등을 확인 후 창을 닫습니다.
- 위와 같은 온라인 제출 절차 후 제출된 서류의 정상접수 여부 확인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My특허로 → 제출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3.1.2.

온라인 제출문서 생성 시 첨부된 첨부서류 확인이 가능한가요?

- 첨부된 첨부서류파일(*.ATT)이 이미지파일로 제작된 경우라면 온라인 제출마법사에서 “제출문서 생성” 버튼을 클릭 후 생성된 통합뷰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PDF문서로 첨부서류파일(*.ATT)을 제작한 경우에는 통합뷰어 화면에서 PDF 파일 첨부 링크를 더블클릭하면 연결된 어도비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3.

온라인 제출문서 “검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작성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특허청에 연결하여 제출 문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증결과에 오류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메시지를 참조하여 작성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제출문서 검증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전 방식심사로 검증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1.4.

온라인 제출 시 “중복제출 여부 확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작성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특허청에 연결하여 제출 문서의 중복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중복제출여부는 동일자에 동일한 제출인이 동일서류의 접수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3.1.5.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전자문서 제출 시 “상세정보로 입력한 출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출원서의 [출원인] 란에서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로 선택하여 상세정보로 입력한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이 불가함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온라인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출원인] 란에 성명(명칭)과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3.1.6.

(통합)서식작성기 실행 후 자동업데이트 실패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합)서식작성기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열린 단축 창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하여 Windows 관리자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됩니다.

3.1.7.

(통합)서식작성기에 사용자 DB가 있는데 용도는 무엇입니까?

- 사용자 DB(데이터베이스)는 특허고객번호, 출원인 성명 등 출원인 정보 및 발명자 정보, 대리인 정보 등을 사용자 DB에 저장 후 서식 작성시 사용자 DB에서 등록된 정보를 더블클릭하면 자동으로 해당 정보가 입력창에 입력되는 기능입니다.

3.1.8.

(통합)서식작성기의 사용자 DB를 다른 PC로 이동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사용자DB를 *.MDB파일로 백업하는 방법
 - 서식작성기의 경우 C:\KIPONET\NKEAPS\DATA\LOCALDB\nkeaps_user.mdb 파일을 복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PC의 동일 위치에 붙여넣기 합니다.
통합서식작성기의 경우에는 경로 중 NKEAPS 대신 PKEAPS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사용자DB를 *.TXT로 백업하는 방법
 - 사용자DB를 텍스트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소프트웨어 (통합)서식작성기 메뉴 중 “도구 →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 환경설정 화면의 상단 메뉴 중 “사용자 DB변환”을 선택합니다.
 - 화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원하는 사용자 DB 정보(출원인, PCT출원인, 마드리드출원인, 대리인, PCT대리인, 발명자, 포괄위임정보)를 선택하여 해당 DB정보를 리스트에 나열합니다.
 - 중앙에 있는 “파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TXT파일로 변환합니다.
 - 저장된 텍스트파일을 이동하고자 하는 PC로 복사합니다.
 - 텍스트파일을 사용자DB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소프트웨어 (통합)서식작성기 메뉴 중 “도구 →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 환경설정 화면의 상단 메뉴 중 “사용자 DB변환”을 선택합니다.
 - 화면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파일 선택 란에서 원하는 *.TXT파일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DB로 변환할 대상이 해당 선택 란에 없으면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환할 대상이 되는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 중앙에 있는 “DB”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자 DB로 변환합니다.
 - 변환이 완료된 후 불필요한 파일정보는 선택하여 중앙 하단에 있는 “파일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경설정 창을 닫습니다.
- ※ 텍스트파일을 사용자DB로 변환 시 기존 DB정보는 삭제되고 텍스트파일의 내용으로 사용자DB정보가 갱신됩니다.

3.1.9.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출원서 작성 시 발명자란에 법인의 특허고객번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주체가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인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발명을 주도한 사람을 발명자로 기재하셔야 합니다(발명자 란은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상세정보)”로 입력하여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3.1.10.

수수료 면제·감면대상의 경우 해당 사항을 어느 부분에 기재하나요?

- 서식작성 시 수수료 항목에 면제·감면대상을 선택한 후 수수료 면제·감면대상 유형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3.1.11.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상표출원서의 제출문서 생성 시 “상표견본 Image 화일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떤 오류인가요?

-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제출문서 생성 시 상표 견본파일(*.JPG,*.PNG)의 경로의 폴더 및 파일명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상표 견본파일이 저장된 경로의 폴더 및 파일명에 특수문자(콤마(,), 엔드기호(&))나 공백이 입력되어 있으면 경로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상표 견본파일(*.JPG,*.PNG)이 저장된 경로의 폴더 및 파일명에서 특수문자나 공백을 제거한 후 상표 견본파일(*.JPG,*.PNG)을 다시 첨부하면 됩니다.

3.1.12.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제출문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작업폴더를 초기화하던 중 오류 발생, 다른 프로세서에서 사용 중이므로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 서식작성기를 통한 작업 수행 시 윈도우 환경에서 액세스 권한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당 PC 전원을 종료하고 새롭게 부팅하면 오류 해결이 가능합니다.

3.1.13.

통합서식작성기가 작업표시줄에만 표시되고 화면상에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 컴퓨터 작업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열린 단축 창에서 “작업 관리자” 메뉴를 선택 하면 Windows 작업관리자 창이 열리게 됩니다.
- 메뉴 중 응용프로그램 탭에서 통합서식작성기 프로그램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선택 후 “최대화(X)”를 클릭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 Win10인 경우 오른쪽 마우스 선택 → 확장 → 하단에 생성된 통합서식작성기 프로그램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선택하여 “최대화(X)”를 클릭

제4장 통합명세서작성기

4.1. 통합명세서작성기

4.1.1.

통합명세서작성기 실행 시 “프린트 초기화에 실패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 통합명세서작성기(NK-EDITOR) 실행 시 “프린터 초기화 실패” 메시지는 NK-EDITOR 설치 시 네트워크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었으나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기본 프린터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므로 해당 프린터 드라이버를 재설정 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1.2.

전자출원으로 복수디자인등록 출원 시 도면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디자인도면을 최대 100개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도면은 통합명세서작성기를 이용하여 각각의 디자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각의 디자인도면에는 디자인일련번호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 예) [디자인 도면 :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 반드시 각각의 디자인도면 작성 시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디자인 도면 선택 후 식별항목 선택에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체크한 다음 일련번호를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전자문서 작성 방법(2개의 디자인인 경우)
 - 통합명세서작성기 실행 후 “홈 메뉴 → 국내출원 새문서 → 디자인 문서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디자인 도면)”를 선택합니다.
 - 식별항목 선택 창에서 “[복수디자인 등록출원] 체크 → [일련번호] M001”을 선택하여 디자인도면을 작성합니다.
 - 도면 작성이 완료된 후 “홈 메뉴 → 제출파일(생성/변환)”을 선택하여 제출용 파일인*.HLZ 파일을 생성합니다.
 - 그리고 다시 일련번호 M002 디자인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홈 메뉴 → 국내출원 새문서 → 디자인 문서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디자인 도면)”를 선택합니다.

- 식별항목 선택 창에서 ["복수디자인 등록출원] 체크 → [일련번호] M002"를 선택하여 디자인 도면을 작성합니다.
 - 도면 작성이 완료된 후 "홈 메뉴 → 제출파일(생성/변환)"을 선택하여 제출용 파일인 *.HLZ파일을 생성합니다.
- ※ 복수디자인 도면은 일련번호를 선택하여 디자인의 수만큼 각각 작성 후 제출용 파일로 생성하여야 합니다.

4.1.3.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명세서 작성 후 제출파일 생성/변환 시 "다음 위치에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의 [발명(고안)의 내용] 항목 중 1번째 문단"이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명세서 기재 시[발명(고안)의 내용]란에는 원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그러므로 [발명(고안)의 내용]란 다음 문단에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4.1.4.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명세서 작성 시 "[발명(고안)의 명칭]의 한글명칭 우측에는 중괄호와 함께 영문 명칭을 병기하여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명세서 작성 시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의 국문명칭을 기재하며, 영문 명칭을 구분기호 중괄호 "{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 [발명(고안)의 명칭]
자동차용 범퍼 {automobile bumper}
- ※ 중괄호"{ }"는 특수문자가 아닌 키보드의 기호를 입력합니다.

4.1.5.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문서 작성 시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및 한영 전환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는 맞춤법검사와 한영자동변환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구 메뉴에서 "입력 시 맞춤법검사"와 "한영자동변환" 체크를 해제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4.1.6.

캐드로 작성한 도면을 통합명세서작성기 도면에 첨부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첨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통합명세서작성기의 명세서에 도면을 넣는 경우 흑백인 경우 *.TIF, 칼라 또는 그레이스케일인 경우 *.JPG 이미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캐드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파일은 통합명세서작성기에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작성된 도면을 출력 후 스캐닝 하여 *.TIF, *.JPG 이미지로 생성하여 통합명세서작성기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1.7.

다른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한 도면을 통합명세서작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생성된 *.TIF, *.JPG 이미지를 통합명세서작성기 메뉴 중 “틀 → 이미지”를 선택하여 해당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기 하여 도면을 삽입하면 됩니다.

4.1.8.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명세서를 제출파일 생성/변환 시 “이미지의 좌우에는 내용(공백포함)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도면 삽입 시 도면 식별항목 다음 행에 공백 없이 도면 이미지가 첨부되어야 하나 공백이 삽입되어 발생하는 오류로 도면 식별항목과 도면 사이의 공백을 제거하면 정상 변환이 가능합니다.

4.1.9.

통합명세서작성기에 첨부하는 도면 이미지 생성 시 스캔 할 때 해상도는 어떻게 되나요?

- 도면 이미지 스캔 시 해상도는 300~400dpi로 권장해 드립니다.

4.1.10.

통합명세서작성기에 첨부하는 도면 이미지의 크기에 제한이 있나요?

- 도면의 크기는 가로 165mm × 세로 222m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4.1.11.

전자출원 후 명세서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보정하고자 할 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특허, 실용신안 전자출원 하는 경우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제출파일 생성/변환 시 최종본(*.FIN) 파일이 생성됩니다. 추후 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최종본(*.FIN) 파일을 불러와 수정작업을 진행한 후 “홈 메뉴 → 보정서 생성” 버튼을 선택하여 보정서 파일(*.DTA)을 생성합니다.
- 생성된 보정서 파일(*.DTA)과 (통합)서식작성기에서 “국내중간서식 → 특허/실용신안 → 보정서 → 명세서등 보정”을 선택하여 작성 후 “(전자)문서제출 → 제출문서생성 → 전자서명 → 온라인 제출” 과정을 통해 제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4.1.12.

명세서등 보정서 별지(*DTA) 생성작업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보정서 별지(*.DTA) 생성작업 후 생성된 보정서 별지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명세서 최종본(*.FIN)에서 생성된 보정서 별지(*.DTA)를 삭제 후 보정서 별지 생성작업을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최종본(*.FIN)에서 생성된 보정서 별지 삭제방법은 통합명세서작성기 상단 “ → 최종본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나타난 ‘최종본(*.FIN) 불러오기’ 창에서 해당 최종본(*.FIN)을 선택합니다.
- ‘최종본(*.FIN) 불러오기’ 창 하단에 표시된 최종본 내 보정서 파일목록 중 삭제하고자하는 보정서 별지를 선택하고 우측의 “상태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최종본 상태 변경’ 창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 해당 보정서 별지 삭제 작업을 완료 후 최종본(*.FIN)파일을 불러와 수정작업을 진행한 후 “홈 메뉴 → 보정서 생성” 버튼을 선택, 다시 보정서 파일(*.DTA)을 생성합니다.

4.1.13.

디자인출원 후 도면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온라인으로 보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디자인을 전자 출원하는 경우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제출파일 생성/변환 시 최종본(*.FIN) 파일이 생성됩니다. 도면에 대한 내용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최종본(*.FIN) 파일을 불러와 수정작업을 진행한 후 “홈 메뉴 → 보정서 생성” 버튼을 선택, 보정서 파일(*.DTA)을 생성합니다.

- (통합)서식작성기에서 “국내중간서식 → 디자인 → 보정서 → 도면등 보정”을 선택하여 작성 후 생성된 *.DTA파일을 첨부하고 “전자문서제출 → 제출문서생성 → 전자서명 → 온라인 제출”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4.1.14.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발명의 명칭 기재 시 글자 수 제한이 있나요?

- 발명의 명칭 길이 제한에 관해 특허법 시행규칙으로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의 국문(영문)명칭을 기재하며, 표준(KSC 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또는 기호만을 사용하여 국문 250자(영문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4.1.15.

전자출원 후 최종본(*.FIN)파일을 이용해서 명세서등 보정서를 작성하고 저장할 때 *.FIN파일이 아닌 *.HLT 파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명세서의 내용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본을 이용하여 수정작업을 진행한 후 보정서 별지 (*.DTA)파일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 이때, 수정작업을 한번에 마치지 못하여 저장을 하게 되는 경우 수정내용이 반영되는 파일은 *.HLT 파일이며, 수정작업을 완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종본(*.FIN) 파일이 아닌 *.HLT 파일을 불러와 수정작업을 합니다.
- 수정작업을 진행한 후 “홈 메뉴 → 보정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본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최종본(*.FIN)을 선택해서 반영을 하면 보정서 별지 파일인 *.DTA파일이 생성됩니다.

4.1.16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명세서 출력 시 바코드 출력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바코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전자화 과정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자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세서 출력 시 바코드가 없이 출력을 원하는 경우 인쇄화면에서 ‘이차원 바코드’ 출력 란의 선택을 해제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4.1.17.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특수문자 사용 시 깨진 문자 형태로 표시되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제공하는 특수문자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한글 완성형(KSC 5601)이외의 형태로 지원되지 않는 문자입니다. 특수 문자 선택에 없는 문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자를 이미지(*.JPG, *.TIF)로 삽입하셔야 합니다.

4.1.18.

통합명세서작성기(NK-EDITOR) 설치 중 도움말 설치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합명세서작성기 도움말 설치에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net Framework 4.0'가 설치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www.microsoft.com/korea)의 다운로드센터에서 '.net Framework 4.0'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통합명세서작성기 설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1.19.

통합명세서작성기 실행 후 자동업데이트 실패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합명세서작성기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열린 단축 창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통해 Windows 관리자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됩니다.

4.1.20.

통합명세서작성기 실행 후 새 문서를 열면 문서가 열리지 않고 “응답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사용하는 환경에서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 네트워크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기본 프린터 설정 및 프린터 드라이브를 재설치 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기타 소프트웨어

5.1. 첨부서류입력기

5.1.1.

첨부서류입력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 첨부서류입력기는 특허청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들을 온라인 제출 가능하도록 전자파일(*.ATT)로 생성하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이미지 스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림파일 형태로 미리 저장된 첨부서류파일 이외에도 직접 서류를 스캐닝 하여 첨부서류파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단, 스캔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캐너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이미지 스캔 기능을 사용하면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는 첨부서류들을 특허청에 제출 가능한 형태의 이미지 포맷(*.TIF, *.JPG)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5.1.2.

첨부서류입력기를 통해 *.ATT파일로 생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첨부서류파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첨부서류입력기 메뉴의 "파일 → 첨부서류 생성"을 선택하면 작성할 첨부서류의 종류를 선택하는 대화 창이 나타납니다.
- 첨부서류의 종류는 사전등록서류, 출원서류, 중간서류, 이의신청서류, 심판서류, 등록서류, PCT 첨부서류, 마드리드서류(본국관청)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작성하고자 하는 첨부서류를 목록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 대화창의 검색어 부분에 단어를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선택할 때마다 대화 창에 표시되는 첨부서류의 종류 및 서류코드가 달라집니다.
- 작성하고자 하는 첨부서류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 하면 작업 선택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대화 창에서 첨부서류파일에 첨부할 이미지 파일을 스캐너로부터 스캔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스캔하기 버튼을 선택해야 하고, 사전에 첨부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생성한 경우는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첨부서류의 첨부가 완료된 이후 첨부서류입력기의 "파일 → 첨부서류 저장"을 통해 *.ATT파일을 생성합니다.

5.1.3.

첨부서류입력기를 통해 여러 장을 스캐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스캐너가 연결되어 있는 PC에서는 별도의 작업 없이 첨부서류입력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로부터 직접 스캐닝작업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입력기에서 첨부 서류명을 선택한 후 나타난 작업 선택 창에서 이미지 스캔하기 버튼을 클릭 하면 이미지 스캔하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 나타난 대화상자에서 스캔 할 이미지 이름 및 스캔 할 이미지 장수 또는 이미지의 해상도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지 파일이름 Header'에 kipo라고 설정하고 '스캔 할 이미지 장수'를 3으로 설정하면 3장의 이미지를 순서대로 스캔해야 합니다. 이미지 파일은 kipo0001.TIF(JPG), kipo0002.TIF(JPG), kipo0003. TIF(JPG)으로 자동설정 되어 저장되게 됩니다(파일명은 변경가능).
- 첨부서류의 첨부가 완료된 이후 첨부서류입력기의 "파일 → 첨부서류 저장" 메뉴를 통해 *.ATT 파일을 생성합니다.

5.1.4.

첨부서류입력기에서 지원되는 이미지 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 첨부서류 입력기에서는 *.BMP, *.JPG, *.TIF, *.PDF 형식이 지원됩니다.
 - *.BMP 파일을 첨부하면 *.TIF 파일로 변경됩니다.
 - ※ *.BMP이미지는 TIF이미지 변환 시 해상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환된 이미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PDF 파일은 1개의 *.PDF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5.2. 통지서 열람기

5.2.1.

통지서 열람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 통지서 열람기는 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한 통지서 및 증명서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 받은 문서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통지서 열람기 프로그램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신청/제출 → 국내출원 → 전자출원S/W설치" 메뉴에서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5.2.2.

통지서 열람기를 통해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통지서 열람기를 실행한 후 좌측 화면 통지서 탐색기 → 파일 → 드라이브 → 통지서 파일을 저장한 폴더로 선택합니다(기본저장경로 : C:\KIPONET).
- 가운데 나타난 목록에서 내용을 확인 하고자 하는 통지서 파일명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통지서 상세정보'에서 서류 명을 더블클릭하여 통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3.

통지서 열람기에서 통지서에 첨부된 첨부서류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나요?

- 통지서에 첨부된 첨부서류 확인은 통지서 열람기에서 해당 통지서를 선택하면 우측 통지서 상세 정보의 발송목록 및 첨부서류 정보란에 서류 목록이 나타나고, 첨부서류 목록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 명을 더블클릭하여 확인합니다.

5.2.4.

통지서 열람기를 통해 통지서 내용 확인 시 'PDF 파일에 대한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특허청에서 발송된 통지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PDF 뷰어 프로그램 중 Acrobat Reader(권장) 등 통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연결프로그램 Acrobat Reader 확인

제6장 웹기반 전자출원(웹작성/제출)

6.1. 웹기반 전자출원

6.1.1.

웹작성이란 무엇인가요?

- 웹작성은 전자출원S/W를 설치하지 않고 웹(특히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출원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등록절차 및 출원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후 “특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웹작성/제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기능
 - 웹상에서의 서식 선택 및 작성 기능
 - 작성 과정에서의 특허정보 조회 기능
 - 제출 전 문서의 사전검증 기능
 - 온라인 제출 및 접수결과 조회 기능
- ※ 출원 명세서(도면) 파일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통합명세서작성기(NK-Editor) 또는 상용워드 SW (한글, MS-Word)를 이용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6.1.2.

웹작성으로 서류작성 중 작업한 내용을 저장 후 추후에 저장된 내용을 불러와 문서작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웹작성으로 작성 화면에서 “임시저장”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한 내용을 *.XML파일 형태로 ‘PC에 저장/서버에 저장 방법’을 통해 중간저장 한 후 “저장문서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계속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중간 저장된 *.XML파일은 추후에 웹작성으로 동일한 출원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후 서식작성 단계에서 저장문서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계속 작성할 수 있습니다.
 - PC에 저장 및 불러오기 방법
 - 서식작성 창 오른쪽 상단 “임시저장 → PC에 저장 → 저장(*.XML)”을 선택합니다.
 - * 저장위치는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장위치를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서식작성 창 오른쪽 상단 “PC에서 불러오기(*.XML) → 선택 → 열기”을 선택합니다.
 - * 서식에 따라 명세서(요약서/별지),상표견본,수수료,첨부파일 등은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버에 저장 및 불러오기 방법

- 서식작성 창 오른쪽 상단 “임시저장 → 서버에저장 → 저장(*.XML)”을 선택합니다.

* 서버에 저장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확인 됩니다.

- 웹작성으로 작성화면 선택시 “저장문서 불러오기 → [v] 선택 → 저장한 문서의 PC로 이동 선택 → 저장위치 선택 후 저장 → 하단에 작성 서식 선택 후 PC에서 불러오기(*.XML) → 선택 → 열기”을 선택합니다.

* 서식에 따라 명세서(요약서/별지),상표견본,수수료,첨부파일 등은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1.3.

웹작성으로 서류작성 시 명세서 파일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통합명세서작성기(NK-EDITOR)만 이용해야 하나요?

- 특허출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디자인에 한해 상용워드 SW(한글, MS-Word)로 작성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출원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할/변경출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상용워드 SW(한글, MS-Word)를 이용해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작성하려는 출원인은 반드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합니다.

※ 해당 양식은 웹작성 출원서류 선택 시 하단 명세서 첨부형식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상용워드 SW(한글, MS Word)를 이용해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의 출원 수수료는 특허 5만 6천원, 실용신안 2만 5천원, 디자인 심사:9만9천원/일부심사:5만원입니다.

6.1.4.

상용워드 SW(한글, MS-Word)를 이용해서 웹작성으로 진행한 경우 명세서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수상태가 “전자화완료”가 된 이후에는 “전자화결과 수신함”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My특허로 → 제출결과 조회 → 전자화결과 수신함 또는 웹작성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선택 → 오른쪽 하단 전자화결과 수신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 개인 출원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할/변경출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7장 온라인출원

7.1. 온라인출원

7.1.1. 온라인출원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평일, 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은 24시간 온라인출원이 가능하며, 일요일은 10:00~24:00 사이에 전자출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1.2. 온라인출원 시 잘못 클릭하여 제출파일이 두 번 전송되었고, 제출결과조회를 확인 해보니 접수번호가 두 개 부여되었습니다. 어떤 번호를 사용해야 하나요?

- 온라인출원 시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서 제출이 여러 번 된 경우 부여 받은 접수번호 중 하나만 선택하여 다음날까지 수수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접수 건에 대해서는 “취하(포기)서 [구분항목 : 특허 등 절차 취하]”를 제출해서 취하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정요구서가 발송된 후 무효 처분됩니다.

7.1.3. 온라인출원 시 제출파일 크기에 제한이 있나요?

- 단일 건 출원 시에는 제출파일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복수건 제출 시 전체용량 300MB 이내).
- 첨부서류 파일크기 제한
 - 첨부서류 입력기로 작성 시 이미지당 5MB 이내
 - 소리파일 : 3M 이하
 - 동영상파일 : 10M 이하
 -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 : SWF, MPEG, WMV, Animated GIF 가능하며, 중화질(640×480) (640×480) 수준에 초당용량이 600~700K/sec을 넘지 않고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 이내
 - 3D도면 :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10MB 초과하는 경우 오류발생 가능성 있어 10MB 미만 권장

7.1.4.

특허로 홈페이지의 온라인 제출에서 전송서류 선택 시 “헤더파일(outheader.xml)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선택한 파일이 최신버전의 Keaps에서 작성한 파일인지 확인하신 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 전자출원 시 제출되는 제출파일(*.ZIP)파일은 일반 압축소프트웨어에서 제작된 파일이 아닌,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해 생성한 제출파일(*.ZIP)로 전송해야 합니다.

7.1.5.

온라인출원 후 수수료를 납부할 전용 계좌번호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 수수료를 납부할 특허청 전용 계좌번호 확인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My특허로 → 제출결과조회 → 조회된 제출결과의 수수료 금액”을 클릭하면 특허청 납입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입고지서 상단에서 특허청 입금전용계좌번호(농협)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6.

출원번호 통지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 출원번호 통지서는 출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서면 접수 건은 접수증과 출원번호 통지서가 통합되어 발급되고, 온라인 접수 건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My특허로 → 제출결과조회”에서 조회된 제출결과의 출원서류명을 선택하면 출원번호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8장 PCT 전자출원

8.1. PCT 전자출원

8.1.1.

PCT-SAFE를 이용한 PCT 전자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PCT 전자출원 절차

- 통합명세서작성기(NK-EDITOR)를 통해 PCT 명세서(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를 작성한 후 “제출파일 생성/변환” 메뉴를 통하여 PCT-SAFE에 첨부하기 위한 *.XML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 PCT-SAFE에서 request(pct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생성된 PCT명세서(*.XML) 파일을 PCT-SAFE에 첨부(내용 → 열기 → 출원내용(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 전자파일)합니다.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각 항목에 첨부합니다.
 - 포괄위임장 사본 (스캐닝한 TIFF 이미지의 포괄위임장 사본 첨부)
 - 개별위임장 (PCT-SAFE의 이름 항목에서 작성)
 - 기타 첨부서류
- PCT용 인증서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에 전자서명을 합니다.
- 작성 완료된 최종 제출 파일을 CD에 저장한 후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PCT-SAFE 온라인 제출 기능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 PCT 국제출원서는 특허청 전자출원소프트웨어인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할 수 없으며,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에서 제공하는 PCT-SAFE 프로그램 또는 ePCT 홈페이지(pct.wipo.int/ePC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1.2.

ePCT를 이용한 PCT 국제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ePCT 전자출원 절차

- 통합명세서작성기(NK-EDITOR)를 통해 PCT 명세서(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를 작성한 후 “제출파일 생성/변환” 메뉴를 통하여 ePCT에 첨부하기 위한 *.XML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 ePCT홈페이지(pct.wipo.int/ePCT)에 WIPO 사용자 계정 등록 및 강력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ePCT홈페이지에서 국제출원서(Request)를 작성 후,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생성된 명세서 파일(*.XML) 및 도면(*.TIFF)을 각각 첨부합니다.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각 항목에 첨부합니다.
 - 기존 위임장(개별위임장)을 첨부할 경우(*.PDF 파일 첨부)
 - 포괄위임장을 첨부할 경우(포괄위임장 사본 *.PDF 파일 첨부)
 - 기타 첨부서류
- 작성 완료된 PCT 국제출원서를 온라인 제출하기 위해 문자서명 또는 이미지 서명을 합니다. (서명 이미지로 *.TIF, *.JPG 파일 첨부)
- ePCT-Filling 패키지 생성 클릭하여 출원패키지 다운로드(*.ZIP)를 저장합니다.
- 특히로 PCT국제출원 온라인 제출 코너 중 'ePCT 출원서 제출' 코너에 출원패키지 다운로드(*.ZIP) 선택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신청/제출 → 국제출원 → PCT국제출원 → 알아둬시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3.

PCT 중간서류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까?

- 2005년 2월 11일 이후 서식이 개정되어 PCT 중간서류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PCT 중간서류는 PCT-SAFE를 통해서 작성하지 않고 (통합)서식작성기에서 PCT 중간서류를 작성하여 국내 온라인 출원 절차와 동일하게 제출하면 됩니다.
 - ※ 단, PCT 국제출원일이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서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8.1.4.

PCT 전자출원에 사용되는 파일의 이름에 제한이 있습니까?

- PCT 전자출원에 사용되는 파일이름은 반드시 영문이어야 하고 특수문자나 공백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특수문자나 공백을 사용하게 되면 최종제출파일 생성 시 삽입한 이미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 해당 파일이 있는 폴더 명도 영문을 사용해야 하고 특수문자나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8.1.5.

PCT 전자출원에서 허용되는 이미지 형식은 무엇입니까?

- WIPO 규정 이미지 포맷 형식은 해상도 : 300dpi / 압축방식 : CCITT Group4 / 이미지 포맷 : 흑백 TIFF 이미지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8.1.6.

PCT-SAFE에 명세서(Application-body)를 첨부했는데 발명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REQUEST 항목에 노란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명세서 발명의 명칭과 PCT 출원서(request)상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국문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PCT 출원서(request)상에 기재하는 발명의 명칭도 국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8.1.7.

PCT-SAFE 실행 시 “데이터베이스 연결오류” 메시지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데이터베이스 연결 오류는 SAFE 실행에 필요한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메시지로서 SAFE프로그램을 삭제 후 재설치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 삭제 시 왼쪽하단의 uninstall database 체크 후 삭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8.1.8.

PCT 전자출원 시 전자서명 할 수 있는 인증서는 무엇입니까?

- PCT 온라인 출원서를 작성 후 전자서명 시 강화된 전자서명 또는 팩시밀리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전자서명을 할 경우 필요한 WIPO 인증서는 WIPO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팩시밀리 서명할 경우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 또는 서명 이미지를 *.TIFF(첨부서류 입력기를 통해 PCT 이미지파일 포맷변환)로 제작하여 팩시밀리 서명 단계를 진행합니다.

제9장 마드리드 전자출원

9.1. 마드리드 전자출원

9.1.1.

마드리드 전자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마드리드 국제출원서는 통합서식작성기(PKEAPS)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출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서를 전자출원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출인이 사전등록절차로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완료한 후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오른쪽 상단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 사용등록” 에서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사전등록절차가 완료된 후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신청/제출 → 국제출원 → 국제상표출원 → 전자출원S/W설치”에서 통합서식작성기(PKEAP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 통합서식작성기(PKEAPS) 실행 후 오른쪽 메뉴 중 마드리드 MM서식 → 국제출원서(MM2)를 작성합니다.
 - 서식작성을 완료한 후 MM서식작성 상단의 메뉴 중 “제출파일”을 선택하여 제출용 파일인 *.MMZ파일을 생성합니다. 제출용으로 저장한 파일(*.MMZ)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 중간저장은 추후 수정이 가능하며, 확장자는(*.PDF)입니다.
 - 통합서식작성기(PKEAPS)를 통해 “국제상표서식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를 선택 후 구분항목에서 “국제출원서 등 → 국제출원 절차”로 서식작성을 합니다.
 -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작성 시 제출인 영문성명과 국제출원서(MM2)의 출원인 영문성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특허청 첨부서류입력기를 이용하여 첨부서류를 생성 후 첨부합니다.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PDF파일 첨부 또는 이미지파일(*.JPG, *.TIF)은 첨부서류입력기를 이용해 *.ATT파일로 생성 후 첨부
 - 서식작성이 완료된 후 제출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온라인 제출과정을 진행합니다.

9.1.2.

마드리드 중간서류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까?

- 마드리드 중간서류는 특허청 전자출원소프트웨어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작성하여 국내 온라인 출원 절차와 동일하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10장 헤이그 전자출원

10.1. 헤이그 전자출원

10.1.1.

헤이그 전자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헤이그 국제출원서는 통합서식작성기(PKEAPS)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출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헤이그 국제출원서를 전자출원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출인이 사전등록절차로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완료한 후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오른쪽 상단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 사용등록” 에서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사전등록절차가 완료된 후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신청/제출 → 국제출원 → 국제디자인출원 → 전자출원S/W설치”에서 통합서식작성기(PKEAP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 통합서식작성기(PKEAPS) 실행 후 오른쪽 메뉴 중 헤이그 DM서식 → 국제출원서(DM1)를 작성합니다.
 - 서식작성을 완료한 후 DM서식작성 상단의 메뉴 중 “제출파일”을 선택하여 제출용 파일인 *.DMZ파일을 생성합니다. 제출용으로 저장한 파일(*.DMZ)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 중간저장은 추후 수정이 가능하며, 확장자는(*.PDF)입니다.
 - 통합서식작성기(PKEAPS)를 통해 “국제디자인서식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를 선택 후 구분 항목에서 “국제출원서 등”절차로 서식작성을 합니다.
 -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작성시 제출인 영문성명과 국제출원서(DM1 서식)의 출원인 영문성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특허청 첨부서류입력기를 이용하여 첨부서류를 생성 후 첨부합니다.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PDF파일 첨부 또는 이미지파일(*.JPG, *.TIF)은 첨부서류입력기를 이용해 *.ATT파일로 생성 후 첨부
 - 서식작성이 완료된 후 제출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온라인 제출과정을 진행합니다.

10.1.2.

헤이그 중간서류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니까?

- 수리관청(대한민국)에 제출하는 중간서류는 특허청 전자출원소프트웨어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작성하여 국내 온라인 출원 절차와 동일하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11장 통지서 수신

11.1. 통지서 수신

11.1.1.

수취방법이 온라인인 경우 통지서수신함에서 다운받은 *.ZIP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수취방법이 온라인인 경우 특허청에서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송하며, 발송된 통지서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My특허로 → 통지서/등록료안내 → 통지서 수신함”에서 수신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후 *.ZIP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지서 수신함에서 다운로드받은 파일은 *.ZIP파일이며, 통지서 내용확인으 전자출원S/W 중 ‘통지서 열람기’를 통해 *.ZIP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통지서 열람기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신청/제출 → 국내출원 → 전자출원S/W 설치 → 통지서 열람기” 설치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 ※ PDF 뷰어(Acrobat Reader 권장)가 설치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통지서 내용이 확인됩니다.

11.1.2.

통지서 수신함에서 통지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수취방법이 온라인인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된 통지서는 통지서 수신함 메뉴에서 발송일 당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해당 기간 내에는 여러 번 다운로드 가능).
- 7일 이내 미수신한 경우 서면으로 출력하여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신청 후 통지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 ※ 단, 심판관련 서류는 공휴일, 토요일 제외하고 4일 이내 미수신 시 우편 발송

11.1.3.

통지서 수취방법을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통지서 수취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정보 변경 신청”에서 수취방법을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특허청에 등록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11.1.4.

통지서 수신함에서 통지서 다운로드 시 인증서 비밀번호 넣고 다운로드 창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특허로 사용환경 설치 프로그램 중 '파일업·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 창이 팝업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오른쪽 상단 특허고객등록 → 특허고객등록 → 특허로 사용환경 안내 → 파일 업·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설치 후 이용하면 됩니다.

제12장 온라인 증명서 발급

12.1. 온라인 증명서 발급

12.1.1.

온라인으로 증명서류 신청 후 발급까지 처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즉시 발급처리 되며, 은행에서 직접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수수료 납부된 사항이 확인되면 바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12.1.2.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 온라인 발급 문서도 서면으로 발급받은 문서와 마찬가지로 법적효력을 갖는 정보입니다.

12.1.3.

증명서 수신함에 발급문서를 열람 및 출력하려고 합니다. 발급서류별 차이가 있습니까?

- 증명원 및 원부는 발송번호를 클릭하면 바로 웹 화면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증명원 및 원부는 개인 PC로 다운로드하여 저장은 불가능합니다.
- 서류등초본교부신청(서류사본) 후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발송번호를 클릭하거나, 발송번호 앞부분의 체크박스를 체크한 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통지서파일(*.ZIP)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다운로드 받은 통지서파일(*.ZIP)은 압축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지서열람기 S/W를 이용하여서 내용 확인합니다.
※ 다운받은 *.ZIP파일은 일반 압축소프트웨어에서 확인 불가능합니다.

12.1.4.

등록원부 및 서류철복사신청은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 등록원부 및 서류철 복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증서 로그인 없이 비회원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서류철복사(비회원)”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 서류철 복사의 경우 공개 전인 경우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만 신청 가능하고, 공개가 된 이후에는 신청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2.1.5.

증명원 출력 시, 인쇄버튼을 눌러도 출력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명원 출력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의 목록 중 REDBC NX_PRNMAN 프로그램을 삭제 후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증명서발급 → 증명서수신함” 메뉴 접속 시 자동 설치됩니다.

※ 자동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수신함 하단의 이용방법안내 → 증명원 출력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12.1.6.

증명서 신청 후 발급문서를 수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온라인 발급문서를 30일 이내에 수신하지 않으신 경우, 증명서 수신함에서 더 이상 수신할 수 없으며 다시 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12.1.7.

신청결과조회에서 접수번호와 수수료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내역을 전송한 후 바로 신청결과조회 화면으로 이동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신청내역을 전송하고 있는 중(처리상태 : 접수중)이므로 잠시 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처리상태가 ‘발급완료’로 바뀌면 정상적으로 신청내역이 접수가 되었으므로 접수번호와 수수료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 신청결과조회 화면의 처리상태내역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신청결과조회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1.8.

수수료를 납부했는데도 증명서발급의 신청결과조회에서는 “첨부서류 확인 중”이라는 표시만 나타납니다. 어떤 사항 때문입니까?

- 신청서식이 출원사실증명신청서 또는 우선권증명신청서이면서, 첨부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확인 후 담당자가 첨부서류 파일을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확인단계에 있는 경우 확인 중으로 나타납니다.

12.1.9.

등록원부 발급 신청 시 “신청을 실패하였습니다.”라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현상은 등록원부 발급 신청 시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 등록번호는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O(권리구분) - OOOOOOOO(일련번호) - OO(상표권, 디자인권 분할 이전) - OO(상표권 분할, 디자인권 관련디자인) 끝의 4자리는 상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숫자 00 - 00으로 입력 합니다.

※ 권리구분 : 특허(10), 실용신안(20), 디자인(30), 상표(서류구분에 따라 40부터 48까지)

12.1.10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증을 출력했는데 등록증 상에 특허청장의 직인과 금장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증 상에 표기되는 특허청장의 직인과 금장 없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 상의 문제입니다. 인터넷 상단의 파일 → 페이지설정 메뉴에서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에 체크한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12.1.11

온라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은행방문 납부 방법

증명서 신청한 후 부여 받은 접수번호를 다음날까지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납입영수증의 납부자 번호' 란에 기재하여 국고수납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온라인 수수료납부 방법

온라인으로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에서 온라인납부 또는 인터넷지로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온라인 납부 도움말, 인터넷지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1.12

증명서류 신청 서식별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각종서류의 등·초본 교부신청 시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 식 명	신청 수수료
출원사실증명신청	온라인 : 무료, 서면 : 매건 500원, 우편 : (500원 × 신청부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우선권증명신청	서면/우편수령 : (증명료 500원 + 가산료(면당 × 100원)) × 신청부수 + (복사면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등록원부교부신청	등본 - 온라인 : 무료, 서면 : 매건 500원, 우편 : (500원 × 신청부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사본 - 온라인 : 무료, 서면 : 매건 500원, 우편 : (500원 × 신청부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	사본 - 온라인 : 무료, 서면 : 500원, 우편 : (500원 × 신청부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심결문등본송달증명신청	온라인 : 무료, 서면 : 매건 500원, 우편 : (500원 × 신청부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심판청구사실증명신청	온라인 : 무료, 서면 : 매건 500원, 우편 : (500원 × 신청부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	온라인 : 무료, 서면 : 매건 500원, 우편 : (500원 × 신청부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반도체등록원부	온라인 : 무료, 서면 : 매건 500원, 우편 : (500원 × 신청부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반도체서류철	사본 - 온라인 : 무료, 서면 : 매건 500원, 우편 : (500원 × 신청부수) + 신청부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출원/거절/등록/심판서류철	온라인수령 : 무료, 서면 : 면당 100원 우편수령 : (복사면수 × 100원) + 복사면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PCT 서류철	서면 : 면당 100원, 우편/우편수령 : (복사면수 × 100원) + 복사면수에 해당하는 우송료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 정보안내”에서 ‘각종서류의 등·초본 발급신청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우송료가 부과 됩니다. (제3편 중간절차 1.5.1 ‘우송료(등기우편료) 기준표’ 참고)

특허고객 상담사례집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본 제작물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례를 선정하여 발간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신고, 불복청구 등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